

# 元曉의 本業經疏 연구

金 煥 泰\*

## □ 내 용 차 례 □

### I. 本疏 연구의 意義와 本業經개관

1. 고찰하게된 까닭
2. 菩薩瓔珞本業經의 개요
  - 1) 經名에 관하여
  - 2) 各 品의 大綱
3. 經錄 및 經典史의 문제
  - 1) 여러 經錄을 통해본 本業經 문제
  - 2) 經說 내용상의 문제들

### II. 經疏의 개요와 그 大意

1. 疏釋의 짜임과 現存本
2. 本業經疏의 大意門
  - 1) 菩薩本業의 本體論
  - 2) 說經因由·實際論
  - 3) 教義宗趣論

### III. 現存 下卷의 고찰

1. 賢聖學觀品 해석
  - 1) 첫째문(正明行德)
  - 2) 둘째문(諸門分別)
2. 釋義品 풀이
3. 佛母品 풀이
4. 因果品 풀이
  - 1) 略攝門의 法要
  - 2) 因果門을 중심으로 經宗을 밝힘
5. 大衆受學品 풀이
6. 集散品 풀이(전체 맺음)
  - 1) 流通分으로서의 集散品
  - 2) 맺음 글

## I. 本疏 연구의 意義와 『本業經』 개관

### 1. 고찰하게된 까닭

『本業經』 또는 『瓔珞經』이라 약칭하는 『菩薩瓔珞本業經』<sup>1)</sup>은 대승계율의 사상과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1) 『高麗大藏經』 克函 제537經의 수록을 底本으로 삼은, 『大正新修大藏經』 24권, p.1010 中 ~1023 上.

보살수행의 階位 및 菩薩本業의 내면세계를 활짝 열어 드러내고 있는 중요한 경전이다. 이 경을 현재는 大乘戒經이라 하여 大藏經(三藏) 중에서 律藏(部)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실은 순수한 戒經으로만 국한시켜서 보기보다는 좀더 폭이 넓은 교학범주와 思想性을 내포한 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中國佛敎에서는 印度의 大乘佛敎思想을 받아들여 보살의 修行階位를 三賢(十住·十行·十廻向)과 十聖(十地)을 중심으로 하여 42位(等覺位·妙覺位를 더하여)의 단계로 묶어 정리하였다. 이는 三賢 十聖의 수행을 차례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華嚴經』<sup>2)</sup>을 전후하여 굳혀진 階位說이라고 할 수가 있다. 『本業經』에서도 물론 42賢聖을 중심으로 설하고는 있으나, 그 (十住) 앞에 十信을 先行位로 설하고 있으므로써 52位說의 성립을 비로소 가능하게 하였었다.

隋代에 들어와서 특히 天台 智顓 (538~597)에 의하여 그 敎觀 확립에 援用되어 지면서부터 그 이후로 『本業經』은 中國 불교계에 널리 영향되어졌었다. 智顓은 자신의 『法華玄義』와 『四敎義』 등에서 『本業經』의 三觀說 곧 從假入空觀·從空入假觀·中道第一義諦觀<sup>3)</sup> 및 五十二位說<sup>4)</sup>을 끌어왔으며, 또 『菩薩戒義疏』 등에서는 心無盡說<sup>5)</sup>을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唐代 華嚴敎學의 大成者인 賢首 法藏 (643~712)도 天台 智顓에 이어서 이 『本業經』을 매우 중요시하였는데, 그는 『梵網經菩薩戒本疏』<sup>6)</sup>에서 大乘戒의 사상을 疏釋하면서 『本業經』의 설을 끌어와 『梵網經』에서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려 하였었다.

2) 東晉 佛跋毘陀羅譯, 『大方廣佛華嚴經』 권8, 菩薩十住品 第11(大正藏 9, P.444 下~P.449 上) 과 권11~12, 功德華聚菩薩十行品 第17-1~2(위의 P.466 中~474 下)와 권14~22, 金剛薩婆十廻向品 第21-1~9(위의 P.488 上~541 下) 및 권23~27, 十地品 第22-1~5(위의 P.542 上~578 上).

3) 『妙法蓮華經玄義』 권3 下(大正藏 33, P.714 中) 등.

4) 위의 經 권4 하(위와 같은 藏 P.731 下~732 中) 및 『四敎義』 권9(大正藏 46, P.752 上~下) 등.

5) 역시 天台智者說 『菩薩戒義疏』 上(大正藏 40, P.566 上) 및 『摩訶止觀』 권4 上(大正藏 46, P.36 中) 등

6) 法藏撰, 『梵網經菩薩戒本疏』 第1(大正藏 40, P.602 下·603 上) 및 第5(같은 권, P.644 下) 등.

이 경에서 대승의 계율에 관해 설하고 있는 부분은 하권의 ‘大衆受學品 제7’이 가장 많으며, ‘集散品 제8’과 ‘因果品 제6’ 및 상권의 ‘賢聖名字品 제2’ 등에도 조금씩 보이고 있다. 이 ‘大衆受學品’에는, “일체 중생이 처음에 三寶의 바다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믿음으로써 근본으로 삼아야 하며, 부처님 집안에 머물려면 戒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若一切衆生 初入三寶海 以信爲本 住在佛家 以戒爲本.)”라고 하여, 戒가 보살행의 기본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經에서는 大乘戒가 단지 나쁨(惡)을 금하고 물리치는 律條의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小乘律과는 달리 修善과 共濟의 무조건 또는 한계가 없는 노력까지도 戒 가운데의 일로 본 것이라 할 수 있으니, 곧 일체의 바른 생활이 戒라는 것을 드러내 보인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또 十波羅夷를 攝律儀戒로 단정하여 授戒의 行儀에 의해 주고 받는 것으로 들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梵網經』의 戒를 전과 보급하는 역할을 지녔다고 할 수 있으나, 『梵網經』의 48輕戒에 관해서는 한 마디의 언급이 없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八萬威儀를 모두 輕戒로 설하고 있다. 그리고 菩薩戒에는 受法이 있으나 捨法은 없으며 戒를犯하였더라도 잃지않고 未來際를 다한다고 하여, 보살心地의 깊은 밑바닥에서 솟아오르는 精進行 가운데에 나타나는 持戒의 힘은 小乘律의 형식적인 律條준수의 위태로움이 있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였다. 또한 戒師에 관해서는 “夫婦와 六親이 서로 戒師가 되어 戒를 줄 수가 있다”고 까지 진전된 설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일체 菩薩凡聖의 戒는 모두가 마음을 본체로 삼는다. 그러므로 마음이 다해버리면 戒도 또한 다하며, 마음이 다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戒도 또한 다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여, 大乘戒는 他律的으로 규정된 조목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그 본체가 있음을 보이고 있는 등의, 독특한 내용이 설해져 있다.

그와 같은 특성이 있고 또 당시 중국불교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 경이면서도 실은 中國佛教學界에서는 이렇다할 註釋書를 남긴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단지 현존 古目錄 상에는 新羅 학자스님 두 분(元曉·義寂)의 撰疏만이 그 명목을 보

이고 있으나, 현재 남아 전하는 新羅저술은 元曉의 『本業經疏』 한 가지 뿐이다. 그러나 실은 현존 『本業經疏』에는 元曉의 疏 외에 또 하나의 缺落本疏가 海外에 전해져 있다.

그 또 하나의 缺落本이란 이른바 燉煌에서 출토된 『本業瓔珞經疏』이다. 어느 때 누구에 의해 찬술된 章疏인지를 알 수 없으며, 『本業經』의 상권을 해석한 것이지만 앞쪽과 뒷부분쪽이 떨어져나간 결락본이다. 元曉의 『本業經疏』도 완본은 아니지만 상권의 일부(大意門)와 하권은 끝까지 완전하게 남아 있으므로 燉煌本에 비하면 매우 잔존상태가 좋은 편이라 할 수 있다.(다음 章에서 詳述할 것임) 비록 서문(大意門)과 하권이 남아있는 낙길(落帙本)이라고 하여도 그 내용의 비중이나 분량 면에서 본다면 실은 전체의 3분의 2 쯤은 남은셈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元曉의 현존 『疏』가 完帙이 아니고 또 『瓔珞本業經』 자체가 종래의 講學界에서 소외되어 있었다는 점들 때문인지, 근래에와서 부쩍 元曉 遺著의 연구열이 고조된 편이지만 이 『疏』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 『本業經疏』에 관한 오늘날 학계의 관심표명 곧 관계 연구논문과 번역 및 강해가 전혀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논문으로는 李箕永박사의 「元曉의 菩薩戒觀」에서 『菩薩瓔珞本業經』 서문에 관해 다루고 있는 부분<sup>7)</sup>과 拙稿 「本業經疏를 통해 본 元曉의 信觀」<sup>8)</sup> 및 李萬교수의 「元曉의 菩薩瓔珞本業經疏를 통해 본 一道一果의 修行觀」<sup>9)</sup> 등이 있으나, 모두가 필요한 부분만을 고찰한 것으로 『本業經疏』의 현존문에 대한 전반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연구라고는 할 수가 없다. 번역과 아울러서 쓴 講解로는 沈載烈씨의 글<sup>10)</sup>을 들 수가 있는데, 이 또한 『本業經疏』의 序와 大衆受學品만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서 현존 『疏』의 殘文 전체를 譯註講解한 것은 아니다. 이 밖에 현존 전문의

7) 『佛敎學報』 5집(東國大學校 佛敎文化研究所, 1967) P.100~102.

8) 『元曉學研究』 2집(元曉學會·元曉學研究院, 1997) P.135~155.

9) 『元曉學研究』 3집(상동 1998) P.179~197.

10) 『元曉思想 2 倫理觀』(弘法院, 1991) P.481~522.

번역으로는 金尙祚씨의 譯註<sup>11)</sup>가 있다.

여기에서는 주제 그대로 현재 남아있는 『本業經疏』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비록 완질본은 아니지만 이 『本業經疏』 잔문은 오늘날까지 전해져 있는 20여가지<sup>12)</sup>의 元曉 저술 가운데에서 낱질본으로서서는 물론 가장 부피가 많지만, 현존서 전체 중에서도 3권 완본인 『金剛三昧經論』(『韓國佛教全書』에 73면 남짓)과 상하 2권인 『起信論疏』(같은 책 35면 쯤)를 이어 세 번째로 분량이 많은(같은 책 26면) 저술이 된다. (本末 2券인 『起信論別記』도 20면 남짓 분량임) 뿐만 아니라 『本業經』 그 자체에서 보아도 모두 8품(① 集衆品, ② 賢聖名字品, ③ 賢聖學觀品 이상 상권, ④ 釋義品, ⑤ 佛母品, ⑥ 因果品, ⑦ 大衆受學品, ⑧ 集散品 이상 하권) 가운데 이 경의 상권에 들어있는 제3 賢聖學觀品の 후반부에서부터 하권의 끝 품인 集散品에 이르기까지의 해석이 현존 『本業經疏』 하권에 들어있는 내용이며, 또 현재 남아있는 서문(『本業經疏』 序)도 실은 이 『疏』의 첫 번째 분류인 ‘大意門’에 해당되므로 이를 포함하는 『本業經疏』의 현존잔문은 단순한 낱질본 이상의 비중을 간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意義가 있는 까닭으로 이를 고찰하기 위하여 이 첫 번째 장에서는 우선 『本業經』의 大綱과 諸經錄 및 他經典關係史的 문제 등을 간략하게 보기로 한다. 그런 다음에 장을 달리하여 현재 남아있는 『本業經疏』의 글 전체를 차례로 고찰해 나갈 생각이다.

11) 『國譯 元曉聖師全書』 권3 (元曉宗 元曉全書國譯刊行會, 1987) P.415~747.

12) 『韓國佛教全書』 1책(東國大學校 出版部, 1979)에는 다음의 스물 세가지가 수록되어 있다. 『大慧度經宗要』 1권 · 『法華宗要』 1권 · 『華嚴經疏』(卷三 并序) 1권 · 『本業經疏』(卷下 并序) 1권 · 『涅槃宗要』 1권 · 『彌勒上生經宗要』 1권 · 『解深密經疏』 序 · 『無量壽經宗要』 1권 · 『佛說阿彌陀經疏』 1권 · 『遊心安樂道』 1권 · 『菩薩戒本持犯要記』 1권 · 『梵網經菩薩戒本私記』(卷上) 1권 · 『金剛三昧經論』 3권 · 『起信論別記』 2권 · 『起信論海東疏』 2권 · 『大乘起信論疏記會本』 6권 · 『二障義』 1권 · 『判比量論』(斷簡) · 『中邊分別論』(券三) 1권 · 『十門和諍論』(斷簡) · 『發心修行章』 1권 · 『大乘六情懺悔』 1권 · 『彌陀證性偈』 1편.

그러나 이 중에서 『大乘起信論疏記會本』은 『起信論別記』와 『起信論疏』를 합쳐서 편찬한 會本이므로, 실은 元曉의 현존 저술은 序와 偈까지 포함시켜 모두 스물 두 가지(22種)가 되는 셈이다.

## 2. 菩薩瓔珞本業經의 개요

### 1) 經名에 관하여

後秦 때의 凉州沙門 竺佛念 번역(376~378)으로 되어있으며, 상 하 2권에 대략 1만7천5백여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 경전의 제목은 『菩薩瓔珞本業經』이다. 그러나 한문으로 번역된 중국의 佛典 거의 모두가 그러하듯이 이 경도 본디 제목보다는 줄인 이름(略稱)으로 많이 일컬어지고 있다. 『瓔珞本業經』·『菩薩瓔珞經』이라고도 쓰며, 더 줄여서 『瓔珞經』 또는 『本業經』이라고도 하는데 고승들의 저술에서는 주로 “瓔珞云”·“瓔珞經云”이라 하고 있다.

불교경전은 천 가지(千種)도 더 되기 때문에 같은 제목의 경전도 있을 수가 있다. 특히 같은 원본일 경우도 번역자에 따라 그 경명이 달라지는 것이 통례처럼 보이고 있으나, 그 중에는 전혀 같은 제목을 붙인 사례가 없지않으니 세 가지(三部) 『大方廣佛華嚴經』등을 들 수가 있다. 『華嚴經』은 약칭도 같지만 동일 약칭이면서도 『法華經』의 경우는 세 가지 (『正法華經』·『妙法蓮華經』·『添品法華經』)가 다르며, 번역자(鳩摩羅什)가 같은 『摩訶般若波羅蜜經』은 두 가지가 경명이 같으므로 구분하기 위해서 『大品般若』(大品經) 『小品般若』(小品經)이라 줄여서 일컫는다. 그러한 사례는 적지않아서 하나 하나 다 예를 들 수가 없는데 이 『瓔珞經』의 경우도 그 갓추인 이름인 『菩薩瓔珞本業經』으로 쓰면 상관이 없으나, 한문경전의 예에 따라 줄여서 일컬을 경우에는 그 경명이 다른 경전 이름과 겹쳐지게 된다. 『菩薩瓔珞經』이나 『瓔珞經』이라고 할 경우에는 일명 『現在報經』이라고도 일컫는 『菩薩瓔珞經』<sup>13)</sup>과 같은 제목이 되는데, 이 경의 줄인 이름도 같은 『瓔珞經』이며 번역자도 똑같은 竺佛念이지만 14권 45품으로 이루어진 큰 경전으로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경전이다. 그리고 또 『菩薩本業經』이나 『本業經』이라고 하게되면 孫吳 때의 月氏

13) 『大正藏經』 16, P.1~126에 수록.

居士 支謙번역인 『佛說菩薩本業經』<sup>14)</sup>(줄여서 『菩薩本業經』 또는 『本業經』)과 같은 약칭이 되는데, 이 경은 『華嚴經淨行品』·『淨行品經』으로도 일컬어지며<sup>15)</sup> 역시 『瓔珞本業經』과는 별개의 다른 경이다.

이제 본 바와 같이 『菩薩瓔珞本業經』이라는 원제목 그대로를 쓰거나 『瓔珞本業經』이라고 하면 다른 경과 저촉이 되지않지만, 그 밖의 약칭은 모두가 겹쳐지는 다른 경전이 있으므로 구별하기 힘든 경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隋 智顛 를 비롯한 그 이후의 釋經大家들은 거의 대부분이 ‘瓔珞’이라는 두 글자의 약칭을 써왔다. 元曉 또한 『瓔珞經』<sup>16)</sup>이라 쓰고 있음을 보게 되지만, 이 章疏에서는 제목을 『本業經疏』라 하여 맨끝의 두 글자(本業)를 따서 줄인 경명으로 쓰고 있으므로 이 고찰에서는 (비록 겹치는 略稱經名이 있으나) 원저자(元曉)의 뜻에 따라 편의상 『本業經』이라 통칭하려고 한다.

## 2) 각 품의 大綱

상 하 2권으로 되어있는 이 『本業經』은 모두 8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품의 중요 줄거리를 간추려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集眾品 제1. (여는 경전과 마찬가지로 “如是我聞”에서 시작되어) 한 때 부처님께서 泐沙(Bimbisāra)왕국의 道場樹 아래 正覺을 이룬 자리에 또다시 가시어 이전과 같이 앉으시다. 그 때 부처님은 마흔 두줄기의 빛을 놓으시니 그 광명마다 모두 백만 이승지겁의 공덕이 있어서 瓔珞이 되었고 부처님 몸을 장엄하게 꾸며 법계에 가득 채웠다. 그럴 즈음에 시방 일체의 국토로부터 셀 수 없는 수의 보살들이

14) 위와 같음 10, P.446~450.

15) 日本의 諦忍(1705~1786)述 『梵網經要解』 卷1(日本大藏經 19, 大乘律章疏 2)에서는 『瓔珞本業經』을 가리켜 『華嚴經』의 結經이라고까지 하였는데, 물론 『瓔珞本業經』이 『華嚴經』과 관련이 매우 많은 편이기는 하나 보다도 더 관련이 깊은 經은 『菩薩本業經』이다. 이 『菩薩本業經』이 華嚴部에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經名까지도 『華嚴淨行品經』이라고 일컬어진다.

16) 元曉撰, 『梵網經菩薩戒本私記』 卷上(韓國佛教全書 1冊, P.589 中)등 여러 군데.

모여왔다.

賢聖名字品 제2. 이 때 부처님은 敬首菩薩의 물음에 대답하시어, “佛子여, 내 지금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瓔珞의 本業을 말하리라. 四十二賢聖名門이란 十住·十行·十廻向·十地·無相無垢地·妙覺者無上地(經에는 이름을 모두 梵語 漢字音으로 列記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편의상 十住~ 妙覺無上地로 바꾸어 표기하였음)로서, 일체의 공덕행을 섭수하며 부처님과 보살이 이 名門에 들지않음이 없다. 이 初發心住에 오르기 전에 열 가지의 名字가 있어서 보살은 항상 이 十心을 닦아야하니, 이른바 信心·念心·精進心·慧心·定心·不退心·廻向心·護心·戒心·願心이다.……”. 라고 하셨다. 이어서 百法明門과 二十四願 및 十波羅蜜 등을 닦을 것을 설하시고는 “十不可悔戒(『梵網經』의 十重禁戒와 같음)를 受持하여야 할 것이니 만약에 이 十戒를 범하면 波羅夷에 들게 되어 悔過할 수가 없다. 이 戒는 일체 부처님과 일체 보살행의 근본이 된다. 이 十戒의 法門에 의지하지 않으면 賢聖의 果를 얻을 수가 없다.”고 설하시다.

賢聖學觀品 제3. 부처님의 설법은 계속된다. 일체의 모든 부처님이 다같이 설하셨다는 六種性이란 習種性·性種性·道種性·聖種性·等覺性·妙覺性인데, 일체의 보살과 부처님의 功德瓔珞이다. 또는 六忍·六定이라 하며 또한 六觀이라 이름한다. 六觀이란 住觀·行觀·向觀·地觀·無相觀·一切種智觀으로서, 일체의 보살과 부처님이 이 妙觀의 범문에 들지않음이 없다. 또 銅(習種性)·銀(性種性)·金(道種性)·琉璃(聖種性)·摩尼(等覺性)·水精(妙覺性)의 六寶瓔珞을 42賢聖에 견줄 수가 있다. 또 十住·十行·十廻向·十地에는 각각 十觀의 마음에 觀하는 바의 법이 있다. 제41地에서는 定中에 들어가 十法을 수행하며, 제42地에서는 항상 一相에 머물러서 第一無極이다. 이상과 같이 설법하신 가운데에서 從假入空觀·從空入假觀·中道第一義諦觀의 이른바 三觀法 등 중요한 문제가 설해져 있다.(이상 上卷)

釋義品 제4. 역시 부처님은 敬首보살에게 말씀하셨다. 十住에서 妙覺地에 이르기까지의 名義와 體相을 설하시다. 體란 보살의 본체이며 義는 體로부터 나오는



데 공덕을 이르는 것이다. 發心住란 처음에 보살마음을 일으킴을 말하며, 歡喜行이란 비로소 法空에 들어가 外道の 邪論에 넘어가지 않고 正位에 들어감을 말한다. 그리고 救護一切衆生離衆生相廻向이란 無相의 마음으로 六道를 행하여 果報에 들어감으로써 받지 않으면서도 모든 과보를 받아 돌이켜 바꾸어서 轉化함을 일컫는다. 또 歡喜地란 有와 無의 두 가장자리를 평등하게 다같이 비추어 밝게 법문을 관하여 마음과 마음이 法流水 가운데에 寂滅하며 一相 無相과 二身無方으로 佛土에 通同함을 말한다. 無垢地란 佛行을 닦기 때문에 金剛三昧에 들어가 一相 無相의 寂滅無爲함을 이룸하며, 妙觀上忍이란 大寂無相으로서 오직 일체의 중생을 緣으로 하여 善法을 내고 또한 스스로 일체공덕을 지니기 때문에 佛藏이라 일컫는다는 등의 설법을 하시다.

佛母品 제5. 敬首보살에게 답하시다. 有諦와 無諦 및 中道第一義諦는 일체 제불보살의 智母이며 일체의 法까지도 또한 제불보살의 智母이다. 二諦란 世諦가 有이므로 不空이며, 無諦가 空하므로 不有이니, 二諦가 항상 이리하므로 不一이다. 그리하여 二諦의 義는 不一亦不二·不常亦不斷·不來亦不去·不生亦不滅이다. 그래서 二相이 곧 聖智無二이며 無二이기 때문에 제불보살의 智母이니, 十方無極刹土의 諸佛도 또한 이와 같이 설하신다. 我(佛)法의 正義는 善惡을 동일하게 행하면 속박이 있고 해탈이 있으며 凡夫가 있고 부처님이 있다고 할 것이며, 내지는 범부와 성인의 일체 좋은 모두 漏果라고 일컫는다. 또 菩薩行道의 劫數란 天衣로 사망 1리·2리 내지는 10리 또는 8백리 따위의 岩石을 스쳐 다닿게함과 같다는 등을 말씀하셨다.

因果品 제6. 역시 敬首보살의 물음에 답하시다. 삼세제불이 닦는 바의 因行은 이른 바 十般若波羅蜜인데 百萬阿僧祇 공덕의 근본이니, 부처님과 보살 또한 이 가운데 섭수되어 있다.

十波羅蜜이란 施·戒·忍·精進·禪·慧·願·方便·通力·無垢慧로서 그 하나 하나에 각각 다른 3緣이 있으며, 또한 여러 道法을 수행하여 一大果를 증득하고 法性の 體로 삼는다. 그리고 두 가지 法身在 있으니 過極法身과 應化法身인데,

그림자가 형체 따름과 같으며 부처님은 果法身이 항상하므로 應化身도 또한 항상하다.

일체의 보살은 두 가지 몸(二身) 모두 無常의 몸이며, 일체의 범부도 또한 두 가지 몸이 있으니 報身과 方便身인데 報身은 함께 있지않으나 方便身은 일체중생에 함께 있다. 또 佛義의 功德身이란 제불의 道가 같아서 果法이 다르지 않으며, 이른바 十號와 十德을 갖추었으므로 일체중생의 공양하는 바이다 라는 등을 설법하시다.

大眾受學品 제7. 부처님은 敬首보살의 물음에 응하여 시방 제불국토의 불보살을 모아 그 가운데의 文殊·普賢 등의 일곱 보살에게 “내 지금 거둬서 明觀法을 설하리라.” 하시다. 이른바 六入次第의 道(十住·十行·十廻向·十地·無垢·妙覺)이니, 일체 중생이 처음으로 三寶의 바다에 들어가려면 信을 근본으로 하고 佛家에 머물고자 하면 戒를 근본으로 삼는다. 비로소 수행하는 보살이나 信男 信女가 다같이 正法戒를 받아야 한다.

戒는 일체의 행과 功德藏의 근본이며 일체의 大惡을 제거하는 正法의 明鏡이니, 일체戒의 근본에는 三受門이 있다. 攝善法戒는 이른바 八萬四千의 법문이며, 攝衆生戒는 慈悲喜捨이며, 攝律儀戒는 10波羅夷이다. 또 受戒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제불보살의 앞에서 받는 것, 부처님과 보살의 滅度후에 천리 안에 있는 보살에게 받는 것, 제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받는 것이다. 正戒를 받음에는 보살의 10重戒와 8만威儀戒(많은 輕戒로서 『梵網經』의 48輕戒와 다름)가 있으니 10重을 범하게 될 경우에는 참회할 수가 없고 다시는 戒를 받을 수가 없으며, 輕戒는 범하였을 경우에 죄과를 참회하여 없앨 수가 있다. 일체 보살 凡聖의 戒는 다한 마음(盡心)을 체로 삼는다. 그러므로 마음이 다하면 戒도 또한 다하고, 마음이 멸진하지 않으므로 戒도 또한 멸진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初住位에 들어감으로부터 百法觀門을 수행하여 初行位에 들어가며 또 千法妙門을 觀修하여 初廻向位에 들어가고 또 萬法明門을 觀得하여 初地에 들어가며 다시 無垢地와 妙覺地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하시다. 14억의 座衆은 모두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六入法門에 들어갔다.

集散品 제8. 부처님은 會上의 대중들에게, “그대들은 42賢聖의 因果法門을 들었으니 마땅히 모두 三菩提心을 발할지이다. 마땅히 받고 지니고 發心할 것이니라.”라고 세 번 말씀하시다. 그리하여 百千의 天子 및 모든 보살들이 다같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각기 공덕을 얻어서 환희봉행하여 절하고는 물러갔다.

이상은 『本業經』 전체의 설법내용을 각품을 중심으로 하여 대중 요약해 본 것이다.

### 3. 經錄 및 經典史的 문제

앞에서 대강 본 그대로라면 『本業經』은 後秦 때 竺佛念의 번역이며 2권 8품으로 이루어진 중요한 대승경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중국의 譯經目錄을 통하여 그 譯者와 번역의 시기에 문제가 있음을 보게되며, 經說내용 자체에도 당시 또는 그 이전에 번역된 여러 경전들의 내용과 같거나 비슷한 부분이 적지않음을 찾아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먼저 經錄史的인 문제부터 보고, 다음에 經典關係史的인 문제를 대강 살펴보기로 한다.

#### 1) 여러 經錄을 통해본 『本業經』 문제

後漢 이후로 끊임없이 전래 번역된 경전을 비롯한 불교전적들을 정리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한 經錄의 撰集들이 南北朝시대 이래 중국불교계에 계속해서 이루어졌었다. 이들 經錄의 集成은 비단 불교문헌자료학의 분야에서만이 아니고 중국불교문화 전반에 걸쳐서 귀중한 업적의 하나로 평가 될 수가 있다. 그 많은 經錄들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撰輯은 梁의 天監 9년(510)에서 17년(518) 사이에 이루어진 僧祐(445~518)의 『出三藏記集』<sup>17)</sup>이라 할 수 있다.

줄여서 『僧祐錄』이라고도 일컫는 이 『出三藏記集』(이하 『僧祐錄』이라함)의 券2에

17) 『出三藏記集』은 15권인데, I 撰緣起(卷1), II 詮名錄(권2~5), III 總經序(권6~12), IV 述列傳(권 13~15)의 4부로 구성되어 있다. 『大正藏經』 55권 P.1~114 등에 수록되어 있다.

는 『本業經』의 역자로 되어있는 竺佛念<sup>18)</sup>의 譯經들이 열거되어 있어서 『菩薩瓔珞經』 12권(현행은 14권임)도 들어있으나, 이 『菩薩瓔珞本業經』은 보이지 않는다<sup>19)</sup>. 실제 번역이 되었다고해도 經錄에 누락될 경우가 없지는 않겠지만 이 『本業經』은 竺佛念의 譯經편이 아닌 「失譯雜經錄」쪽에 나와있다. 즉 『僧祐錄』 권4의 「新集續撰 失譯雜經錄」 第一에 “菩薩瓔珞本業經 二卷(或云 菩薩瓔珞經)”<sup>20)</sup>이라 있어서, 『菩薩瓔珞經』이라고도 일컫는다는 이 經은 그 번역자를 알 수 없는 경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이 『本業經』이 竺佛念 번역으로 수록되어 있는 經錄은 隋代 沙門 法經 등의 撰集인 『衆經目錄』(法經錄이라고도 함)<sup>21)</sup> 부터이다. 현존의 經錄중에서 『僧祐錄』 다음에 나온 두 번째의 이 『法經錄』은 隋의 開皇 14년(594)에 高祖 文帝의 勅命에 의해 大興善寺 翻經沙門 法經 등 20大德이 작성한 勅撰經錄인데, 7권으로 묶였으므로 『隋七卷錄』이라고도 하며 주관자가 法經이기 때문에 『法經錄』이라 통칭된다. 이 經錄의 첫번째권 「大乘修多羅藏錄」 제1의 ‘衆經一譯 1’에 ‘瓔珞本業經 二卷(前秦竺佛念譯)’<sup>22)</sup>이라 있는데, 이로부터 그 뒤에 이루어진 經錄들에는 모두가 그렇게 따라서 『瓔珞本業經』 2권의 역자를 竺佛念으로 하고 있다.

이상의 經錄을 통하여 梁代의 『出三藏記集』이 撰集되었을 당시(510~518)까지도 『本業經』은 역자를 모르는 失譯經이었는데, 隋의 『法經錄』이 撰集되었을 당시(594)에는 이미 竺佛念의 번역으로 되어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여기

18) 涼州人으로 前秦과 後秦에 걸쳐 譯業에 종사하여 『增一阿含經』, 『中阿含經』의 譯出에도 힘이 컸다. 竺佛念에 대하여, 『梁 高僧傳』 卷1. 竺佛念傳에서는 “安世高와 支謙 이후 竺佛念을 능가하는 이가 없으니 符秦 姚秦 2대에 있어서 譯人의 宗이다.”라고 칭송하였다.

19) 『出三藏記集』 권 2, 新集經論錄 第1(大正藏 55, p.10).

20) 『大正藏』 55, p.21 下.

21) 모두 7권인 이 『衆經目錄』은 經藏〈大乘修多羅藏 第1·小乘修多羅藏 第2〉(이상 1권~4권). 律藏〈大乘毘尼藏錄 第3·小乘毘尼藏錄 第4〉論藏〈大乘毘曇藏錄 第5·小乘毘曇藏錄 第6〉(이상 5권). 賢聖集傳〈佛滅度後撰集錄 第7·佛涅槃後傳記錄 第8·佛滅度後著述錄 第9〉(이상 6권)으로 짜여져 있는데, 『大正藏』 55권, p.115~150에 수록되어 있다.

22) 『大正藏』 55, p.115 中.

에는 두 가지의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 것이니, 하나는 僧祐의 찬집 때 역자가 누락된 『本業經』을 자료로 삼았기 때문에 失譯錄에 넣었으나 그 후 역자가 明記된 『本業經』이 나타났으므로 『法經錄』에서 有譯經으로 다룬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僧祐錄』에 있는 그대로 아예 역자를 모르는 경을 어느 누구가 (또는 法經 등 撰集者들이) 竺佛念이 번역한 『菩薩瓔珞經』(14권)과 경명이 비슷하므로 竺佛念을 그 역자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다. 만약에 『僧祐錄』에 失譯經으로도 『本業經』의 이름이 없고 『法經錄』에 비로소 竺佛念의 번역경으로 나와 있었다면 梁代(僧祐錄 撰集) 이후에 중국에서 이루어진 『本業經』에다가 역자를 竺佛念으로 붙인 것이라 추측할 수도 있겠으나, 『僧祐錄』에 그 經名이 들어가 있으므로 『本業經』이 중국에서 撰成되었다고 하더라도 梁代 보다는 이전의 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겠다.

어쨌든 『法經錄』 이후로는 『本業經』의 역자가 竺佛念으로 의심없이 전해져 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法經錄』보다 3년 뒤인 隋의 開皇 17년(597)에 이루어진 『歷代三寶記』<sup>23)</sup>에는 『法經錄』과 마찬가지로 竺佛念의 번역으로 “『瓔珞本業經』 二卷”<sup>24)</sup>이 나와있는데, 또 劉宋代의 智嚴 번역으로 “『菩薩瓔珞本業經』 二卷”<sup>25)</sup>을 들고 있다. 이 『歷代三寶記』 곧 『長房錄』을 옮겼기 때문인지 唐의 道宣撰인 『大唐內典錄』 卷4<sup>26)</sup>와 明佺等撰인 『大周刊定衆經目錄』 권4<sup>27)</sup> 등에도 竺佛念의 번역 외에 宋 智嚴역의 『菩薩瓔珞本業經』 2권을 들고 있다.

그와 같이 竺佛念번역의 『本業經』이 여러 經錄에서 大乘經 單譯 또는 重譯으로

23) 隋의 大興善寺 翻經學士 費長房이 集錄한 一切經目錄이므로 『長房錄』이라 약칭하며, 모두 15권으로 『大正藏』 49권(P. 22~127)에 수록되어 있다.

24) 『歷代三寶記』 卷8 前後二秦錄 大正藏 49, P. 77 上).

25) 위의 책 卷10, 宋世錄(위와 같음, P. 88 下).

26) 『大正藏』 55, P. 257 下.

27) 위와 같음, P. 392 上. 여기에는 竺佛念과 智嚴 번역의 두 가지 『菩薩瓔珞本業經』 외에 또 하나의 『瓔珞本業經』 2권(宋道嚴譯)을 들고 있는데, 이는 전거를 『長房錄』이라 하고 있으나 잘못된 것인 듯 하다.

분류되어 왔으나, 唐 智昇撰의 『開元釋教錄』<sup>28)</sup>에서 비로소 大乘律藏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곧 이 『開元錄』 12권의 菩薩調伏藏(大乘戒律藏의 뜻임)에는 竺佛念번역의 『菩薩瓔珞本業經』 2권을 들고는 그 아래에 “第一譯, 三譯二闕”<sup>29)</sup>이라 註를 달았다. 이는 바로 『本業經』이 전후 세 번에 걸쳐 번역되었는데 그 3譯(『大周刊定錄』에 나온 3譯을 가리킨듯하다) 중에서 竺佛念역이 첫 번째의 번역이며 나머지 두 가지는 舊本으로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결국 현행본 『本業經』은 의심할 수 없는 竺佛念의 번역으로 확정되어져 왔다고 할 것이다.

## 2) 經說 내용상의 문제들

이 『本業經』의 설법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경전과 같거나 비슷한 부분이 적지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관련있는 經說들을 찾아보면 대충 다음과 같다.

### (1) 華嚴經과의 관계

앞에서 본 『本業經』에서의 42賢聖에 관한 부분은 『華嚴經』(60권본)에 영향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경에서는 42賢聖의 명칭을 原語音으로 하고 있는 점이 다른 經과 다르며 漢譯으로 하고 있어도 等覺位만은 無垢地라 일컫고 있다. 또한 하나 하나의 菩薩位에 대한 心行의 내용에 있어서도 반드시 『華嚴經』의 설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극히 자유로운 설법으로 전개되어 있다.

그리고 이 『本業經』의 하권 大衆受學品 제7의 끝부분에는 『華嚴經』에서와 비슷한 7處 8會의 說法處와 그 설한 바의 법을 들고 있다.<sup>30)</sup> 이 經에 보이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華嚴經』說의 7處 8會를 대비해보면 대강 다음과 같다.

28) 唐의 開元18년(730)에 완성된 20권의 이 『開元釋教錄』은 『大正藏』 55권(P.477~723)에 수록되어 있다.

29) 『大正藏』 55, p.606 上中.

30) 『大正藏』 24, p.1022 上.

佛子, 我本初得道時在此樹間 說十世界海法門 … 復至普光法堂 說十佛國土 … 復至帝釋堂 說十住 … 復至第四天法光堂 說十迴向 … 復至新沍林 說入法界品 … 今復至此第八會座 爲十方無極大衆 敬首菩薩一切衆 說六入明門…

『本業經』

1. 道場樹下成正覺處(說十世界海法門)
2. 普光法堂(說十佛國土)
3. 帝釋堂(說十住)
4. 焰寶堂(說十行)
5. 第四天法光堂(說十迴向)
6. 第六摩尼堂(說十地)
7. 祇洹林(說入法界品)
8. 重遊此(道場樹下) 第八會座(說六入明門)

『華嚴經』

- 寂滅道場會(1~2品)
- 普光明殿會(3~8品)
- 忉利天(須彌頂)會(9~14品)
- 夜摩天會(15~18品)
- 兜率天會(19~21品)
- 他化天會(22~32品)
- 普光明殿會(33品)
- 逝多林(祇園重閣)會(34品)

이상에서 간략하게 이끌어본 두어가지 사례를 통하여 『本業經』의 그 부분들이 『華嚴經』說과 외형상으로 비슷한 점을 볼 수는 있으나, 그 經說의 해당부분 그대로를 옮기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 경을 華嚴結經으로까지 보려했던 日本학자 諦忍의 견해는 아마도 經說형태상의 문제보다는 그 思想性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다.<sup>31)</sup>

그리고 이 『本業經』을 언급하고 있는 국내의 학자 가운데는 이 經의 賢聖과 七會의 所說 및 十首보살 등의 說은 『화엄경』을 계승한 것이며,<sup>32)</sup> 또 諸佛의 殊勝한 佛國土와 42位도 『華嚴經』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라<sup>33)</sup>한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말은 日本의 『望月 佛教大辭典』에 있는 “即 賢聖, 七會의 所說, 十首菩薩等の 說은 모두 華嚴經을 이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sup>34)</sup>라고 한 것등 이른바 辭典類의 글을 옮기거나 뜻을 취하였을뿐 직접 원전을 대조해보지 않은 것

31) 앞의 註15에서 보았음.

32) 앞의 註10에서 나온 沈載烈 책. p.483.

33) 李箕永, 『元曉의 哲學世界』 「元曉의 倫理觀」(民族社, 1989) p.287·297.

34) 『望月 佛教大辭全』 5(世界聖典刊行協會, 昭和33年) p.4663 中.

이 『瓔珞本業經』에 관한 참고로는 오히려 보다 전문성을 지닌 『佛書解說大辭典』 제9권 (東京 大東出版社, 昭和 8年 初版) p. 413~415 쪽이 더 자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본 바와같이 이 경에는 7會가 아니고 분명히 7處 8會이며, 또 전체적으로 『華嚴經』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음에서 보게될(華嚴의 部分經이라 할) 『菩薩本業經』과 이 『瓔珞本業經의』 앞쪽부분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다고 할 것이다.

## (2) 菩薩本業經과 비슷한 점

앞에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지만 이 『佛說菩薩本業經』은 그 제목부터가 『本業經』과 많이 비슷하다. 『菩薩瓔珞本業經』을 약칭하여 『菩薩本業經』 또는 『本業經』이라고도 하므로 그런 경우에는 전혀 『菩薩本業經』 및 그 약칭(『本業經』)과 같은 이름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 두 경은 내용에서도 서로 닮은데가 있다.

첫째, 그 說法處가 같다. 『瓔珞本業經』에서는 “一時佛 重遊於泚沙王國道場樹下成正覺處”<sup>35)</sup>라 하였고 『菩薩本業經』에는 “一時佛 遊於摩竭道場”<sup>36)</sup>이라 하여 문장 상으로는 전혀 다른 장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같은 곳이다. 곧 泚沙王國은 빈 비사라왕의 나라인 摩竭陀(摩揭提·Magadha)국이니 그 나라에 있는 道場樹(곧菩提樹) 아래의 부처님이 正覺을 이루신 곳을 줄여서 말한 것이 “摩竭”(陀國)의 성불하신 道場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어진 글도 『菩薩本業經』에서는 “初始得佛光影甚明 自然蓮華寶師子座 古昔諸佛所坐皆爾...”로 이어지는 글이 『瓔珞本業經』에는 “復坐如故 昔始得佛光影甚明 今復四十二光... 自然百千寶蓮華師子之座 古昔諸佛所坐皆爾...”로 되어있는데, 같은 뜻이면서도 문장을 확대하고 수식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두 번째는, 그 大會의 無盡聽法菩薩중의 대표격인 열 분의 首字 이름을 가진 보살<sup>37)</sup>과 그 가운데의 上首보살이 敬首보살이라는 점이 같다는 사실이다. 『瓔珞本業

35) 『瓔珞本業經』 卷上 集衆品 第1(大正藏 24, p.1010 中).

첫머리 시작글(如是我聞에 이어있음)

36) 吳 支謙譯, 『佛說菩薩本業經』(大正藏 10, p.446 中) 첫머리(聞如是 다음) 글.

37) 두 경에서 보인 이름과 그 순서도 똑 같다. 敬首·覺首·寶首·慧首·德首·目首·名首·法首·智首·賢首. 그러나 일곱번째의 名首보살은 『菩薩本業經』에서는 明首로 되어 있다.



經』에서는 敬首보살이 끝까지 유일하게 請法對告衆으로 등장하고 있는 점이 『菩薩本業經』 쪽 보다는 격상 강조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세 번째에는, ‘當願衆生’을 후렴처럼 붙이고 있는 계송이 두 경에 모두 있다는 점이다. 『瓔珞本業經』에는 ‘當願衆生’이 스물 네 번 나오며 계송문 자체에서도 24願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菩薩本業經』에는 계송글 전체의 분량도 앞의 경에 비해 3배가 넘지만 ‘當願衆生’의 수도 5배가 넘는 135번이나 된다. ‘當願衆生’만 같을 뿐이지 계송의 글귀들도 같지 않고 그 분량도 차이가 많으므로 그대로를 옮긴 것은 아니며, 24願에 맞추어 요긴하게 줄이고 간추려서 『菩薩本業經』의 것을 『瓔珞本業經』에 옮겨온 듯 하다.

네 번째는, 『瓔珞本業經』의 앞부분에 나온 十方國土 佛刹과 佛菩薩의 명호 및 28天등이 『菩薩本業經』과 같은 점이다.

그와 같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은 부분은 『瓔珞本業經』의 앞쪽 곧 「集衆品」 제1과 「賢聖名字品」 제2의 계송까지에 해당된다. 『菩薩本業經』 자체가 짤막한 單卷經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瓔珞本業經』에서는 전체 8品중에서 앞쪽의 1品과 2품의 일부분을 이 경으로부터 옮겨와 침삭을 더하고 재구성을 한듯한 면을 보이고 있다.

### (3) 梵網經과의 관계

이 『本業經』권상 「賢聖名字品」 제2에는 ① 不殺, ② 不盜, ③ 不姪, ④ 不妄語, ⑤ 不說出家在家菩薩罪過, ⑥ 不沽酒, ⑦ 不自讚毀他, ⑧ 不慳, ⑨ 不瞋, ⑩ 不謗三寶의 ‘十不可悔戒’를 들고는 “若破十戒 不可悔過 入波羅夷”<sup>38)</sup>라고 하였는데, 이는 『梵網經』에서 설하고 있는 ‘十重波羅提木叉’ 곧 10重禁戒의 설법<sup>39)</sup>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 『本業經』의 十不可悔戒(十無盡戒)에 관한 부분이 『梵網經』說의 十重波羅提木叉에 비해 매우 간략하게 설해져 있으나, 그 대목에서 “이

38) 『大正藏』 24, p.1012 中.

39) 鳩摩羅什譯, 『梵網經』 「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 第十」 권하(大正藏 24, p.1004 中~1005 上).

10戒의 법문에 말미암지 않고는 42賢聖의 果德을 얻을 수가 없음(不由此十戒法門得賢聖果者 無有是處)"을 강조하였으며, 또 이 經의 뒷쪽부분에서도 이 10戒 十波羅夷不可悔法の 授受를 당부하고 있다.<sup>40)</sup> 그만큼 十重戒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本業經』에서는 十波羅夷 곧 十重戒를 攝律儀戒(攝律儀戒 所謂十波羅夷)<sup>41)</sup>로 단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와같이 十重禁戒를 三聚淨戒에다 결부시킨 것은 이 경에서의 단정이 처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또 『本業經』에 보이는 “불자여, 처음 수행하는 보살이나 信男 信女 가운데에 六根의 불구나 황문·음남·음녀·종이나 변화한 사람도 계를 받아 지닐 수가 있다. 모두가 바른 길로 향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sup>42)</sup>와 “육도에 윤회하는 중생이 계를 받아지는데, 말을 알아듣기만 해도 계를 얻어 잃지 않는다.”<sup>43)</sup>라고 설한 대목은 『梵網經』의 “불자여 잘 들을지어다. 가령 부처님의 계를 받는 이는 국왕·왕자·백관·재상·비구·비구니·18범천·6육계천·서민·황문·음남·음녀·노비·8부귀신·금강신·축생 내지는 변화인이라도, 단지 법사의 말을 이해하게 된다면 계를 다 받아지니게 될 것이니 모두 제일 청정한 이라 일컫는다.”<sup>44)</sup>라고 한 부분과 같은 뜻의 말임을 알 수가 있다.

또 이 경에 “佛滅度後千里內無法師之時 應在諸佛菩薩形象前 胡跪合掌自誓受戒”<sup>45)</sup>의 부분은 『梵網經』의 스물 세 번째 輕戒 가운데 “佛滅度後 欲以好心受菩薩戒時 於佛菩薩形象前自誓受戒”<sup>46)</sup>와 많이 닮아 있으며, 또 이 경의 “不受是菩薩戒

40) 『本業經』 권하, 集散品 제8(大正藏 24, p.1022 下).

佛子 次第爲授四歸法 … 然後爲授十戒 不殺 …… 不謗三寶 是波羅夷不可悔法 佛子 受十戒已 ….

41) 『本業經』 권하, 大衆受學品 7(大正藏 24, p.1020 下).

42) 위와 같음 (위와 같은 페이지).

佛子 始行菩薩 若信男若信女中 諸根不具黃門姪男 姪女奴婢變化人 受得戒 皆有心向故.

43) 위와 같음(위와 같음, p.1021 中). 六道衆生受得戒 但解語得戒不失.

44) 『梵網經』 권하(大正藏 24, p.1004 中).

佛子諦聽 若受佛戒者 國王王子百官宰相 比丘比丘尼 十八梵天六欲天子 庶民黃門姪男姪女奴婢 八部鬼神金剛神畜生乃至變化人 但解法師語 盡受得戒 皆名第一清淨者.

45) 『本業經』 下, 大衆受學品(같은 大正藏 p.1020 下).

46) 위의 『梵網經』 (위와 같음, p.1006 下)

者 不名有情識者 畜生無異 不名爲人 常離三寶海 …”<sup>47)</sup>의 구절은 『梵網經』의 42戒에 있는 “是惡人輩不受佛戒 名爲畜生 生生不見三寶 如木石無心 …”<sup>48)</sup> 글귀와 많이 닮아있다. 大乘戒에 있어서 물론 다른 점도 없지않으나, 『梵網經』의 설을 옮겨 온듯한 부분이 적지않게 눈에 띄인다.

#### (4) 仁王般若經과의 관련

『本業經』에는 특히 『仁王般若經』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과 같은 부분을 더러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보이는 것은 果報土와 淨土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經의 「賢聖學觀品」에는 “불자여, 땅(土)이란 일체 현성이 사는 바의 처소를 이른다. 그러므로 일체중생과 현성(42賢聖)은 각기 스스로 果報의 땅에 산다. … 일체 중생으로부터 無垢地(等覺) 보살에 이르기까지는 다 정토가 아니니 果報에 머물기 때문이다. 오직 부처님만이 中道第一의 法性土에 머문다. 그러므로 내(釋尊)가 옛날 普光법당의 會上에서 널리 일체중생을 위해 정토의 법문을 설하였느니라.(佛子 土名一切賢聖所居之處 是故一切衆生賢聖 各自居果報之土 …… 一切衆生乃至無垢地 盡非淨土住果報故 唯佛居中道第一法性之土 是故我昔於普光堂上 廣爲一切衆生說淨土之門)<sup>49)</sup>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仁王般若經』의 「菩薩教化品」에 있는 다음의 율음글(偈)

三賢十聖住果報 唯佛一人居淨土  
一切衆生暫住報 登金剛原居淨土<sup>50)</sup>  
삼현과 십성은 果報土에 머물며,  
오직 부처님 한 분만이 정토에 사신다.  
일체의 중생은 報土에 잠시 머물고,

47) 위의 『本業經』(위와 같음, p.1021 中).

48) 『梵網經』(위와 같음, p.1009 上).

49) 『本業經』上, 賢聖學觀品 3 (大正藏 위와 같음, p.1015 下~1016 上).

50) 鳩摩羅什譯, 『佛說仁王般若波羅蜜經』 권상, 菩薩教化品(大正藏 8, p.828 上).

금강의 언덕에 올라야만 정도에 살게 된다,

를 줄글(長行)로 자세히 풀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같은 뜻이라 하겠다. 『仁王經』의 이 율음글 부분은 元曉의 『無量壽經宗要』<sup>51)</sup>에서도 인용하고 있다.

또 이 경에 나오는 六種性(習種性·性種性·道種性·聖種性·等覺性·妙覺性)과 六忍(信忍·法忍·修忍·正忍·無垢忍·一切智忍)<sup>52)</sup>은, 『仁王經』에 보이고 있는 五忍(伏忍·信忍·順忍·無生忍·寂滅忍) 및 세 가지 種姓(習種性·性種性·道種性)<sup>53)</sup>에 관련이 있는 듯 하다. 이 밖에도 각종 輪王과 三諦說 등은 두 經이 서로 비슷한 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5) 그 밖의 문제

지금까지 본 경전들 말고도 이 『本業經』은 여러 경전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菩薩地持經』·『優婆塞戒經』·『勝鬘經』·『大智度論』등에서 관계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으나, 이 論考는 『本業經』 자체의 연구가 아니고 『本業經疏』에 관한 고찰이 주과제이므로 산만과 번잡을 피하여 이 정도에서 생략하기로 한다.

이 經은 이제 대충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經錄史的인 면에서나 또는 漢譯 諸經典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몇가지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그 첫 번째는 梁代의 『僧祐錄』에서 失譯經이었던 『本業經』이 그 뒤 隋代의 『法經錄』을 비롯한 이후의 모든 經錄들에는 後秦 때의 竺佛念이 번역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譯者의 이름이 뒷날에 와서 누군가에 의해 붙여졌으리라는 것이다. 그 다음은 『本業經』의 내용이 『華嚴經』등 여러 大乘經論들의 教義와 類似한 부분들이 많으므로 그 경전들에서 간추려 뽑아 옮기고 또는 뜻을 살려 풀어서 하나의 經으로 집성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점이다.

51) 『韓國佛教全書』 1책, p.554 中.

52) 앞의 註49와 같음 (같은 大正藏, p.1012 中).

53) 앞 註50과 같음 (같은 大正藏, p.826 中下).

그리고 또 중국 六朝 당시 불교사상계에 문제가 되어있던 二諦와 頓漸二覺의 영향으로 이 『本業經』에서 三諦 및 頓覺의 설을 다루었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할 것이라 본다. 어쨌든 그러한 문제들을 안고있기 때문에 근래 學界에서는 이 『本業經』이 梁代 이전에 중국에서 여러 經論의 要義를 간추려 뽑아 集成시킨 僞經으로 보기도 하며<sup>54)</sup>, 아예 中國에서 成立된 經으로 단정하는 학자도 있다.<sup>55)</sup>

## II. 經疏의 개요와 그 大意

### 1. 疏釋의 짜임과 現存本

오늘날 볼 수 있는 옛 章疏目錄에는 元曉의 이 『本業經疏』를 각각 달리 전하고 있다. 高麗 義天(1055~1101)의 『新編諸宗教藏總錄』 권2에는 “瓔珞本業經疏 三卷 元曉述”<sup>56)</sup>이라 있으며, 日本僧 永超의 81세 때(1094) 집록인 『東域傳燈目錄』 弘經錄 1 衆經部에서는 “本業瓔珞經疏 二卷 元曉”<sup>57)</sup>라 하였다.

이에 의하면 『教藏總錄』에서는 『瓔珞本業經疏』 3권이라 하였고, 『傳燈目錄』에는 『本業瓔珞經疏』 2권이라 하여 각기 그 書名과 권 수를 다르게 적고 있다. 책 이름의 경우는 瓔珞과 本業의 앞뒤가 서로 바뀌어 기록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권 수는 분명히 3권과 2권이 서로 다르다. 『總錄』에는 「海東有本見行錄」이라 副題가 붙어있어서 당시 이 疏의 現행본이 3권으로 되어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日本에 전해진 것은 2권본이었거나 아니면 3이 2로 잘못 적혔는지 모를 일이라

54) 佐藤哲英, 「瓔珞經の成立に關する研究」(龍谷大學論叢, 284·285)

望月信亨, 『淨土教の起源及發達』 1930 등.

55) 大野法道, 『大乘戒經の研究』(東京 理想社, 1954) p.159·165.

56) 『大正藏』 55, p.1173 中. 및 『韓佛全書』 4, p.690 上.

57) 위와 같은 『大正藏』, p. 1152 中.

하겠으나 현존 하권본을 보면 2권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같이 보인다.

日本の『佛書解説大事辭典』에는 이 元曉의 疏를 『菩薩瓔珞本業經』의 유일한 註釋書라고 하였으나<sup>58)</sup>, 이미 拙著 解題<sup>59)</sup>에서 본바가 있지만 이 元曉疏는 古目錄에서도 유일한 註釋書로 남아있지 않고 또 현존본으로서도 唯一本은 아니다. 물론 義天의 『總錄』에서는 『本業經』의 주석이 元曉의 疏 하나밖에 나와있지 않지만, 日本의 『永超錄』에는 이 元曉의 疏(『本業瓔珞經疏』라 하였음) 외에 義寂의 疏 2권을 더 보이고 있다.<sup>60)</sup> 그리고 근래에 燉煌에서 출토된 古書 가운데 『本業經』의 상권을 주석한 앞머리쪽과 끄트머리쪽이 떨어져 나간 『本業瓔珞經疏』 결락본 한 권이 있어서 현재 大英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sup>61)</sup>

이른 바 燉煌本 『本業經疏』는 앞과 끝이 떨어진간 상권의 결락본이기 때문에 撰者는 물론이고 권 수도 알 수가 없으며, 中國의 撰述인지 新羅의 著書인지 또는 어느 때 撰의 글인지도 전혀 알기가 어렵다. 目錄집에 中國의 撰述서로 『本業經疏』가 보이지 않으므로 中國의 옛저서가 아니라면 目錄집에서 보게되는 단 두 사람의 著書 곧 元曉와 義寂의 『本業瓔珞經疏』중의 하나일 것이다. 元曉의 현존 낙길본과 대조해 보아도 서로 견줄만한 부분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비슷한 점을 찾

58) 『佛書解説大事辭典』 11권(大東出版社, 昭和42年 改訂再版) p.160 上.

59) 拙著, 『韓國佛教 古典名著의 世界』(民族社, 1994) p.62~63.

이 문제에 관해 여기에 덧붙여 訂正解明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拙稿 「本業經疏를 통해본 元曉의 信觀」(『元曉學研究』 2집, 1997) p.142·143의 다음 くだり이다.

(p.142) “이 經을 註釋한 유일한 (中國 日本 등 諸國포함) 현존 著書가 元曉聖師의 이 『本業經疏』이다.”

(p.143) “『瓔珞本業經』이 中國에서 번역된 이래로 유일한 疏釋이며, 또한 하나뿐인 현존 『本業經疏』인 것이다.”

이상의 글은 앞서 1994년에 간행된 이 拙著(韓國佛教 古典名著의 世界)의 내용과 전혀 상반되는 것인데, 이는 인쇄과정에서 교정의 착오로 생긴 오류이므로 다음과 같이 바로 잡는다.

(p.142) 이 經을 註釋한 章疏중에 撰者를 알 수 있는 유일한 …….

(p.143) …번역된 이래로 유일한 현존 疏釋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著자가 분명한 하나 뿐인…

60) 永超集, 『東域傳燈目錄』 弘經錄 1, 衆經部 (大正藏 55, p. 1152 下).

61) 『大正藏』 85, p.745 上~759 中에 수록.

기가 어려우며, 義寂의 疏는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고 그 내용을 짐작할만한 자료나 방증 또한 언어볼 수 없는 현 시점에서는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뒷날의 연구를 기다릴 밖에는 도리가 없다고 하겠다.

大覺國師 義天이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구해온 자료를 국내외의 현존 章疏들과 총망라해서 간행한 教藏 속에 3권으로 들어있었던 元曉의 『瓔珞本業經疏』는 분명히 당시로서는 유일한 현행본이었던 것이다. 그 이후 국내에서 자취를 감춘 이 疏는 언제 어떤 경로로 日本에 건너갔는지는 모르나 하권만이 筆寫本으로 전해지다가 京都 藏經書院에서 『日本續藏經』을 간행할 때(1905~1912) 거기에 수록되어 활자판으로 나오게 되었다.<sup>62)</sup> 그 밖에 상권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元曉의 「本業經序」가 『東文選』<sup>63)</sup>에 수록되어 있어서 국내에 전해져 온 셈이다.

序 곧 서문이라고 하면 오늘날 책 머리에 붙이고 있는 말하자면 그 저술 본문 밖의 글 곧 머릿글(序文)이나 머리말(卷頭言·自序) 등으로 알기가 쉽지만 이 「本業經疏序」는 그러한 일반적인 서문이 아니다. 元曉의 현존 저술을 보면 거의 모두가 (宗要和 疏釋의 경우) 하나의 경전을 해석할 때에는 반드시 科門을 나누어 그 첫 번째 문에서 꼭 ‘述大意’라 하여 大意를 서술하고 있다. 이 『本業經』의 序를 담고 있는 『東文選』에 함께 수록된 元曉의 다른 序 중에서 본문 전체가 현존하는 宗要和 疏(論) 가운데 각각 하나씩을 예로 들어보면, “將欲解釋此經 略開六門分別 初述大意 次辨經宗 三明詮用 四釋題名 五顯教攝 六消文義. 初述大意者 …”<sup>64)</sup> “此經 略開四門分別 初述大意 次辨經宗 三釋題名 四消文義. 第一述大意者 …”<sup>65)</sup> 등이다.

『東文選』에는 이 『本業經疏』 말고도 元曉의 序가 다섯 편(法華經宗要序·涅槃經宗要序·解深密經疏序·華嚴經疏序·金剛三昧經論序)이 더 들어있는데, 이제 두 가지를 예로 들어보았지만 『東文選』에서 序라고 일컫는 이 대목의 글은 모두가 실제

62) 『大日本續藏經』 제1編 제61套 제3冊(新版 第61冊, p.495).

63) 徐居正等撰集, 『東文選』 권83, 序.

64) 『法華宗要』(大正藏 34, p.870 下).

65) 『金剛三昧經論』 권상(韓國佛敎全書 1, p.604 中).

본문의 大意門에 해당되는 글이다. 그러므로 『本業經疏序』도 실은 일반적인 통상의 서문이 아니고, 『本業經』을 해석하면서 몇 문으로 분별한 가운데의 맨 첫 번째 문인 ‘述大意’라고 할 수가 있다. 元曉 저술의 序格인 이 大意門을 述大意 또는 標宗體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을 序라고 일컬었던 사례는 『東文選』 외에도 일찍이 宋초 吳越에서 활동했던 永明 延壽(904~975)禪師가 元曉의 『起信論疏』 첫째 문인 ‘第一標宗體’를 “曉公 起信論疏序云”<sup>66)</sup>이라 한 글에서도 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元曉의 『本業經疏』는 현재 이른 바 序라는 일컬음으로 전해져 왔던 ‘大意門’이 그 상권의 일부이므로, 상권의 첫 번째 과문인 ‘大意’와 하권의 모두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本業經』 그 자체가 상 하 두 권이기 때문에 이 註疏의 상 하권도 각각 원 경전의 상권과 하권을 풀이한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本業經疏』의 하권에는 그 본 경전의 하권만이 그대로 다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보았지만 『本業經』은 모두 8품으로 되어있으며 제1품에서 3품까지가 상권이고, 제4품에서 8품까지가 하권이다. 그런데 현존 『本業經疏』 하권은 경전 상권의 세 번째 품인 「賢聖學觀品」의 후반부 안쪽인 十地の十觀心所觀法 중 아홉 번째가 되는 ‘入法際智’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다. 그래서 경전 하권의 「釋義品」 제4·「佛母品」 제5·「因果品」 제6·「大衆受學品」 제7·「集散品」 제8의 차례로 풀이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현존 하권의 구성으로 보아서는 아무래도 석연치않은 점이 있다고 하겠다. 日本의 목록집에 『本業經疏』가 2권으로 되어있어서 일본에 전해져있는 현존본 하권을 통해 상권이 결락된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는데, 현존 하권의 부피나 수록 품 수를 미루어서도 원래(日本에서는) 2권이었던듯하나 사실이 그렇더라도 이 하권의 시작이 문제가 된다. 전체 8품을 두 권이 되도록 반반으로 4품씩 나눈

66) 延壽集, 『宗鏡錄』 권22(大正藏 48, p.535 中).

『起信論疏』에서 「標宗體」라고한 이 부분을 元曉의 같은 저서 『起信論別記』에서는 ‘述論大意’라 하였다.



다면 하권이 제5품부터 시작되겠지만 『本業經』 자체가 하권이 4품(釋義品)부터 시작되어 있으므로 이 疏도 釋義品에 하권이 시작되어있어야 옳을 것인데, 본 경전 상권의 「賢聖學觀品」 제3이 疏의 하권에 들어있으면서 그것도 후반부의 어중간한 부분부터 시작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教藏總錄』에 있는 그대로 이 疏는 3권이었는데 일본에 전해지면서 2권으로 묶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으나, 그렇다고해도 왜 하필이면 본 경전의 상권 후반부에 하나의 분단이 끝나지도 않은 부분에서 分권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다. 전체의 분량을 무조건 반반씩 2권으로 나눈 것이라고 해도 또한 이치에 합당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앞에서 본 두 목록집에 『瓔珞本業經疏』 또는 『本業瓔珞經疏』로 書名이 되어있었으나 실제 전해져온 현행본은 『本業經疏』였을 것으로 볼 수가 있으니 현존 하권의 『本業經疏』만이 아니고 『東文選』 수록의 『本業經疏序』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 2. 本業經疏의 大意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元曉는 經論을 해석할 때 반드시 몇 부문으로 나누고는 가장 앞부분에 ‘大意를 서술함’(또는 宗體를 標함)이라고 하였으므로, 그 첫 번째의 부분을 大意門이라고 할 수가 있다. 序라는 이름으로 전해져있는 『本業經疏』의 ‘述大意’ 또는 ‘標宗體’에 해당되는 이 글은 모두 430자 안팎의 짤막한 글이다.

『東文選』에서처럼 그 부분만을 떼어서 서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本疏의 앞자리에 놓여있으면 엄연히 ‘大意門’이라 일컫는다. 경우에 따라 ‘標宗體’라고 한 예도 있으나 現存文에 있어서는 모두가 ‘述大意’로 시작되어 있는데 오직 『起信論疏』 한 군데에서만 ‘標宗體’라고 하였다. 이는 아마도 같은 論釋이면서 먼저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그의 『起信論別記』<sup>67)</sup>에서 ‘大意’라 하였기 때문에 거의 같은 내

67) 『起信論別記』 앞머리에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將釋此論 略有二門, 一者 述論大意, 二即依文消息, 言大意者 然夫佛道之道也, 蕭焉空寂...

용(동일한 『起信論』을 註釋하는 앞 글)이므로 똑 같은 제목을 피하여 뜻을 살려서 '標宗體'<sup>68)</sup>라고 한 듯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東文選』에서 序(本業經序)라고 전해져 있으나 그 본래 저술상의 제목을 취하여(물론 '標宗體'는 일반적이지 못하므로) '大意門'이라 일컫기로 하였다. 이 『本業經疏』의 '大意'를 살펴봄에 있어서 편의상 첫째 本體論, 둘째 說經因由 實際論, 셋째 教義宗聚論의 세 분단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 1) 菩薩本業의 本體論

다음과 같이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 (1) 성격과 가치를 드러낸 대전제

본디 二諦와 中道는 곧 건너갈 길이 없는 나루이며, 현묘하고 현묘한 법문은 더욱 들어갈 문이 없는 진리(이치)이다. (原夫二諦中道 乃無可道之津.<sup>69)</sup> 重玄法門 逾無可門之理.)

라고 시작되어있는 이 글귀는, 『本業經疏』 전체 서술문의 첫마디이면서 아울러 大意門의 本體論 맨 앞의 대전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대목은 겨우 두 마디에 불과한 짧은 글이지만 菩薩本業의 본질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는 깃발(旗幟)같은 위치의 글이므로, 종래 이 대목을 풀이했던 몇 학자의 글을 참고로 옮겨 보기로 한다. (연대 순)

68) 『起信論疏』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되어 있다.

將說此論 略有三門, 初標宗體, 次釋題名 其三者依文顯義. 第一 標宗體者. 然夫大乘之爲體也, 蕭焉空寂… (이하 別記와 많이 같음)

69) 앞에 나온 李箕永 論文(註7과 같음, p. 100~101)과 앞의 註에 나온 『國譯 元曉聖師全書』 p. 415에는 이 津을 律로 하고 있는 데, 인쇄상의 오자가 아닌듯 설명글과 번역글에서도 모두 각기 律로 쓰고 있다.

① 『국역 동문선』의 번역

대개 이체(二諦) 중도(中道)는 곧 건널만한 나루(津)가 없고, 중현(重玄) 법문(法門)은 더욱 들어갈 만한 문이 없다.<sup>70)</sup>

② 沈載烈 풀이

대저 상대경계 및 절대경계의 두 가지 진리(二諦)와 상대와 절대를 원융통일한 중도의 진리(中諦)에는 본래 진리의 바다로 나아가는 도의 나루터가 없고, 거듭 玄妙하고 아주 그윽한 법의 문은 더구나 들고 나고 하는 문이 있다고 할 이치가 없다.<sup>71)</sup>

③ 金尙祚 번역

무릇 二諦와 中道の 경지에서 살펴보면, 곧 道라고 할만한 律<sup>72)</sup>이 없고, 거듭 玄妙(깊고 깊은 미묘한 것)한 法門에서 살펴보다도 門이라고 할만한 理(이치)가 없다.<sup>73)</sup>

위의 세 가지 번역에서 첫 번째는 너무 직역이라 할 수 있고, 두 번째 것은 차라리 풀이글로 끊어서 썼더라면 이해하기가 좋았을텐데 설명문체로 번역을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요점 파악이 쉽지않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경우도 풀이를 곁들이고는 있으나 뜻이 잘 통하지 않으므로 깔끔한 번역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들 세 번역의 공통적인 점은 “乃無可道之津”과 “逾無可門之理”를 “곧 건널만한 나루가 없고, … 더욱 들어갈만한 문이 없다.”고 한 첫 번째(국역 동문선)의 번역과 비슷한 번역형식 즉 “…진리의 바다로 나아가 나루터가 없고, … 더구나 들고 나고 하는 문이 있다고 할 이치가 없다.”(두번째 번역) “곧 道라고 할만한 律이 없고, … 門이라고 할만한 理(이치)가 없다.”(세번째 번역) 인데, 다만 첫 번째

70) 신호열 번역, 『국역 동문선』 VII, 「동문선」 제83권(민족문화추진회, 고전국역총서 31, 1969) p.91.

71) 앞의 註10과 같은 책, p. 484.

72) 앞의 註67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번역글 앞쪽에 옮겨놓은 원문에도 津자가 아닌 律로 되어있다.

73) 앞의 註11과 같은 책, p. 415.

번역에서는 理(이치)가 빠져있는 것이 다른 두 가지 번역과 다를 뿐이다.

그리고 李箕永 박사는 이 大意門(序)의 원문(原夫二諦中道에서 斯爲本業之大意也까지)을 옮겨놓은 다음에, “즉 元曉가 생각하는 菩薩戒의 本質은 無可道之律이요 無可門之理이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이며 상대적인 어떤 固定不變의 律이나 理가 아니다. 그것은 無可門之理라고 했듯이 어떤 特定한 教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sup>74)</sup>라고 하였는데, 물론 그는 元曉의 菩薩戒觀에 초점을 맞추려했기 때문이겠지만 이른바 「本業經疏序」를 옮겨놓고 ‘元曉가 생각하는 菩薩戒의 本質’을 말하면서 이 ‘無可道之律(그는 律이라 했다)’과 ‘無可門之理’만을 풀이 없이 원문 그대로 이끌어다가 단정하고는 다시 “형식적이며 상대적인 어떤 고정불변의 律이나 理가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그 또한 이 大意門(序) 첫 글귀의 대전제를 중요하게 보기는 하였으나 한마디의 풀이도 없이 원문의 끝부분을 그대로 옮겨와서 元曉의 菩薩戒觀으로 단정하고 또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그것은 無可門之理라고 했듯이 어떤 특정한 教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하여, 그가 단정하고 강조한 元曉 菩薩戒觀의 본질이 어떤 특정한 教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려 한 듯이 보인다.

어쨌든 『本業經疏』 서술의 緒頭이면서 아울러 첫 번째 문(大意門)의 첫마디이며 菩薩本業의 본체론적 대전제라고 할 수 있는 이 글귀에 대한 기왕의 해석은 그리 정확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하겠다. 이 두 글귀(二諦中道 … 重玄法門 …)는 『本業經』의 佛說本體 곧 菩薩本業의 본질을 성격과 가치의 양면에서 극히 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이 경전의 중요한 教說인 二諦와 中道를 ‘건널갈 길이 없는 나무’(乃無可道之津)라고 하여 그 특성(性格)을 드러내었으며, 또 경전에 담긴 현묘하고 현묘한(重玄의) 법문을 ‘들어갈 문이 없는 진리’(逾無可門之理)라고 표현하여 그 가치(眞價)를 드러나게 하였었다.

만약에 기왕의 번역들처럼 “… 건널만한 나무가 없고, … 들어갈만한 문이 없다.” “… 나무터가 없고, … 문이 있다고 할 이치가 없다.” “… 道라고 할만한 律

74) 앞의 註7과 같은 책, p. 101.

(津)이 없고, … 門이라고 할만한 理(이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본디의 뜻에도 맞지 않을뿐만 아니고 이 經說本體의 성격과 가치를 단적으로 드러낸 대전제로도 격이 맞지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글귀에 이어서 대전제를 부연하고 설명함으로써 본체론을 성립되게 하고있는 다음 글과의 자연스런 연결에도 무리가 있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元曉는 二諦와 中道를 건너갈 길이 없는 나라라 하였고, 현묘하고 현묘한 법문을 들어갈 문이 없는 진리(이치 또는 道理)라고 전제하여 그 성격과 가치를 천명하였다고 할 수가 있다.

(2) 본질의 바른 파악과 체득

元曉는 그와 같이 내세운 본질적 大前提를 다음과 같이 부연하여 본체론을 전개시켜 매듭을 짓고 있다.

건너갈 길이 없으므로(無可道故)<sup>75)</sup> 마음을 닦아갈 수가 없으며, 들어갈 문이 없으므로(無可門故)<sup>76)</sup> 행하여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나 큰 바다에는 나무가 없어도 배를 띄워 노를 저어 건너갈 수가 있으며, 허공에는 사다리가 없으나 날개를 퍼덕여 높이 날 수가 있다. 그래서 길이 없는 길(道)은 곧 길(道)이 아님이 없으며, 문이 없는 문은 곧 문 아님이 없음을 알 것이다.

문 아님이 없는 까닭으로 일일이 모두 현묘한데로 들어가는 문이 되며, 길(道) 아님이 없는 까닭으로 곳곳이 모두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路)이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이 매우 평탄하나 능히 가는 이가 없으며, 현묘한데(眞理)로 들어가는 문이 크게 활짝 열려 있으나 능히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 진실로 세간의 學者(공부하는 이)가

75) 앞에 든 3講에서는 각각, ‘갈만한 길이 없는 고로’ (동문선), ‘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심재열), ‘도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김상조)라고 번역하였으나, 이 “無可道故”는 앞 본문의 “乃無可道之津”에 나온 無可道이기 때문에 ‘건너갈 길이 없으므로’가 옳다고 할 것이다.

76) 이 또한 ‘들어갈 문이라 할만한 것이 없는 고로’ (동문선), ‘문이 없으므로’ (심재열), ‘門이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김상조)라고 하였으나,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無可門之理”의 “無可門”이므로 ‘들어갈 문이 없으므로’라고 해야 할 것이다.

有에 집착하고 無에 막혔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이는 本體界의 바른 파악과 체득의 중요함을 들어보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 2) 說經 因由 · 實際論

이 대목 또한 앞쪽과 뒷부분의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 (1) 이 경전을 설하게된 까닭

元曉는 如來께서 이 『本業經』을 설하시게된 까닭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有의 相에 집착하는 자는 有待(食物과 의복 등의 資緣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人身을 가리킴)의 위태로운 몸을 가지고 무한한 法相을 끊임없이 추구하여 그침이 없으며, 명리만을 좇아서 길이 생사의 흐름에 빠진다. 空無에 막힌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어둔 마음을 믿고 지혜를 나게하는 佛敎의 법문을 등지며, 혼미함에 취하여 깨어나지 못하고 머리를 흔들며 배우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여래께서 無緣의 大悲로 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하여금 佛道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이 두 권의 『瓔珞經』법문을 설하신 것이다.

라고, 이 경전을 설하시게된 연유를 밝혔다. 즉 부처님이 『瓔珞本業經』을 설하게된 까닭은 두 가지 부류의 중생 곧 着有相者(유상에 집착하는이)와 滯空無者(공무에 막힌사람)로 하여금 집착과 막힘을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세계(佛道)에는 有相의 집착도 空無의 막힘도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無緣의 大悲(무조건적 자비심)으로 그들을 이끌어들이고자(引入하려) 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2) 濟度の 實際

그리하여 如來가 無緣大悲로 중생을 제도하는 실체를 설법한 것이 이 經의 내용임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길고도 긴 생사의 흐름에 윤회하는 중생으로 하여금 그 흐름(윤회)을 그치게하여 八不中道の 평탄한 길에 나아가 七<sup>77)</sup>慢의 치솟는 마음을 꺾게 하며, 혼미함에 빠져있는 (惛醉한) 중생이 깨어나 六入(十住·十行·十迴向·十地·無垢地·妙覺地)의 42 賢聖의 밝은 법문을 배워서 五住<sup>78)</sup>(五住地惑)의 캄캄한 마구니 진영(闇障)을 항복받게 하고자 함이다.

이에 복덕과 지혜의 두 노(楫)를 (船體에) 갖추어 매어<sup>79)</sup> 佛法의 큰 바다를 능히 건너고, 止와 觀의 두 날개를 나란히 움직여서 法性的 허공을 높이 날도록 하였으니, 이것이 『本業經』의 큰 뜻이 된다.

라고 하여, 두 부류의 중생을 구제하는 佛說의 실체를 설파하였다.

이 항목에서 '긴 생사의 흐름에 윤회하는 중생'(長流者)은 앞의 '著有相者'를 가리킨 것이며, '혼미함에 빠져있는 중생'(惛醉者)은 '滯空無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즉 如來께서 명리에 쫓아 긴 생사의 흐름에 윤회(逐名而長流)하는 有相에 집착한 사람으로 하여금 八不의 中道를 걸어서 七慢의 高心을 꺾고 생사의 긴 윤회를 그치게하며, 혼미함에 취하여 깨어나지 못하고 머리를 흔들어 배우지 아니(惛醉而無醒 搖首而不學)하는 空無에 막힌 자로 하여금은 六入의 明門을 배워 五住

77) 『韓國佛教全書』(1책, p. 498 上)에는 六慢으로 하고 있으나 六은 七의 오자이다.

78) 앞 註68의 『동문선』번역 p. 92에는 이 五住를 五性이라 하여 다섯 가지 性情이라는 註까지 달고 있다. 同書 原文에는 五住가 분명하므로 아마 역자가 잠시 착각한 듯 하다.

79) “於是備架福智兩楫”을 沈載烈 번역 (앞에 나온 책, p. 487)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복과 지혜의 두 노끈으로 시렁을 갖추어 엮어서”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備架’는 ‘設(完)備架構’의 줄인 말로 볼 수 있어서 ‘시설하여 갖추다.’ 또한 ‘완벽하게 엮어 매어 갖추다.’는 뜻이 되므로 곧 ‘복덕과 지혜의 두 노(福智兩楫)를 갖추어 설치하여(엮어 매어)’라고 해야 할 것이라 본다.

의 闇障을 항복받아 大悟케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복덕과 지혜를 갖추어 佛法의 大海를 능히 건너고, 止(禪定)와 觀(智慧)을 雙修하여 法性的 허공을 자유자재로 날게 한다는 것이다.

### 3) 教義宗趣論

이 대목은 『菩薩瓔珞本業經』의 經宗教義를 요약하여 서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 『本業經』이 어떠한 경전인가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간요하게 묶어서 결론지은 부분이라고도 하겠다.

여기에서 저자는 먼저 이 경전의 教說형태를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언급 찬양하였다.

그 教說은 문장과 도리가 갖추어 정교하다. 뜻은 지극히 미묘하고 사언은 빼어났으며, 글은 매우 잘 망라하였고 말은 자세하다.(其爲教也 文理俱精 旨極妙而辭逸 文甚括而語詳)

라고 한 다음에 교설 내용의 要義와 宗趣를 매우 간략하면서도 확연하게 論明하고 있다.

수행의 階位는 위계마다 덕을 갖추었으며 事相은 광대하고 理法은 窮極하다. 인과의 원류를 다 밝혔고 범부와 성현의 비릇과 마침을 궁구하였으며, 천 가닥의 삼라만상을 비추었고 하나(一味)의 진리가 크게 확 트였음을 밝혔다.<sup>80)</sup> 그리하여 六性(習種

80) “明一味之洪通”을 『동문선』에서는 ‘일미(一味)가 널리 통함을 밝혔으니’(앞 책, p. 92). 沈載烈번역에는 ‘한 맛으로 크게 통하는 도리를 밝히었도다’(그의 앞에 나온 책, p. 495). 金尙祚번역에는 ‘一味로 洪通하는 도리를 밝히었다’(그 앞에 나온 책, p. 422). 라고 하였다. 그러나 ‘一味’는 佛典에 많이 나오는 “一味法”(하나의 진리) “一味之道”(하나의 도리)의 줄인 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하나의 진리(一味法·一味道理)가 어디에나 걸림없고 막힘 없이 넓고 크게 통해 있음을 밝혔다’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性·性種性·道種性·聖種性·等覺性·妙覺性の 六種性)과 六忍(信忍·法忍·修忍·正忍·無垢忍·一切智忍)으로 八會<sup>81)</sup>의 광대한 法要를 모았고, 三觀(從假入空觀·從空入假觀·中道第一義諦觀)과 三諦(公諦·假諦·中諦)로 六百의 玄宗(6백권의 大般若波羅蜜多經)을 꿰뚫었으며, 二土(果報土·法性土)와 二身(果極法身·應化法身)의 법문으로 시방을 함께하여 널리 나투었으니, 一實道와 一佛果로 萬德을 포함하여 모두 다 응회하였다.

그러한 뒤에 一切智智(薩云)의 보배수레를 타고 삼계의 옛 집으로 돌아와 보살의 本行을 열어서 여섯 층(六重)의 瓔珞을 보였었다. 그러므로 『菩薩瓔珞本業經』이라고 한다.

이상의 要義들은 모두가 두 권의 『本業經』속에 설해져 있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뽑아 정리한 것이다.

“行階階而德備”에서 “明一味之洪通”까지는, 十信으로부터 비롯되어 42賢聖의 究竟인 妙覺地에 이르는 이른바 六入明門의 보살수행과 그 果德 및 제법의 緣起 實相을 밝힌 법문의 내용(經教要義)을 묶어서 찬탄한 내용이다.

“余乃六性六忍”에서 “含萬德而都融”까지는, 이 『本業經』에서 설하고 있는 가르침의 특성 곧 종합적이며 총화적 萬德을 응회하여 갖춘 殊勝한 思想性(宗趣)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 綜八會之廣要”는 華嚴思想을 종합하였다는 것이고, “... 貫六百之玄宗”은 般若思想을 꿰뚫었다는 것이며, “二土二身 帶十方而普現”은 淨土思想을 드러낸 것이고, “一道一果 含德而都融”은 法華 및 涅槃妙德의 사상 등 佛說의 無限 圓融을 표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元曉는 이 『本業經』에 華嚴思想·般若思想·淨土思想·法華·涅槃思想이 融會되어 있음을 밝혀 보인 것이라 하겠다.

81) “綜八會之廣要”는 물론 『華嚴經』七處八會(60卷本)의 법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으나, 앞의 註30과 그 본문의 兩經(華嚴經과 本業經) 8會 對比表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本業經』의 7處 8會와 그 내용이 약간 다르다.

끝으로 그는 “然後乘薩云之寶乘… 示六重之瓔珞”에서, 菩薩의 本業行에 관한 『本業經』의 佛說을 여섯 가지의 瓔珞으로 장엄하는 상징적 표현을 통해 매듭을 짓고 있다.

이 세 번째의 분단은 앞의 두 분단처럼 중간의 소항목을 나누지 않았지만, 앞의 경우와 같이 항목화 한다면 (1) 敎說의 文理俱精, (2) 經敎의 要義, (3) 本經의 宗趣, (4) 菩薩本業行의 맺음이 될 것이다. 이 글(大意門)에 나와있는 중요한 法數나 敎義함축의 용어에 관하여서 가급적이면 사전적 설명을 피하기로 하였으며, 本疏의 연구에 요긴한 문제는 해당 본문(현존 疏 범위내)에서 자세히 다룰 생각이다. 그리고 이 부문의 原文을 모두 옮겨서 참고가 되게하지 못하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극히 일부분만을 인용하는 정도에 그쳤을 따름이다.

### Ⅲ. 현존 하권의 고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本業經疏』의 현존 하권은 본 경전의 하권을 그대로 주석한 것이 아니고, 상권의 뒷부분 일부까지도 다루어져 있다. 곧 『本業經』 상권 「賢聖學觀品」 제3의 후반부 十地의 十觀心所觀法 중 아홉번째가 되는 ‘入法際智’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경의 「集衆品」 제1과 「賢聖名字品」 제2 및 「賢聖學觀品」의 뒤쪽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을 주석한 『本業經疏』의 상권이 빠져 있는 셈이다.

여기에서는 『本業經』의 하권부터가 아닌 「賢聖學觀品」 뒤쪽의 ‘九入法際智’에서부터 하권 마지막의 「集散品」에 이르기까지의 현존 『本業經疏』를 다루게 된다. 각품별로 고찰하되 본 經文의 각품에 대한 개요는 이미 앞의 I장에서 보았으므로, 元曉의 疏釋만을 여기에서 주로 다룰 생각이다.

## 1. 賢聖學觀品 해석

『本業經』의 셋째 품인 「賢聖學觀品」의 전체에 관해서는 앞 장에서 개관한 바가 있으므로 생략한다. 이 품에는 42賢聖 곧 42心の 수행법 가운데 十住·十行·十廻向·十地の 40心에 각각 열 가지 마음에 밝혀보는 바의 관법(十觀心所觀法)을 설하였다. 그 중에서 十地心の 열 가지 觀心所觀法으로, ① 歡喜地住中道第一義諦慧·② 金剛海藏法寶·③ 入女幻三昧·④ 遍行法寶藏·⑤ 入法界智觀·⑥ 達有法緣故起智·⑦ 盡果報無障無碍智·⑧ 不思議無功用觀·⑨ 入法際智·⑩ 無碍智觀<sup>82)</sup>을 들고 있는데, 이 疏의 하권은 아홉번째의 觀心所觀法인 '入法際智(觀)'에서 시작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로부터 다루기로 하는 것이다.

### 1) 첫째 문(第一門 正明行德)

“이른바 40번째라고 하는 것은 (所謂四十辯才者)”이라고 본경의 원문(佛子 九入法際智 所謂四十辯才)<sup>83)</sup>을 이끌어온 다음, “모든 辯才로서 제법의 차별邊際에 교묘하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入法際智라고 한다.”라고 풀이하였다. 이어서 저자는 四十辯才를 풀이하었는데, “四十辯才란 四無碍智에 열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그 설명을 『十地論』<sup>84)</sup>에서 이끌어 왔다.

그의 疏에 “如十地論云”이라 한 다음의 “是四無碍智十種差別”에서 “隨假名不壞無邊法說故”<sup>85)</sup>까지가 『十地論』에서의 인용부분이지만 필요한 부분만을 옮긴 것이다. 이 가운데의 如經도 『本業經』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十地論』에서 인용하고 있는 『十地經』을 일컫는 것이며, 『十地論』에 “十作住持相”과 “知諸法生滅相故”를 本疏(韓佛全書 1책 p.498 下)에서는 “十作住地相” “知諸法生義相故” 등으로 틀린

82) 『大正藏』 24, p. 1014 下~1015 中.

83) 『菩薩瓔珞本業經』 권상, 賢聖學觀品 (大正藏 24, p. 1015 中).

84) 天親菩薩造, 『十地經論』 善慧地 第九권 11 (大正藏 26, p. 190 中下).

85) 『韓佛全書』 1책, p. 498. 下~499 上.

글자가 몇군데 있다.

그리고 經 원문의 “四十辯才” 다음에 이은 “一切功德行皆成就 … 一切佛藏 一切變通藏 已一心中一時行” 까지 풀이를 계속하였는데, 四十辯才의 풀이보다는 간략한 편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經文인 “無量大千世界中 作佛形作衆生形 教化無量衆生法故.”는 풀이를 하지 않고, “이 無量 이하의 글은 위의 글귀들(앞에서 본 내용)을 거듭 드러낸 것(無量以下 重顯上句)” 이라고만 하였다.

그러나 현존본 疏<sup>86)</sup>에서는 “無量以下 重顯上句”가 줄이 바뀌어 앞 문장과는 別行이 되어 “十無碍智觀”의 바로 위에 얹혀 연결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국역 元曉全書』에서도 “無量 以下는 上句의 十無碍智觀을 거듭 나타낸 것이다.”라고 번역하였다.<sup>87)</sup> 十無碍智觀은 十地心의 열가지 觀心所觀法 중의 열 번째가 되므로 바로 앞의 九 入法際智의 경우와 같이 열 번째의 觀法으로써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차례 번호인 十 위에 ‘無量以下 重顯上句’가 연결되어 얹혀있을 까닭이 없다.

열 번째의 無碍智觀에서도 疏의 저자는 經文의 “所謂無量法雲雨澍及一切衆生” 이하의 글을 풀이하었다. 그리하여 法雲의 뜻에 “一 能受諸佛無量法雨. 二 能住衆生無量法雨.”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하여 역시 『十地經』의 설명을 이끌어와 풀이를 대신하였다. 다음 “二習無明今已滅盡”은 “물질과 마음(色心)의 自在함이 이 法雲地에서 더욱 증장되어, 미세한 二習이 이미 다하였기 때문이며 근본 無明도 또한 없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며, “受大職位”에 관하여서는 역시 經說을 이용하여 풀이하였고, “神變無量不可具說 現同如佛無相用故”의 경문도 또한 그 풀이를 『佛地經』에서 이끌어 왔다.

10 無碍智觀 다음 經文의 “佛子, 如是一切現人 同入此門修行成覺. 佛子, 吾先… 汝等受行.”까지를 疏에서는,

“如是 이하는 제 2의 總結인데, 『華嚴經』 十地品을 가리킨 것이다.” 라고 하였

86) 위의 책, p. 499 上.

87) 앞에 나온 『國譯 元曉聖師全書』 3 p. 433.

다. 여기에서 十地心 곧 제40심이 끝나게 된다.

經에서 “佛子, 第四十一地心者…”라고 한 이 대목을 疏에서는,

“無垢地 가운데의 글을 세 갈래로 나눌 수가 있으니, 먼저 마음ियो 다음은 닻음(行)이며 나중에 곧 총결이다.(無垢地中 文有三分 先心 次行 後卽總結)”

라고 분단을 지었다. 그런데 현행본에서는 이 부분도 앞의 대목과 구분하지 않고 연결시켜 놓았다. 곧 “餘時以下… 十地品也 無垢地中…”<sup>88)</sup>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국역본에서도 “…『華嚴經』의 「十地品」을 가리킨 것이다. 無垢地 가운데…”<sup>89)</sup>라고 하여 연결되어 있으므로 뜻이 모호하게 되었다.

『華嚴經』 十地品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은 제 10 法雲地까지를 일컫는 것인데 이는 제 2의 總結로 매듭이 지어진 것이다. 無垢地는 經의 본문에 나오는 第四十一地心이며 等覺位이다. 그러므로 十地(40心)에 관한 것이 끝나고 제 41地心인 無垢地가 시작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본 것처럼 元曉는 이 41地心 곧 無垢地에 관한 본경의 법문을 첫째 마음(心), 둘째 닻음(行), 셋째 총결의 세 갈래로 나누어 풀이하였다. 그래서 經文의 “名入法界心者” 한 마디를 첫째 단의 풀이로 하여,

“첫째, 入法界心이라 이름한 것은 한 법계의 첫 문에 들기 때문이며, 완전한 도의 방편이 되기 때문이다.”(入一法界之初門故 爲究竟道之方便故)라고 하였다. 두 번째 단의 풀이는 경문의 “復次心所行法者… 十登中道第一義諦山頂”까지의 대목이다. 이 두 번째 行을 밝히는 단에서는 먼저 所依의 定을 드러내고, 나중에 能依의 行을 밝히는 것의 두 갈래가 있다고 하였다.(次明行中有二, 先顯所依定 後明能依行). 이리하여 저자는 經文에 설하고 있는 勇伏定 중의 열 가지 수행법을 차례로 풀이하고는 “앞의 4문은 中道を 드러낸 것인데, 이 無垢地位 중에서(열번째의 中道第一義諦의) 山頂에 이르러 수가 있게되기 때문이다.(謂前四門 所顯中道 於此位中得到頂故)”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경문의 “是故無垢菩薩 從發心住來…… …開衆生心 汝

88) 앞 『韓佛全書』 같은 책, p. 499 中.

89) 앞의 註87과 같은 책, p. 438.

等受持”까지를 세 번째의 총결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제 41地心 곧 無垢地の 부분을 매듭지었다.

是故 이하는 세 번째 총결이다. 이 가운데 네 글귀로 나누이니, 1은 먼저 행한 것을 들었고, 2는 지금의 공덕을 나타내었으며, 3은 앞에 자세하게 설한 것을 보였고, 4는 지금의 약설로 끝맺음 하였다.(是故以下 第三總結, 於中四句 一舉先行 二顯今德 三示前廣說 四結今略說) 첫 번째 중에 둘이 있으니, 먼저 40心を 통털어 들었고 나중에 十地身을 따로 들었다. 40心 안의 제 四十이 바로 聖位이니, 두 가지 法身이 있기 때문이다. ‘백천 겁을 지나서’ 이하의 글<sup>90)</sup>에 있는 지금의 공덕 또한 만 겁을 지났지만 단지 간략하게 들었을 뿐이다. 세 번째 廣說을 보인 것 가운데 제 三禪이란 『華嚴經』 중에 이 범회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아마도 그 경전의 大本(본디의 大本華嚴經) 경문에 있었을 것이다. 네 번째의 약설은(本業經의) 글 내용<sup>91)</sup>으로 알 수가 있다.(初中有二, 先通舉四十心 後別舉十地身… 經白千劫以下 今德亦經萬劫 但略舉耳, 第三說示廣說中 第三禪者 華嚴經中 不現此會 應在彼經大本文也, 第四略說文相可知).

그리고 나서 第四十二地 곧 妙覺地 차례가 되는데, “妙覺地 중에도 또한 세 갈래(三分)가 있다”라고 시작되어 있다.

본 경문의 “佛子, 第四十二地名寂滅心 妙覺地常住一相. …… 吾先在此樹下…… 今爲此大衆略開佛果行處 汝應頂受”까지를 元曉는 세 갈래로 나누어, ① 心, ② 德, ③ 結明으로 하였다. 여기에서도 첫 번째 갈래의 心은 “名寂滅心”이라는 첫 마디를 들어서 “寂照의 지혜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두 번째의 顯德에서는 常德·智德·不可思議德·獨在無二德의 4德을 들어 풀이하였다. 세 번째의 結明에

90) 『本業經』이 대목 本文의 “經百千劫法藏始滿 入相盡三昧成就一切地位…”를 가리킨 것이다.

91) 원문의 “文相”은 글자 그대로 ‘經文의 모양’ ‘글에 나타난 형태’라는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今以略說一偈之義 開衆生心 汝等受持”의 經文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經의)글 내용’이라 하였다.

서는 먼저 廣說을 가리키고, 다음에 略說로 맺음하였다.

2) 둘째 문(第二 諸門分別)

이 疏의 저자는 지금까지 앞에서 보아온 부분을 일러 '行德을 바르게 밝힌 첫째 문'이라 하고, 이제부터의 이 아래 부분을 '여러 문으로 분별한 둘째 문'이라 하였다.

上來 第一正明行德. 此下 第二諸門分別.<sup>92)</sup>

이에 의하여 이 「賢聖學觀品」의 앞 부분(없어진 상권에 들어있는 일부까지 포함하여) 소제목을 첫째 문 곧 '第一 正明行德'이라 하고, 이제 시작되는 이 부분을 둘째 문 곧 '第二 諸門分別'이라 하게 된다.

이 둘째 문은 '물음(問)'과 '대답(答)'의 두 갈래로 나뉘어진다. '물음'의 범위는 經文의 "敬首菩薩白佛言"에서 "……爲何心相." 곧 "佛言" 이전까지인데 이 항목에서 저자는,

'後一地'라고 한 것은 如來地를 말한 것이며, '法性身'이란 法性에 의지함으로써 실다운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所依의 이름을 좇아서 법성이라 한 것이다. 아래 經文에 나오는 實智法身은 곧 이 몸이다.

라고 하였다.

'대답'의 대목에서는 다음의 6문으로 나뉘어진다고 하였다. 곧 1 出世間門, 2 世間果門, 3 能治門, 4 所治門, 5 二生門, 6 二業門이다.

첫째 門에는 또 세 갈래가 있으니, 첫째는 二身을 드러내는 것, 둘째는 二土를 나타낸 것, 세 번째는 거듭 身土를 드러낸 것(重顯身土)이라고 하였다. 첫 번째의 二身에도 總標와 別解로 나뉘며, 두 번째의 二土에는 標·釋·結의 세 갈래가 있

92) 앞의 『韓佛全書』 p. 501 上.

는데 釋가운데에 兼顯凡夫土·正明聖人土의 두가지가 있고 正明聖人土에는 菩薩土와 如來土가 있다고 하였다. 세 번째의 重顯身土(甚深)에 세 갈래가 있으니 ① 二身甚深, ② 法身甚深, ③ 因果甚深이다. ①에는 明難量·顯假說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하여 假說에 관해 설명을 붙였으며, ②에도 明理智無見과 顯量智有見의 둘이 있고, ③에는 明假說·明因果·結勸의 세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 문의 世間果에는 牒·釋·結의 세 갈래가 있다. 둘째의 釋에 15階가 있는데, 앞쪽 4階에는 모두 ① 莊嚴·② 王位·③ 眷屬·④ 受教處·⑤ 教化處의 다섯 구별이 있고, 뒤쪽 11階에는 다만 4句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본 경문의 “世間果報者 所謂十住…… 無量功德藏寶光瓔珞千福相輪法界王 一生補處菩薩爲眷屬.”까지를 간략하게 풀이하였으며, “佛子 是上瓔珞相輪 … 故有如是果報之名數法”까지를 총결(牒·釋·結의 세 번째)로 삼았다.

세 번째의 能治門에는 別明과 總顯의 두 갈래가 있다. 經文의 “佛子, 三賢菩薩伏三界煩惱麁業道麁相續果 …… 無垢忍伏習果道 習前已除而果不敗亡.”까지를 別明부분으로 하여, “是故佛子, 三賢名爲伏斷喜忍 … 法界中一切無明頓無餘.”를 둘째의 總明(顯)으로 하였다. 즉 첫째의 別明문에서 저자는 三賢(十住·十行·十廻向)과 十地 및 無垢地에 이르기까지의 能治를 하나 하나 밝히고, 다음의 總明문에서는 三賢과 十地를 총괄하여 밝혔다.

네 번째의 所治愚門(앞의 제목을 든 때에는 愚가 없었음)에서도 因과 果의 두갈래로 나누었다. 因愚 가운데에 別明과 總結의 둘로 나누었는데, 經文의 “佛子, 無明者 名不了一切法 … 貪愛嗔痴欲慢 於法界中一體起.”까지를 別明에 해당시켰으며, “佛子, 一切煩惱以十三爲本 無明與十三作本”의 글귀를 總結로 삼았다. 먼저 根本無明을 밝히는 대목에서는 『起信論』을 이끌어와서 풀이하였다.

다음의 果愚를 밝히는 부분에서는 總標와 別釋과 相攝의 셋으로 나누었다. 이 대목은 경문의 “是以就法界中 別爲三界報”에서 “示一切善惡道 果報差別無量”까지인데, “見著二業 …… 定心所起報分爲無色界報.”까지가 둘째의 別釋부분이며, “是故於一法界中 有三界報 …… 果報差別無量”의 끝까지가 相攝을 밝히는 부분이



다. 이 相攝分齊에는 明相攝과 顯不攝의 두 갈래로 나뉘어진다. 이 부분의 풀이 끝에 저자는 “이러한 뜻은 『一道章』<sup>93)</sup>에서 자세히 설한 바와 같다(此義具如一道章說)”라고 하였다.

다섯 번째의 二生을 밝히는 문(明二生門)에도 別明과 總結의 두 갈래로 나누었다. 따로 밝힘(別)에도 둘로 나누이니 먼저 業生을 밝힘이고, 다음에 變生을 드러냄이다. 業生의 안에도 또한 두 가지 구별이 있다고 하여, 經文의 “佛子, 前三賢伏三界無明 … 三界業果俱伏盡無餘 八地乃盡故.”까지를 해당시켜 풀이하였다. 다음에 “從此以上示現作佛 … 以大願力故變化生”까지의 經文을 顯變化生(변화의 생을 나타내는)의 부분으로 풀이하였다. 그리하여 “是以我昔<sup>94)</sup>天中說 生不生義 業生變生”의 경문을 總結로 삼고, 저자는

“업생이란 七地 이내<sup>95)</sup>이기 때문이며, 변화생이란 八地 이상이기 때문이다(業生者 七地已還故, 變生者 八地已上故.)”

라고 맺었다.

여섯 번째의 二業을 밝히는 문(明二業門)에서도 別明과 總結의 두 갈래로 나누었다. 이 부분의 경문은 “佛子, 聖位中二種業. 一慧業 無相無生智 … 二功德業 實智出有諦中 … … 以願力故 住壽百劫千劫變化生一切.” 곧 이 『賢聖學觀品』의 끝부분이며 아울러 이 경 상권의 마지막 대목이기도 하다.

93) 『一道章』은 元曉 자신의 저술인데, 『新編諸宗教藏總錄』 권1 (大正藏 55, p. 1167 上)과 『東域傳燈目錄』 등에 보이고 있으나 현재 전하지 않는다.

그런데 元曉의 저서목록에는 또 하나의 『一道章』이 있다. 日本의 『奈良錄』 2440 (『東洋文庫論叢』 第11卷 附錄 p. 126)에는 『起信論一道章』이라 있으며, 同錄의 2441에는 『一道義』로만 되어 있고, 또 同錄의 2442에는 『一道章』이라고 하였다. 이는 『教藏總錄』의 『一道章』과 같은 책일런지도 모르겠으나, 『教藏總錄』에는 『華嚴經』부의 『一道章』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起信論一道章』이라 있는 점이 다르다고 하겠다.

94) 本經 (大正藏 24, p. 1016 下)에는 “是以我昔”으로 되어있는데 현존 疏(『卍續藏』 61套 3冊 p.251 左下 및 韓國全書 1책, p. 503 中)에는 “以是故我昔”으로 하고 있다.

95) ‘七地已還’은 初地에서 七地까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7地 이내 또는 이하가 된다. 그러나 『국역 元曉聖師全書』 권3, p. 486에서는, “七地에서 이미 되돌아오기 때문이요.”라고 번역하였다.

여기에서 저자는,

처음의 慧業에서 “無相無生智”라고 한 것은 分別相 및 依他生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며, … 調伏하고 끊는 등의 業道도 또한 慧業이다. 다만 앞에서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은 설하지 않을 뿐이다.(이상 慧業).

“智出有諦中有爲無漏等”<sup>96)</sup>(智는 有諦중의 有爲와 無漏 등에서 나온다)라고 한 것은, 正體智에 의하여 後得智가 나오며 이 가운데에 자비 등의 德이 갖추어 있어서 위로는 佛道를 넓히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게 되는 까닭으로 통틀어 功德業이라고 이름한다. “從初聖…” 이하는 거듭해서 공덕업을 드러낸 것이다.<sup>97)</sup> “以變易故畢故不造新”이란 공덕이 더욱 증강해져서 앞이 변화하고 나중에 바뀌어진 까닭이며, 生有漏의 業에서 다만 능히 마치었기(能畢) 때문에 새로 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變化生一切”란 7地 이하는 비록 業生이 있다고 하여도 또한 아울러 變化生도 있기 때문이다.(七地以下雖有業生 而亦兼有變化生故.)

라고 하여, 이 품 전체 풀이의 끝을 맺었다.

지금까지 보아온 이 품 疏釋의 과목 및 분단을 표로 만들어 보면 대강 다음에서와 같다.

96) 이 글귀의 經 原文은 앞쪽에서도 그 일부가 인용되어 있지만 현재 『大正藏』(24권, p. 1016 下)에는 “實智出有諦中, 有爲無漏集百萬阿僧祇功德.”이라 떼어쓰고 句讀點을 찍어 놓았다. 이는 잘못된 떼어쓰기이니 ‘中’과 ‘有爲’를 붙여야 하고 ‘漏’와 ‘集’ 사이는 떼어야 한다. 이 疏의 인용문에서는 맨앞에 ‘實’자가 빠져있고 맨끝에 ‘等’이 한자 더 붙어있으나, 아마 뜻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후대의 筆寫과정에서의 착오일 수도 있을 것이다.

97) 앞에 나온 『국역 元曉聖師全書』(p. 489)에서는 이 부분 곧 “從初聖以下 重顯功德業”을 “初聖으로부터 이하는 거듭 功德業을 나타내어 變易하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하였다. 이는 疏의 “重顯功德業” 다음의 글귀인 “以變易故”를 여기에 올려붙여 연결시켜서 번역하였기 때문이라 하겠는데, 실은 經 本文의 이 글귀 “從初聖以上而現受生 以變易故畢故不造新”을 보지 못한데서 온 착오라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功德業을 重顯하였다는 이 “從初聖以下”의 글은 “從初聖” 다음에 이어지는 “以上而現受生”의 여섯 글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現存 賢聖學觀品疏釋 科表

I. 첫째 문(第一門 正明行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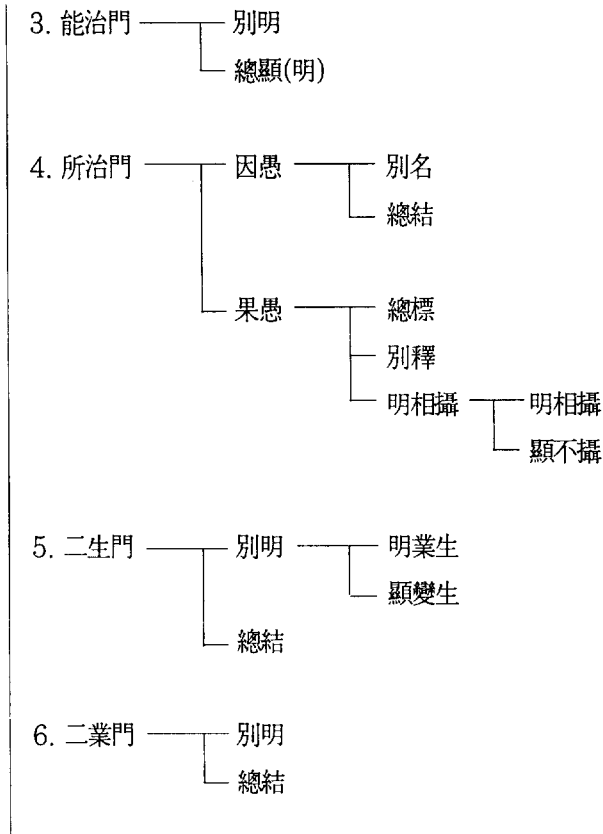
(本品의 시작 및 十住 · 十行 · 十廻向 · 十地心の 앞부분은 失傳된 上卷에 있음으로 알 수가 없음)

<p>1. 十地心の 十觀心所觀法</p>	<p>① 歡喜地住中道第一義諦慧                  ② 金剛海藏法寶                  ③ 入如幻三昧                  ④ 遍行法寶藏                  ⑤ 入法界智觀                  ⑥ 達有法緣故起智                  ⑦ 盡果報無障無得智                  ⑧ 不思議無功用觀(이상 失傳)                  ⑨ 入法際智(이하 疏釋 下卷 存)                  ⑩ 無碍智觀                  第二 總結(이 앞부분은 아마도 第一 別明 인 듯)</p>
<p>2. 無垢地 (第四十一地心)</p>	<p>心                  行 ————— { 顯所依定                                            明能依行                  總結 ————— { 舉先行                                            顯今德                                            示前廣說                                            結今略說</p>

<p>3. 妙覺地 (第四十二地寂滅心)</p>	<p>心 顯德 — 常德 · 智德 · 不可思議德 · 獨在無二德 結明 — 廣說 · 略說</p>
------------------------------	--

Ⅱ. 둘째 문(第二 諸門分別)

<p>問</p>	<p>(敬首菩薩白佛言……爲何心相)</p>
<p>答</p>	<p>1. 出世間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顯二身 — 總標 · 別解</li> <li>顯二土 — 標 釋 — 兼顯凡夫土           — 正明聖人土 — 菩薩土 · 如來土           — 結</li> <li>重顯身土 — 二身甚深 — 明難量 · 顯假說 (甚深) — 法身甚深 — 明理智無見 · 顯量智有見           — 因果甚深 — 明假說 · 明因果 · 結勸</li> </ul> <p>2. 世間果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牒</li> <li>釋 — 15階 — 前 4階 — 莊嚴 · 王位 · 眷屬 ·   — 受教處 · 教化處   — 後 11階 (4句名 不明示)</li> <li>總結</li> </ul>



## 2. 釋義品 풀이

현재 『本業經疏』 하권의 두 번째 품으로 들어있는 이 「釋義品」은 본 『本業經』에 서는 하권의 첫 번째이며 전체 8품중에 네 번째 품이다. 이 「釋義品」에 관해 저자 (疏釋者) 元曉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이 품의 풀이를 시작하고 있다.

六入(十住·十行·十迴向·十地·無垢地·妙覺地)을 바르게 밝힌 세갈래 가운데에서 처음에 名字를 열거하고(賢聖名字品 제2), 다음에는 觀相을 분별하였는데(賢聖學觀品) 이들 두 갈래는 앞 품에서 보아 마쳤다. 세 번째의 行相을 관하는 것에 의지 함에는 앞에 나온 名義를 풀이하여 여러 名義의 뜻을 해석하기 때문에 釋義品이라 이름한다.<sup>98)</sup>

라고 한 다음에, 이 글에 牒問·許說·總標·別釋의 네 갈래가 있다고 하였다.

### 1) 牒問

牒問에 관하여 저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牒問이란, 學觀品の 첫머리에 묻기를 '무엇을 일러 보살이 배우고 觀할 名字의 義相이라고 하며, 心所의 行法에 이르러서는 다시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한 이 두 물음 가운데에 뒤의 물음은 이미 앞에 義相의 물음에서 대답하였으나, 그 품(學觀品)에서 간략하게 답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제 거듭 '그대가 앞서 義相은 어떤 것입니까라고 말한 것은' 이라고 내세워 말한 것이다.(初 牒問者 學觀品初問言 云何菩薩學觀名字義相 及心所行法 復當云何 此二問中 後問已答前義相問 彼品略答而未廣釋故 今重牒言 汝先言義相云何自也)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의 牒問이란 이 「釋義品」의 첫머리에 내세워진 “佛告敬首菩薩, 汝先言義相云何者”<sup>99)</sup>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疏의 글에 나오는 學觀品은 물론 바로 앞의 「賢聖學觀品」이며, 그 품初에 問言이라 하여 인용한 글은 곧 그 품의 첫머리에 있는 “爾時敬首菩薩白佛言 云何菩薩學觀名字義相及心所行法 復當云何.”의 대목이다. 이 「釋義品」이 시작되면서 부처님은 敬首보살에게 앞서 「學觀

98) 앞의 『大續藏』 61투 3책, p. 252 右上 및 『韓佛全書』 1, p. 503 中.

99) 『本業經』 권하 釋義品 제4(大正藏 24, p. 1017 上).

品」 초두에서 그가 물었던 말을 다시금 내세워서 설명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 2) 許說

이 許說의 부문에 대한 저자의 설명은 너무 간단하다.

“所謂라고한 이하가 두 번째(許說)인데 六位(十住·十行·十廻向·十地·無垢地·妙覺地)의 義相을 許說한 것이다.(所謂以下 第二 許說六位義相)”

단지 한 마디에 지나지 않는데, 이 부분의 본 經文은 바로 앞의 “佛告……義相云何者”에 이은 “所謂十住……妙覺地義相 今當說.”까지 이다.

## 3) 總標

이 부문도 간략하다.

佛子라고 한 이하가 세 번째의 總標이니 體義를 풀이한 것이다. 보살의 體라고 하는 것은 種性的의 體義를 말한 것이고, 功德이라 이름한 것은 種性에 의해 일체의 공덕을 일으켜 크게 義롭고 이익됨이 있기 때문이며 깊은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佛子以下 第三總標……有大義利故 有深所以故.)

라고 설명하였다. 이 부분의 經 부문은 “佛子, 是金剛海藏……一切菩薩爲體爲義 故名體義”까지이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의 疏文에는 “…有深所以”<sup>100)</sup>로 끝나고 있어서 故가 붙어있지 않은 점이다. 국역본에서도 번역은 “…깊은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sup>101)</sup>라고 하였으면서도 그 원문 옳긴 쪽은 물론이고, 이 번역 글의 다음 항목인 別釋부문의 시작에서 ‘故佛’이라 하여 『韓佛全書』와 마찬가지로 ‘故’를 여기에 붙이지 않고 다음 제4 別釋文의 앞머리에다 붙여놓고 있다. 이는 다음

100) 앞의 註98과 같은 『卍續藏』 및 『韓佛全書』 p.503 下.

101) 앞에 나온 『국역 元曉聖師全書』 p.495~496. 그리고 “有深所以. 故佛以下…”라고 원문을 옮겨 놓은 것은 이 책의 p.492에서 이다.

부분에서도 언급이 있겠지만 뜻으로나 문장에 있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아마도 『卍續藏』 간행당시에 句讀點을 잘못찍은 것을 『韓佛全』 등에서 그대로 옮겼기 때문인 듯하다.

#### 4) 別釋

현재 疏文<sup>102)</sup>에서는 “故佛以下 第二別釋”이라 하였으나, ‘故’가 앞으로 가서 붙어야 옳다는 것은 이제 앞에서 보았으며 또 여기 ‘第二’는 ‘第四’의 틀린 글자로 바로잡아야 한다.

실제 『本業經』의 원문에는 앞의 제3 總標의 부분이 끝난 글귀의 다음이나 그 전후한 경문에 ‘故佛’로 시작되어 있는 글귀는 없다. 그러므로 故는 앞 글귀(…有深所以)의 끝에 올려붙여야 옳으며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뜻이 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대목은 “佛以下”가 되는데, 경문의 이 글귀는 “佛子”로 시작되어 있으니 아마도 앞의 제3 부분이 ‘佛子’로 시작되어 ‘佛子以下’라 하였으므로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佛’ 한자를 써서 ‘佛以下’라고 하였던 듯하다.

이 네 번째의 別釋은 본 경문의 “佛子, 發心住者”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다. 여기에서 저자는 六位의 뜻을 풀이하면서 두 갈래로 나누었는데, 앞의 3位(十住·十行·十廻向)와 뒤의 3位(十地·無垢地·妙覺地)를 둘로 나누기 때문(前三 後三 爲二分故)이라고 하였다.

##### (1) 앞의 三位

三賢(十住·十行·十廻向) 곧 앞쪽 3位를 해석함에 있어서 別明과 總結로 하였다. 처음 十住 안의 풀이에도 먼저 入住方便을 밝히고(明入住方便), 다음에 바르게 입주하는 현상을 설명하는(釋正入住相) 두 갈래로 하였다. 처음의 방편에는 여덟 글귀로 나타내보였으니, ① 牒所入位(들어가는 바의 계위를 표방함) ② 舉能入人(능히 계위에 들어가는 사람을 들) ③ 發心 ④ 立名 ⑤ 수행 ⑥ 受報 ⑦ 得失 ⑧ 進退 라

102) 앞의 註100과 같음.



고 하여 각각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이 가운데의 네 번째인 立名은 본 경문의 “是人爾時住前 名信想菩薩 亦名假名菩薩 亦名名字菩薩 其人略行十心…” 즉 三賢位の 맨 앞 位인 十住의 첫 계위가 되는 初住 이전에 수행하는 十心 곧 十信에 관한 것인데, 저자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름을 信想보살이라고 한 것은 능히 十信心을 수행하기 때문이며, 假名보살이라고 한 것은 마음이 아직 堅實하지 못한 까닭으로 마치 가벼운 털과 같기 때문이며, 名字보살이란 수행에 이름을 일컬을 수 없는 까닭으로 義相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에 나온 이 十信으로 인해서 중국의 天台 智顓(538~597)는 42位(42賢聖)의 앞에 十信을 인정하는 52位說을 세우게 된 것이다.

다섯 번째의 修行은 먼저 十信을 밝히고 다음에 十戒를 드러내었으며, 여섯 번째 受報도 먼저 十善과 十信을 내세우고 다음에 天報 및 人報를 드러내었다. 일곱 번째의 得失은 분단을 나누지 않았으나 여덟 번째의 進退에서는 標와 釋의 둘로 나누었다.

疏에서는 初住의 相을 밝힘에 있어서 牒方便과 正明住相의 두 갈래로 나누었다.<sup>103)</sup> 經文의 “佛子, 發心住者 是上進分善根人 … 不生難處常值佛法 廣多聞慧多求方便.” 까지를 ‘牒方便’의 분단으로 하고, “始入空界住空性位”에서 “得無生心最上故 名灌頂住.” 까지를 ‘正明住相’의 단위로 하였다. 여기에서 저자는 앞쪽 ‘牒方便’의 설명은 생략하고, ‘正明住相’의 분단만을 풀이하였다. 이 대목의 첫머리에서 저자는,

人空이 다한 문에 의하여 種性이 드러나게 되므로 ‘비로소 空界에 들어가 空性の 位에 머문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비로소 空界에 든다고 함은 바로 발심의 뜻

103) 원문은 “佛子以下 明初住相 於中有二 先牒方便 始入以下 正明住相.”인데, 앞에 나온 『국역 元曉聖師全書』 p.505에는, “佛子 以下는 初住의 相을 밝힌 것이요, 이 가운데에 둘이 있으니 先牒과 方便이다. 始入 以下는 住相을 밝힌 것이니…”라고 번역하였다. 이는 疏의 이 부분과 해당 經文을 자세히 살펴지 못한데에서 생긴 착오라고 하겠다.

이니, 人空의 문에 의지하여 처음으로 발심하기 때문이다. 人空의 지체에 의하여 有의 가운데서 뒤음을 발심하고, 부처님의 教法에 의지하여 뜻을 세워서 일체의 공덕을 닦고 익히는 것이 住의 뜻이다.

모든 분별을 여의고 스스로 마음을 짓지 않으며, 일어나는 일체 공덕을 그대로 자재롭게 하는 것이 地의 뜻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얻지를 못하였으므로 地라고 일컫지 아니하고 다만 住라 일컫게 된다. 이것은 住와 地가 다른 것을 간략하게 구별한 것이다.

라고 하여, 十住의 住와 十地의 地에 대한 간략한 정의를 내리고 그 차이점을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한 疏의 원문은 생략하고 經의 본문만을 참고로 옮겨 본다.

如入空界住空性位 故名爲住. 空理智心習古佛法 一切功德不自造 心生一切功德故, 不名爲地 但得名住.<sup>104)</sup>

그와 같이 住相에 대한 풀이를 해당 經文을 따라 바르게 밝혀나간 그는 이 대목 경문의 끝부분(得無生心最上故 名灌頂住)을 들어서 “空解를 낸 가운데 가장 殊勝하기 때문에 灌頂이라 이름하는 것이다”라고 맺었다.

十行에 있어서도 總明과 別明의 두 갈래로 나누었다. 경문의 “是故佛子, 從灌頂心 進入五陰法性空位. 亦行八萬四千般若波羅蜜 故名中十行”을 저자는 總明이라 하여,

五陰의 法性空에 進入한다는 것은 앞의 十住 중에 안으로 人空을 얻었고, 이 十行의 位에서 안으로 法空을 얻어서 法空에 의해 또한 8만4천 법문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으로 통털어서 中十行이라고 이름한다.

라고 하였다.

다음의 別明은 經文의 “佛子, 就中始入法空”으로부터 시작되는 이후의 대목이

104) 『大正藏』24, p.1017 中 中.

다. 여기에서 저자는 경문에 의해 ① 歡喜行 ② 饒益行 ③ 無瞋恨(無違逆)行 ④ 無盡(無屈撓)行 ⑤ 離(無)痴亂行 ⑥ 善現行 ⑦ 無著行 ⑧ 尊重(難得)行 ⑨ 善法行 ⑩ 眞實行의 十行을 간명하게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저자 元曉는 이 대목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여 매듭지었다.

이는 智度에 의하여 그 이름을 세운 것인데, 앞의 慧度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앞의 경우는 相을 버리고 空에 들어가 부처님 法身の 이치에 따름을 밝힌 것이며, 이(智度)는 非相 또한 버리고 俗諦를 건너 허망한 이치를 여의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道理는 두 度(智度·慧度)의 차별이다.(… 由是道理 二度差別也).

十廻向에 있어서도 또한 總明과 別明의 두 갈래로 나누어 풀이하였다. 總明은 경문의 “是故佛子 從眞實心 入衆生空 無我空”에서 “… 十向法如是” 까지이다. 여기에서 저자는 十廻向의 전체적인 것을 풀이하여 밝혔다. 경문의 “佛子 常以無相心中…”에서 “…十方諸佛一切菩薩之所遊路”까지를 疏에서는 別明으로 하였다. 이 대목에서 저자는 경문에 설하고 있는 十廻向 곧 救護一切衆生離衆生相廻向·不壞廻向·一切佛廻向·至一切處廻向·無盡功德藏廻向·隨順平等善根廻向·隨順等觀一切衆生廻向·如相廻向·無縛解脫廻向·法界無量廻向에 대하여 간략하게 풀이하였다. 그리하여 저자는,

“是三十心 이하(佛子 是三十心義 釋無量無邊 非一切凡智所能思量 十方諸佛一切菩薩所遊路)는 三賢位(三十心)의 두 번째 總結이다.”

라고 하여, 셋 賢位 곧 앞 3位 전체를 매듭지었다.

## (2) 뒤의 三位

疏에는 이 부분의 첫머리에 “此下 第二釋十二地”라 시작하고 있다. 제2란 앞에서 6位를 前3 後3으로 나눈 부문 중에서 두 번째 곧 後3(뒤의 三位)의 차례를 가리키는 것이다. 12地란 十地和 無垢地和 妙覺地 곧 뒤의 세 聖位를 말한다. 여기에

서도 總明과 別釋의 두 갈래로 나누었다.

① 總明(佛子 汝先言云何名地…成一切因果故明地)

대승경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地라고 하면 十地를 가리키는데 유독 이 『本業經』에서는 妙覺地까지를 地位의 일컬음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釋義品」에서는 실제 地의 호칭을 11地 無垢地까지만 드러내고 있으나, 앞의 「賢聖名字品」과 「賢聖學觀品」에서는 분명히 ‘妙覺地’ 도는 ‘第四十二地 寂滅心 妙覺地’(앞에 나왔음)라고 하고 있다. 제42地란 十住에서부터 十地까지를 40心이라 하고 等覺地를 제41地(賢聖學觀品에서)라 하였기 때문에 十地에서 본다면 妙覺位는 제12地가 된다.

이 疏의 저자는 ‘第二’에서 ‘後三位’라는 말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구태어 세 地位를 구분하는 일컬음을 취하지 않고 몽뚱그려서 ‘十二地’라 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總明에서 이 地를 다음과 같이 풀이한 것이라 하겠다.

‘그대가 앞서 어떠한 것을 地라고 이름합니까 라고 말한 것’(初中言, 汝先言云何名地者)은 먼저 名字와 義相을 총괄하여 물은 것인데, 지금 그 가운데에서 따로 地를 전제하였을 뿐이다. ‘일체의 공덕을 지녔다’고(經文에서) 한 것은 이른바 법계의 본체가 두루 일체의 공덕을 攝持하는 것이 흡사 大地가 山海 등을 간직한 것과 같다는 것이며, ‘일체의 因果를 生成한다’는 것은 일체의 善因을 능히 나게하고 일체의 善果를 성숙케 함이 마치 大地가 능히 초목들의 싹을 트게하여 꽃과 과일들을 성장토록 하는 것과 같다. 地라고 이름한 것은 이러한 두 가지 뜻(攝持一切功德·生成一切因果)이 있기 때문이다.

總明의 이 대목에 해당되는 經文은 “佛子, 汝先言云何地 … 成一切因果故名地”의 부분이다.

② 別明(佛子 捨凡夫行生在佛家에서 이 품 끝까지)

첫 번째. 6位 중 後3位의 첫 번째가 十地이다. 疏에서는 經說의 차례에 따라 “凡夫行을 버렸다고 말한 것은 聖法을 얻었기 때문에 범부의 성품을 버렸다는 것이다.(言捨凡夫行者 得聖法故 捨凡夫性)”라고 시작하여, 十地の 맨 앞인 初地 곧 歡喜地부터 풀이하였다. 그 설명에서

열 가지의 수승한 공덕에 의하여 환희롭지 않음이 없으므로 환희지라 이름한다.(…依十種殊勝功德 無不歡喜 故名歡喜地也)

라고 맺음하였으며, 두 번째 地에서는

안으로 三輪의 오탁을 버리고 밖으로는 二邊의 때를 여의었기에 그러한 뜻으로 離垢地라 이름한다.(內捨三輪之濁 外離二邊之垢 以是義故 名離垢地也).

하였고, 또

우리러 如來의 12部光을 의지하고 모든 중생의 12支根을 비추어서 빛과 빛이 변화하여 통하기 때문에 明地라 이름한다.

라고 하여, 제3 明地(發光地)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또 네 번째에서

이 세 번째로 慈悲喜捨를 觀하고 거기에 셋을 더하여 일곱으로 하여, 7觀으로 밝게 비추니 그래서 炎地라 일컫는다.

라고 제4 炎地(焰慧地)를 읊었으며,

몽뚱그려 말하다면 안으로는 모든 번뇌를 이기고 밖으로는 모든 世間을 이기니, 그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難勝이라 이름한다.

라고 제5 難勝地의 풀이를 맺었다.

삼세가 하나로 합하고 寂滅이 둘 아니니, 이는 現行을 관하는 것이므로 現前地라 이름한다.

라고 제6 現前地를 읊었고,

分段身이 後邊에 멀리 이르는 것을 밝히고, 오랜 동안 觀에 들어 수행하는 것을 밝힌 두 가지의 뜻이 있으므로 遠行地라 일컫는다.

라고 하여 제7 遠行地를 설명하였다.

나가고 들어감에 차이가 없는 이치에 의하여 不動을 풀이하고(是義出入無異之義以釋不動), 당래 果德 결정의 이치에 의해 不動을 풀이하는(是依當果決定之義以釋不動) 두 가지의 뜻이 있으므로 不動地라 이름한다.

라고 여덟 번째의 不動地를 말하였고, 아홉번째의 妙(善)慧地는

無生の 三忍 가운데에 다시 上品으로 들어가며, 智光과 色光이 미묘하지 아니함이 없음을 관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뜻으로 妙慧地라 이름한다.

라고 하였으며, 열번째의 法雲地에 관해서는

첫째 行入, 둘째 受入, 셋째 學入, 넷째 斷入, 다섯째 信入, 여섯째 證入, 일곱째 平等入, 여덟째 差別入, 아홉째 內教入, 열째 內形入의 열 가지 공덕의 법에 의하여(依此十種功德之法) 六道중생의 善根을 운택하게 하므로 法雲地라 일컫는다.

라고 하였다.

疏의 원문에는 풀이글의 부피가 한결같지 않아서 初地和 제5地和 8地 및 10地는 상당히 긴 편인데 그 중에서도 5地の 설명이 가장 길며, 3地和 6地 및 9地는 짧은 편인데 특히 6地和 9地는 매우 짧게 풀이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글들을 다 옮길 수가 없으므로, 疏의 저자(元曉)가 각 地位의 名義를 판정하다시피 요점을 들어 매듭지어 설명한 부분만을 풀어서 옮겼다. 이에서 후 3位 중의 첫 번째인 十地の 해석이 끝난 것이다.

두 번째, 후 3位 곧 세 聖位 중의 두 번째가 되는 無垢地<sup>105)</sup>이다. 42賢聖의 41地이고 12聖位중에서는 11위가 되며 일반적으로는 等覺菩薩位로 알려져 있다.

無垢地에 해당되는 經文은 “佛子 菩薩爾時 住大寂門中品忍觀 … 如是佛行 故入金剛三昧 一相無相寂滅無爲 故名無垢地.”의 대목이다. 疏의 저자는 여기에 첫째 顯德, 둘째 立人稱, 셋째 釋地名의 세 갈래로 나누었다.

첫째의 顯德에 있어서 그는, “大寂門의 中品 忍觀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다섯째의 大寂忍에 3품이 있는 가운데에 지금의 이 位중에서 中品에 머물기 때문이다. 이는 總句이니 이 머물음(住)에 열가지가 있다.”

라고 하여, ① 滿住, ② 登住, ③ 心住, ④ 身住, ⑤ 有爲住, ⑥ 無位住, ⑦ 過下住, ⑧ 同上住, ⑨ 坐處住, ⑩ 境界住에 관하여 각각 약설하였다.

둘째의 立人稱 풀이에서는, 無垢地보살이 설한다는 八法輪을 가리켜 “二乘을 위하여 有作의 四諦法輪을 轉說하고 菩薩을 위하여는 無作의 四諦法輪을 굴리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乃至 進止一切法同이란 그러한 뜻이 있으므로 이름하여 學佛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셋째의 釋地名은 經文의 “住是百千三昧中 … 故名無垢地”까지 곧 이 대목의 끝

105) 앞에 나온 『국역 元曉聖師全書』 p.554의 註①에서는 이 無垢地를 “보살 十地位 中의 第二地에 해당되는 位다.”라고 하였다. 또 이 책에는 앞서 p.442의 註②에서도 無垢地를 “離垢地の 異名이니, 菩薩 第二地의 이름이요, 또 等覺한 菩薩을 無垢地 菩薩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는데, 그래도 等覺菩薩이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정작 無垢地를 다루고 있는 이 항목에서는 아예 第二地 곧 離垢地라고 단정하였다. 이는 이 『本業經』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註를 썼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는데, 번역자가 직접 주를 달지 않을 경우에 생긴 착오라고 하겠다. 번역은 말할 것도 없고 이 『本業經』 및 『疏』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無垢地和 離垢地를 동일시하는 것은 그야말로 語不成說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분에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저자는

앞서 머물었던 百千三昧乘에 의하여 최후의 金剛三昧에 들어갔으니 이 때는 모든 相이 허물어지지 않으므로 一相이 無相이라 말한 것이며, 또한 다시 모든 더러움(垢)에 장애받지 않기 때문에 寂滅無爲라 하고, 그러한 뜻이 있으므로 無垢地라 이름한다.

라고 하였다.

세 번째, 妙覺地에도 總標와 別釋과 總結의 세 갈래로 나누었다. 經文의 이 대목은 “佛子 妙觀上忍大寂無相……佛子 吾今略說義句 爲此大衆開善法行.”이다.

첫째의 總標에서 저자는 “妙觀上忍大寂無相”<sup>106)</sup>이란 말에 대하여, “大寂忍의 三品중에 妙覺이 上品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 마디로 맺었다.

둘째의 別釋에서는 顯德과 釋名의 두 귀로 나누어 풀이하였다. 顯德에서 다시 둘로 나누어 먼저 利他的 공덕이 널리 두루함을 드러내고, 다음에 自利의 공덕이 원만함을 드러냈었다. 두 번째 妙覺名의 풀이에서도 正釋과 簡別의 둘로 나누었다. 正釋에서 저자는 경문의 “而寂照一切法”을 들어서

비록 功用이 없으나 두루 비추임이 있다. 寂이란 妙義이니 생멸과 起動의 亂을 멀리 여윈 까닭이며, 照란 覺義이니 無明과 闇昧의 안목을 영원히 끊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두가지 뜻이 있으므로 妙覺이라 이름한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簡別에서는 경문의 “自佛以下一切菩薩照寂”을 들어서

다만 본래 적멸의 이치를 비추기 때문에 照寂이라 일컫는다. 그러나 그 內心에 생멸을 여의지 않고 능히 비추는 그 지혜가 無明을 떠나지 아니하면 이는 능히 寂照하지를 못하는 까닭으로 妙覺이라고 이름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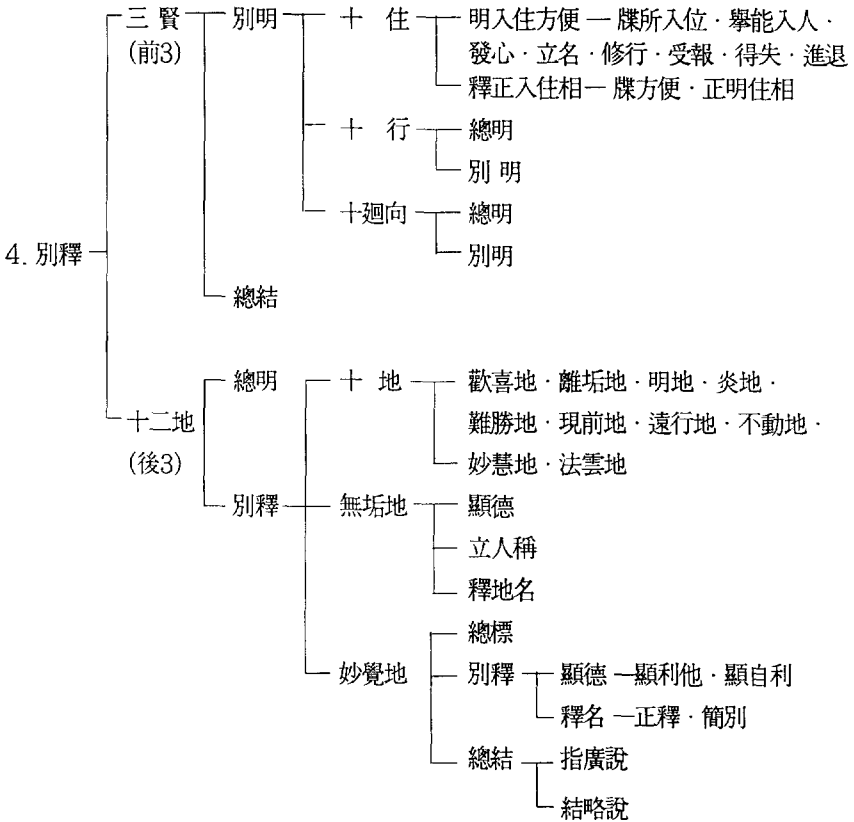
106) 疏(韓佛全書 1, p.508 上)에서는 “妙覺上忍大寂無相觀”이라 하고 있으나, 『本業經』의 본문(大正藏 24, p.1018 上)에 “妙觀上忍大寂無相”이라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經文의 쪽을 따랐다.



라고 하였다. 셋째의 總結에서도 두 갈래가 있다고 하여 그는, 먼저 廣說을 가리키고 다음에 約說로 맺는다(先指廣說 後結略說)라고 하여 「釋義品」 전체를 마쳤다.

釋義品疏釋科表

- 1. 牒問
- 2. 許說
- 3. 總標



### 3. 佛母品 풀이

이 「佛母品」은 『本業經』의 다섯 번째 품이다. 疏釋者 元曉는 이 품의 풀이에 앞서 다음과 같이 「佛母品」의 뜻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넓게 부문을 열어서 經宗을 드러낸 네 품 안에서 두 갈래로 나눈 가운데 六入(十住·十行·十廻向·十地·無垢地·妙覺地의 賢聖位에 들어감)을 바르게 밝힌 것은 앞에서 마쳤으며, 이 (제목) 아래의 한 품은 六入의 경계를 드러낸 것이다. 佛母라는 말의 어머니는 낳고 기르는 뜻이며, 삼세 제불의 一切種智가 모두 二諦 中道에 의해 생기는 것이라 여기에서는 이러한 뜻을 드러내기 때문에 佛母品이라고 한다. (依廣開門顯經宗 內科其四品爲二分中, 正明六入竟在於前 此下一品顯六入境. 言佛母者 母是生長之義 三世諸佛一切種智 皆依二諦中道而生 此處顯是義 故名佛母品).

그리하여 그는 “爾時以下 在文有二”라 하여, “爾時 敬首菩薩白佛言”으로 시작되는 이품의 본문 해석에 들어갔다. 여기에서 저자는 첫째 正明佛母, 둘째 諸門分別의 두 갈래로 나누었다.

#### 1) 佛母를 바르게 밝힘.

첫 번째 부문에서 다시 둘로 나누어 問과 答으로 하였으며, 問에 있어서 擧智問과 就境問의 둘로 나누었다.

敬首보살이 白佛言한 첫 번째 물음 곧 “佛及菩薩二初照智 從何而生…”의 물음 부분을 擧智問이라 하였다. 就境問에서는 問二諦法性和 問第一義諦의 둘로 나누었다.

답 가운데는 前問答과 後問答의 두 갈래로 나누고 있다. 前問 중에는 正答으로 거듭 풀이하였는데, 이 正答에는 먼저 三諦를 어머니로 삼음을 밝히고, 다음에 諸門을 母로 삼는 것을 드러내어 풀이하였다.

後問에서는 牒·釋·結의 세 갈래가 있다고 하였다. 이 중 釋 가운데에 別釋과 總明의 둘로 나누었다. 二諦를 別釋하는데에 4門이 있다고하여 첫째 有無有門, 둘째 二無二門, 셋째 因緣門, 넷째 假名門으로 나누어서 각각 자세히 설명하였다. 總明에서는 八不의 풀이를 通門과 別門의 두 문으로 나누어서 四雙八不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諸佛菩薩의 智母를 밝혔다. 經文의 “佛子 十方無極刹土諸佛 … 略說 明月瓔珞經中二諦要義.”의 부분을 세 번째의 總結로 삼아서 이 「佛母品」 앞 부분의 智母를 바르게 밝힘(正明智母, 앞에서는 一者正明佛母라 했음)을 마쳤다.

## 2) 諸門分別

여기에서도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물음(問)과 대답(答)의 두 갈래로 나누었다. 처음 물음의 가운데에는 能覺의 頓漸에 대한 물음과, 所斷의 一異에 대한 물음, 修時的 劫數와 久近에 대한 물음의 세 가지가 나와있다고 하였다.

대답 중에는 讚問許說과 對問正答의 두 갈래로 나누었다. 여기에서 차례로 앞의 세 물음에 대하여 답하였는데, 첫 번째 물음의 답에는 正答과 結答이 있다고 하여 『楞伽經』과 『仁王經』 등의 經說까지 이끌어와서 能覺의 頓漸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두 번째 一異에 대한 물음의 답에도 먼저 그 一을 막고(先遮其一), 다음에 그 異를 허락하는(後許其異) 두 갈래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遮一)에서 ① 總遮, ② 別釋一過,<sup>107)</sup> ③ 舉人結過的 셋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여 그 一에 대한 遮斷을 설명하였다. 다음의 許異에도 ① 略簡是非와 ② 廣顯異相의 둘로 나누었는데, ①에 4구가 있고 ②에도 네 가지로 나뉜다고 하였다. 특히 ②의 廣顯異相에 첫째 簡

107) 『韓佛全書』(1, p.511 上)에는 “二者別釋 一過三者 舉人結過”라고 되어있으며, 이를 『국역 원曉聖師全書』(3, p.591~2)에서는 “二는 別釋인데 一에 過가 셋(三)이라는 것은 사람을 들어 過를 맺었다.”라고 번역하였다.

이는 一異의 問에 대한 答에 遮其一(遮一)과 許其異(許異)의 둘이 있는 중에 “初(곧 遮一) 가운데에 有三하니 一者は 總遮요, 二者는 別釋一過이며, 三者는 舉人結果라”고 되어있는 것인데, 二者는 別釋一過를 잘못 떼어 써서 一過가 三者에 붙은 것을 번역자도 분간하지 못하고 그렇게 誤譯한 듯하다. 一者 二者 三者는 첫째 둘째 셋째라는 차례의 숫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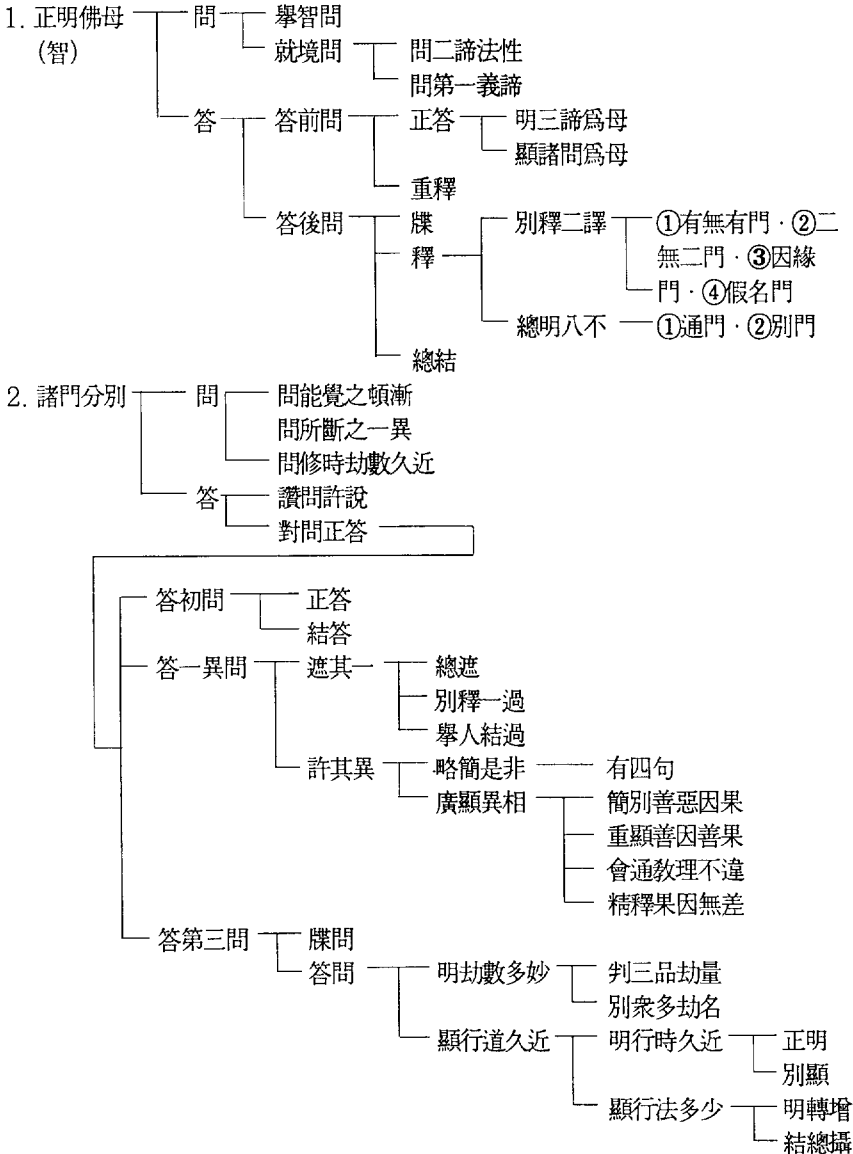
別善惡因果, 둘째 重顯善因善果, 셋째 會通教理不違, 넷째 精釋果因無差的 네 갈래로 나누어 경문의 “一切善受佛果 … 一切皆苦無明爲本.”의 부분을 자세히 풀이하여 “因果의 道理가 터럭 만큼의 어그러짐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맺었다.

그리고 세 번째 곧 수행 시기의 겹수와 멀고 가까움(修時劫數久近)의 물음에 대한 답에도 牒問과 答問의 둘로 나누었는데, 이 대목 전체의 경문은 “佛子 汝先言一切菩薩行道劫數久近者…”에서 “…百萬阿僧祇功德 一切行盡入此明門”까지이다. 疏에서는 答問에도 또한 두 갈래가 있다고 하여 먼저 劫數의 많고 적음을 밝히고, 다음에 行道の 멀고 가까움을 드러내었다. 또 劫數多少를 밝힌 것에도 三品の 劫量을 판단함과 衆多의 劫名을 구별함의 둘로 갈랐으며, 다음에 行道の 久近을 밝히는 항목에도 行時の 久近을 밝힘과 行法の 多少를 드러냄의 둘로 나누었고, 다시 行時の 久近을 밝힘에도 正明과 別顯의 둘로 나누어 풀이하였다. 그리하여 그 는 끝으로,

法門이라 한 이하의 글(佛子, 法門者 所謂十信心 … 百萬阿僧祇功德, 一切行盡入此明門.)은 行法の 많고 적음을 밝힌 것이다. 이 가운데 두 갈래가 있으니, 먼저 轉增을 밝혔고 다음에 總攝을 맺었다.(法門者以下 明行法多少 於中有二 先明轉增 後結總攝.)

라고 하여 「佛母品」을 매듭지었다.

### 佛母品疏釋 科表



#### 4. 因果品 풀이

##### 1) 略攝門의 法要

이 疏에서는 하나의 品을 시작할 때 마다 그 앞머리에 緒言 비슷하게 그 品名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 이 品에서도 예외는 아니지만 현존의 하권만으로 볼 때 오직 여기에서만 그 머리글의 시작 첫머리에 ‘因果品者’라고 전제되어 있다. 「因果品」이라 제목을 따로 내세운 다음에 ‘因果品者는’하고 서술에 들어간 경우가 현존 하권에서는 여기에서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疏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因果品」에 관해 서술하였다.

여래의 설법을 두 갈래로 나눈 가운데 처음의 廣開門은 앞에서 설해 마쳤으며, 이 아래 두 번째의 略攝門에서는 經의 宗趣를 분별한다. 이(品) 가운데에 대략 因과 果의 두 문을 세웠으니, 六位의 行德과 四十二賢聖을 모두 다 攝受하였기 때문이다. 연유된 바가 因이 되고 일어난 것이 果가 되니, 연유됨과 일어남이 서로 만나 통하는 것이 因果이다. 여기에 이러한 뜻이 드러나 있으므로 因果品이라 일컫는다.(因果品者. 如來爲說有二分中, 初廣開門竟在於前. 此下第二就略攝門以辨經宗. 此中略立因果二門, 總攝六位行德 四十二賢聖故. 所由爲因 所起爲果 由起相待通爲因果. 此中顯是義故 名因果品也.)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如來爲說有二分’의 ‘如來爲說’이란 부처님의 一代敎說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本業經』의 설법을 일컫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곧 『本業經』의 如來敎說 중에서 ‘廣開門’과 ‘略攝門’의 두 갈래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품의 앞에 나온 品들의 佛說은 廣開門이며 이제 보게될 이 因果品은 略攝門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역본에서 ‘總攝六位行德, 四十二賢聖故’를 “六位의 行德을 總攝하였으니, 四十二의 賢聖이기 때문이다.”<sup>108)</sup>라고 번역하였으나 뜻이 통하지 않는다.

108) 앞에 나온 『국역 元曉聖師全書』 p.616.

또한 그 註에서 六位를 “보살이 수행하는 階位를 六으로 나눈 것이니, 十住位·十行位·十廻向位·十地位·佛地位다”<sup>109)</sup>라고 하였으나, 六位는 지금까지의 이 『本業經』에서 여러번 나온 것인데 十住位·十行位·十廻向位·十地位·無垢地位·妙覺位를 가리키며, 이 6위가 곧 42賢聖位이다. 그런데 이 疏에서 ‘六位의 行德과 四十二賢聖을 總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얼른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所由를 因이라고 하고 所起를 果라 하며, 由와 起가 相待하여 通하는 것을 因果라 한다’라고 하여 이 品에서 因果의 2門을 세웠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六位의 行德은 원인 곧 所由의 因이며 42賢聖은 所起의 果 곧 결과임을 알 수가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略攝門으로 經宗을 밝히고 있는 이 因果品에서는 因果의 두문을 세워서 6위의 行德과 42賢聖을 總攝하였다. 그러므로 이 品의 주제가 되는 因果는 바로 6위 곧 42賢聖位를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6위의 行德이 그 所由의 因이 되며, 42賢聖이 그 所起의 果가 된다는 것이다.

현재 이 疏의 하권에 들어있는 品중에서 『本業經』의 상권에 위치하는 『賢聖學觀品』은 일부만이 疏에 남아있지만, 고스란히 모두 疏釋되어 전해져 있는 하권에는 다섯 품이 들어있다. 이 다섯 품 중에서 맨 끝품인 「集散品」을 제외하고는 「佛母品」과 이 「因果品」이 비슷하게 짧은 편이다. 바로 다음 품인 「大衆受學品」은 하권 중에서 가장 긴 품인데 「因果品」의 갑절이 좋게 된다.

그러나 疏釋의 분량으로는 단연 이 「因果品」이 가장 많은데, 많아도 조금 많은 편이 아니고 다른 품들에 비해 월등히 많다. 경문의 부피가 비슷한 바로 앞의 「佛母品」보다는 갑절이 더 되고, 경문이 갑절이나 더 되는 바로 다음의 「大衆受學品」보다는 무려 다섯 갑절이나 더 疏釋의 양이 많다. 그만큼 저자는 이 품을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이라 하겠다.

## 2) 因果門을 중심으로 經宗을 밝힘

109) 위와 같은 책, p.617의 註.

疏釋者 元曉는 이 「因果品」의 글(經文)<sup>110)</sup>을 풀이함에 있어서 물음(問)과 대답(答)의 두 갈래로 나누었다. 물음에는 領前(앞의 물음을 받음)과 問後(뒤의 것을 물음)의 둘이 있고, 답에도 또한 別答과 結答의 두 갈래가 있다고 하였다. 別答에도 또한 因과 果의 둘로 나누었는데, 因에는 먼저 能生의 근본을 밝혔고, 다음에 所出의 德行을 드러내었다.

能生의 근본을 밝힌 것에는 또 總明과 別釋의 둘로 나누었는데, 總明에서는 ① 舉人標行·② 釋本·③ 結本の 세 가지로 하였다. 別釋에는 牒과 釋의 두 갈래로 나누어 풀이하였다.

다음의 所出德行을 밝히는 데에도 標·釋·結의 세 갈래로 나누었으며, 別釋所生에는 ① 正明所生德行 ② 示彼所照之境 ③ 顯其所除之障의 셋으로 나누었다. ①의 正明所生德行을 別明과 總舉로 나누었으며, 別明에서는 七聖財·四攝·四辨·四依·十力·四無畏·六通·三明的 8門을 드러내 밝혔다. ②의 示所緣境(앞에서는 示彼所照之境)에도 總·標·結의 셋으로 나누어 풀이하였으며, ③의 顯所除障에서도 또한 標·釋·結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설명하였다.

본 經文의 “汝先言果者”<sup>111)</sup> 이하를 저자는 第二顯果라고 하여 여기에도 牒問·釋·結의 세 갈래가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의 釋에도 또 顯體果·釋義果·重明體義二果의 셋으로 나누었고, 顯體果에 둘로 나누어 먼저 一體의 相을 밝히고 다음에 二身의 門을 드러내었다. 明一體之相에도 舉因標果와 正明果體의 둘이 있는데, 앞의 것(舉因標果)에 해당되는 經文의 “證一大果爲法性體”중 “爲法性體”란 바로 一法界이기 때문이며, (그에 이어) “其體者”라고 한 아래에 이은 경문(非有非無非大非小…非得法寂然無爲.)을 正顯無二相 곧 두 相이 없음을 바르게 밝힌 것이라 하여 여기에도 또한 別顯과 總明의 둘로 나누었다. 처음의 別顯에는 두 가지의 七對(二七對)가 있다고 하여 해당 경문을 들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풀이하였다. (經文은 원문 그대로를 옮겼고 元曉의 해석은 우리말로 옮겼다.)

110) 『本業經』 권하 「因果品」 제6 (大正藏 24, p.1019 中~1020 中).

111) 위와 같은 『大正藏』 p.1019 下.



非有 非無라고 한 것은 하나의 果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果體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며, 非大 非小란 한 極微에 들어가도 남김이 없고 시방세계를 감싸고도 남기 때문이다.<sup>112)</sup> 非身 非心이란 길고 짧은 따위의 形質을 여의고 有無 따위의 緣慮를 떠났기 때문이며, 非相 非三世란 여기와 저기 라는 相을 떠났으며 앞과 나중에 라는 시간의 바뀔을 벗어났기 때문이고, 非天 非人이란 높은 공중에도 있지 않으며 낮은 땅에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非名字 非常樂我淨이란 찬탄할만한 이름도 아니며 歸依할만한 妙德도 아니기 때문이고, 非六道 非六識入이란 善과 惡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名色으로 취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非數量法 過一切法相(經 原文)이라고 한 것은 앞의 七對의 總結이다.

非福田 非鬼神이란 복도 없고 죄도 없기 때문이며, 非動 非靜이란 산란함도 없으며 안정됨도 없기 때문이고, 非生滅 非第一이란 俗諦도 아니고 眞諦도 아니기 때문이다. 非五色 非六大 非土田이란 따로 따로 아니고 모두 합친 것(非別非總)도 아니기 때문이며, 非法界 非三界란 밑(根本)도 아니고 끝(枝末)도 아니기 때문이다. 非縛解(앞 글들의 예로 보아 解 앞에 非가 빠진 듯 함)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기 때문이며, 非明闇(역시 闇 앞에 非가 빠진 듯)이란 지혜롭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기 때문이다. 非得法寂然無爲<sup>113)</sup>라고 한 것은 이 대목 七對의 總結이다. 寂然이라 한 것은 七對의 두 邊相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며, 無爲라고 한 것은 비록 二邊을 떠났더라도 中道

112) 원문은 “包十方界而餘故”인데 『韓佛全書』(1, p.515 上과 下)에서는 이 ‘而’에 註를 달아 “而 아래 無가 빠진 것 같다(而下疑脫無)”라고 하였으며, 『국역 元曉聖師全書』(3, p.649·651)에서도 이를 따라 “包十方界而無餘故”라고 하여, 十方界를 써서 남김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하였다. 이는 經文의 “非大非小”에 대한 元曉의 풀이말인 “入一極微而無遺 包十方界而餘의 뒷쪽 글귀인데, 앞句는 非大에 대한 풀이로 크지않다는 것을 표현하여 ‘一極微에 들어가도 남는 것이 없을 만큼 작다’는 뜻이고, 문제의 이 뒷句는 非小를 나타내어 ‘시방세계를 감싸고도 남을 정도로 크다’는 뜻이므로 ‘而餘’ 그대로 두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113) 『大正藏』24, p.1019 下에는 이 부분 글귀를 앞의 글과 연결시켜 “非縛解非明闇非得法。寂然無爲一切法外”라고 떼어서 句讀점을 찍어놓았다. 그러나 이제 疏의 本文을 옮겨본 바와 같이 ‘非縛解’는 뒷쪽 七對의 여섯번째이며, ‘非明闇’은 그 일곱번째이므로 각각 떼어야 하고, ‘非得法’과 ‘寂然無爲’는 이 대목의 총결이기 때문에 붙여야 한다. ‘一切法外’는 이 대목이 아닌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야 하므로 여기에 이어져서는 안된다.

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 그러한 道理이기 때문에 非得法인 것이다. (원문 생략)

라고 하였다.

경문의 “一切法外 ……行而有果報”를 앞의 別顯에 이은 두 번째의 總明부분으로 하였는데, 여기에도 正明과 遣疑의 둘로 나누었다.

앞의 顯果 중의 제2 釋의 첫 번째 顯體果 가운데 두 번째인 顯二身之門 곧 明二身門에 두 갈래가 있으니 첫째가 正明如來二身이고, 둘째가 乘顯下地二身이다. 如來의 二身을 바르게 밝힌 대목에는 總·別顯·明二身常住·結諸佛道同의 넷으로 나누었다. 둘째의 乘顯下地二身 곧 明下地皆有二身에도 正明과 總結의 두 갈래가 있는데, 正明에는 또 菩薩二身の 無常을 밝힌 것과 凡夫二身の 不同을 밝힌 것의 둘로 나누었으며, 그 아래는 總結이라 하였다.

앞에서 본 顯體果 다음의 釋義果 곧 明義果는 경문의 “佛子, 佛義功德身者 ……不可說不可說果 是果一道.”의 대목에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總標·別釋·總結의 세 갈래로 나누어 풀이하였다. 이 대목의 別釋(別明)에서 저자는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十號·十八不公法·十力·四無量·四無畏·六通·五眼·無罪三業·三寶·滅諦·解脫·靈智·一乘·金剛寶藏·法身藏·自性清淨妙藏·三達·三無爲·三明·一諦一道·獨法 등을 자세히 풀이하여 밝혔다. 이 經宗要義語 및 法數들을 저자 元曉는 88德이라 하여 스스로는 개략을 밝힌다(略顯八十八德)라고 하였으나 실은 자세히 밝힌 편인데, 특히 『十號經』·『涅槃經』·『瑜伽論』·『佛性論』등의 經論을 인용하여 해석한 十號와 十八不共法과 十力 및 一乘 등은 분량이 많으며 그 중에서도 十號의 설명이 가장 길다. 그리하여 別釋이 끝난 다음의 경문인 “佛子, 一切聖果無量功德藏中 不可說不可說果 是果一道.”의 글귀를 이 대목의 總結이라 하여, 먼저 義果를 들고 다음에 道同을 맺은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別釋의 果 안에 세 갈래가 있는 가운데 첫 번째 釋體果와 두 번째 釋義果의 두 갈래는 앞에서 보아 마쳤으므로, 이제는 세 번째의 重顯(明) 體義二果를 풀이할 차례이다. 이 重顯體義二果에는 別顯과 總結의 두 갈래가 있으며, 다시 別

顯에 明體果와 顯義果의 둘이 있다고 하였다. 먼저 體果를 밝히는 부분의 經文은 “佛子 果體圓滿 無德不備 理無不周 …… 一覺相 淨明無二.”인데, 이 가운데 10句가 있어서 앞쪽 5句는 正明이고 뒤의 5句는 結成이라고 하여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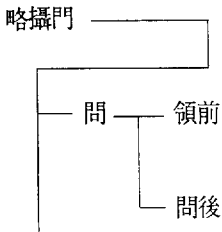
다음의 顯義果는 경문의 “佛子 是果獨法圓明常住 … 是人已爲三世諸佛受佛職位.” 부분에 해당되며, 여기에 ① 舉體果以標義果, ② 就義果顯其差別, ③ 明建立義果之意, ④ 示能解義果之利的 네 갈래로 나누어 풀이하였다. 여기에서 重顯二果의 두 갈래 가운데 첫 번째인 別顯이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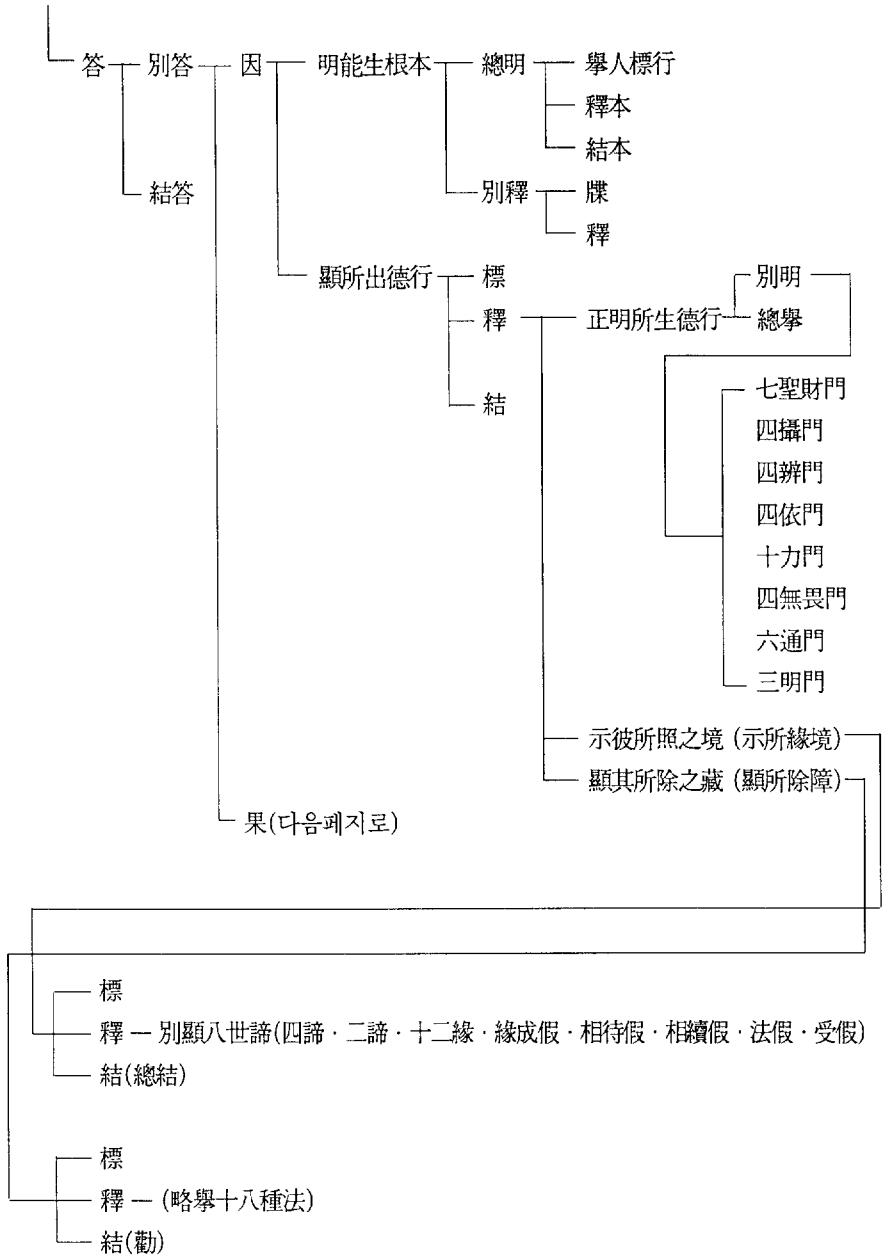
경문의 “佛子, 其果不可說不可知…”에서 이 품의 마지막인 “汝諸大衆 善自受持.”까지가 總結에 해당된다. 이 중에 “而就名相法中說名相法” 아래는 假說의 二果差別을 밝힌 것이라 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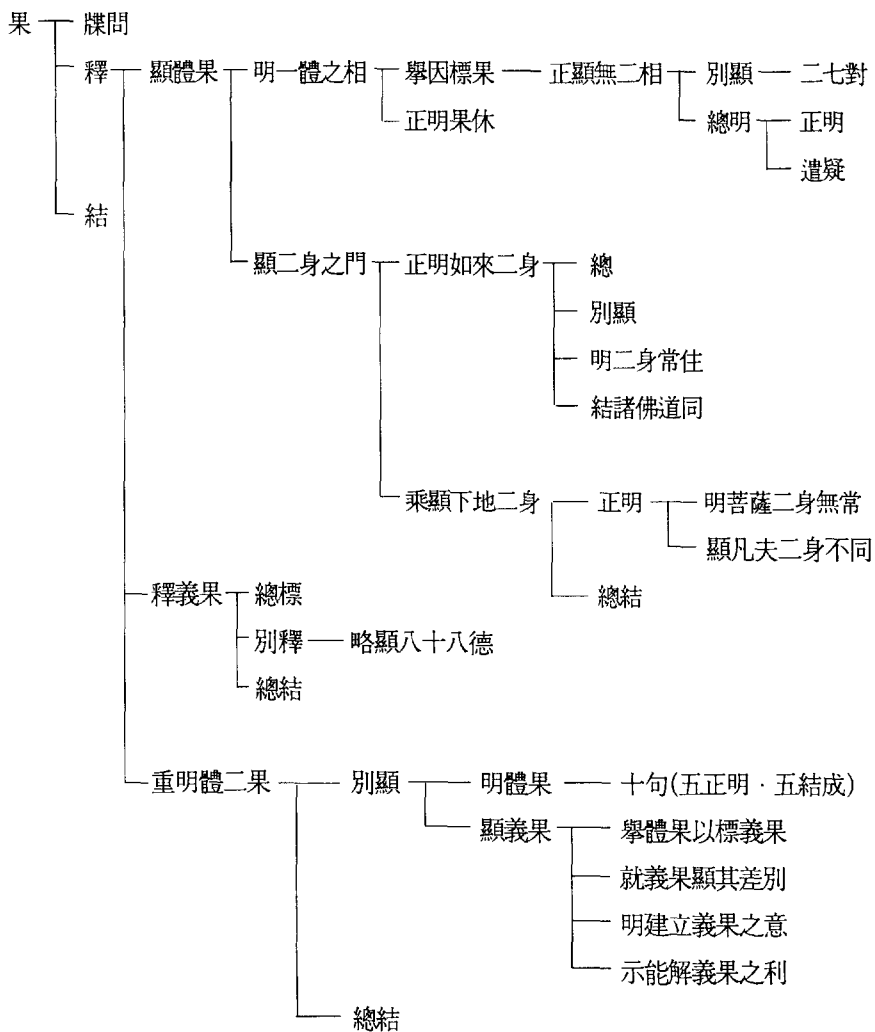
“부처님의 대답 안에 두 갈래가 있으니, 첫째는 因果의 義를 따로 답해 마친 것이며, ‘吾說此因果’ 이하의 경문은 두 번째의 매듭지은 대답이다.”(佛答之內有二分. 第一別答因果義竟. 吾說以下 第二結答).

라고 하여, 因果品疏釋의 끝을 맺었다.

### 因果品疏釋 科表







## 5. 大衆受學品 풀이

『本業經』의 일곱째 품인 「大衆受學品」<sup>114)</sup>을 疏釋하면서 저자는 먼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이 품의 설명부터 시작하고 있다.

正說分 안에 두 갈래로 나누인 가운데 첫 번째의 如來爲說分을 마쳤으며, 이 아래의 두 번째는 大衆受學品이 된다. 受란 受戒이며, 學이란 學行이다. 일어나지 않고 한자리에 앉아서 十戒를 받고, 그로 인해 六入을 배워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르게 한다. 이 가운데에 그러한 뜻을 밝히고 있으므로 受學品이라 한다.

라고 한 다음, 이 품의 經文을 물음(問)과 대답(答)의 두 갈래로 나누었다.

問에는 또한 序儀意와 正發問의 둘로 갈랐으며, 發問 중에는 領前과 問後로 나누었다.

答 가운데에는 네 갈래가 있으니 첫째는 放光集衆이고, 두 번째는 歎問勸學이며, 세 번째는 許說이고, 네 번째는 正答이다.

지금까지 이 疏에서 저자는 반드시 科門의 분류를 먼저 하면서 몇 갈래가 있으니 무엇 무엇이라고 명목부터 열거해놓은 다음에 각각 문제들을 풀이해 왔다. 이 품에 들어와서도 처음부터 “在文有二 先問後答 問中亦二…”로 시작되어 여태까지의 방식 그대로였으며, 이 答의 부문에 들어와서도 “答中有四”라 하여 여느 경우와 아무런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그 네 가지 명목을 먼저 열거하지 않고 한 문제씩을 들고는 거기에 설명을 잇따라 붙이고나서 다음 번의 것을 들고 그 해석을 가하는 방식으로 하였기 때문에, 약간 헛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편의상 지금까지의 예에 따라 네 가지 명목을 앞 자리에 함께 열거해 놓은 것이다.

疏에서는 “一者는 放光集衆이니 한 자리에 앉아서 受學하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한 다음에,

114) 앞에 나온 『大正藏』 p.1020 中~1022 中.

二者는 歎問勸學이다. 이 가운데 7보살에게 고한 것은 華嚴會중의 일곱 會主이기 때문이다. ‘能問三觀(經 本文)이란 물음 가운데에서 말한 ‘受學修道’를 가리킨 것으로 修道란 말은 三觀의 수행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말한 ‘法界諸佛自性清淨道’란 물음 가운데의 ‘從始至終——具行’의 부분을 보인 것이며, 그 다음의 ‘一切菩薩所修明觀法門’이란 물음의 ‘次第<sup>115)</sup>入菩薩位者’를 가리킨 것이다. 또 이 세 마디(三句)는 처음은 總이고 나중은 別이다.

라고 하여, 3句의 總(三觀 受學修道)과 別(제2句와 제3句)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이 대목에서 7보살이란 이 經에 나온 文殊보살·普賢보살·法慧보살·功德林보살·金剛幢보살·金剛藏보살·善財童子보살을 가리킨 것이다.

그리고 나서

佛子 我今更<sup>116)</sup>重說’ 이하는 세 번째(第三) 許說이며, ‘若一切衆生’ 이하는 네 번째(第四) 正答이다.

라고 하여, 許說엔 분단이나 설명없이 正答의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이 대목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앞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一者 二者로 되어 있었는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第三 第四라 하고 있는 점이다.

저자는 이 正答에 別答과 總答의 둘이 있다고 하여, 다시 別答을 受와 學의 둘로 나누었다. 受에는 標·釋·結의 셋으로 나누고, “標란 信을 들어서 戒를 標한 것이니, 요컨대 먼저 信을 일으키고 바야흐로 戒를 받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였

115) 위의 『大正藏』 p.1020 中에는 이 ‘次第’를 위로 붙여 ‘從始至終——具行次第. 入菩薩位者.’라고 하여 오히려 ‘入菩薩...’과 떼어 놓았다.

116) 『韓佛全書』(1, p.521 中)에는 이 更에 註를 달아 “經作便”이라 하여, 『本業經』에서는 更이 아닌 便으로 되어있는 것처럼 하고있다. 그러나 『高麗大藏經』을 저본으로 삼고 있는 『大正藏』(24, p.1020 中)에서는 이 更을 그대로 쓰고 거기에 註를 달아 宋·元·明 三本에는 便자로 되어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이 疏의 更자는 誤字가 아니고 본디 그렇게 썼을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인 釋을 廣釋이라 하여 여기에 ① 受戒法用, ② 受戒方便, ③ 明正授戒, ④ 諸門分別의 네 갈래로 나누었다. 두 번째의 受戒方便에는 三禮三寶·敬受四依·即悔過의 셋으로 나누고,

만일 小乘의 受戒作法에 준한다면, 이 가운데의 敬受四歸依를 응당 올바른 授戒라 하겠으나, 다만 이 부분 經文의 문세를 살펴보면 이 敬受文은 正授戒가 아니니, 이는 먼저 受戒하고 나중에 悔過하는 것이라 이치에 맞지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을 방편이라 판단한 것이다.(故判此文方便也).

라고 풀이하였다.

세 번째의 明正授戒 곧 바른 授戒를 밝힌 것에도 ① 牒前悔過 標正與受, ② 正授十戒, ③ 結歎戒德의 셋으로 나누었다. 네 번째의 諸門分別은 경문의 “佛子 若過去未來現在一切衆生… 然後 爲說瓔珞經同見同行.”에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따로 나눈 항목은 없으며 전체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다만捨의 인연에 관해 略有四種이라 하여 네 가지를 들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앞 경문에 이은 “爾時中有百億人 卽從坐起受持佛戒”의 대목을 앞의 別答 중의 첫 번째인 ‘受’를 밝힌 부분의 셋째가 되는 結 곧 總結로 삼고 있다. 그래서 “卽從坐起受持佛戒란 이른바 여기에 한번 앉아서 비로소 戒를 받고는 이 자리에 앉아 일어나지 않고 六入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경문의 “其名梵陀首王共無數天子…” 이하를, 疏에서는 ‘答’門의 맨 처음 네가지 나뉜 가운데의 네 번째인 ‘正答’ 중의 첫째 ‘別答’에서 다시 두 번째가 되는 ‘學’ 곧 明學의 부분으로 삼고 있다. 이 중에서 別明과 總明의 둘로 나누었으며, 別明 가운데에서 곧 六入을 밝혔다. 물론 六入은 六位 곧 42賢聖位에 수행하여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六位 곧 42賢聖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117) 위의 『大正藏』 p.1021 中).



한다. 여기에서 저자는,

六入의 글 가운데에 모두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 계위에 들어감을 밝혔고 (明入位), 다음에 수행공부를 밝혔다(顯學行). 처음(이 대목의 經文)의 말 중에 '修十戒滿足入初住位' 라고 한 것은 바로 入位를 밝힌 것이다. '復從是住修行百法觀門' 이하의 글은 修(學)行을 드러낸 것이다. (六入文中皆有二句 先明入位後顯學行 初中言修十戒滿足入初住位者 是明入位 復從二下次顯修行)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顯學行 곧 수행을 밝힌(顯修行) 이 대목의 百法觀門 수행인 이른바 十信·十進·十發趣·十乘·十金剛·十隨喜·十戒·十願·十護·十廻向에 대해 풀이를 하였다. 여기서의 十信은 十住의 初位에 들어가기 이전의 十信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華嚴經』에서 설하고 있는 보살의 열 가지 깨뜨려지지 않는 믿음(十種不壞信)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여 저자는 다음과 같이 옮기고 있다.

十信이라고 말한 것은 『大經』<sup>118)</sup>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다. 보살은 열 가지의 깨뜨려지지 않는 믿음(十種不壞信)이 있는데, 어떠한 것이 열가지 인가? 이른 바 於一切佛不壞信·於一切佛法不壞信·於一切聖僧不壞信·於一切菩薩不壞信·於一切善知識不壞信·於一切衆生不壞信·於一切菩薩大願不壞信·於一切菩薩行不壞信·於恭敬供養一切諸佛不壞信·於教化一切衆生成就菩薩巧妙方便不壞信. 이를 열가지라고 한다.<sup>119)</sup>

그리고 十進은 보살에게 있어야 할 열가지 정진(菩薩有十種精進)이며, 十發趣란 이른바 十念이고 十乘은 十慧, 十金剛은 十禪, 十隨喜는 十施, 十護는 열 가지 버

118) 이 大經은 東晉 佛跋跋陀羅譯『大方廣佛華嚴經』(60권본)을 일컫는 것이며, 여기에 인용한 대목은 이 經의 卷39, 「離世間品」(大正藏 9, p.646 中下)에 들어있다.

119) 앞에 나온 『韓佛全書』 p.522 上. 拙稿, 「本業經疏를 통해본 元曉의 信觀」(元曉學研究 2집, 1997) p.153~4에서 이 十信을 번역 및 언급한 바가 있다.

려야할 魔業이라 하여 설명하였는데, 十進에 대해서도 열 가지를 자세히 經說에서 이끌어와 설명했으나 나머지는 간략하게 한 마디씩의 설명으로 그쳤다. 이 열 가지 중에서 十戒·十願·十廻向의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되어 있다. 여기에서 저자는

이 十十중에 十念과 十願은 「十地品」(『華嚴經』)에 나와 있고, 그 나머지 8門은 「離世間品」에 나와 있다. 갖추어 수행하고자 하는 이는 그 원문을 살펴서 이와 같은 차례로 入行과 入向과 入地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어서 저자는 “無垢地中”이라 하여 經文의 “…入無垢地。佛子，復從是地以一照智 了一切業因業果 法界無不一觀以智知 一切衆生識始起一相住於緣。順第一義諦起名善 背第一義諦起名惑”<sup>120)</sup>의 대목에서 특히 ‘一切…於緣’의 句를 들어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一切衆生識始起一相住於緣’이라고 한 말은 麁相을 말한 것이니, 識에는 세 가지(三品)가 있는데 가장 거칠은 것(最麁末)은 이른바 六識이며, 그 중간 것(中品)은 末那識이고 가장 미세한 것(細品識)은 바로 本識으로서 모든 識의 으뜸이 되므로 始起라 일컫는다. 始識 안에 세 가지 細相이 있으니, 이른바 業相과 轉相 및 現相인데 이 세 가지 相은 『起信論』에 나온다.

지금 말한 ‘始起一相’이란 바로 業相이니, 청정한 마음의 성품이 無明의 바람으로 인해 움직이는 것이 첫 業相이기 때문에 一相이라고 한다. 一相이 이미 움직이면 반드시 인연에 의해 되어진 것이므로 緣에 머문다고 한다. 이 一相에는 곧 두 가지의 작용이 있으니, 첫째는 청정하게 아는(淸解의) 작용이며 둘째는 혼미한 작용이다. 예를 들면 마치 큰 바다의 물이 파도가 일어날 때에도 맑은 성품을 잃지 않는 것과 같으니, 이는 본래 청정함에 따른 것이다. 識 가운데의 淸解작용도 또한 마땅히 그러

120) 『大正藏』 24, p.1021 下. 떼어쓰기는 여기에 있는대로 따르지 않았다.

함을 알아야 할 것이니, 움직일 때도 本覺의 성품을 잃지않는 것은 곧 이러한 本覺의 이치에 따라 물든 것이다. 흡사 經에 말씀한 第一義諦에 순응하여 일어난 것을 썩이라 일컫는다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또 물이 울렁거릴 때 혼탁해지는 작용이 있으니, 識 가운데의 미혹한 작용도 또한 그러함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는 經에서 第一義諦를 등지고 일어나는 것을 미혹이라 일컫는다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 일체 중생의 識이 비로소 一相을 일으켜 인연에 의지한다는 말의 뜻을 해석하였다. 이어서 그 뒤의 經文에 관해 간략한 풀이를 한 다음, “이 나머지의 글들은 이에 준해 알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 대목을 맺었다.

“佛子, 我說菩薩次第六入法門…” 이하의 經文 대목을 두 번째 六入의 總結이라고 하여, 여기에 네 갈래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 六入은 들어가자 않음이 없음을 총결함(一者 總結六入無不入者).

이는 본 경문의 “是六入法門 一切菩薩無不入者”에 해당된다.

두번째,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들어감을 따로 맺음(二者 別結 不起此坐入者).

이는 “我今此座有十四億人 不離本座入此六入法門.”을 가리키는 것이다.

세 번째, 華嚴會의 7처에 들어갔음을 총결함(第三 總結華嚴七處入者).

본 경문의 이 대목은 “我本初得道時 在此樹間說十世界海法門…… 復至祇洹林 說入界品 有十二河沙人 入此六入明門.”에 해당된다.

네 번째, 이 법회에 들었음을 도리켜 매듭지음(第四 還結此會入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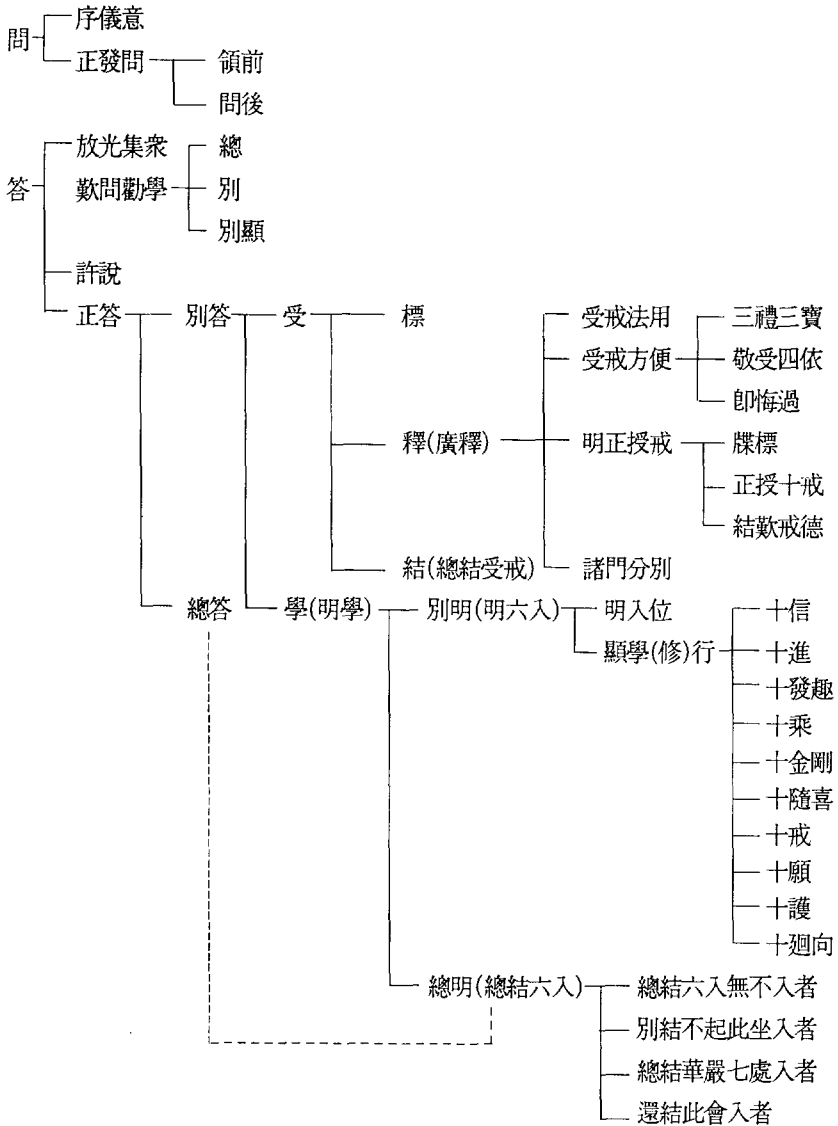
이 부분은 경문의 “今復至此第八會座…”에서 “一切大衆受持 若一無<sup>121)</sup>二無別.”의 이 품 끄트머리까지 이다.

그리고 저자는 마지막으로, “한 부질의 경을 세 갈래로 나눈 가운데 제2의 正說分은 이제 앞에서 마쳤다. (一部之經 有三分內 第二正說 竟在於前.)”

라고 하여, 『本業經』 전체를 3分(序分·正說分·流通分)한 가운데의 正說分과 그 끝자리의 「大衆受學品」을 모두 맺었다.

121) 이 無字를 宋·元·明 3本에서는 若으로 하고있는데 뜻으로는 若이 옳을 듯하다.

### 大眾受學品疏釋科表



## 6. 集散品 풀이(전체 맞춤)

### 1) 流通分으로서의 集散品

이 「集散品」 제8<sup>122)</sup>은 『本業經』의 마지막 품이면서 전체 경의 세 갈래 중 流通分에 해당된다. 疏의 저자도 이 품의 疏釋을 시작하면서 “此下 第三流通分” 곧 이로부터의 「集散品」 경문은 이 경의 세 갈래 가운데 세 번째의 流通分이라고 하였다.

이 품의 본문을 두 갈래로 나누어 먼저 流通의 勸持를 밝히고(明勸持流通), 다음에 유통의 방법을 명시(示流通方法)하였다. 처음의 勸持流通에도 또한 둘이 있으니 첫째는 勸持受教流通이며, 둘째는 現光重勸流通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저자는 경문의 “始行賢者 入九觀定<sup>123)</sup> 四禪四空定滅盡定<sup>124)</sup> 七淨十戒心入定見道度疑正道行知見行斷知見 得入法故禮佛而退.”까지의 대목을 들어서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始行賢者入九觀定’이라고 한 말은 제3果로부터 無學果에 이르러서 비로소 대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七淨’이라고 한 것은 『瑜伽論』에서 말한, ‘무엇을 일러 일곱가지의 청정함(七種淸淨)이라 이름하는가. 첫째는 戒淸淨이요, 둘째는 心이며, 셋째는 見이요, 넷째는 度疑이며, 다섯째는 道非道知見이요, 여섯째는 行知見이며, 일곱째는 行斷知見이다.<sup>125)</sup>’라고 한 것이다. 이 중에서 ‘道非道’라고 한 것은 正見이 앞으로 행할 道이며 邪見은 앞으로 행하여서는 안될 道(非道)이다. 行과 行斷을 여실하게 깨쳐 안다는 것은 네가지의 행적(四種行迹)을 여실하게 깨쳐 아는 것이다. 어떠한 것을

122) 앞의 『大正藏』 24, p.1022 中~1023 上.

123) 『大正藏』(24, p.1022 下)에서는 이 ‘始行…’이 위의 ‘復有十千’과 이어져 있고, ‘賢者’와 ‘入九觀定’ 사이는 떼어져 있으며 이 ‘觀定’과 ‘四禪’ 사이는 이어져 있다.

124) 위의 『大正藏』같은 行의 ‘四空定’ 다음에 ‘盡滅定’이라 있고 거기에 註를 달아 宋·元·明 3 본에는 ‘滅盡定’으로 되어있음을 보이고 있기도 하지만 ‘滅盡定’이 옳으므로 바로잡아 썼다. 그리고 이 ‘滅盡定’과 ‘七淨’ 사이 뿐만 아니고 ‘度疑’까지 이어져 있으나 여기에서는 疏의 뜻에 따라 떼어놓았고, ‘七淨’에서 ‘…斷知見’까지는 같은 뜻이므로 이어지게 하였다.

125) 彌勒菩薩說, 玄奘譯, 『瑜伽師地論』 권94 (大正藏 30, p.838 上)에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戒·心·見 등의 일곱가지 명칭 밑에 똑같이 淸淨이 붙어 있으며 知見에는 다 智見으로 되어 있다.

네가지라고 하는가. 첫째는 苦遲通行이요, 둘째는 苦速通行이며, 셋째는 樂遲通行이고, 넷째는 樂速通行이다.

여기에서 최초중의 자취를 了知하여 일체를 마땅히 끊고 초월하는 뜻이기 때문이며, 번뇌에 연유하지 않고 얽매임을 벗어나는 뜻이기 때문이다. 여실하게 了知하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한 갈래를 응당 끊게 된다. 그와 같이 깨쳐 알면 첫 번째의 전부와 두 번째의 일부분을 응당 끊어버리고 樂速通에 의하여 바르게 부지런히 닦아 모아서 이로 좇아 間斷없이 諸漏를 영원히 다 없애기 때문이다.<sup>126)</sup>

지금 이 (本業經) 경문에서 ‘十戒’라고 한 것은 바로 첫 번째 청정이요, ‘心入定’은 두 번째 청정이며, ‘見道’는 세 번째 청정이고, ‘度疑’는 네 번째 청정이며, ‘正道’는 다섯 번째 청정이며, ‘行知見’은 여섯 번째 청정이고, ‘行斷知見’은 일곱 번째 청정이다. 이 일곱가지 청정(七淨)을 얻음으로써 大乘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에 들음 얻었다(得入法)라고 말한 것이다.

그와 같이 저자는 본 경문에 나온 七淨이 『瑜伽師地論』에 보인 七種清淨이라고 하여, 그 論의 설을 끌어오고 또는 따와서 「集散品」 疏釋의 전체 비중에서 볼 때 좀 특별하게 다룬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 품에서는 이 밖에 풀이한 글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끝으로 流通分 곧 集散品の 글을 두 갈래로 나눈 두 번째 갈래인 流通方法을, 경문의 “爾時座中有八千菩薩各從座起 一金剛華菩薩白佛言…”에서 끄트머리인 “…十劫不減無窮無盡 各各歡喜奉行 作禮而退.”까지를 그 대상 범위로 삼았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분별하여 끝을 맺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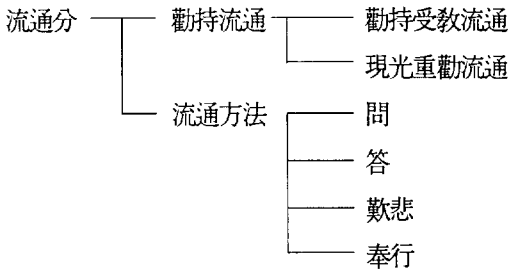
“爾時 이하가 두 번째의 流通方法인데, 이 가운데에 네 갈래가 있다. 첫째 問,

126) 이 疏文의 “此無間永盡諸漏”까지 곧 앞의 七淨(七種清淨)을 옮긴 글 바로 다음에 이어있는 이 대목의 글도 疏釋者의 말이 아니고, 바로 앞의 註에 나온 전거인 같은 『瑜伽師地論』(같은 大正藏 p.838 中)에서 옮겨온 것이다. 다만 이 부분은 앞의 七種清淨을 설명하는 원문중에서 “又於正見前行之道 如實了知 是爲正道 …… 正勤修集 從此無間永盡諸漏.”의 글 가운데에 필요한 부분만을 적당하게 따서 옮겨놓은 것이다.

둘째 答, 셋째 歎悲, 넷째 奉行이니, 경문에 나타난 내용으로 알 수가 있다.(爾時以下 第二流通方法 於中有四 一問 二答 三者歎悲 四者奉行 文相可知.)”

여기에서 疏釋者 元曉는 『本業經疏』의 전체를 마치고 있다.

集散品疏釋 科表



2) 맺음 글

지금까지 『菩薩瓔珞本業經』을 疏釋한 元曉聖師의 『本業經疏』를 대강 고찰해 보았다. 『本業經』이 中國佛敎에 있어서 經錄史的인 면에서나 또는 經典成立史的인 문제점 등으로 미루어 근래 학자들 사이에 疑經 곧 中國成立經으로 인정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本業經疏』 자체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元曉보다 훨씬 앞선 隋초의 天台 智顛도 그 敎觀 확립에 이 『本業經』을 眞佛說로 중요하게 원용하였는데, 新羅의 元曉가 이를 佛說로 받아들여 疏釋을 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경전에 담겨있는 佛說과 그 敎義만을 해석하여 다루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그였으므로 현재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남아서 전하는 『本業經疏』의 「大意門」(疏序)에서 그는, “如來께서 無緣의 大悲로 저 두 부류(著有相者와 滯空無者)의 사람들로 하여금 佛道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이 두 권의 『瓔珞經』 법문을 설하신 것이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大意門」에서 또, “길고도 긴 생사의 흐름에 윤회하는 중생(長流者)으로 하여금 그 흐름을 그치게하여 八不中道の 평탄한 길에 나아가 七慢의 高心を 꺾게하며, 혼미함에 빠져있는 중생(惛醉者)이 깨어나 六入의 明門을 배워서 五住惑의 캄캄한 마구니 진영(闇障)을 항복받게 하고자(이 經을 說)하심이다. 그리하여 복덕과 지혜의 두 노(兩楫)를 갖추어 매어 佛法의 大海를 능히 건너고, 止(禪定)와 觀(智慧)의 두 날개를 나란히 움직여서(雙修하여) 法性的 허공을 높이 날도록 하였으니 이 것이 『本業經』의 큰 뜻이 된다.”라고 하여 經說의 참뜻을 드러내었다. 그리고는 이어서, “그 教說은 문장과 도리가 다함께 정교(文理俱精)하다. 뜻은 지극히 미묘하고 사연은 빼어났으며, 글은 매우 잘 망라하였고 말은 자세하다.”라고 극구 찬양하였다.

元曉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수행의 階位는 위계마다 德을 갖추었으며 事相은 광대하고 理法은 窮極하다. 因果의 원류를 다 밝혔고 범부와 성현의 始와 終을 궁구하였으며, 천 가닥의 삼라만상을 비추었고 一味의 洪通을 밝혔다. 그리하여 六種性和 六忍으로 八會의 광대한 法要를 종합하였고, 三觀과 三諦로 六百의 玄宗을 꿰뚫었으며, 二土와 二身の 법문으로 시방을 함께하여 널리 나투었으니, 一實道와 一佛果로 萬德을 포함하여 모두 다 윤회하였다. …그러므로 『菩薩瓔珞本業經』이라고 한다.”라고 하여, 이 經이 더없이 훌륭하고 殊勝한 佛說 법문임을 간요하게 잘 밝히고 있다. 이제 이 글은 이미 앞에서 본 바 있는 『本業經疏』의 「大意門」(序)에서 이끌어온 것인데 여기에 그의 『本業經』觀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그는 『本業經』을 그와같이 보고 확신하였으므로 이 經說을 자신있게 풀이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本業經』은 현재 大乘律部の 戒經으로 入藏되어 있으나 실은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六位 곧 42賢聖의 수행 법문인 六入明門을 주제로 삼은 경전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의 序分인 「集衆品」의 첫머리에서 부처님이 始成正覺處인 道場樹 아래로 다시 나아가 앉으시어 놓으신 마흔 두 가지 빛(四十二光)은 바로 이 경전에서 부



처님이 설법하실 42賢聖 곧 六入法門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다. 거기에는 佛本業瓔珞이라 하여 十住·十行·十廻向·十地·無垢地·妙覺地の 이름이 나와있다. 그리고 그 다음 품이 「賢聖名字品」인데 42賢聖의 이름을 주제로 삼고 있으며, 세 번째 품인 「賢聖學觀品」도 그 제목 그대로 三賢(十住·十行·十廻向)과 三聖(十地·無垢地·妙覺地)의 수행법(修學觀行法)이 자세히 설해져 있다.

하권의 「釋義品」부터는 제목에 '賢聖' 이 안들어있으나 내용은 모두 六入에 관한 것이다. 「釋義品」은 十住·十行·十廻向·十地·無垢地·妙覺地の 義相에 대한 부처님의 설법이며, 다음의 「佛母品」은 賢聖의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二諦와 中道第一義諦가 일체 제불 보살의 智母임을 밝힌 법문이고, 「因果品」은 賢聖正法の 因果二相에 대하여 역시 敬首보살의 물음을 받아 부처님이 詳說하신 것이며, 「大衆受學品」 또한 모든 대중이 受學修道하여 菩薩位에 들어가는 차례 곧 六入의 차례에 대한 법문이다. 마지막의 流通分인 「集散品」에서 부처님은 六入法門의 功德이 무량함(我說菩薩次第六入法門 無量功德)을 들어 六入의 明門을 마무리하면서, “불자여, 먼저 마땅히 청법자를 위해 보살의 법계를 주고 다음에 보살의 본행인 六入법문을 설하라”(佛子 先當爲聽法者 與授菩薩法戒 然後爲說 菩薩之本行六入法門)라고 당부하셨다.

그러한 『本業經』이므로 元曉는 六入법문을 중심으로 하는 經說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바르게 해석하였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 앞에서 그의 『本業經』觀을 보여주고 있는 疏釋의 「大意門」(疏序)을 보았지만, 그 꼬트머리의 “故言 菩薩瓔珞本業經也”라고한 바로 앞쪽에 “보살의 本行(또는 本業行)을 열어서 여섯 층의 瓔珞을 밝혀보이셨다.”라고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六重의 瓔珞’이란 『本業經』에 보이고 있는 銅寶瓔珞·銀寶瓔珞·金寶瓔珞·琉璃寶瓔珞·摩尼寶瓔珞·水精寶瓔珞을 일컫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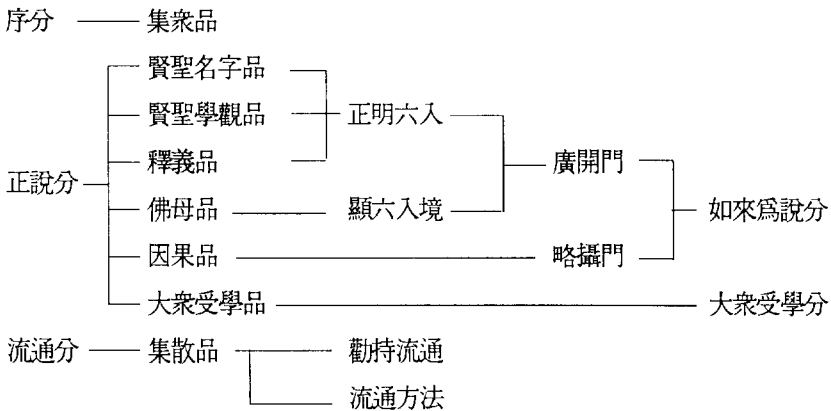
이 『本業經』에 의하면 銅寶瓔珞은 六種性의 첫 번째인 習種性 곧 十住位의 보살을 비유해서 일컫는 말이며, 銀寶瓔珞은 性種性 곧 十行位의 보살을 일컫고, 金寶

127) 앞에 나온 『本業經』 卷上 賢聖學觀品 3(大正藏 24, p.1012 下~1013 上).

瓔珞은 道種性 곧 十廻向의 보살을 일컬으며, 琉璃寶瓔珞은 聖種性 곧 十地보살을 일컫고, 摩尼寶瓔珞은 等覺性 곧 無垢地보살을 일컫으며, 水精寶瓔珞은 妙覺性 곧 妙覺無上地를 일컫는 것이다. 이 경에서는 瓔珞에 관하여, “일체의 보살은 공덕의 영락으로 보살의 두 가지 범신을 장엄한다. 보살은 백만 이승지의 공덕행을 영락으로 삼아서 간직한다.”<sup>128)</sup>라고 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元曉는 이 『本業經』을 한 마디로 일러, “부처님께서 보살 본업의 行道를 열어서 여섯 층의 영락 곧 六入明門의 보살수행공덕을 밝혀보이신 경전이다.”(開菩薩之本行 示六重之瓔珞 故言菩薩瓔珞本業經也)라고 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각 품마다 그 해석의 科表를 작성해 붙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이 疏釋을 통해 볼 수 있는 전체의 科分을 대강 다음과 같이 작성해 보았다.

本業經疏 科門



128) 위와 같음 (위와 같음, p.1012 中).

“…是一切菩薩功德瓔珞 莊嚴菩薩二種法身 菩薩所著百萬阿僧祇功德行為瓔珞.”

# 元曉의 中邊分別論疏에 관한 研究

李 萬\*

## ◆ 내 용 차 례 ◆

緒 言

I. 『中邊分別論』의 敎義

II. 『中邊分別論疏』의 內容

1. 元曉의 法相關係 章疏

2. 『中 分別論疏』와 그 科分

3. 『中邊分別論疏』에 인용된 諸經論의 內容

III. 『中邊分別論疏』의 思想

1. 元曉의 菩提分法에 관한 修習對治

2. 元曉의 修住와 得果에 관한 見解

IV. 結 語

## 緒 言

우리 나라의 역대 불교사에서 볼 때에 원효의 자취는 그 누구 보다도 사상적인 면에서나 포교적인 면에서 가장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다.

여기에서 고찰코자 하는 『中邊分別論疏』에 관한 것은 우선 이 章疏가 원효의 법상관계에 대한 각 종의 저술 중에서 『二障義』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하게 현존해서 그의 법상관을 어느 정도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현재 전해지고 있는 이 『中邊論疏』는 그 전문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4권 중에서 제3권만이 현존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충분히 그의 유식사상을 살펴 보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전하는 이 제3권은 그 내용이 37조도품에 관해서 보살과 성문, 연각 등 三乘들이 실제적으로 이를 어떻게 對治하는가를 논술한 제4 對治修住品과, 이와

\*동국대학교 불교학 교수.

같은 수습에 의해서 얻어지는 삼승들의 修住位를 因位를 비롯하여 作事位 등 18 위에 관한 논술로 일관된 제5 修住品과, 수행에 의한 得果를 異熟果 내지 增上果 등 5果로 나누어서 논하고, 이어서 果를 다시 上上 내지 無上의 10과로 총괄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 제6 得果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상에 관한 중요한 논술들은 언급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지만 중생들이 윤회하는 근본은 能取와 所取에 의한 虛妄分別의 결과이고, 이러한 분별은 畢竟 空이기 때문에 共相인 眞如와 계합되는 과정을 논술하고 있으므로 교의적으로 볼 때는 유식사상의 전개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아무튼 여기에서는 이『中邊疏』가 제3권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원효가 소승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37보리분법에 관해서 어떻게 대치코자 하였는가와 修住와 得果에 관한 그의 논술을 집중적으로 고찰코자 하며, 이에 인용된 각종 典籍들의 내용을 찾아서 이를 비교·검토하여 참고 자료로 삼고자 하는 의도 등도 함께 있는 것이다.

## I. 中邊分別論의 教義

인도 대승불교의 典籍 가운데의 하나인 『中邊分別論』(2卷)은 미륵보살이 지은 『辯中邊論頌』에 관하여 世親이 논석한 것을 眞諦(499~569)가 번역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瑜伽와 唯識의 教義를 통하여 대승불교가 中道思想을 信心하고, 了解하며, 修行과 證得하는 등의 네 가지 修行法相을 통하여 闡明됨을 밝힌 것이다.<sup>1)</sup> 다시 말하자면 題名 중에서 '邊'이란 서로 대립되는 극단적인 관념들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兩極端을 떠나서 대립을 止揚하는 입장을 밝히는 중도사상에 근거하여 瑜伽行派의 교리를 조직한 것이 '中'인데, 이는 '中道'를 일컫는다는 것이다.

1) 李種益, [中邊分別論 卷下 元曉疏 解題] 『元曉聖師全書』(元曉宗 元曉全書刊行會, 1988), p.537.

진제가 이를 번역한 시기는 陳의 永定 2년(558)으로서 그는 또한 이 논전에 주석을 가하여 『同論疏』(3卷)를 지었다.

이 『중변분별론』은 모두 7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sup>2)</sup>

1) [相品]에는 모두 20송과 長行의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생들의 虛妄分別에 의하여 能執과 所執의 諸相이 일어나므로 이들을 여의면 일체의 법이 중도에 계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三性 중에서 遍計所執性的 것과 依他起性的 것들은 각각 분별과 인연에 의하여 생기며, 圓成實性은 능취와 소취의 空性에 의지한다고 한다. 이러한 공성에는 內空과 外空 및 非有性空 등 16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sup>3)</sup>

2) [障品]에는 17송이 기록되고 있지만 판연하지는 않다. 여기에서는 진리의 증득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의 장애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먼저 이러한 장애 가운데서 보살종성인 여러 사람들에게는 번뇌장과 一切智障인 遍障이 있으며, 성문승인 사람들에게는 一方障이 있고, 거친 번뇌인 重障과 평등한 것 중에서 그 지어감에 따라 낱고 죽음이 있는 平等障과 열반에드는 것을 장애하는 取捨障 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번뇌장에는 九結이 있고, 善 등 열 가지 淨法을 장애하는 30 가지와 四念處, 四正勤 등 菩提分과 10波羅蜜 및 10法界 등에도 역시 장애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sup>4)</sup>

3) [眞實品]에는 약 24송이 장행과 함께 설해져 있는데, 수행자가 證知해야 할 10종의 진실 즉, 我見 등을 對治하는 방법으로서 根本, 相, 無顛倒 내지는 勝智 등의 진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으며,<sup>5)</sup>

2) 眞諦 譯, 『中邊分別論』 卷上(『大正藏』 31. p.451上), “此七義是論所說 何者爲七一相二障三眞實四 研習對治五修住六得果七無上乘.”

3) 上同(『大正藏』 31. pp.451上~452下), “此中虛妄分別者 謂分別能執所執 有者 但有分別 彼處者 謂虛 妄分別 —— 此空有十六 一內空 二外空 三內外空 四大空 —— 十五非有空 十六非有性空 如是略說空.”

4) 上同(『大正藏』 31. p.453中~下), “此中遍障者 煩惱障及一切智障 爲菩薩種性諸人二障圓滿故 一方障者 煩惱障 爲聲聞性等諸人 重障者 —— 善法有三障 一者不修行 二非處修行 ——.”

5) 上同(『大正藏』 31. p.455中), “如是十種眞實 何者爲十一根本眞實 二相眞實 三無顛倒眞實 —— 十勝智眞實 勝智又十種眞實 爲對治十種我執應知 ——.”

4) [對治修住品]에는 12송 半과 함께 37보리분법을 보살과 二乘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대치하는가를 서술하고 있으며,<sup>6)</sup>

5) [修住品]에는 3송 半을 구체적인 수행방법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사람은 이미 자기의 성품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는 因位와 발심한 위치인 入位 및 모든 부처님들이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변화하신 위치인 作事位 修住 등 18위를 들고, 이를 또한 法界位 중의 세 가지의 계위인 不淨位와 不淨淨位 및 清淨位 등에 배대하여 기술하고 있다.<sup>7)</sup> 이어서

6) [得果品]에도 2송 반이 그 논석과 함께 기술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수주한 사람들이 체득한 경지를 설명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5과가 있는데, 그것은 각각 報果와 增上果와 隨流果와 功用果와 相離果 등이라는 것이며,<sup>8)</sup>

7) [無上乘品]에는 약 29송 반이 장행과 함께 기술되고 있는데, 三乘 가운데서 대승법이 최고의 가르침임을 修行과 境界와 集起 등에 관한 이론을 통하여 전개하고, 이의 실천방법으로서 十波羅蜜說 등에 관한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sup>9)</sup>

한편으로 진제 보다 얼마 후에 玄奘법사(601~664)도 세친의 이 논석을 唐 龍朔 원년(661)에 번역하여 그 제명을 『辯中邊論』(3卷)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同本異譯인 것으로서 그 내용상의 차이점을 본다면, 진제의 중변분별론이 제7 무상승품에서 無上の 의미를 설명하는 중간에 論名을 밝히는 結頌이 나오는데,<sup>10)</sup> 이는 현장의 변중변론과 같이 무상에 관한 의미를 총괄한 다음에 올 내용인 것이

6) 眞諦譯, 『中邊分別論』卷下(『大正藏』31. p.458上), “修習對治者 三十七道品 修習今當說——.”

7) 上同(『大正藏』31. p.459下), “修住位有十八 何者十八 一因位修住 若人已住自性中 二入位修住 已發心—— 十八作事位修住 諸佛化身—— 若略說此位有三 一不淨位住者—— 二不淨淨位住者—— 三清淨位住——.”

8) 上同(『大正藏』31. p.460上), “清淨果者 滅離諸障 此位有五種次第應知 一者報果 二者增上果 三者隨流果 四功用果 五相離果——.”

9) 上同(『大正藏』31. p.460中), “無上有三種 大乘中因此三義乘成無上 何者三義 一修行無上 二境界無上 三執起得無上——.”

10) 上同(『大正藏』31. p.463下), “如是此論名中邊分別了中道故 復有分別中道及二 故是中兩邊能現故 離初後此中兩處不著 如理分別顯現故——.”

고, 또한 구성상에서 본다면 대체적으로 일치하나 인용되고 있는 『辯中邊論頌』은 진제의 것이 적다. 왜냐하면 현장의 신역에서는 偈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진제의 구역에서는 長行의 註釋으로 되어 있다든지 신역에서는 한 계승으로 취급되어 있지만 구역에서는 半頌 혹은 4분의 3송 등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역이 당시 印度에서 유행하던 護法논사의 해석에 주로 의지했다면 구역인 이 진제의 것은 호법 이전의 교설을 인용했기 때문에 교리상에 다소간의 상위점들이 표출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譯文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sup>11)</sup> 그러나 현장의 『변중변론』에 대해서 주석을 가하여 『同述記』(3卷)를 쓴 窺基대사(632~682)는 진제의 번역서에 관하여, “예전에 진제가 양 나라 때에 번역한 것은 문장이 틀리고 뜻이 상위하기 때문에 다시 이를 번역한다”<sup>12)</sup>고 하면서, 진제의 『중변분별론』을 전적으로 배척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서 같은 진제역의 『十八空論』이 이 『중변분별론』의 일부를 기본으로 하여 쓰여졌다는 것이다.<sup>13)</sup>

현장의 『변중변론』은 그 구성이 1) [辯相品], 2) [辯障品], 3) [辯眞實品], 4) [辯修對治品], 5) [辯修分位品], 6) [辯得果品] 및 7) [辯無上乘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논전은 중도와 편견에 관한 수행을 논설했기 때문에 辨中 이라 이름한다”<sup>14)</sup>고 그 題名을 풀이하고 있다. 세친의 이 [변중변론]은 安慧논사에 의해서도 複註되어 그 完역이 西藏大藏經에 수록되고 있으며, 그 梵文의 斷片도 최근 프랑스의 학자들에 의하여 발견되었는데 이를 일본인들이 정리하였다.<sup>15)</sup>

11) 『佛書解說大辭典』제8권(大東出版社, 昭和 43), p.36, 同 제9권, p.379 및 「辯中邊論 解題」『國譯一切經 瑜伽部』十二(大東出版社, 昭和 57), p.119 참조.

12) 窺基撰, 『辯中邊論述記』卷上(『大正藏』44, p.1上~中), “舊眞諦已譯於梁朝 文錯義違更譯茲日.”

13) 宇井伯壽, 『印度哲學研究』제6(岩波書店, 昭和 40), PP.175~204 참조.

14) 玄奘譯, 『辯中邊論』卷下(『大正藏』31, p.477中), “此論能辯中邊行故名辨中邊.”

15) 「辯中邊論 解題」『國譯一切經 瑜伽部』十二(大東出版社, 昭和 57), p.123 참조.

## Ⅱ. 中邊分別論疏의 內容

### 1. 元曉의 法相關係 章疏

원효가 법상관계의 諸經論에 관하여 주석하고, 저술한 章疏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1) 『中邊分別論』; 『同疏』(4卷)(제3권만 現傳)
- 2) 『辯中邊論』; 『同疏』(4卷)
- 3) 『楞伽經』; 『同疏』(7권 혹 8권), 『同料簡』, 『同宗要』(1卷)
- 4) 『解深密經』; 『同疏』(序文만이 現傳)
- 5) 『大乘廣百論釋論』; 『同宗要』(1卷), 『同撮要』(1권), 『同旨歸』(1卷)
- 6) 『瑜伽師地論』; 『同抄』(5卷), 『同中實』(4卷)
- 7) 『成唯識論』; 『同宗要』(1권)
- 8) 『攝大乘論』; 『同疏』(4卷)
- 9) 『攝大乘論世親釋論』; 『同略記』(4卷)
- 10) 『梁攝論』; 『同疏抄』(4卷)
- 11) 『大乘阿毘達磨雜集論』; 『同疏』(5卷)
- 12) 『究竟一乘寶性論』; 『同宗要』(1卷), 『同料簡』(1卷)
- 13) 『因明論』; 『同疏』(1卷)
- 14) 『因明入正理論』; 『同記』(1권)
- 15) 『判比量論』(1권)(殘卷과 跋文만이 現傳)
- 16) 『二障義』(1권)(現傳)<sup>16)</sup>

16) 이상의 원효의 저술에 관한 것은, 金煥泰 著, 『韓國佛教史概說』(經書院, 1986), PP.74~77 및 『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東國大 佛教文化研究院, 1976), PP.30~34 참조.



이와 같이 직접, 간접적으로 법상교학에 관계되는 원효의 수 많은 저술 중에서 현전하여 그 전체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것은 『二障義』 한 章疏 뿐이고, 『中邊分別論疏』의 제3권과 『解深密經疏』의 서문 및 殘片으로 전해지고 있는 『判比量論』뿐이어서 그의 유가, 유식사상을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같이 보인다. 그러나 다른 불교관련 부분의 章疏 중에서도 그의 유식사상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간혹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종합, 정리한다면 대체적인 윤곽은 잡힐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한 가운데 『해심밀경』에 관한 그의 評釋을 보면,

여래는 一生의 大士(菩薩)에 대하여 깊은 密義를 해명하고, 18(二九)의 圓土에 있으면서 이 了義의 법륜을 펴므로 그 가르침이 지극히 精粹하다. 번거로움을 버리고 진실을 기록하며, 要妙를 건어잡아 늘어놓고, 有無의 법상을 열어 승의의 離邊을 보이고, 止觀의 본말을 밝혀 立破의 眞僞를 분간한다. 가르침은 三藏의 聖教를 궁구하고, 이치는 네 가지의 도리를 다했으며, 수행은 六度を 분별하고, 계위는 十地를 宣說한 것이다.<sup>17)</sup>

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了義로서 설하신 이 해심밀경은 그 내용이 三藏을 궁구한 결과로 진실함과 要妙만을 기록한 것이며, 법상의 유무를 開陳하여 그 離滅와 邊見을 보여서 진위를 분간할 수 있는 유가, 유식관에 들게 하는데, 그 실천으로서 6바라밀행과 보살의 심지설을 선설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어서 왜 이 경전을 『해심밀경』이라고 했는가의 經名에 관한 서술내용에서는,

심지를 수행하여 완성될 때는 원만함과 轉依가 증득되고, 진의된 법신은 불가사의한 것으로서 모든 戲論이 끊어져 하여지는 바가 없게 된다. 하여지는 바가 없으므로 지어지지 못할 것이 없고, 논해지는 바가 없으므로 말하지 않을 바가 없다. 지어지지 못할 것이 없으므로 入相의 교화가 八荒에 두루하고, 문득 일어나 말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三輪의 가르침이 삼천 대천세계에 흘러 더욱 떠들지만 떠드는 설도 일찍이 있지 아니하고, 문득 일어나는 相도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여래의 깊은 밀의이다. 이제 이 경전은 밀의를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題名을 『해심밀경』이라 한다.<sup>18)</sup>

라고 기술하고 있어서, 대승불교에서 보살수행의 근간이 되고 있는 십지를 차례로 닦으면 無所爲와 不作과 無所論과 不言 등으로 표현되는 모든 희론이 적멸한 불가사의한 경지가 증득되는데, 이것이 바로 『해심밀경』의 세계로서 이에 의거하여 경명이 지어졌다는 것이다.

## 2. 中邊分別論疏와 그 科分

원효가 진제의 『중변분별론』에 관하여 주석한 『중변분별론소』는 그 출처가 여러 목록집에서 발견되고 있지만,<sup>19)</sup> 全文은 전해지고 있지 않으며, 전 7품의 내용 중에서 제4 [對治修住品]과 제5 [修住品] 및 제6 [得果品] 등 3품에 관한 주석인 제3권만이 『卍續藏經』과 『韓國佛教全書』에 수록되어 있다.<sup>20)</sup> 또한 이 내용의 일부

17) 徐居正, 『東文選』 권83, [解深密經 序] 『韓國佛教全書』 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553 上에, “是如來對一生之大士 解彼甚深密義 居二九之圓土 轉此了義法輪 其爲教也 極精粹焉 棄繁華而錄實撮要妙而究陳 開有無之法相 示勝義之離邊 明止觀之本末 簡立破之似眞 教窮三藏聖教理盡四種道理 行卽分別六度 位卽宣說十地.”

18) 上同(上同), p.553上~中에, “十地行成之時 證得圓滿轉依 轉依法身不可思議 絕諸戲論 極無所爲 無所爲故無所不作 無所論極無所不言 無不作故入相之化遍八荒而頓起 無不言故三輪之教流三千而彌彌誼之說未嘗有言 頓起之相本來不然 是謂如來甚深密義 今此經者開發密義所以 立題目名解深密經.”

19) 平祚 錄, 『法相宗章疏』(『大正藏』 55, P.1139中), 圓超 錄, 『華嚴經章疏并因明錄』(『大正藏』 55, P.1134中), 永超 集, 『東域傳燈目錄』(『講論錄』 3(『大正藏』 55, P.1157中) 및 義天 錄, 『新編諸宗教藏總錄』 권3(『大正藏』 55, P.1175中).

20) 『卍續藏經』(中國撰述 大小乘釋論部), 第75冊, PP.1~30 및 『韓國佛教全書』 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p.817中~837下.

가 일본의 凝然(1240~1321)이 저술한 『華嚴探玄記洞幽鈔』에도 인용되고<sup>21)</sup>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중변분별론』에 관한 신라인들의 주석서는 원효의 것 외에도 玄一이 지은 [中邊論料簡](1卷)<sup>22)</sup>과 太賢의 『中邊論古迹記』(1卷)<sup>23)</sup>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들은 모두 전해지고 있지 않으며, 현장이 번역한 『변중변론』에 관한 주석서도 역시 원효의 것 외에 道證의 『辯中邊論疏』(3卷)<sup>24)</sup>와 태현의 『辯中邊論古迹記』(1卷)<sup>25)</sup> 등이 각종의 목록에서 보이고 있지만 현전하는 것은 없다.

『중변분별론소』 제3권에서 볼 수 있는 원효의 논석 태도는 어떤 내용을 설명할 때에 그에 관련된 문헌의 내용을 먼저 들고, 이에 관한 동이점을 분별하고 있지만, 누구의 주장만을 취사선택한다든지 是非하는 논법은 止揚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특정한 종파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지 않은 공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각 품을 주석할 때에 먼저 그 품 가운데 설해진 내용을 총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러한 후에 본문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본문의 내용을 竝書하지 않고 그 해석만을 別行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주석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sup>26)</sup> 그 구체적인 주석 방법으로는 먼저 科分을 開示하고, 이어서 문장에 따라서 해석하는 과정에 많은 경론들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총체적인 입장에서는 구역인 『중변분별론』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역인 현장의 [변중변론]에 사용된 용어와 신역 중의 여러 경론들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sup>27)</sup> 이러한 예를 들어 본다면, 제4 [대치수주품]에서 37조도품을 설명할 때에 『중변

21) 凝然 述, 『華嚴探玄記洞幽鈔』 卷85(『日本大藏經』 『華嚴部 章疏』 第1, PP.346下~347上 및 PP.351上~352上).

22) 義天 錄, 『新編諸宗教藏總錄』 卷3(『大正藏』 55, P.1176下).

23) 義天 錄, 『新編諸宗教藏總錄』 卷3(『大正藏』 55, P.1176下) 및 『佛典疏鈔目錄』 上(大日本佛教全書 第1冊, p.116上).

24) 永超 集, 『東域傳燈目錄』 [講論錄] 3(『大正藏』 55, P.1157中).

25) 永超 集, 『東域傳燈目錄』 [雜述錄] 4(『大正藏』 55, P.1165中).

26) 李種益, [中邊分別論 卷下 元曉疏 解題] 『元曉聖師全書』(元曉宗 元曉全書刊行會, 1988), p.547.

27) 金煥泰 著, 『韓國佛教古典名著의 世界』(民族社, 1994), p.67.

론』에서 사용 중인 37道品, 念處, 正勤, 如意足, 覺分, 道分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신역인 『변중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37菩提分法, 念住, 正斷, 神足, 覺支, 聖道支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며, 기타의 용어 선택에 있어서도 신역의 것을 借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용되고 있는 경론들의 내용에 있어서도 37보리분법을 列名, 釋義, 出體性, 顯明位地, 說次第, 辨諸門 등의 6문에 따라서 자세하게 해석할 때에 구역에 속하는 『智度論』 등의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지만, 신역인 『對法論』, 『瑜伽論』, 『顯揚論』 등에 의지하는 바가 더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시대적으로 보아서 신역이 가까운 시기의 것이었고, 또한 현장의 유식사상이 그 만큼 신라인들에게 친숙해져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결론적으로 원효는 다른 그의 저술에서 감지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소승에 대한 모든 교의를 체득하고는 복잡하고 稠密하기로 유명한 유가, 유식에 관한 法相을 이 『中邊疏』에서 肢分節解하여 풀이한 것은 다시 한번 그의 박식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중변분별론소』 제3권을 名目別로 나는 과분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中邊分別論疏의 科分(제3권)

對治品者	研習三十七品之道 隨其所對 —— □菩提分義略有六門 一者列名 二者 釋義 三出體性 四顯明位地 五說次第 六辨諸門.
初列名者	何等名爲三十七種菩提分法 謂四念住·四正斷 四神足 五根 五力 七覺支八支聖道.
四念住者	一身念住 二受念住 三心念住 四法念住.
四正斷者	一於已生不善法 爲令斷故 生欲策勵 發動精進 策心持心正斷 二於未生惡不善法 爲不生故 生欲策勵 乃至持心正斷

- 三於未生善法 ——.
- 四神足者 一欲三摩地斷行成就神足 二勤三摩地斷行成就神足 三心三摩地斷行成就神足 四觀三摩地斷行成就神足.
- 五根者 一信根 二精進根 三念根 四定根 五慧根.
- 五力者 信力乃至慧力.
- 七覺支者 一念覺支 二擇法覺支 三精進覺支 四喜覺支 五安覺支 六定覺支 七捨覺支.
- 八支聖道者 一正見 二正思惟 三正語 四正業 五正命 六正精進 七正念 八正定.<sup>28)</sup>
- 第二釋義 所謂於身與念相應住修身觀 是身念住 乃至於法皆如是說 云何爲念 謂依身增上受持正法 —— 於中差別亦當後說 是名略說八道支義也.<sup>29)</sup>
- 第三明體性者 用合建立 有三十七論其體性 不出十法 一十法爲本 乃至廣說故.<sup>30)</sup>
- 第四明階位者 論其行實 皆通諸位 —— 修除修道所斷煩惱 此文當於第三義也.<sup>31)</sup>
- 第五明次第者 如智度說 問曰 應先說道 —— 所說次第 皆約隨數階位門說.<sup>32)</sup>
- 第六辨諸門者 如是七法皆有五門 如對法說 復以一切菩提分法無有差別 皆由五門 而建立 謂所緣故 自體故 助伴故 修習故 受果故.
- 念處所緣者 謂身受心法即是四事 謂我所依事 我受用事 我自體事 我染

28) 이상 元曉撰, 『中邊分別論疏』 卷3, 『韓國佛教全書』 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17中~下.

29) 上同(上同), pp.817下~820上.

30) 上同(上同), p.820上~中.

31) 上同(上同), p.820中~下.

32) 上同(上同), pp.820下~821上.

淨事 何故唯立此四境者 由顛倒覺愚癡凡夫多分計我 —— 是爲念處所緣 境也。<sup>33)</sup>

第二念住自體者 此有二義 若對治者 以慧爲體 由慧正治四顛倒故 若對所緣 慧念爲體 慧與念俱住所緣故 —— 此對所緣 出自性也。<sup>34)</sup>

第三念住助伴者 與彼相應諸心法 及彼爲首 所發果等 如對法說 念住助伴者 與彼相應心心法等 —— 是爲色法 餘殘非色故。

第四念處修習者 略有二門 謂共修習 不共修習 共修習者 謂共小乘修習於內身等修隨身觀 於外身等及內外身受隨身觀 —— 受心法等 乃至廣說。

第五明念住受果者 如對法說 斷四顛倒 趣入四諦 身等離繫 是名受果斷 斷四顛倒者 謂四念住 —— 是明念處受習之果 念住五門 略說如是。<sup>35)</sup>

### 次明四正斷中五門

正斷所緣者 謂已生未生所治能治法 初正斷緣已生所治法爲境 第二正斷緣未生所 治法爲境 第三正斷緣未生能治法爲境 第四正斷緣已生能治法爲境 如經所說 應廣配釋。

正斷自體者 謂於四境所起精進。

正斷助伴者 謂彼相應心心法等。

正斷修習者 謂如經說 生欲策勵 發起正勤 策心持心 此中諸句 顯修正勤及所依止 所依止者 —— 又有差別 如前釋義門中說也。

正斷修果者 謂盡棄於一切所治 於能對治 若得若證 如其次第 配屬應地 正斷五門 略說如是。<sup>36)</sup>

33) 上同(上同), p.821上~下。

34) 上同(上同), pp.821下~822上。

35) 上同(上同), pp.822上~823上。

36) 上同(上同), p.823上~中。

## 次明四神足中五門

- 神足所緣者 謂已成滿定所住事 此復云何 由已成滿三摩地力 發起種種神變等事 是所緣境.
- 神足自體者 謂三摩地.
- 神足助伴者 謂欲勤心觀 及彼相應心心法等.
- 神足修習者 謂數修習八種斷行 謂欲精進信安正念正知四捨 如是八種略攝爲四謂加行攝受繼屬對治 —— 是名神足修習之相.
- 神足修果者 謂已善修治三摩地故 隨所欲證所通達法 卽能隨心通達變現 又於別別處所法中 —— 又能引發勝品功德 神足五門略說如是.<sup>37)</sup>

## 次明五根五門差別

- 五根所緣者 若約共行緣四聖諦 若約不共行緣非安立諦.
- 五根自體者 謂信勤念定慧.
- 五根助伴者 謂彼相應心心法等.
- 五根修習者 謂信根於諸諦起忍可行修 精進根爲覺悟故起精進行修 念根起不忘失行修 定根起心一境性行修 —— 是名五根修習略相.
- 五根修果者 謂能速發諦現觀 由此增上力 不久能生見道故 又能修治煖頂 引發忍 世第一法 卽現此身已 入順決擇分位故 五根五門 略說如是.<sup>38)</sup>

- 次明五力五門差別 前之四門與根相似 唯修習果 少有差別 謂能損減不信等障 不可 屈伏 勝過於前 五力五門 略說如是.<sup>39)</sup>

## 次明七覺支五門相

- 覺支所緣者 若就二乘安立諦門 所顯人空 若就菩薩安立非安立諦門中

37) 上同(上同), pp. 823中~824上.

38) 上同(上同), p. 824上~中.

39) 上同(上同), p. 824中.

- 人法二空以爲境界。
- 覺支自體者 謂念擇法精進喜安定捨 如是七法是覺支體 又此七法三品所攝 如瑜伽說 —— 若止散時念三法攝故。
- 覺支助伴者 謂彼相應心心法等。
- 覺支修習者 有共不共 共修相者 如對法說 依遠離無欲寂滅迴向棄捨修念覺支 乃至 捨覺支 如是四句 隨其次第 —— 是爲略說覺分修相。
- 覺支修果者 謂見道所斷煩惱永□ □其不共覺分果者 生在佛家離五怖畏 得百法明門動百佛世界等 廣說如經也 覺支五門 略說如是。<sup>40)</sup>
- 次明八聖道支五門
- 八聖道所緣者 謂卽此後時四聖諦如實性 及與一切盡所有性 如所有性 皆是修道位 所緣故。
- 八聖道自體者 正見正思惟正語正業正命正精進正念正定 如是八法是道支體 又此八法三蘊所攝 如瑜伽說 —— 及與解脫知見蘊等。
- 道支助伴者 謂彼相應心心法等。
- 道支修習者 若其共行 如覺支說 不共行者 如智度說 菩薩於諸法 空無所得住 如 是正見中觀正思惟相 —— 如是等名爲正思惟 乃至廣說。
- 道支修果者 謂分別海示他 令信煩惱障淨 隨煩惱障淨 最勝功德障淨 能得無量殊勝功德故 —— 是爲略說道支五門 菩提分義 略說如是。<sup>41)</sup>
- 次消其文 文中在先釋論發起 於中二句 初句總發 下句別起 此論中初說者 謂此品 初說四念處也 偈中合有十二頌半 於中有二 前十一頌 別

40) 上同(上同), pp.824中~825上.

41) 上同(上同), p.825上~下.



明對治 後一頌半 總說對治 —— 是名無住處涅槃也 修習以下結前起後也.<sup>42)</sup>

修住品者 修是前說 道品之行住 是依行建立之位 行人所住 故名目住 此中正顯依 修立住 是故名爲修住品也 此品之中 有三頌半 於中有二前之三頌 別明 位相 後二句約人總結 —— 修位已說 何者得果者 結前生後也.<sup>43)</sup>

得果品者 依前修住 顯得果相 是故名爲得果品也 於此品內 有二頌半 分作二段 二 頌一句 別顯果相 最後一句說已總結 初中亦二 前之一頌 —— 此處有 四 第四處內別有三義 隨別立品 故言三品也.<sup>44)</sup>

### 3. 中邊分別論疏에 인용된 諸經論의 내용

원효의 『중변분별론소』를 보면 대승경론은 물론이고, 소승경전 등도 인용되고 있는데, 그것의 대강은 玄奘 역의 『大乘阿毘達磨雜集論』, 『顯揚聖教論』, 『瑜伽師地論』, 『阿毘達磨俱舍論』, 『阿毘達磨大毘婆沙論』, 曇無讖 역의 『優婆塞戒經』, 鳩摩羅什 역의 『大智度論』, 僧提婆共慧遠 역의 『阿毘曇心論』 및 眞諦 역의 『攝大乘論』 등이며, 일본의 凝然이 찬술한 『華嚴經探玄記洞幽奘』 등에도 인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 章疏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문헌학적인 고찰도 좋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의 주석 자체의 내용과 인용되고 있는 경론들의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가 하는 관점 등이다. 왜냐하면 이 『중변분별론소』도 처음에는 필사본이었기 때문에 이를 근래에 와서 활자화하는 과정에서 판독상의 오류나 탈락 및 첨삭 등이 있어서 의미상 전혀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2) 上同(上同), pp.825下~832下.

43) 上同(上同), pp.832下~834上.

44) 上同(上同), pp.834上~837下.

따라서 여기에서는 인용된 내용과 인용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서로 비교하여 정확한 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中邊分別論疏와 인용된 經論의 내용 비교표

(비교될 내용은 고딕체로 표기하였음)

『中 分別論疏』의 내용	引用된 경론의 내용
<p>初列名者 何等名爲三十七種菩提分法 謂四念住 四正斷 四神足 五根 五力 — 一欲三摩地斷行成就神足 — 六正精進 七正念 八正定.<sup>45)</sup></p>	<p>元曉大師 中邊疏三云 初列名者 何等名爲三十七種菩提分法 謂四念住 四正斷 四神足 五根 五力 — 一欲三摩地斷行成就神足 — 六正精進 七正念 八正定.<sup>46)</sup></p>
<p>如對法說 云何於身隨身觀 謂分別別影像身 □□□身平等 隨觀於身境 隨觀身相似性故 名於身隨身觀 由隨觀察影像身門 審諦觀察本質身故.<sup>47)</sup></p>	<p>如對法說 云何於身修循身觀 謂以分別影像身 與本質身平等 循觀於身境循觀身相似性故 名於身循身觀 由循觀察分別影像身門 審諦觀察本質身故.<sup>48)</sup></p>
<p>如智度說 念隨順智緣中正住 是名念處.<sup>49)</sup></p>	<p>是諸法念隨順智慧緣中正住 是時名念處.<sup>50)</sup></p>

45) 元曉 撰, 『中邊分別論疏』 卷3, 『韓國佛教全書』 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17中~下.  
 46) 凝然 述, 『華嚴探玄記洞幽鈔』 卷85, 『華嚴部 章疏』 第1(『日本大藏經』 卷1, PP.346下~347上).  
 47) 元曉 撰, 『中邊分別論疏』 卷3, 『韓國佛教全書』 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17下.  
 48) 玄奘 譯, 『大乘阿毘達磨雜集論』 卷10(『大正藏』 31, p.739上).  
 49) 元曉 撰, 『中邊分別論疏』 卷3, 『韓國佛教全書』 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18上.  
 50) 鳩摩羅什 譯, 『大智度論』 卷19(『大正藏』 25, p.198中).

『中邊分別論疏』의 내용	引用된 경론의 내용
<p>四正斷義者 云何已生惡不善法 謂能起惡行 欲界腦惱及隨煩惱 麤纏所攝 名爲已生 爲令斷故者 謂修對治令微薄故 — 發正起慙者 謂長時 殷重多堅修習 此上三句 顯得不定地聞思兩慧 所攝善法 策心持心者 謂得修慧故 餘如前說 云何已生善法 謂已得故爲念住者謂聞慧 令不忘者 謂思慧 令修滿者謂修慧 此上三句 顯唯守護 已所得善令配修令增長令廣大者 如其次第 不唯於彼生知足故生欲等句 皆如前說 此義廣如顯揚論說.<sup>51)</sup></p>	<p>四正斷義者 廣說如經 一已生惡不善法 爲令斷故 生欲策勵發起精勤策心持心 已生者 謂序纏所攝 惡不善法者 謂能起惡行 欲界腦惱及隨煩惱 惡不善義 已如前說 爲令斷故者 謂修彼對治令微薄故 — 發起正慙者謂長時 殷重多堅修習 此上三句 顯得不定地對治 惡不善法 聞思兩慧 所攝善法 策心持心者 謂爲得修慧故 餘如前說 四已生善法令住 令不忘 令修滿令配修令增長令廣大 生欲策勵 乃至廣說 已生者 謂已得故 念住者 謂聞慧 令不忘者謂思慧 令修滿者謂 修慧 此上三句 顯唯守護 已所得善令配修令增長令廣大者 如其次第 不唯於彼生知足故 生欲者 謂起證得欲餘如前說.<sup>52)</sup></p>
<p>言正斷者 — 智度論云 破諸耶法 正道中行故 名正勤行.<sup>53)</sup></p>	<p>破邪法 正道中行故 名正勤.<sup>54)</sup></p>

51) 元曉 撰, 『中邊分別論疏』 卷3, 『韓國佛教全書』 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18上~中.

52) 玄奘 譯, 『顯揚聖教論』 卷1(『大正藏』 31, p.488中~下).

53) 元曉 撰, 『中邊分別論疏』 卷3, 『韓國佛教全書』 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18中~下.

54) 鳩摩羅什 譯, 『大智度論』 卷19(『大正藏』 25, p.198中).

『中邊分別論疏』의 내용	引用된 경론의 내용
<p>初名律儀斷 第二名斷斷 由於 已生惡不善法 應修律儀 令其斷 滅 不應忍受故 名律儀斷 於未生惡 令不現行 爲令彼不現前斷 爲故斷名爲斷斷 三者名修斷四名防護斷 由於善法 數修修習先所未得能定現前 能有所斷故 名修斷 由於已得諸善法中 遠離放逸 修習圓滿 防護已生 能有所斷故名防護斷 總而言之 爲欲 顯示於黑白品捨取事中 增上意樂圓滿 及加行圓滿 是故善說四種正斷 當知此中由生欲故 意樂 圓滿 由自策勵 乃至持心故 加行圓滿 上來所說 出瑜伽論.<sup>55)</sup></p>	<p>一名律儀斷 謂於已生惡不善法 爲令斷故生慾策勵 乃至廣說 二名斷斷 謂於未生惡不善法 爲不生故 生欲策勵 乃至廣說 由於已生惡不善法 應修律儀 令其斷滅 不應忍受故 由是因緣 名律儀斷 於其未生惡不善事 爲欲令彼不現行 斷爲欲令彼不現前斷爲斷故 斷故名爲斷斷 三名修斷 謂於未生一切善法 爲令生故 廣說乃至 策心持心 由於善法 數修數習 先所未得能令現前 能有所斷故名修斷 四名防護斷 謂於 已生一切善法 爲欲令住 廣說乃至 策心持心 由於已得已現在前諸善法中 遠離放逸 修不放逸能令善法 住不忘失 修習圓滿防護已生所有善法 能有所斷故 名防護斷 如是廣辯 四正斷已復云何知此中略義 謂爲欲顯示 於黑白品捨取事中 增上意樂圓滿 及加行圓滿 是故宣說四種正斷 當知此中由生欲故 增上意樂 圓滿 由自策勵發動 精進策心持心 故加行圓滿 上來所說 出瑜伽論.<sup>56)</sup></p>

55) 元曉 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18下.

56) 玄奘譯, 『瑜伽師地論』卷29(『大正藏』30, p.443上~中).

『中邊分別論疏』의 내용	引用된 경론의 내용
<p>復次由四種力 持心令定 是故建立四種神足 云何爲四 —— 如是復於奢摩他等所有諸相 若於止觀諸隨煩惱及彼對治等 皆如實知 樂等持者 於等持中但有爾所等持作事 除此更無若過若增.<sup>57)</sup></p>	<p>復次應知建立四種神足 如聲地已廣分別若略說者 由四種力持心令定 是故建立四種神足 云何爲四 —— 如是復於奢摩他等所有諸相 若奢摩他毘鉢舍那諸隨煩惱 及隨煩惱能對治等 皆如實知 樂等持者 於等持中但有爾所等持作事 除此更無若過若增.<sup>58)</sup></p>
<p>如有足者 能往能還 騰躍勇健 能得世間殊勝之法 世殊勝法 說名爲神 彼能到此 故名神足 如是若有欲等諸法有三摩地 圓滿成辨 有所堪能 獲得不動 能往能還 騰躍勇健 能得能證出世勝法由出世法 最勝自在 是崔勝神 彼能證此 故名神足.<sup>59)</sup></p>	<p>如有足者能往能還騰躍勇健能得能證 世間所有殊勝之法 世殊勝法說名爲神 彼能到此故名神足 如是若有如是諸法有三摩地圓滿成辨 彼心如是清淨鮮白無諸瑕穢 離隨煩惱安住正直有所堪能獲得不動能往能還騰躍勇健 能得能證出世間法 由出世法最勝自在 是最勝神彼能證此故名神足.<sup>60)</sup></p>
<p>諸煩惱經赤不能屈 故名難伏由此諸力 具大威勢 伏一切魔軍勢力 能證一切諸漏永盡 是故名力.<sup>61)</sup></p>	<p>諸煩惱纏亦不能屈 故名難伏 此爲上首此爲前行餘精進等亦名爲力 由此諸力具大威勢 伏一切魔軍勢力 能證一切諸漏永盡 是故名力.<sup>62)</sup></p>

57) 元曉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p.818下~819上.

58) 玄奘譯, 『瑜伽師地論』卷98(『大正藏』30, p.862上).

59) 元曉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19中.

60) 玄奘譯, 『瑜伽師地論』卷29(『大正藏』30, p.444中).

61) 元曉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19下.

62) 玄奘譯, 『瑜伽師地論』卷29(『大正藏』30, p.444中).

『中邊分別論疏』의 내용	引用된 경론의 내용
無學實慧 此七事能到 故名爲分. <sup>63)</sup>	攝無覺實覺 此七事能到 故名爲分 <sup>64)</sup>
欲入涅槃無爲城故 行是諸法 是時名正道. <sup>65)</sup>	欲入涅槃無爲城故行是諸法 是時名爲道. <sup>66)</sup>
三十七品 十法爲本 乃至廣說故. <sup>67)</sup>	是三十七品 十法爲根本 何等十 信戒思惟精進念定慧除喜捨 信者信根信力 戒者正語正業正命 精進者四正 懃精進根精進力精進覺正精進. <sup>68)</sup>
<p>第四明階位者 論其行實 皆通諸位如瑜伽說 又由身受心法 增上所生善有漏無漏道 皆名念住 又後文言 略說一切人聖道支 二處所攝 一者世間 二出世間 其世間者 三漏四取 所隨縛故 不能盡苦 是善性故 能往善趣出世間者 與彼相違 能盡衆苦 初後二法既如是說 中間五法當知亦爾約 行雖通 依位別立 是義云何 大分其地 判爲二位 謂前五法在凡夫位 後之二法立聖位中 凡位五法 —— 瑜伽論中通說三義 —— 第二十九卷云彼於</p>	<p>明階位者 論其行實 皆通諸位 如瑜伽說 又由身受心法增上所生善有漏無漏道 皆名念住 又後文言 略說一切八聖道支 二處所攝 一者世間 二出世間 其世間者 三漏四取所隨縛故不能盡苦 是善性故能往善趣 出世間 者 與彼相違 能盡衆苦 初後二法既如是說 中間五法當知亦爾 約行雖通依位別立 是義云何 大分其地 判爲二位 謂前五法世凡夫位 後之二法立聖位中 凡位五法 —— 瑜伽論中通說三義 —— 第二十九卷云 彼</p>

63) 元曉 撰, 『中邊分別論疏』 卷3, 『韓國佛教全書』 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19下.

64) 鳩摩羅什 譯, 『大智度論』 卷19(『大正藏』 25, p.198下).

65) 元曉 撰, 『中邊分別論疏』 卷3, 『韓國佛教全書』 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19下.

66) 鳩摩羅什 譯, 『大智度論』 卷19(『大正藏』 25, p.198下).

67) 元曉 撰, 『中邊分別論疏』 卷3, 『韓國佛教全書』 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20中.

68) 鳩摩羅什 譯, 『大智度論』 卷19(『大正藏』 25, p.198中).

『中邊分別論疏』의 내용	引用된 경론의 내용
<p>爾時 最初獲得七覺支故 名初有覺 見聖諦迹已 永斷滅見道所斷一切煩惱 脩除脩道所斷煩惱 此文當於第三義也.<sup>69)</sup></p>	<p>於爾時最初獲得七覺支故 名初有觀 見聖諦迹 已永斷滅見通所斷一切煩惱 脩除脩道所斷煩惱 此文當於第三義也.<sup>70)</sup></p>
<p>解了自性者 謂八支聖道對治三種雜染故 建立三蘊 謂對治惡行雜染故 對治諸欲雜染故 對治諸見雜染故<sup>71)</sup></p>	<p>解了自性者 謂八聖支道 此復種種差別 宣說對治外道諸邪道故 名八聖支道 對治三種雜染故建立三蘊 謂對治惡行雜染故 對治諸欲雜染故 對治諸見雜染故.<sup>72)</sup></p>
<p>云何正直 謂彼生起 逆流正直聖八支道 能斷見斷 所有煩惱 於逆流道 得預隨順.<sup>73)</sup></p>	<p>云何正直 謂彼生起逆流正直聖八支道 能斷見斷所有煩惱 □ 逆流道得預隨流.<sup>74)</sup></p>
<p>彼於爾時 最初獲得七覺支故 名初有覺 見聖諦迹已 永斷滅見道所斷一切煩惱 脩除脩道所斷煩惱.<sup>75)</sup></p>	<p>彼於爾時最初獲得七覺支故名初有學 見聖諦迹已永斷滅見道所斷一切煩惱唯餘脩道所斷煩惱.<sup>76)</sup></p>

69) 元曉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20中~下.

70) 凝然述, 『華嚴探玄記洞幽』卷85, 『華嚴部 章疏』第1(『日本大藏經』卷1, PP.351下~352上).

71) 元曉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20下.

72) 玄奘譯, 『瑜伽師地論』卷62(『大正藏』30, p.647下).

73) 元曉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20下.

74) 玄奘譯, 『瑜伽師地論』卷18(『大正藏』30, p.375上).

75) 元曉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20下.

76) 玄奘譯, 『瑜伽師地論』卷29(『大正藏』30, p.445上).

『中邊分別論疏』의 내용	引用된 경론의 내용
<p>問曰 應先說道 何以故行道然後得諸善法 譬如人先行道 然後得至處 今何以顛倒先說念處 後說正道 答曰不顛倒也 三十七品是初欲入道時 名因字 如行者至師所聽道時 先用念持是法 是時名念處持 已從法中求果故精進行是時名正勤 多精進故 心散序 攝心調柔 故名如意足 心調柔已生五根 諸法實相 甚深難解 信根故能信 是名信根 不惜身命 一心求道理是精進根 常念是道 不念餘事 是名念根 攝心在道 是名定根 觀諦實相 是名慧根 五根增長 能遮煩惱 是名爲力 得是力已 分別道法.<sup>77)</sup></p>	<p>問曰 應先說道 何以故行道然後得諸善法 譬如人先行道然後得所至處 今何以顛倒先說四念處 後說八正道 答曰 不顛倒也 三十七品是初欲入道時名字 如行者到師所聽道法時 先用念持是法 是時名念處 持已從法中求果故 精進行 是時名正勤 多精進故 心散亂 攝心調柔故名如意足 心調柔已生五根 諸法實相甚深難解 信根故能信是名信根 不惜身命一心求道 是名精進根 常念佛道不念餘事是名念根 常攝心在道是名定根 觀四諦實相是名慧根 是五根增長能遮煩惱 如大樹力能遮水 是五根增長是能轉入深法是名爲力 得力已分別道法.<sup>78)</sup></p>

77) 元曉 撰, 『中邊分別論疏』 卷3, 『韓國佛教全書』 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p.820下~821上.

78) 鳩摩羅什 譯, 『大智度論』 卷19(『大正藏』 25, p.198中~下).



『中邊分別論疏』의 내용	引用된 경론의 내용
<p>是諸菩薩普於一切二乘理趣菩提分法皆如實知 謂於聲聞乘理趣及於大乘理趣 云何菩薩大乘理趣 菩提分法如實了知 謂諸菩薩能於其身 住脩身觀不於其身 分別有性 亦不分別一切種類都無所有 又於其身 遠離言說 自性法性如實了知.<sup>79)</sup></p>	<p>諸菩薩普於一切二乘理趣三十七種菩提分法 皆如實知 謂於聲聞乘理趣及於大乘理趣三十七種菩提分法 皆如實知 於聲聞乘理趣三十七種菩提分法 如實了知 如聲聞地如前所說一切應知 云何菩薩於大乘理趣三十七種菩提分法 如實了知 謂諸菩薩能於其身住循身觀 不於其身分別有性亦不分別一切種類都無有性 又於其身 遠離言說自性法性 如實了知.<sup>80)</sup></p>
<p>菩薩摩訶薩 四念處觀者 觀是內身無常 若如病如癰 聚敗壞 不淨充滿 九孔流出 是爲行 廣說乃至 是身相不在內 不在外 不在中間.<sup>81)</sup></p>	<p>菩薩摩訶薩 行四念處觀是內身無常 苦如病如癰 烝聚敗壞不淨充滿九孔流出 是爲行廁 如是觀身惡露無一淨處 骨幹肉塗筋纏皮裹 先世受有漏業因緣 今世沐浴華香衣服飲食臥具醫藥等所成 如車有兩輪牛力牽故能有所至 二世因緣以成身車 識牛所舍周旋往反 是身四大和合造 如水沫聚虛無堅固 是身無常久必破壞是身相身中不可得 亦不在外亦不在中間.<sup>82)</sup></p>

79) 元曉 撰, 『中邊分別論疏』 卷3, 『韓國佛教全書』 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22上.

80) 玄奘 譯, 『瑜伽師地論』 卷45(『大正藏』 30, p.539下).

81) 元曉 撰, 『中邊分別論疏』 卷3, 『韓國佛教全書』 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22中.

82) 鳩摩羅什 譯, 『大智度論』 卷19(『大正藏』 25, p.203中).

『中邊分別論疏』의 내용	引用된 경론의 내용
<p>念脩果者 如對法說 斷四顛倒 趣入四諦 身等離繫 是名脩果斷 斷四倒者 謂四念住 隨其次第 能斷淨樂常我四倒也 由身念住 趣入苦諦所有色身 皆行苦相序重所顯故 是故脩觀行時 能治此輕安 於身差別生故 由受念住趣入集諦 以樂等諸受 是和合愛等所依處故 由心念住 趣入滅諦 觀離我識 當無所有 懼我斷門 生涅槃怖 永遠離故 由法念住 趣入道諦 爲斷所治法 爲脩能治法故 又此四種如眞次第 能證身受心法離繫之果由此脩習 漸能遠離身等序重故.<sup>83)</sup></p>	<p>念住修果者 謂斷四顛倒趣入四諦身等離繫 是名修果斷 四顛倒者 謂四念住 隨其次第能斷淨樂常我四種顛倒 修不淨觀故 了知諸受皆是苦故通達諸識依緣差別念念變異故 觀察染淨唯有諸法無作用者故 又此四種如其次第趣入四諦 亦名修果 由身念住趣入苦諦 所有色身皆行苦相 序重所顯故 是故修觀行時能治此輕安於身差別生故 由受念住趣入集諦 以樂等諸受是和合愛等所依處故 由心念住趣入滅諦 觀離我識當無所有懼我斷門生涅槃怖永遠離故 由法念住趣入道諦 爲斷所治法爲修能治法故 又此四種如其次第能證得身受心法離繫果 由此脩習漸能遠離身等序重故.<sup>84)</sup></p>

83) 元曉 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22中~下.

84) 玄奘 譯, 『大乘阿毘達磨雜集論』卷10(『大正藏』31, p.739中).

『中邊分別論疏』의 내용	引用된 경론의 내용
<p>復次欲勤心觀脩有二種謂兼因緣聚散 遠離脩 不劣不散 彼二所依隨順脩 此中顯示欲等 遠聚散及因緣等 二種 脩義 聚因緣者 謂遠離毗鉢舍那故由 懈怠所生沈沒 散因緣者 謂遠離不淨 相故 由掉勤門所生高舉聚者 謂有 睡 眠門 於內踉蹌散者 謂由隨順淨妙相 門 於外馳散不劣隨順脩者 謂依觀察 相 觀察諸法 不散隨順脩者謂依不淨 相 觀察髮毛等事 彼二所依隨順脩者 謂脩光明相依 如是次第縛伽梵說 我 之欲樂 無有下劣 亦無高舉 於內不聚 於外不散 有後前想及上下想 開發其 心遠離纏縛 與光明俱 自脩其心 當令 我心無諸闇蔽。<sup>85)</sup></p>	<p>復次欲勤心觀脩有二種 謂并因緣 聚散遠離 脩不劣不散彼二所依隨順脩 此中顯示欲等 能遠離聚散及因緣等二 種修義 聚因緣者 謂遠離毗鉢舍那故 由懈怠門所生沈沒散因緣者 謂遠離不 淨想故 由掉勤門所生高舉 聚者謂由 沈睡眠門於內踉蹌散者 謂由隨順淨妙 相門於外馳散 不劣隨順脩者 謂依觀 察相觀察諸法 不散隨順脩者 謂依不 淨想觀察髮毛等事 彼二所依隨順脩者 謂脩光明想 依如是次第縛伽梵說 我 之欲樂無有下劣亦無高舉 於內不聚於 外不散 有前後想及上下想 開發其心 遠離纏縛 與光明俱自修其心 當令我 心無諸闇蔽。<sup>86)</sup></p>
<p>脩奢摩他時 脩習心品上下想脩毗 鉢舍那時 脩習觀品前後想 上下想者 謂觀察此身 如其所住 如其所願。<sup>87)</sup></p>	<p>修奢摩他時 修習止品上下想 或修毘 鉢舍那時 修習觀品前後想 上下想者謂 觀察此身 如其所住如其所願。——<sup>88)</sup></p>

85) 元曉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p. 823中~下.

86) 玄奘譯, 『大乘阿毘達磨雜集論』卷10(『大正藏』31, p. 740上~中).

87) 元曉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 823下.

88) 玄奘譯, 『瑜伽師地論』卷28(『大正藏』30, p. 439中~下).

『中邊分別論疏』의 내용	引用된 경론의 내용
<p>信根者 信一切法從因緣生 顛倒妄見不在過去 不在未來 不在現在 信者法空 無相無作 不生不滅 而信持戒禪定智慧解脫解脫知見等法 乃至慧根者 於諸法實相和入無礙無難 於世間無憂 於涅槃無喜 得自在智慧 故名慧根.<sup>89)</sup></p>	<p>信根者 信一切法從因緣生顛倒妄見心生如旋火輪如夢如幻 信諸法不淨無常苦無我如病如癰如刺災變敗壞信諸法無所有如空拳誑小兒 信諸法不在過去不在未來不在現在 無所從來滅無所至 信者法空無相無作不生不滅 無信相無相而信持戒禪定智慧解脫解脫知見 得是信根故不復退轉以信根爲首善住持戒 住持戒已信心不動不轉 一心信 依業果報離諸邪見更不信餘語 但受佛法信衆僧住實道中直心柔軟能忍 —— 定 行自在出入無礙是名爲定根 慧根者菩薩爲盡苦聖智慧成就是智慧爲離諸法爲涅槃 以智慧觀一切三界無常爲三상三毒火所燒觀已於三界中 智慧亦不著 一切三界 轉爲空無相無作解脫門 一心爲求佛法如救頭然是菩薩智慧無能壞者 於三界無所依 於隨意五欲中心常離之 慧根力故積聚無量功德 於諸法實相 利入無疑無難 於世間無憂 於涅槃無喜 得自在智慧 故名爲慧根.<sup>90)</sup></p>

89) 元曉 撰, 『中邊分別論疏』 卷3, 『韓國佛教全書』 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24中.

90) 鳩摩羅什 譯, 『大智度論』 卷19(『大正藏』 25, p.204上~下).

『中邊分別論疏』의 내용	引用된 경론의 내용
<p>此七法三品所攝 如瑜伽說 三覺支奢摩他品攝 三覺支 毗鉢舍那品攝 一覺支 通二品攝 是故說名七種覺支 爲擇法精進喜 此三觀品所攝 安定捨此三止品所攝 念覺支一種俱品所攝 說名所行.<sup>91)</sup></p>	<p>此七種如實覺支 三品所攝 謂三覺支 奢摩他品攝 三覺支 毘鉢舍那品攝 一覺支 通二品攝 是故說名七種覺支 謂擇法覺支 精進覺支 喜覺支 此三觀品所攝 安覺支 定覺支 捨覺支 此三止品所攝 念覺支一種俱品所攝 說名遍行.<sup>92)</sup></p>
<p>念覺支在二處 能集善法 能遮惡法 如守門人 有利者令人 無益者除却 若心沒時念三法起 若止散時念三法攝故.<sup>93)</sup></p>	<p>心動散能攝令定 念覺在二處 能集善法 能遮惡法 如守門人 有利者令人 無益者除却 若心沒時念三法起 若心散時念三法攝無覺實覺.<sup>94)</sup></p>
<p>覺支脩習者 有共不共 共脩相者 如對法說 依遠離無欲寂滅迴向棄捨脩念覺支 乃至捨覺支 如是四句 隨其次第 顯示緣諦脩習覺支 所以者何 若緣苦諦 爲苦惱時 於苦境界求遠離故 名依止遠離 若緣愛相爲苦集時 於此境界必求離欲 故名依止離欲 若緣苦滅 爲苦滅時 於此境界 必求作證故名依止寂靜棄捨者 謂起苦滅行由此勢力 棄捨苦故 於此境界 必求脩習故名迴向棄捨.<sup>95)</sup></p>	<p>覺支修習者 謂依止遠離 依止無欲 依止寂滅 迴向棄捨修念覺支 乃至捨覺支 如念覺支 乃至捨覺支 亦爾 如是四句隨其次第顯示緣四諦境修習覺支 所以者何 若緣苦體爲惱苦時 於苦境界必求遠離故 名依止遠離 若緣愛相苦集爲苦集時 於此境界必求離欲故名依止離欲 若緣苦滅爲苦滅時 於此境界必求作證故名依止寂滅 棄捨者謂趣苦滅行 由此勢力棄捨苦故 是故若緣此境時 於此境界必求修習故名 向棄捨.<sup>96)</sup></p>

91) 元曉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24下.

92) 玄奘譯, 『瑜伽師地論』卷29(『大正藏』30, p.445上).

93) 元曉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24下.

94) 鳩摩羅什譯, 『大智度論』卷19(『大正藏』25, p.198下).

95) 元曉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24下.

96) 玄奘譯, 『大乘阿毘達磨雜集論』卷10(『大正藏』31, p.740下).

『中邊分別論疏』의 내용	引用된 경론의 내용
<p>於一切法 不憶不念 是名念覺分 一切法中求索善法不善法無記法 皆不可得 是名擇法覺分 不入三界 破壞諸界相 是名精進覺分 於一切作法不生著樂 憂喜相增故 是名喜覺分於一切法中除心緣不可得故 名除覺分 者一切法常定相 不難不定是名定覺分 於一切法不著不依止 亦不見是捨心 是名捨覺分 又觀實相智慧中生喜 是名眞喜 得是眞喜 先除身喜 次除心喜 然後除一切法相得快樂 遍身心中 是爲除覺分 既得喜除捨諸觀行所謂無常苦空等觀 有無非有非無等觀 何以故 無戲論是實相 若不行捨便有諸諍 若以有爲實 以無爲虛 若以無爲實 則以有爲虛 若以非有非無爲實 則以有無爲虛 於實愛著 於虛憎喪 生憂喜處云何不捨 得如是喜除捨七覺分具足滿。<sup>97)</sup></p>	<p>菩薩於一切法不憶不念 是名念覺分 一切法中求索善法不善法無記法不可得 是名擇法覺分 不入三界破壞諸界相 是名精進覺分 於一切作法不生著樂 憂喜相壞故 是名喜覺分 於一切法中 除心緣不可得故 是名除覺分知一切法常定相不亂不定 是名定覺分 於一切法不著不依止 亦不見 是捨心 是名捨覺分 —— 若如是觀 於實智慧中生喜是爲眞喜 得是眞喜先除身鹿次除心鹿 然後除一切法相 得快樂遍身心中 是爲除覺分 既得喜除捨諸觀行 所謂無常觀苦觀空無我觀生滅觀不生不滅觀有觀無觀非有非無觀 如是等戲論盡捨 何以故 無相無緣無作無戲論常寂滅 是實法相若不行捨便有諸諍 若以有爲實則以無爲虛 若以無爲實則以有爲虛 若以非有非無爲實 則以有無爲虛 於實愛著於虛憎喪 生憂喜處云何不捨 得如是喜除捨 七覺分則具足滿。<sup>98)</sup></p>

97) 元曉 撰, 『中邊分別論疏』 卷3, 『韓國佛教全書』 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p.824下~825上.

98) 鳩摩羅什 譯, 『大智度論』 卷19(『大正藏』 25, p.205上).

『中邊分別論疏』의 내용	引用된 경론의 내용
<p>此八法三蘊所攝 —— 此中正見正思惟正精進 慧蘊所攝 正語正業正命戒蘊所攝 正念正定 定蘊所攝故.<sup>99)</sup></p>	<p>修習三蘊所攝八支聖道 此中正見正思惟正精進 慧蘊所攝 正語正業正命戒蘊所攝 正念正定 定蘊所攝.<sup>100)</sup></p>
<p>菩薩於諸法 空無所得住如是正見中觀正思惟相 知一切思惟皆是邪 乃至思惟涅槃 思惟諸佛皆亦知是 以何故斷一切思惟分別是名正思惟 住如是正思惟中 不見是正是耶 過諸思惟分別是爲正思惟 一切思惟分別皆悉平等平等故心不著 如是等名爲正思惟.<sup>101)</sup></p>	<p>菩薩於諸法空無所得住如是正見中觀正思惟相 知一切思惟皆是邪思惟 乃至思惟涅槃思惟佛皆亦知是 何以故斷一切思惟分別 是名正思惟 諸思惟分別 皆從不實虛顛倒故有分別思惟相皆無 菩薩住如是正思惟中 不見是正是邪 過諸思惟分別 是爲正思惟 一切思惟分別皆悉平等 悉平等故心不著 如是等名爲菩薩正思惟相.<sup>102)</sup></p>
<p>復有苾 如所聞法 如所得法 起大功用 發大精進 或正爲他宣說開示或以勝妙意詞讀誦 從此無間 漸次因緣能隨獲得勝三摩地 是名勤增上三摩地 復有苾 於諸賢善三摩地相善取思惟觀青瘀等 乃至骨鎖以爲邊際 由此所緣 次第生起勝三摩地.<sup>103)</sup></p>	<p>復有苾 如所聞法如所得法 起大功用 發大精進 或正爲他宣說開示 或以勝妙音詞讀誦 從此無間漸次因緣能隨獲得勝三摩地 當知是名精進增上三摩地 復有苾 於諸賢善三摩地相善取 思惟觀青瘀等乃至骨鎖以爲邊際 由此所緣 次第生起勝三摩地.<sup>104)</sup></p>

99) 元曉 撰, 『中邊分別論疏』 卷3, 『韓國佛教全書』 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25中.

100) 玄奘 譯, 『瑜伽師地論』 卷29(『大正藏』 30, p.445上).

101) 元曉 撰, 『中邊分別論疏』 卷3, 『韓國佛教全書』 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25中.

102) 鳩摩羅什 譯, 『大智度論』 卷19(『大正藏』 25, p.205上).

103) 元曉 撰, 『中邊分別論疏』 卷3, 『韓國佛教全書』 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26下.

104) 玄奘 譯, 『瑜伽師地論』 卷98(『大正藏』 30, p.862中~下).

『中邊分別論疏』의 내용	引用된 경론의 내용
<p>四三摩地增上力故 已遠諸纏後爲永害諸隨眠故 及爲脩集能對治彼諸善法故 便更生起欲樂策勵 彼於如是正脩習時 有八斷行 爲欲永害諸隨眠故爲三摩地得圓滿故 差別而轉此中欲者 卽是彼欲 此中策勵 卽彼精進 此證信者 卽彼信 此中安念正知思捨卽彼方便 如是此中若先欲等四三摩地 若今所說八種斷行 於爲永斷所有隨眠 圓滿成辨三摩地時 一切總名欲三摩地斷行成就神足。<sup>105)</sup></p>	<p>彼由如是四三摩地增上力故 已遠諸纏後爲永害一切一切惡不善法諸隨眠故 及爲脩集能對治彼諸善法故 便更生起樂欲策勵 廣說如前修四正斷加行道理 彼於如是正修習時有八斷行爲欲永害諸隨眠故 爲三摩地得圓滿故 差別而轉 何等名爲八種斷行 一 者欲 謂起如是希望樂欲 我於何時修三摩地當得圓滿 我於何時當能斷滅惡不善法所有隨眠 二者策勵謂乃至修所有對治不捨加行 三者信謂不捨加行正安住故於上所證深生信解 四者安 謂清淨信而爲上首心生歡喜 心歡喜故漸次息除諸惡不善法品序重 五者念 謂九種相於九種相 安住其心奢摩他品能攝持故 六者正知 謂毘鉢舍那品慧 七者思 謂心造作 於斷未斷正觀察時造作其心發起能順止觀二品身業語業 八者捨謂行過去未來現在 隨順諸惡不善法中心無染污心平等性 由二因緣於隨眠斷分別了知 謂由境界不現見思及由境界現見捨故 如是名爲八種斷行 亦名勝行 如是八種斷行勝行 卽是爲害隨眠瑜伽此中欲者 卽是彼欲 此中策勵卽彼精</p>

105) 元曉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27中.



『中邊分別論疏』의 내용	引用된 경론의 내용
	<p>進 此中信者 卽是彼信 此中安念正知 思捨 卽彼方便如是此中若先欲等四三 摩地 若今所說八種斷行 於爲永斷所 有隨眠圓滿成辨三摩地時 一切總名欲 三摩地斷行成就神足.<sup>106)</sup></p>
<p>解脫分體者 所調身口意業 從方便 得方便有二 一者耳聞 二者思惟 復有 三種 一者施 二者持戒 三者多聞.<sup>107)</sup></p>	<p>解脫分 善生言 世尊 所言體者 云 何爲體 善男子 謂身?意 是身?意從方 便得 方便有二 一者耳聞 二者思惟 復有三種 一者惠施 二者持戒三者多 聞.<sup>108)</sup></p>
<p>從下中品解脫分善 有可退義 唯退 現行非退習氣故.<sup>109)</sup></p>	<p>從下中品順解脫分順決擇分有可退 義此唯退現行非退習氣.<sup>110)</sup></p>
<p>於諦證上法 淨信勝解相 是順解脫 分卽於此法 諦察法忍相 是順決擇分 如其次第 信增上故慧增上.<sup>111)</sup></p>	<p>於諦證上法清信勝解相 是順解脫分 卽於此法諦察法忍相 是順決擇分 如 其次第信增上故 慧增上故.<sup>112)</sup></p>

106) 玄奘譯, 『瑜伽師地論』 卷29(『大正藏』 30, pp.443下~444上).

107) 元曉撰, 『中邊分別論疏』 卷3, 『韓國佛教全書』 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28下.

108) 曇無讖譯, 『優婆塞戒經』 卷1(『大正藏』 24, p.1036下).

109) 元曉撰, 『中邊分別論疏』 卷3, 『韓國佛教全書』 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29上.

110) 玄奘譯, 『大乘阿毘達磨雜集論』 卷13(『大正藏』 31, p.754上).

111) 元曉撰, 『中邊分別論疏』 卷3, 『韓國佛教全書』 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29中.

112) 玄奘譯, 『大乘阿毘達磨雜集論』 卷13(『大正藏』 31, p.754上).

『中邊分別論疏』의 내용	引用된 경론의 내용
<p>譬如有人 欲以其火作火所作為求火故 下安乾木 上施 燧 精勤策勵 勇猛求 於下木上 初生煖次煖增長熱氣上衝 次倍增盛 其烟遂發 次無焰火 然流出 火出無間 發生猛焰猛焰生已 便能造作火所作事 如下木上 初所生煖 其煖善根 當知亦爾 燒諸煩惱 無漏法火生前相故 如/增長熱氣上衝 其頂善根當知亦爾 如次烟發 其順諦忍 當知亦爾 如無烟火 然流出 世第一法當知亦爾 如火無間發生猛焰 世第一法 所攝五力 無間所生 出世無漏聖法 當知亦爾故.<sup>113)</sup></p>	<p>譬如有人欲以其火作火所作 為求火故下安乾木上施鑽燧 精勤策勵勇猛鑽求 彼於如是精勤策勵勇猛鑽時於下木上最初生煖 次煖增長熱氣上衝 次倍增盛其煙遂發 次無焰火 然流出 火出無間發生猛焰 猛焰生已便能造作火之所作 如鑽火人精勤策勇猛鑽求 五根五力漸修漸習漸多修習當知亦爾 如下木上初所生煖 其煖善根當知亦爾 燒諸煩惱無漏法火生前相故 如煖增長熱氣上衝 其頂善根當知亦爾 如次煙發 其順諦忍當知亦爾 如無焰火 然流出世第一法當知亦爾 如火無間發生猛焰 世第一法所攝五根五力無間所生出世無漏聖法當知亦爾故.<sup>114)</sup></p>
<p>離五耶命故名正命 何等為五 一者若行者為利養故 詐現奇特 二者為利養故 自說功德 三者為利養故 占相吉凶 而為人說 四者為利養故 高聲現威 令人畏驚 五者為利養故 稱說所得供養以動人心耶因緣活命故 名為耶命也.<sup>115)</sup></p>	<p>五種邪命以無漏智慧除捨 離是為正命 問曰 何等是五種邪命 答曰 一者若行者為利養故詐現異相奇特 二者為利養故自說功德 三者為利養故占相吉凶 為人說 四者為利養故高聲現威令人畏敬 五者為利養故稱說所得供養以動人心 邪因緣活命故 是為邪命.<sup>116)</sup></p>

113) 元曉 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30中.

114) 玄奘 譯, 『瑜伽師地論』卷29(『大正藏』30, p.444下).

115) 元曉 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31中.

116) 鳩摩羅什 譯, 『大智度論』卷19(『大正藏』25, p.203上).

『中邊分別論疏』의 내용	引用된 경론의 내용
<p>正語正業正命 是令他信支 如其次第令他於證理者 決定信者 見於正命清淨性故 所以者何 由正語故 隨自所證 善能 問答 論議決擇.<sup>117)</sup></p>	<p>正語正業正命者 是令他信支 如其次第 令他於證理者決定信有見戒正命清淨性故 所以者何 由正語故隨自所證善能 問答論議決擇.<sup>118)</sup></p>
<p>正精進者 是淨煩惱 支 由此永斷一切結故 正念者是淨隨煩惱 支 由此不忘失 正止舉相等永不容受沈掉等隨煩惱故 正定者能淨最勝功德支 由此引發神通等無量勝功德故.<sup>119)</sup></p>	<p>正精進者 是淨煩惱 支 由此永斷一切結故 正念者 是淨隨煩惱 支由此不忘失正止舉相等 永不容受沈掉等隨煩惱故 正定者 是能淨最勝功德 支 由此引發神通等無量勝功德故.<sup>120)</sup></p>

117) 元曉 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31下.

118) 玄奘 譯, 『大乘阿毘達磨雜集論』卷10(『大正藏』31, p.741上).

119) 元曉 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32上.

120) 玄奘 譯, 『大乘阿毘達磨雜集論』卷10(『大正藏』31, p.741上).

### Ⅲ. 中邊分別論疏의 思想

#### 1. 元曉의 菩提分法에 관한 修習對治

원효의『중변분별론소』의 殘卷인 제3권 중에 논설되고 있는 내용은 37조도품에 대한 修習과 修住 및 그 得果에 관한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도품 즉, 보리분법은 본래 소송 불교인들이 닦는 수행법이기 때문에 대승에서는 이를 거의 무의미한 내용으로 여겨서 방치한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였다. 그렇지만 초기 유가학과와 법상학에서는 오히려 이 수행법을 진지하게 다루는 내용들이 보이고 있으니, 이것은 보살의 수행과도 관련된다는 취지 때문이다. 즉,『大智度論』에 보면,

菩薩摩訶薩은 머무르지 않는 법으로 반야바라밀 중에 머무르면서도 그런 생각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응당히 4염처, 4정근, 4여의족, 5근, 5력, 7각분, 8성도분을 구족한다.

문기를, 37품 이것은 성문과 벽지불의 도요, 6바라밀은 보살마하살의 도인데, 어째서 보살도에서 성문법을 설하는 것입니까?

대답하기를, 보살마하살은 당연히 일체의 선법과 일체의 도를 배워야 한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하려면 모두 일체의 선법과 일체의 도를 배워야 한다고 하신 바와 같이, 이른바 乾慧地부터 佛地[菩薩地]에 이르는 9지에서는 응당히 배우기는 하되 증득은 취하지 않아야 하지만, 佛地에서는 배우기도 하고 또한 증득하기도 해야 한다.

다시 어디에서 37품이 단지 성문과 벽지불의 법이지, 보살의 도가 아니라고 하였는가?

『반야바라밀경』중의「마하연품」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4염처 내지 8성도분은 이 것이 대승법이라 하였고, 3장 중의 어디에도 37품이 오직 소송만의 법이라고

설해진 곳은 없다.<sup>121)</sup>

라고 설해져 있고, 『瑜伽師地論』에서도 다음과 같이 논술되고 있다.

어째서 보살은 37보리분법을 정근하고 수습하여야 하는가? 말할진대 모든 보살은 보살의 네 가지 걸림이 없는 알음에 의지해서 선방편에 소섭된 오묘한 지혜로 37보리분법을 진실과 같이 알지만, 이를 증득하지는 않는다. 모든 보살들은 일체 2승의 理趣인 37종의 보리분법을 모두 진실과 같이 안다. 이를테면 성문승의 이취와 대승의 이취인 37종의 보리분법을 모두 사실과 같이 아는 것이다. 성문승의 이취인 37종의 보리분법을 진실과 같이 아는 것은 성문지에서와 같다.<sup>122)</sup>

라고 설해서, 역시 앞에서 든 『대지도론』과 그 개념을 같이 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즉 보살이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려면 일체의 선법과 도를 알고 닦아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초기의 수행법인 이 37보리분법을 수습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더구나 이것이 성문승이나 벽지불들만이 닦는 소승법으로 오해되고 있지만, 어디에도 소승법이라는 교설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효는 이러한 합리적이고도 원용적인 관점에서 대부분의 대승인들이 空의인 견지에서 이 37보리분법을 소승법으로 보고, 三諦와 三觀 등 고차원적인 이론만을 내세워서 그 標幟를 誇示하는 태도와는 달리, 모든 수행인들이 이를 잘

121) 鳩摩羅什 譯, 『大智度論』卷19(『大正藏』, 25, p.197中), “菩薩摩訶薩以不住法 住般若波羅蜜中 不生故應具足四念處四正勤四如意足五根五力七覺分八聖道分 問曰 三十七品是聲聞酸支佛道 六波羅蜜是菩薩摩訶薩道 何以故於菩薩道中說聲聞法 答曰 菩薩摩訶薩 應學一切善法一切道 如佛告須菩提菩薩摩訶薩行般若波羅蜜 悉學一切善法一切道 所謂乾慧地乃至佛地 是九地應學而不取證 佛地亦學 亦證 復次何處說三十七品 但是聲聞酸支佛法 非菩薩道 是般若波羅蜜摩訶衍品中 佛說四念處乃至八聖道分 是摩訶衍 三藏中 亦不說三十七品獨是小乘法。”

122) 玄奘譯, 『瑜伽師地論』卷45(『大正藏』, 30, p.539中~下), “云何菩薩於三十七菩提分法 精勤修習謂諸菩薩依止菩薩四無礙解 由善方便所攝妙智 於三十七菩提分法 如實了知而不作證 是諸菩薩普於一切二乘理趣三十七種菩提分法 皆如實知 謂於聲聞乘理趣 及於大乘理趣三十七種菩提分法 皆如實知 於聲聞乘理趣三十七種菩提分法 如實了知 如聲聞地。”

수습해서 대치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中 疏』를 저술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4염처에 관한 해설에 있어서도 생각이 반드시 대상에 대한 影像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함께 수습될 때가 있는데, 이를 염처라고 한다면서『지도론』등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즉,

『지도론』에 이르기를, 생각이 지혜에 수순하여 緣 가운데 바르게 머물면, 이것을 염처라고 한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만약 생각에 머물거나 생각으로 말미암아 머물면, 이를 모두 念住라고 한다. 생각에 머문다 함은 所緣에 염주하는 것이요, 생각으로 말미암아 머문다는 것은 智慧와 常念과 禪定에 접지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자성의 염주라고 하며,

나머지와 상응하는 모든 마음과 법은 이것을 상응의 염주라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聞所 成地 중에 설해진 것과 같다.<sup>123)</sup>

라고 논설하고 있어서, 이 4염처가 궁극적으로 지혜를 낳은 行相으로서『유가사지론』에 설해지고 있는 17지 가운데 제10위인 문소성지에서 설파된 내용과 같다는 것이 원효의 주장이다.

그리고 4正斷에 관해서는『지도론』과『유가사지론』등의 내용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정단은 이를 正慙이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慙’이란 體性的의 의미이고, ‘斷’이란 그에 따른 業을 일컫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된 법을 깨뜨리고 정법 가운데서 수행하기 때문에 정근행이라고 한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斷을『유가사지론』에서 이르기를, (1) 이미 발생한 악한 불선법을 律儀에 따라서 닦아 단멸시키는 율의단이 있고, (2) 아직 발생하지 않는 불선법을 짐짓 현행치 못하게 끊는 것을 斷斷이라고 하며, (3) 이미 발생한 선법을 자주 수습해서 증장

123) 元曉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18上, “如智度說念隨順智緣中正住是名念處總而言之若於此念住若由此念住皆名念住於此念住者謂所緣念住由此念住者謂若慧若念攝持於定是自性念住所餘相應諸心心法是相應念住此如聞所成地中說。”

토록 힘쓰는 修斷과, (4) 아직 발생하지 않는 선법을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防護斷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선법과 악법을 取捨하는 일 가운데서 증상된 意樂을 원만히 하고, 加行的 원만함을 드러내 보이교자 한 의도에서 宣說된 것이라고 한다.<sup>124)</sup>

더 나아가서 4신족이라는 것은 이를 如意足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足이란 滿足의 뜻으로서 여의하여 만족하기 때문에 여의족이라고 한다는 것이다.<sup>125)</sup> 『유가론』의 설을 인용하여 5근과 5력을 논설하고 있는데, 먼저 5根에서 根이란 增上의 의미를 말한다는 것으로서 능히 출세간법을 내어서 信 등의 수행법을 증상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前前에서 後後의 법을 觀望할 때에 생기되어 증상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내지 혜근은 오직 출세간법만을 관망한다<sup>126)</sup>는 것이다. 5력에 있어서 力이란 難伏을 의미하는데, 이를테면 天魔와 모든 사문들과 바라문 및 나머지 세간 등을 법답게 引奪할 수 없고, 모든 번뇌를 또한 능히 屈伏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난복이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힘이 큰 위세를 갖추어서 일체 마군의 세력을 伏하여 능히 일체 번뇌를 永盡함을 증득함으로 이를 가리켜서 력이라고 한다는 것이다.<sup>127)</sup>

그리고 7覺支에 관해서는 모든 수행자가 補特伽羅를 여의고 正性에 들어서 여실한 覺慧를 이미 증득하여 이를 활용하는 부분이 되므로 각지라고 하며, 이를

124) 元曉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18中~下, “言正斷者 亦名正慙 慙是體名 斷是業稱 智度論云 破諸邪法 正道中行故 名正慙行 言斷者 如瑜伽論 初名律儀斷 第二斷斷 —— 總而言之 爲欲顯示於黑白品取捨事中 增上意樂圓滿 及加行圓滿 是故宣說四種正斷.”

125) 元曉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19中, “故名神足此亦名如意足 足是滿足 足於如意 名如意足.”

126) 元曉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19中~下, “五根義者 增上義是根義 謂於能生出世間法 是信等行爲增上故 又復前前望後後法 於能生起爲增上故 乃至慧根唯望出世.”

127) 元曉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19下, “五力義者 難伏義是力義 謂若天魔 若諸沙門 諸婆羅門 若如世間 無有如法引奪者 諸煩惱經亦不能屈 故名難伏由此諸力 具大威勢 伏一切魔軍勢力 能證一切諸漏永盡 是故名力.”

또한 覺分이라고도 하는데, 分이라는 것은 因을 일컫는 것으로서 능히 覺果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부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지도론』에서도 이르기를, 無學의 진실한 지혜는 이 7가지로서 능히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分이라 한다고 설했다.<sup>128)</sup> 또한 8支聖道라는 것은 모든 聖者와 有學들이 이미 자취를 갈파하여 行迹의 正道에 소섭된 8지로 남김 없이 일체의 번뇌를 끊고서 해탈을 마침내 증득하기 때문에 이름하여 8지성도라고 하며, 또는 이를 정도라고도 부른다는 것이다.<sup>129)</sup>

그런데 이와 같은 보리분법들은 어디에서 그것이 수습되는가 하면, 『아비담론』과 『구사론』 등의 설에 의하면 4선근위에 配對해서 해설할 때는 4염처관은 煖法 前に 닦는 것이고, 4정근은 난법위에서, 4여의족은 頂法位, 5근은 忍法位, 5력은 世第一法位에서 각각 닦아지며, 견도위 중에서는 7각지를 닦고, 견도에서 수도위 가운데서는 8지성도를 수습한다는 것이다.<sup>130)</sup> 또한 그 수습되는 次第로서는 『유가론』의 교설을 인용하여 설명하기를,

念住位에서는 처음으로 마음을 繫縛하여 所緣되는 境界에 놓고, 다음은 소연되는 생각에 安住하여 열심히 正斷을 닦는다. 이어서 선정을 증득한 뒤에는 이 선정을 원만케 하기 위하여 神足 가운데서 열심히 加行을 닦고, 선정이 원만해졌으면, 一切相과 序重으로 하여금 계박을 여의게 하기 위하여 信 등 5근에 의지하여 가행을 닦는다. 가행 가운데 根은 하품이요, 力은 상품이다. 이와 같이 올바르게 가행도를 닦았

128) 元曉 撰, 『中邊分別論疏』 卷3, 『韓國佛教全書』 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19下, “七覺支義者 諸已證入正性離生補特伽羅 如實覺慧 用此爲支 故名覺支 亦名覺分 分之言因 能得覺果 故名覺分 如智度說 無學實慧 此七事能到 故名爲分.”

129) 元曉 撰, 『中邊分別論疏』 卷3, 『韓國佛教全書』 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19下, “八支聖道 義者 諸聖有學已見迹者 由八支攝行迹正道 能無餘斷一切煩惱 能於解脫究竟作證 是故名八支聖道亦名正道.”

130) 元曉 撰, 『中邊分別論疏』 卷3, 『韓國佛教全書』 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20中, “依毘曇說 四念處觀在煖法前 其四正勤在於煖法 四如意足在於頂法 五根在於忍法 五力在世第一法 —— 俱舍論述餘義云 —— 於見道中修習覺分 於見道修道中 修聖道分故.”



으면, 다음에는 7각지를 증득하여 實際에 통달케 된다. 실재를 통달했으면, 이어서 8도지를 수습해서 점차로 최상의 깨달음을 증득하여 일체의 장애로부터 완전하게 해탈케 된다.<sup>131)</sup>

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습 차제에 관하여 원효는 이외에도 『지도론』의 내용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도 이와 같은 차제에 동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각각의 의미와 수습 차제를 갖춘 37보리분법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대치되는가를 원효의 논석을 통하여 알아보면, 먼저 4염주 자체가 네 가지의 계박을 대치키 위해서 건립되었다는 것으로서,

마음은 몸을 執受縛으로 얽매이게 하고, 감정을 안의 領受縛으로 얽매이게 하며, 물질 등 경계의 形相을 了別縛으로 얽매이게 한다. 곧 설한 바의 몸 등 제법은 貪瞋癡 등 大小 번뇌의 執着縛으로 말미암아 얽매이게 된다. 이러한 네 가지의 繫縛을 대치하기 때문에 4 염주를 건립한 것이다.<sup>132)</sup>

라고 설명한 내용이 그것이고, 4正斷이란 策勵하고자 하는 意慾을 일컫는다는 것이다. 즉,

131) 元曉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21上, “於念住位最初繫心 置所緣境 次於所緣念安住 勤修正斷 次得定已 後令此定善圓滿故 於神足中 勤修加行 定圓滿已 爲令一切相及序重得離繫故 依信等根修加行 加行中 根是下品 力是上品 如是正修加行道已 次得覺支 通達實際 通達實際已 次修道支 漸漸乃至證得阿 菩提 於一切障 皆得解脫.”

132) 元曉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p.822下~823上, “當知心於身由執受縛所縛 於受由內領受縛所縛 於色等境界相 由了別縛所縛 卽於所說身等諸法 由貪瞋等大小煩惱 執着縛所縛 對治如是四種縛故 立四念住.”

정단의 수습이란 경전에 설해진 바와 같이 책려코자 하여 正勤을 일으켜서 마음을 책려하고 堅持하는 것을 말한다. — 정근이란 책려 등을 말하는데, 止, 擧, 捨의 形相을 作意하고 있는 가운데서 만약 止 등 형상이 작의하여 소연되는 경계가 戀著되지 않아 순수하게 대치되면 그 때에 이를 책려하고 한다.<sup>133)</sup>

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연되는 대상에 집착되지 않아서 순수하게 대치되는 것이 바로 책려인데, 이것이 바로 정단도 된다는 것이다.

이어서 4신족의 수습대치에서는 8종의 單行을 자주 수습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8종이란 欲, 精進, 信, 安, 正念, 正知, 思 및 捨 등을 가리키고, 이것은 또한 加行, 攝受, 繼屬 및 對治 등 네 가지에 소섭된다는 것이며,<sup>134)</sup> 5근의 수습에 있어서는 信根은 모든 4諦에서 忍의 可行修를 일으키고, 정진근은 覺悟가 되었기 때문에 정진행수를 일으키며, 염근은 不忘失한 行受, 정근은 心一境性的 행수, 혜근은 簡擇의 행수를 각각 일으킨다는 것이다.<sup>135)</sup> 5력의 수습도 이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7가지의 수습에는 共修習과 不共修習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공수습은 無慾과 寂滅 등에 의하여 念覺支 내지 捨覺支를 닦는 것을 말하고, 불공수습은 먼저 일체법을 憶念치 않는 念覺分 내지 일체법에 집착하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으며, 마

133) 元曉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23上, “正斷修習者 謂如經說 生欲策勵 發起正勤 策心持心。——正勤者 謂策勵等 於止舉捨相作意等中 若於止等相作意 不顧戀所緣境界 純修習對治 爾時名策勵。”

134) 元曉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23中, “神足修習者 謂數修習八種斷行 謂欲精進信安正念正知思捨 如是八種略攝爲四 謂加行攝受繼屬對治。”

135) 元曉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24中, “五根修習者 謂信根於諸諦起忍可行受 精進根爲覺悟故起精進行受 念根起不忘失行受 定根起心一境性行受 慧根起簡擇行受。”

136) 元曉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p.824下~825上, “覺支修習者 有共不共 共修相者 如對法說 依遠離無慾寂滅迴向棄捨 修念覺支 乃至捨覺支 ——不共修者 如智度說 於一切法 不憶不念 是名念覺分 ——於一切法 不著不依止 亦不見是捨心 是名捨覺分。”

음을 비웠다고 생각치도 않는 捨覺分의 수습이 그것이고,<sup>136)</sup> 8성도지에 관한 수습에서도 7각지와 같이 두 가지로 수행되는데, 共行은 앞의 각지와 그 내용이 같고, 不共行은 보살이 모든 법에 공하여 얻을 것이 없는데, 이는 마치 正見 가운데 머물면서 正思惟相을 관하는 것과 같되 일체 사유가 모두 샅된 것이며, 내지 열반을 사유하고 諸佛을 사유하는 것도 또한 모두 이와 같다는 것이다.<sup>137)</sup>

## 2. 元曉의 修住와 得果에 관한 見解

원효는 먼저 修住에 관한 정의에서,

수주품에서 修란 앞에서 실한 37조도품에 관한 수행을 말하며, 住란 수행에 의하여 건립된 地位로서 수행할 사람이 머물 곳이므로 住라고 한다.<sup>138)</sup>

라고 함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여기에서는 앞서 닦는 三乘者들의 수습위를 因位 등 18위 등으로 분류하여 설하고 있는 것이 그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면 因位란 어떤 위치인가 하면, 共位 7위 중의 하나로서 삼승의 種性を 말하는데, 앞서는 無始를 취하고, 뒤로는 發心을 제거했지만 그 중간에서 오직 因性만이 있어서 아직 수행과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인위라고 하며, 入이란 제2의 入位 修住로서 삼승인이 그 종성에 따라서 이미 初發心에 능히 趣入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르고, 行이란 제3의 행위수주인데, 삼승인이 발심한 이후 세제일법에 이르기까지 그 방편에 따라서 진여행을 닦기 때문이다. 그리고 意라는 것은 제

137) 元曉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社, 1979), p.825中, “道支修習者 若其空行如覺支說 不空行者 如智度說 菩薩於諸法 空無所得 住如是正見中觀正思惟相 知一切思惟皆是邪 乃至思惟涅槃 思惟諸佛 皆亦如是.”

138) 元曉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社, 1979), p.832下, “修住品者修是前說 道品之行住 是依行建立之位 行人所住 故名住.”

7 勝德位修住를 가리키는데, 6道를 의지에 따라서 轉換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 지위는 또한 앞의 學, 無學位에도 통한다는 것이다.<sup>139)</sup>

그리고 不共位에는 2위를 건립하는데, 그것은 有上和 無上으로서 유상은 이에 나아간 보살은 증상의 덕이 있어서 二乘과 다르고, 무상은 바로 보살을 가리킨다는 것이며,<sup>140)</sup> 前後位 가운데서는 6위를 安立하는데, 그 중에서 願樂位이라는 것은 10지 전의 40心位에서 一道를 증득코자 萬行의 업을 닦기 때문이며, 入位라는 것은 초지 보살이 이미 견도에 들어서 佛家에 남기에 이와 같이 부르고, 出位, 受記位 및 說者位를 거쳐 마침내 灌頂位에 오르면 제10지에서의 보살행이 충만하여 부처님의 지위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한다는 것이다.<sup>141)</sup> 마지막으로 同時位에는 3위가 설해지고 있으니, 그것은 각각 至位, 功德位 및 作事位 등이다. 至位란 果地의 범신이 왕래해서 至得에 이르기 때문이고, 공덕위란 受用身으로서 만행의 공덕에 의하여 단덕을 받기 때문이며, 作事位는 變化身으로서 시방 세계에 두루하면서 8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수주는 得果의 차별로서 전후가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sup>142)</sup> 이와 같이 18위를 4중에 배대해서 고찰하기도 한다.

이어서 원효는 득과품에서 이를 논석하기를, 앞의 수주품에 의지하여 득과의 相

139) 元曉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33上~中, “初共位中 卽立七位因者 第一因位修住 謂三乘種性 前取無始 後除發心 於其中間 唯有因性 未得行果 故名因位 入者 第二入位修住 謂三乘人隨其種性 已能趣入初發心故 行者 第三行位修住 謂三乘人發心以後 及至世第一法以還 隨其方便 修如行故 —— 意者 第七勝德位修住 得六道隨意轉故 此位通前學無學也.”

140) 元曉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33中, “立有上者爲異二勝 立無上者 爲簡菩薩.”

141) 元曉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33下, “第三段中 安立六位願樂位者 謂在地前四十心位 願證一道 業修萬行故 言入位者 初地菩薩已入見道 佛家故 —— 灌頂位者 是第十地 菩薩行滿 受佛位故.”

142) 元曉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33下, “第四段中安立三位 言至位者 果地法身 從自往來 到至得故 功德位者 是受用身 依萬行功受萬德故 作事位者 是變化身 遍十方界 化八相故 此三住者 顯果差別 無前後也.”

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명칭한다는 것으로서,<sup>143)</sup> 因에 의하여 5과가 같지 않음을 밝히고, 지위에 의하여 10과의 차별을 해설하고 있다. 즉 因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이름을 나열하면, (1) 異熟果, (2) 等流果, (3) 離繫果, (4) 土用果, (5) 增上果 등의 5과로 나누는데, 이러한 구별은 통문에 나아가 그 染淨을 雜說했기 때문인 것이며, 이 5과를 여기에서는 (1) 報果, (2) 增上果, (3) 隨流果, (4) 功用果, (5) 相離果 등으로 구별하여 논하는데, 이것은 別門에 의하여 오직 善果만을 설함으로 이에 따라 일어나는 차례대로 설한 것<sup>144)</sup>이어서 약간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명칭으로 부르는가 하면, 宿世의 선업이 所感한 과보로 선의 법기를 지었기 때문에 처음에 報果를 놓고, 이 보과의 증상력에 의하여 선근이 일어나며, 증상과가 비로소 일어난 이후에 先世의 愛樂의 勝善함을 수습하는 것이 等(隨)流果이고, 이 현재의 애락의 功力으로 말미암아 선근이 원만해지는데, 이것이 功用果로서 원만하게 닦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능히 모든 장애를 여의었기 때문에 제5에 相離果를 놓는다는 것이다.<sup>145)</sup> 아마도 이러한 주장은 원효의 독자적인 견해로 보인다.

地位에 의한 차별에서 10과를 들고 있는데, 그 제1과를 上上果라고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과는 入行位에 있는데, 入은 因의 上이 되고, 行은 入의 上이 되며, 밑을 바라보면 과가 되므로 上上果라고 한다. 이어 제2과는 이를 初果라고 하며, 제3과는 數習果, 제4과는 究竟果라고 부르는데, 나머지 6과는 隨順果로서

143) 元曉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出版部, 1979), p.834上~中, “得果品者 依前修住 顯得果相 是故名爲得果品也.”

144) 元曉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出版部, 1979), p.834中, “對因分別列名字者 依瑜伽說 一異熟果 二等流果 三離繫果 四土用果 五增上果 此就通門 染淨雜說 今此論說一名報果是異熟果 二增上果不異彼名 三隨流果是等流果 四功用果是土用果 五相離果是離繫果 此約別門 唯說善果 故隨善起 次第而說.”

145) 元曉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出版部, 1979), p.834中, “何者 宿世善業所感報果 作善法器 故在初說 依此報果增上力故 得發善根 是增上果始起以後 由先世習愛樂勝善 是等流果 由此現在愛樂功力 善根圓滿 是功用果 圓滿修故 能離諸障 是故第五立相離果.”

둘씩 둘씩서로 짝지어서 세 쌍을 이룬다. 여기에서 수순이란 앞의 4과 중에서 제 1과인 상상과에 수순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명칭한다는 것이다.<sup>146)</sup>

끝으로 원효는 이상에서 논술한 세 가지의 품들을 종합적으로 논평하여 귀결하기를, 총체적으로 결론지으면, 여기(論)에 네 가지(品)가 있다는 것은 總相을 말한 것으로서, 대치·수주·득과의 3품을 합하여 1처로 삼아 수행에 의하여 계위를 건립하고, 계위를 성취해서 득과를 세웠는데, 문장의 내용이 서로 相乘하여 隔絶함이 없으므로 釋論主가 이 3 품을 합하여 1처에 모아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이곳을 보면 4처가 있으니, (1) 相品, (2) 障品, (3) 眞實品, (4) 行住果品이 그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곳에 네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제4 처 안에 별도로 3義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품을 건립했기 때문에 3품(對治修住品, 修住品, 得果品)이 된다.<sup>147)</sup>

라고 논술했는데, 이것은『중변분별론』전체에 대한 구성을 밝힌 것으로서, 특히 그제4 대치수주품과 제5 수주품 및 제6 득과품 등 3품의 내용은 각각 修行과 修住와 그 得果에 관한 것인데, 이들은 서로 이어져 격절됨이 없으므로 한데 모아 살펴 본것이 석론주인 世親 때부터 유행하던 경향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원효도 이러한 취지를 일찍이 잘 알고 이들에 관한 주석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이 제3 권인 것으로 추정된다.

146) 元曉 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35中~下, “第二約位顯十 於中前四是略說果 其後六者 是廣說果 —— 初中言上上果者 是第一果 實是通名 —— 此第一果在入行位 入爲因上 行爲入上 望下爲果 名上上果 —— 言初果者 是第二果 —— 言數果者 是第三果 —— 究竟果者 是第四果 —— 此下三句明後六果 言隨順者 是前四中初上上果 —— 隨順彼故 名隨順果 此中三雙 皆是隨順.”

147) 元曉 撰, 『中邊分別論疏』卷3, 『韓國佛教全書』第1冊(東國大 出版部, 1979), p.837中~下, “總結究竟 言此處有四者 總相而言 對治修住得果三品 合爲一處 以依行立位 就位立果 文勢相乘 無隔絕故 故釋論主合此三品 一處集義 由是義故 至於此處 則有四處 一相 二障 三眞實 其第四者 謂行住果 以之故言 此處有四 第四處內別有三義 隨別立品 故言三品也.”

## IV. 結 語

원효는 해동의 보살답게 그 박식함이 출중하여 많은 사람들의 상상을 불허하는 경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실감할 수 있는 계기는 어쩌면 그의 저서들을 열람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거의 90여종에 수 백권으로 헤아려지는 저서들은 그다

양한 방면의 천착에도 감동을 받지만, 각 章疏에 표현되고 있는 심오한 문장 해설은 후학들에게 학문이 바로 머나먼 인생에 관한 탐구와 열정 그 자체의 결과가 아니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고찰된 『중변분별론』에 관한 원효의 주석 내용은 그것이 비록 잔권에 관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원효의 학구적인 열정과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흔적을 찾아 보기에는 손색이 없는 章疏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그에 설해진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갈파하고, 이에 관한 충분한 해설을 베풀 뒤에야 주석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제의 『중변분별론』은 유가·유식사상을 바탕으로 대승불교의 최대덕목인 중도 사상의 실천을 위하여 극단적인 관념들을 지양하면서 올곧게 나아갈 것을 목적으로하고 있는 論藏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념에 근거한 내용이라면 거기에는 어려운 교의에 관한 해설 보다는 실천적인 수행이 강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修習對治와 修住 및 그 得果 등이 무엇 보다도 중요한 덕목으로 떠오른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원효의 『중변분별론소』는 이 부분에 관한 것만이 현전하고 있어서 그에 관한 원효의 견해를 조명해 볼 수가 있는데, 특이한 것은 대승불교의 실천덕목에 소송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37助道品에 관한 해설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승의 실천덕목에 소송불교의 교법이 依用되고 있는 것은 다른 경론에서도 찾아 볼 수 있지만, 어쩌면 이 방면의 인용으로서는 여기에 설해진 내용이 선구적인 사상이 아니었을까 여겨진다.

그러면 대승불교의 논장에 37도품 등과 같이 소승법이 설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상은 어느 교학분야에서 보다도 초기의 유가·유식사상에서 많이 응용되었다

고 하는데, 그것은『대지도론』과『유가사지론』등 대승교설이 논의된 典籍의 내용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즉 보살이 출현함으로서 대승불교에 관한 교설임을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菩薩摩訶薩의 수행이 본래 머무르지 않는 법으로 반야바라밀중에 머무르면서도 그런 생각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응당 4염처, 4정근, 4여의족, 5근, 5력, 7각분, 8성도분을 구족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37도품은 성문과 벽지불의 도요, 6바라밀은 보살의 실천도인데, 어째서 보살도에서 성문법을 설하는가에 대해서는 보살은 당연히 일체의 선법과 일체의 도를 배워야 하고, 일찍이 부처님께서도 수보리에게 보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하려면 모든 선법과 도를 배워야 한다고 하셨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더구나 어디에도 37품이 단지 성문과 벽지불의 법이고, 보살의 도가 아니라고 한 곳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반야바라밀경』중의「마하연품」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4염처 내지 8성도분은 이것이 대승법이고, 경율론 3장 중의 어디에도 37품이 오직 소승법이라고 설해진 곳은 없다는 내용 등이 그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아무튼 원효도 이와 같은 사상성을 내포하고 있는 37도품에 관하여 여기에서 자세하게 그것들을 科分해서 해설하고 있는 가운데, 먼저 4염처는 궁극적으로 지혜를 낳는 行相으로서『유가론』에서 설해지고 있는 17지 가운데서 제10지인 聞所成地에 해당된다는 것이며, 4정단은 선법과 악법을 取捨하는 일 가운데 증상된 意樂을 원만히 하고 가행을 원활하게 드러내고자 한 의도에서 宣說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37도품을 나름대로 해설하고, 그 修習으로서는 4염처는 4善根位 중에서 煖法 전에 닦는 것이고, 4정근은 난위에서, 4여의족은 정위, 5근은 인위, 5력은 세제일법위, 7각지는 견도위 내지 8성도는 견도위에서 수도위 중에 수습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수습의 차례에 관한 내용과 그 修住 및 得果 등에 대한 원효의 세밀한 논석이 베풀어지고 있으며, 원효가 『중변소』에서 많은 대소승의 경론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인용된 내용을 원본의 것과 대조해 보면 다소 함축되거나 간혹 오자와 탈자, 그리고 아직까지 해독이 되지 못했던 글자들이 검출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두 전적의 내용들을 비교해 보는 도표도 만들어 보았다.

# 元曉의 梵網經菩薩戒本私記 分析

崔 成 烈\*

## □ 내 용 차 례 □

- |                      |              |
|----------------------|--------------|
| I. 머리말               | IV. 十重大戒 分析  |
| II. 『梵網經』의 傳譯 및 註釋書  | V. 元曉의 十重大戒觀 |
| III. 『梵網經菩薩戒本私記』의 分科 | VI. 맺음말      |

## I. 머리말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그 구성원들이 따르고 지켜야 할 규범이 있듯이 스님들의 사회인 僧伽에도 그러한 규범은 있어 왔다. 규제가 아주 미약한 양심이나 도덕 같은 것으로부터 반드시 강제성이 수반되는 법률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규범은 다양하다. 승가의 戒律도 그렇다. 戒는 자율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도덕과 유사하다 할 것이고, 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는 律은 그래서 타율적이라고 할 수 있어 일반사회의 法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자율과 타율이 조화된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이듯이 戒와 律이 살아 있는 승가는 그래서 世間の 師表로 추앙 받아왔던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 우리 불교사에 우뚝하게 자리매김한 大佛敎學者요 著述家였던 元曉(617~686), 우리는 그의 저술에서 바로 승가의 참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가를 읽을 수 있다. 수많은 그의 저술 중에 유독 戒律에 관한 저술이 많은 것도 이유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인간과 인간의 삶에 대한 그의 깊은 省察이 行間마다 살아 숨쉬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戒律

\*조선대학교 역사·철학부 교수

觀은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생생한 공감을 불러일으켜 과연 聖師로구나 하는 감탄을 절로 자아내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 논문은 바로 그러한 元曉聖師의 戒律書 중의 하나인 『梵網經菩薩戒本私記』(이후로는 『私記』로 약칭함)를 대상으로 삼아 새 천년의 도덕적 지표로 삼는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도된 것으로 안다.

이 책의 원본은 본래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었으나 하권은 없어지고 상권만이 일본의 日蓮宗大本山 妙顯精舍에 전해져 왔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나라 유일의 章疏目錄인 義天의 教藏總錄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여러 목록집에도 보이지 않다가 불과 70년 전 비로소 세인의 관심을 끌기에 이른 것이다.

즉 1930년 일본에서 작성된 『奈良朝現在一切經疏目錄』의 支那撰述 釋律部에 의해 이 책이 현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奈良錄'이라 약칭되는 이 목록은 石田茂作 編으로 그의 著 『寫經より見たる奈良朝佛教の研究』의 부록이며, 『東洋文庫論叢』 제11집 부록으로 간행된 것이다. 현재 일본 『續藏』 제1편 제95套 제2책(新版 제95책, p.215)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明治 43년(1910) 12월에 續藏刊行을 위해 謄寫해 놓았던 것이다.<sup>1)</sup> 그 때의 사정을 알려주는 기록이 이 『私記』의 말미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sup>2)</sup>

지난 해 明治 43년 12월 續藏經 編輯長 中野達慧 선생이 말하기를 '이 책(元曉의 梵網經菩薩戒本私記)은 세상에 드문 책이라 다른 藏經에는 수록된 일이 없습니다. 이 책을 謄寫하여 續藏에 編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고 하였다. 나 辰(妙顯精舍 方丈 靜照日辰)은 바로 그의 請求에 응하여 謄寫를 許諾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글로 적어 주었다.

1) 金煥泰 著, 『韓國佛教 古典名著의 世界』 p.60. 民族史, 1994.

2)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87 中~下. "去明治四十三年十二月 續藏經編輯長 中野達慧師曰 此書者希代之書 而於他家無所藏 請謄寫之 以編入續藏 辰乃速應請求許謄寫 且記其事實以授焉 于時明治四十有四年一月吉旦 四海唱道五十四 傳燈沙門 靜照日辰 謹識 於日蓮宗大本山妙顯精舍方丈."

明治 44년 일월 초하루

四海唱道 五十四 傳燈沙門 靜照日辰 謹識

日蓮宗 大本山 妙顯精舍 方丈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이 續藏經의 誤脫字를 修訂하여 『韓國佛教全書』 제1책에 그 全文을 수록해 놓았고, 원문과 한글 번역을 함께 실은 것은 『元曉大師全集』 제5책이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서는 『元曉思想』<sup>3)</sup>이 있다. 그 후 1998년 10월 대구 팔공산 파계사 靈山律院에서 이 譯本을 다시 校訂·潤文하여 『梵網經菩薩戒本私記』라는 이름으로 간행한 적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책들을 참고하여 2장에서는 『梵網經』의 傳譯과 註釋書를 소개하여 이 『私記』에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3장에서는 이를 分科하여 이 책의 體制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4장에서는 十重大戒를 분석하여 그 자세한 내용을 살필 수 있도록 配慮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는 원효의 十重大戒觀을 필자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것이다.

이 논문을 청탁한 元曉學研究院側에서는 넉넉한 시간을 주었으나 필자의 개인적 사정은 그렇지 못하여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빠 글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약속을 어겨가면서 겨우 탈고하다보니 原義를 잘못 파악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필자의 잘못임을 인정하면서 언제 한가한 시간이 허락된다면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야겠다는 말로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3) 沈載烈 譯, 弘法院, 1984.

## Ⅱ. 梵網經의 傳譯 및 註釋書

### 1. 傳譯

#### 1) 翻譯

上·下 兩 卷으로 된 『梵網經』은 律部에 속한 것으로 이 경의 완전한 이름은 『梵網經盧遮那佛說菩薩心地法門品 第十』<sup>4)</sup>이다. 이를 약칭하여 『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 第十』, 『梵網菩薩戒經』, 『菩薩戒本』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 경은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경로를 거쳐 중국으로 전해졌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逸話を 미루어 짐작컨대 法護 이후에 전해진 것만은 분명하리라는 추측만 가능한 실정이다.

法護 三藏은 경전을 가져오는 데 있어 육로보다 순탄하고 편리한 바닷길을 택하게 되었다. 『梵網經』을 높이 모시고자 한 그는 다른 경전을 배에 실은 다음 마지막으로 『梵網經』 120권을 실었다. 그런데 배가 물 속으로 가라앉는 것이 아닌가. 아깝지만 하는 수 없이 『梵網經』 120권 무게에 해당하는 만큼 다른 梵字 경전을 내려놓고 또 다시 『梵網經』을 올려놓았다. 그러나 배는 역시 가라앉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다른 경전을 다 내려놓고 『梵網經』만 실어도 배는 가라앉고 말았다.

이것은 동쪽 중생들이 『梵網經』을 받아들일 만한 복이 없는 탓이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라. 축법호 삼장은 탄식하면서 다른 범어 경전만을 배에 싣고 모셔왔다는 전설이 있다.<sup>5)</sup>

4) 『高麗大藏經』 14권, No.1222.

5) 釋性愚 講義, 『梵網經菩薩心地戒品 講義 案』, p.7. 孤雲寺本末寺教育研修院, 1997.

한편 이 경의 譯者는 다음의 『梵網經序』에 보인 것처럼 일단은 鳩摩羅什(343~413)으로 보아 무리가 없을 듯하다.

弘始 3년(401) 淳風이 동쪽으로 불어오던 때였다. 詔勅에 의해 長安 草堂寺에 있던 天竺의 法師 鳩摩羅什은 義學沙門 3천여 명과 함께 梵文 50餘部를 번역하였다. 다만 梵網經 120권 61품 중 菩薩心地品 第十은 오로지 보살이 수행하는 지위를 밝혀 놓은 것이다. 이 때 道融·道影 등 3百人 등이 菩薩戒를 받았다. 그들 각자는 이 품을 외우는 것으로 마음의 으뜸으로 삼고, 스승과 제자가 뜻을 모아 1품 81부를 정성껏 書寫하여 세상에 유통시켰다.<sup>6)</sup>

그렇다면 敦煌菩薩로 잘 알려진 竺法護가 56부 85권의 經論을 중국으로 가져 오기 위해 인도에 있었던 시기가 대략 265~291년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291년 이후 400년 사이에 걸친 시기에 중국에 전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沙門 僧肇의 作인 위 『梵網經序』에는 『梵網經』의 大部는 120권 61품으로 되어 있음에 반해 僧肇의 序文 앞에 있는 작자 未詳의 『梵網經序』(高麗大藏經本)에는 112권 61품으로 되어 있어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된다. 즉 이 두 序에는 譯出의 경위나 기타 사항은 거의 일치하나 卷數에 있어서는 이처럼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明曠의 『梵網經會疏』에는 152권 61품으로 되어 있어<sup>7)</sup> 중첩을 수가 없다.

이 경의 성격에 대해서도 구구한 說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즉 옛부터 『華嚴經』의 流類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으니, 唐의 明曠이 지은 『梵網菩薩戒經疏刪補』 卷上(續藏經第五十九套)과 宋의 與咸이 엮은 『菩薩戒經疏註』 第三 等에는 『梵網經』을 華嚴의 結經이라 하였으나, 日本의 諦忍(1705~1786, 名은 妙龍, 全十卷)이 지은 『梵網經要解』 第一에는 『菩薩瓔珞本業經』을 結經, 『梵網經』을 開經이라 말

6) 『梵網經序』(『大正藏』 24, p.997 上).

7) 『續藏經』 第五十套.

하고 있다.<sup>8)</sup>

이처럼 이 경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으나 중국에 전해진 시기나 경의 권수·성격에 대해 분명하게 규명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다가 近來의 研究에 의하면 劉宋代(5世紀)에 中國에서 成立된 文獻으로 보고 있어<sup>9)</sup> 鳩摩羅什譯이라고 하는 기존의 通說까지 흔들리고 있다. 설사 중국에서 성립된 경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은 通時代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앞으로 보다 深度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경전이라고 하겠다.

## 2) 內容

上·下 兩 卷의 체제로 구성된 이 경의 상권에는 석가모니불이 제4禪地 摩醯首羅天王宮에서 수많은 梵天王과 여러 보살들에게 盧舍那佛의 心地法門을 설하고 나서 몸에서 광명을 내어 모든 중생들에게 보여 주었다. 그 광명을 본 보살 가운데 玄通華光王菩薩이 三昧에서 일어나 석가모니불을 찾아가니 그는 여러 대중을 이끌고 노사불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佛果를 성취할 수 있는가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노사나불의 대답이 상권의 중심이 되고 있다. 주된 내용은 信心을 일으키는 信忍, 신심에 대한 疑惑이 없도록 하는 法忍, 수행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修忍, 그리고 불도를 깨닫게 되는 聖忍의 네 가지이다. 이른바 十發趣心·十長養心·十金剛心·十地의 설명이 그것이다.

下卷에서는 보살이 불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율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노사나불이 지난 시절에 자신이 수행한 수많은 교리를 요약하여 소개하고 이를 마음속으로 받들고 닦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석가모니불이 正覺을 이룬 다음 보살이 받들고 지켜야 할 계율인 金剛寶戒를 설하는데, 이는 모든 부처와 보살의 바탕이며 모든 이들이 부처가 될 수 있는

8) 李智冠 著, 『韓國佛教所依經典研究』(p.490), 圖書出版 伽山文庫, 1993.

9) 水野弘元 外, 『佛典解題事典』, 春秋社, p.113.

씨앗이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가 설하고 있는 敎說의 취지를 말한다.

그리고 나서 바로 지금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원효의 『梵網經菩薩戒本私記』의 대상인 十重大戒와 四十八輕戒가 설해지고 있다. 『梵網經』의 異名이 『梵網菩薩戒經』, 『菩薩戒本』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2. 註釋書

우리 나라에 律部가 처음 전해진 것은 백제 聖王 4년(526) 때가 아닌가 한다. 즉 謙益法師가 인도에서 귀국하면서 가지고 온 梵本 阿曇藏과 五部律文을 당시의 名僧 28인이 72권으로 번역하였고, 그 때에 曇旭과 惠仁 兩師는 律疏 36권을 저술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이다.<sup>10)</sup> 그러나 과연 겸익이 가져온 律典이나, 曇旭과 惠仁 兩師가 지은 律疏에 『梵網經』이 포함되어 있었을까? 하는 점은 의문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를 부정할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孝를 이룸하여 戒라 한다”고 함에서 엿볼 수 있듯이 중국적인 성격도 강하다.”<sup>11)</sup>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인도로부터 직수입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서 이 『菩薩戒』를 채용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아마도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는 신라시대의 圓光이 최초가 아닌가 한다.<sup>12)</sup> 원광이 589년에 陳나라에 들어가 600년에 귀국한 후 貴山과 蒂項에게 世俗五戒를 설하는 장면에 “불교에는 菩薩戒가 있어 그 조항이 열 가지가 있으나, 너희들은 臣子로서 그것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제 너희들에게 세속의 五戒를 주리라.”<sup>13)</sup>라고 한 사실에서 열 가지 菩薩戒가 『梵網經』의 十重大戒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전제가 충족된다면 이는 사실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10)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上篇, pp.33~34. [彌勒佛光寺事蹟]에 百濟聖王四年丙午 沙門謙益……齋梵本阿曇藏五部律藏歸國……國內名釋二十八人 與謙益法師 譯律部七十二卷 是爲百濟律宗之鼻祖也 於是曇旭惠仁兩法師 著律疏三十六卷.

11) 鄭承碩, 『佛典解說事典』 p.128.

12) 睦楨培, 『大乘菩薩戒 思想』, p.12. 東國大學校 附設 東國譯經院, 1988.

13) 『三國遺事』 卷四, 圓光西學條. 佛教有菩薩戒 其別有十 若等爲人臣子恐不能堪 今有世俗五戒.



그런데 圓光이 陳나라에 들어간 그 해 陳나라는 망하고 隋의 文帝가 六朝를 완전히 통일하는 때와 맞물리고 있다. 그러면 圓광이 중국에 체류한 것은 隋나라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그런데 圓광이 직접 天台 智顛(538~597)의 가르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名望은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란 蓋然性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圓광도 菩薩戒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天台 智顛(538~597)의 『菩薩戒義疏』가 저작된 시기를 그의 말년으로 보더라도<sup>14)</sup> 圓光이 중국에 滯留할 때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실사 圓광의 教法이 『梵網經』의 菩薩戒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菩薩戒의 보급에 기여한 최초의 인물이란 점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이후 善德王代의 慈藏에 이르러 『梵網經』에 의한 보살계가 실질적으로 유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慈藏은 선덕왕 5년(636)에 入唐하여 643년 귀국할 때, 唐太宗으로부터 大藏經 一帙을 받아 가지고 돌아 왔다. 그 대장경 가운데 小乘三藏을 제외한 대부분이 大乘經典이고 보면 이 대승경전 가운데 『梵網經』과 그 注釋書가 포함되지 않았을까 한다. 왜냐하면 隋의 文帝는 開皇 5년(585)에 法經으로부터 菩薩戒를 받았고, 또한 隋 煬帝도 智日曠“獨 보살계를 받는 등 그 시대에 이미 보살계가 대유행이었기 때문에”<sup>15)</sup> 이런 점에서 慈藏이 歸國時에 『梵網經』을 가져왔으리라는 추정은 충분한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신라시대에 연구·저작된 『梵網經』 註釋書를 보면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4) 天台 智顛의 『菩薩戒義疏』는 그의 제자 灌頂(561~632)이 기록한 것이다. 천태의 말년에 이 疏를 지었다고 볼 때 灌頂은 30대 초반이므로 이런 추정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15) 陸楨培, 前掲書 p.13.

〈표 1〉 『梵網經』 註釋書(단 우리 나라)

주 석 서	주석자	수 록 문 헌	비 고			
			조	불	심	목
범망경보살계본사기 2권/존(상권) 범망경지범요기 1권/존 범망경소 2권/실 범망경약소 1권/실 범망경중요 1권/실	元曉	원효전집 제5책 · 한국불교전서 제1책 원효전집 제5책 · 한국불교전서 제1책	○	○	○	○
범망경보살계본중요 1권/존 범망경고적기 3(혹2·4)권/존 범망경고적절충 5권 범망경보살계본중요과해 2권 범망경보살계본중요상회 2권 범망경중요 1권	太賢 (大賢)	한국불교전서 제3책 · 대정장 제45권 한국불교전서 제3책 · 대정장 제40권	○	○	○	○
범망경문기 2권/실 범망경계본소 3(혹2)권/존	義寂	한국불교전서 제2책 · 대정장 제55권	-	○	○	○
범망경보살계본술기 4(혹3·2)권/존	勝莊	한국불교전서 제2책 · 대일본속장경 제60套	-	○	○	○
범망경소 3권/실	玄一		-	○	-	○
범망경기 2권/실	端目		-	○	-	○
범망경기 1권/실	圓勝		-	○	-	○

\*비고란의 조: 신라불교의 이념과 역사(조명기), 불: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심: 보살계본 범망경<심재열>, 목: 대승보살계 사상<목정배>를 나타냄.

### Ⅲ. 梵網經菩薩戒本私記의 分科

이 『私記』는 크게 釋題名字와 入文解釋으로 나누어져 있다.<sup>16)</sup> 釋題名字는 글자 그대로 『梵網經』의 제목을 해석한 것이고, 入文解釋은 이 경의 본문을 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얼핏보면 문단의 구조가 너무 간단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원효의 『梵網經疏』 二권이 現存해 있다면 이렇게 간략하게 두 문으로 해석되지는 않았을 것”<sup>17)</sup>이라는 오해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분명한 실수이다. 왜냐하면 이 『사기』의 冒頭에 ‘이 경을 兩門으로 간략하게 분별한다’<sup>18)</sup>고 분명히 밝혀 놓았기 때문에 二권의 現存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 1. 釋題名字

經典의 立題는 사람마다 그 방법을 달리하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중국 三論宗의 集大成者 吉藏, 東晉시대 정토교의 고승 慧遠, 중국 화엄종의 三祖 澄觀 등 諸師의 경우 각기 다른 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효의 경우는 어떤가? 중국 諸師의 例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님은 다음의 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涅槃經』과 같이 法으로 이름을 삼는 것이 있는가 하면, 『勝鬘經』과 같이 사람의 이름으로 경의 이름을 삼기도 한다. 또는 『妙法蓮華經』과 같이 法과 譬喩를 합해서

16)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74 中. “將釋此經 略作兩門分別 一者釋題名字 二者入文解釋”

17) 沈載烈, 『元曉思想』 2 倫理觀, pp.147~148. 弘法院, 1983.

18)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74 中. “將釋此經 略作兩門分別 一者釋題名字 二者入文解釋.”

이름을 삼은 것도 있지만, 지금 이 『범망경』은 오직 비유로써 經目を 삼았다.<sup>19)</sup>

원효의 이런 해석은 아마도 <표 2>에서 보인 天台智顓의 七種立題 중에서 單喩立題를 그대로 채용한 것으로 봐도 잘못은 아닐 듯하다.

<표 2> 天台智顓의 立題法

單 三 複 三 具 足 一	單三	單人立題	佛說阿彌陀經	人：佛·阿彌陀	七 種 立 題
		單法立題	涅槃經	法：涅槃	
		單喩立題	梵網經	喩：梵網	
	複三	人法立題	文殊問般若經	人：文殊, 法：般若	
		法喩立題	妙法蓮華經	法：妙法, 喩：蓮華	
		人喩立題	如來獅子吼經	人：如來, 喩：獅子吼	
	具足一	具足立題	大方廣佛華嚴經	法：大方光, 人：佛, 喩：華嚴	

원효는 이 경의 제목을 풀이하면서 맨 먼저 이렇게 말한다. “『菩薩戒本』은 法에 譬喩하여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이 경의 완전한 이름은 마땅히 『梵網經菩薩心地品』이라고 해야 한다”<sup>20)</sup>고 하여 ‘梵網’, ‘經’, ‘菩薩’, ‘心地’, ‘品’으로 나누어 하나 하나를 설명하고 있다.

1) 이 經의 題目 풀이

‘梵網’이라고 한 것은 여래가 이 경을 설하실 적에 梵天王的 寶網이 幢을 뒤덮고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sup>21)</sup> 즉 이 경의 序分에,

19) 『梵網經菩薩戒本私記』 卷上, 『韓國佛教全書』 第1冊, p.586上. 有經單以法爲名 謂涅槃經等 或有經單以人名爲經目 謂勝鬘經等 或有經合法喩而爲經目 謂妙法蓮華經等.

20)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74 中. 所言菩薩戒本者 法喩所置目 故非正此經目也 若論是經正目者 應言梵網經菩薩心地品.

21)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74 中.

30에 成道하니 나를 釋迦牟尼로 부른다. 寂滅道場 金剛花光王座에서부터 摩醯首羅王天宮에 앉기까지 그 동안 열 군데에 머물면서 차례로 설법하였다. 그 때에 부처님께서 모든 大梵天王的 網羅와 幢을 관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한량없는 세계는 저 그물 망의 구멍과 같아서 하나 하나의 세계도 서로 각각 이어서 다르기가 한량이 없다. 부처의 教門도 또한 그와 같다. 내가 이 세계에 오기를 8천 번이나 거듭 하여 이 사바세계를 위하여 金剛花光王座로부터 摩醯首羅王宮에 이르기까지 이 가운데의 온갖 대중을 위하여 心地法門을 간략하게 열어 보였느니라.’<sup>22)</sup>

즉 ‘梵網’의 ‘梵’은 바로 色界 第4天인 摩醯首羅天宮 大梵天王을 지칭한 것이고, ‘網’은 그 범천왕의 궁전을 장엄한 그물(網)을 말한다. 부처님의 敎法을 이 梵網의 莊嚴에 비유한 것이다.

### (1) 梵網의 세 가지 意味

원효는 이 ‘梵網’을 세 가지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첫째는 여래가 설한 무량한 世界海法門은 蓮華上世界이다.<sup>23)</sup>

둘째는 이 경에서는 俗諦法을 논하고 있다.<sup>24)</sup>

셋째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다양한 법문은 ‘止’와 ‘觀’이 두 문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一切法을 融攝하기 때문이다.<sup>25)</sup>

위의 같이 세 가지 의미로 梵網을 해석했으나 모두가 “그물(網)과 그물눈(目)의

22)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卷下(『大正藏』24, p1003 下). 於寂滅道場坐金剛花光王座 乃至摩醯首羅天王宮 其中次第十住處所說 時佛觀諸大梵天王網羅幢因爲說 無量世界猶如網孔一一世界各各不同別異無量佛敎門亦復如是 吾今來此世界 八千返爲 此娑婆世界 坐金剛花光王座 乃至摩醯首羅天王宮 爲是中一切大衆 略開心地法門品竟.

23)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74 中~下.

24)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74 下.

25)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74 下.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비유로써 경의 이름을 삼았다. 그래서 梵網이 이 部の 별명이 된 것이다.”<sup>26)</sup>

## (2) 菩薩心地品

### ① 菩薩

보살의 譯語는 ‘菩提’와 ‘薩埵’의 합성어인 菩提薩埵摩訶薩埵이다. ‘菩提’는 道心으로, ‘薩埵’는 衆生(有情)이라는 뜻으로 번역된다. 따라서 보리살타는 道心有情이라는 뜻이 된다. 그리고 ‘摩訶’는 크다(大)는 것이니, 마하살타는 大道心有情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보리살타(道心有情)’는 自利行을 말하고, ‘마하살타’는 利他行을 뜻하는 것이다. 自利보다는 利他가 殊勝하기 때문에 大道心 衆生, 즉 큰 마음을 일으킨 중생이라고 한 것이다. 또 菩提心은 果이고, 중생은 因이다. 이 因·果가 合해진 이름이 大道心 衆生이다. 그러므로 큰 마음을 일으킨 중생이라고 한다는 것이<sup>27)</sup> 원효의 설명이다.

### ② 心地

心地는 能生하고 所住하는 處(地)이란 뜻이다. 이 地는 세 가지 뜻<sup>28)</sup>으로 풀이할 수 있다.

첫째는 十地 以前の 四十心과 十地 以後의 十心이 五十心인데, 이는 修行하는 菩薩이 머무는 處(所住地)이다. 그래서 心地라고 한다. 이 五十地에 머물러 있는 衆生心은 곧 다름 아닌 菩提心이다.

둘째는 보리심이 곧 중생심이기 때문에 三聚戒가 생겨나는 處이다.

셋째는 法界는 머물러 있어야 할 處이다. 수행인은 중생심이다. 설사 일체중생

26)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74 下. “如來所說法 如是三義者 當於此網目義故以喻爲名故 梵網者 此部別名.”

27)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74 下.

28)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p.274 下~275 上.

이 인·아수라·축생·아귀·지옥의 五道에 流轉하더라도 一法界 이외의 길로는 나갈 곳이 없다. 그러므로 이 五道는 다 법계요, 중생심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이 중에서 첫째와 셋째는 所住의 뜻이고, 둘째는 能生の 뜻이다.

經題 해석의 끝 부분에서 원효는 ‘上卷에는 보살의 心地法門을, 下卷에는 보살의 戒相을 밝히고 있다. 원래 大部는 112권<sup>29)</sup> 61품인데 이 경은 그 중에서 제10 「菩薩心地品」이다. 貝教師는 이 경의 완전한 이름을 『梵網經 盧舍那佛所說心地法門 釋迦牟尼佛所說 十無盡藏戒品』<sup>30)</sup>이라 했다’고 하여 經題의 풀이를 마무리 짓고 있다.

敷衍하면 이 경의 완전한 이름은 『梵網經 盧遮那佛說菩薩心地法門品 第十』이다. 여기에서 『梵網經』은 이 경의 譬喩名이요, ‘盧舍那佛說’은 이 경의 說主를 나타낸 것이며, ‘菩薩心地法門 第十’은 원래의 경은 112卷 61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第十품인 「菩薩心地品」의 범문만이 現存하기 때문에 大部中の 品名을 그대로 따온 것이다. 그런데 『梵網經 盧舍那佛所說心地法門 釋迦牟尼佛所說 十無盡藏戒品』이라고 한 貝教師의 말에는 ‘釋迦牟尼佛所說’이 더 첨가되어 있는데, 이는 노사나불이 설한 것을 석가모니불이 거듭 설하였기 때문이다.

〈표 3〉 釋題名字

釋題 名字	立題法	梵網三義	引用經論
	以喩爲目	如來能說無量世界海法門	*涅槃經 *勝鬘經 *妙法蓮華經
		論俗締法	
佛所說法門雖有多門不出止觀二門		*梵網經 *華嚴經 *貝教師	

29) 『대정장』 제24권 p.997. 上에 있는 두 가지 [梵網經序] 중에서 작자를 알 수 없는 첫 번째 序에는 112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僧肇의 [梵網經序]에는 120권이라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明曠의 疏에는 152권으로, 法藏의 疏에는 10만頌으로 되어 있어 종잡을 수가 없다. 그런데 僧肇의 序에 대해서는 『범망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구마라집의 전기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창작된 것이 아닌가 하여 의심하는 학자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목정배, 『대승보살계 사상』 p.8의 주6을 참고 바람)

30) 『梵網經菩薩戒本私記』 卷上, 『韓國佛教全書』 第1冊 pp. 586~587.

## 2. 入文解釋

經은 三分科, 三分科經, 혹은 科文이라고 하여 序分·正宗分·流通分으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梵網經』은 그러한 分科가 없다. 그 이유는 원래 112권으로 된 多부의 『범망경』 正說(宗)分 중 第10品인 『菩薩心地品』이 바로 지금 우리들이 持頌하는 『범망경』이기 때문에 分科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원효는 이 『私記』에서 편의상 經文의 뜻에 따라 다음과 같이 分科하고 있다. 즉 '我今盧舍那'<sup>31)</sup> 이하로부터 '第一清淨者'<sup>32)</sup>까지는 이 경을 설하게 된 동기를 밝힌 (文成發起) 곧 序分이고, '佛告諸佛子'<sup>33)</sup> ~ '現在諸菩薩今誦'<sup>34)</sup>까지는 이 경의 正說인 正宗分에 해당하며, 마지막으로 '佛子諦聽'<sup>35)</sup> 이하로부터 이 경의 끝(卷軸)까지를 辭當勸持 즉 流通分<sup>36)</sup>으로 구분하였다.

이상 入文解釋의 上段을 도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入文解釋의 分科

入文解釋	三分科	該當經文
	文成發起(序分)	我今盧舍那 ~ 第一清淨者
	正說(正宗分)	佛告諸佛子 ~ 現在諸菩薩今誦
	辭當勸持(流通分)	諸佛子諦聽 ~ 疾得成佛道

31) 『대정장』 24, p.1003 下의 左1行

32) 위 의 책, p.1004 中의 右에서 10行

33) 위의 책 같은 쪽, 中, 右에서 11行.

34) 위의 책, p.1009 中 左에서 4行.

35) 위의 책 같은 쪽, 中 左에서 3行

36)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75 上.



## 1) 序分

序分을 다시 三段으로 나누고 있다. 즉 '我今盧舍那' 이하 三行三句의 頌은 盧舍那佛序, '是時千百億' 이하의 7行 3句의 頌은 他方釋迦序, 그리고 '爾時釋迦牟尼佛' 이하의 長行은 '此方釋迦序' 라고 하였다.<sup>37)</sup> 이 三段으로 나눈 序分을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 (1) 盧舍那佛序

먼저 이 서의 내용을 개괄해 보자. 노사나불이 연화대에 앉아 천 꽃송이에 一千의 석가를 나투고, 한 꽃송이에 백억의 세계, 그리고 그 한 세계마다 한 분의 석가를 다시 나눈다. 그러자 그 모든 석가가 보리수 아래에서 일시에 성불하고, 각자 미진수 중생을 이끌고 노사나불의 처소를 찾아 와서 佛戒를 청한다.

이 盧舍那佛序를 다시 三段<sup>38)</sup>으로 나누면, 一은 二句로 化主를 나타내고(顯化主), '周遍' 이하로 二行 二句의 頌은 法을 듣는 대중을 나열한 것(列聽法之衆)이며, '俱來至我所' 이하의 三句는 설법을 하게 된 緣由(出所說法)라는 것이다.<sup>39)</sup>

문단 구별은 이로써 끝났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아주 세밀하게 나누고 있다. 즉 위의 각 문단을 형성하고 있는 句를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sup>40)</sup>

## ① 顯化主

바로 사람을 표시한 正表人, 住處를 밝힌 明主處의 두 구절로 갈라놓은 것이다.

## ② 列聽法之衆

이 문단에는 法門을 들은 大衆을 세 가지 짝(三雙)으로 구별하고 있다. 第一雙

37)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75 上.

38) 二로 되어 있으나 三의 잘못인 듯하다.

39)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75 上.

40)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75 上.

은 ‘周匝 一時成佛道’까지로 사람과 法이 상대한 것(人與法相對爲雙)이고, 第二雙은 ‘如是’로부터 ‘本身’까지로 본과 末이 상대한 것(本與末相對爲雙)이며, 第三雙은 ‘千百’으로부터 ‘塵衆’까지로 師와 從이 상대한 것(師與從相對爲雙)이라고 하였다.<sup>41)</sup> 이 세 쌍을 다음과 같이 다시 세분해 놓았다.

#### 가. 第一雙

위의 한 行은 能히 깨달은 사람을 밝혔고(明能覺人), 아래 二句는 깨달은 법을 밝힌 것(明所覺法)이다. 能覺人을 밝힌 것에 또 들어 있으니, 위 두 구는 應身을 나타낸 것(表應身)으로 住處를 밝힌 것이고, 아래 두 구는 化身을 나타낸 것(表化身)으로 바로 應身을 밝힌 것(正明應身)이다. 여기서 上句는 住處를, 下句는 化身임을 밝히고 있다.<sup>42)</sup>

또 所覺法을 밝힌 문단에 上句는 住處를 밝힌 것(明住處)이고, 下句는 바로 깨달은 法을 나타낸 것(正表所覺法)이다.<sup>43)</sup>

#### 나. 第二雙

上句는 末을 밝혔고(明末), 下句는 本을 밝힌 것(明本)이다.<sup>44)</sup>

#### 다. 第三雙

上句는 스승을 드러내고(標師), 下句는 따르는 從衆을 나타낸 것(顯從)이다.<sup>45)</sup>

### ③ 出所說法

두 文段으로 나눈 가운데 上一句는 대중이 부처님의 處所에 왔음을 밝힌 것(明

41)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75 下.

42)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75 下.

43)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p.275下~276 上.

44)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 276 上.

45)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76 上.

衆來至佛所)이며, 下二句는 바로 설법하신 것을 밝힌 것(正明所說法)이다.<sup>46)</sup>

이상 盧舍那佛序의 문단 조직과 該當經文, 註釋句 및 引用經論을 함께 도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盧舍那佛序 分科

		분 과			해 당 경 문
盧舍那佛序	顯化主	正表人			我今盧舍那
		明住處			方坐蓮花臺
	列聽法之衆	人與法相對爲雙	明能覺人	表應身	周 千花上 復現千釋迦
				表化身	明住處
			正明應身		一國一釋迦
		明所覺法	明住處	各坐菩提樹	
			正表所覺法	一時成佛道	
		本與末相對爲雙	明末	如是千百億	
	明本		盧舍那本身		
	師與從相對爲雙	標師	千百億釋迦		
		顯從	各接微塵衆		
	出所說法	明衆來至佛所			俱來至我所
		正明所說法			聽我誦佛戒 甘露門則開
	주 석 한 경 문				인 용 경 문
*我今 *盧舍那 *花 *菩提樹 *一時成佛道 *微塵衆				*華嚴經(2) *楞伽經(2)	
*俱來至我所 *甘露門則開				*金光明經(2)	

(2) 他方釋迦序

그 때 천 백억 석가모니불은 본래의 도량으로 돌아가서 本師인 노사나불의 十重 四十八戒를 외우니 미진수 보살이 이로 인해서 다 정각을 이룬다. 이에 석가모니 불은 이 계는 노사나불이 외운 것이니 대중들은 정성으로 믿고 마음에 간직하라고 하면서 계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 타방석가서의 대략적인 내용이다.

46)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76 上.

‘是時千百’ 이하의 他方釋迦序는 네 문단으로 나누었다. 一段은 一行一句의 頌으로 ‘諸佛이 각기 誦한 것을 밝힌 것’(明諸佛各誦)이고, 二段은 ‘戒가 해와 달과 같이 밝다’(戒如明日月)고 한 그 이하의 문단으로 戒德을 찬탄한 것(讚戒德)이며, 三段은 ‘是盧舍那誦’ 이하 五行의 頌으로 ‘모든 중생에게 戒를 受持하도록 권한 것’(明勸物受持)이며, 四段은 ‘大衆이 다 공경했다’ 이하로 戒를 受持하도록 권한 것을 맺은 부분(結勸)이다.<sup>47)</sup> 이하 네 문단을 다시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明諸佛各誦

처음 二二三句<sup>48)</sup>는 本來의 道場으로 돌아왔음을 밝혔고(明還至本道場), 뒤의 二句는 바로 戒를 외운 것을 밝힌 것(正明戒誦)이다.<sup>49)</sup>

### ② 讚戒德

이 문단에는 다시 두 文段이 있다. 위의 二句는 비유를 들어 戒德을 찬탄한 것을 밝힌 것(明學喻讚戒德)이고, 뒤의 二句는 法을 들어 戒를 찬탄한 것(學法歎戒)이다.<sup>50)</sup>

### ③ 明勸物受持

이 문단에도 역시 두 문단이 있다. 앞의 처음 二句는 스스로를 들어 권한 것(舉自而勸)이고, 그 뒤의 ‘汝新學菩薩’ 이하는 중생에게 이 戒를 받도록 바로 권한 것(正勸汝等受持)이다.

바로 권한 것에 또 두 문단이 있으니, 위 三行의 계송은 당시의 대중에게 권한 것(勸當時衆)이며 ‘一切有心’ 이하 一行半의 頌은 世間과 出世間の 무리들에게 권한 것(通勸二世衆)이다. 이 문단은 이익을 들어 중생에게 권하는 것(學益勸物)

47)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76 中.

48) 一二三句의 잘못된 듯하다.

49)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76 中.

50)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76 中.

이라고도 한다.<sup>51)</sup>

처음 '당시의 대중에게 권한 것(勸當時衆)'에 또 세 문단이 있다. 먼저 二句는 스스로 受持할 것을 권한 것(勸自受持)이고, 다음 二句는 轉授할 것을 권한 것(勸轉授)이다. 마지막으로 '諦聽' 이하는 三慧를 내고자 戒를 듣는 것(勸出三慧聽戒)이다. 여기에는 세 문단이 또 있는데, 즉 처음의 三句는 聞慧를 낼 것을 권한 것(勸出聞慧)이고, 두 번째는 '대중들이 함께 마음으로 믿었다(大衆心諦信)' 이하는 思慧를 내도록 권한 것(勸出思慧)이고, 세 번째는 '항상 이와 같이 믿어서(常作如是信)' 이하는 修慧를 내도록 권한 것(勸出修慧)이다.<sup>52)</sup>

'一切有心' 이하는 이익을 들어 중생에게 勸한 것(舉益勸物)인데, 그 가운데 또 세 문단이 있다. 먼저의 三句는 각자에게 勸한 것(舉自勸)이고, 다음 二句는 高位를 들어 勸한 것(舉高位勸)이며, 後一句는 眞佛子를 들어 勸한 것(舉眞佛子勸)이다.<sup>53)</sup>

#### ④ 結勸

'大衆이 다恭敬했다' 이하가 여기에 해당한다.<sup>54)</sup>

이상 他方釋迦序의 문단을 분과하고 그에 수반된 기타 사항을 총괄하여 도시하면 <표 6>과 같다.

51)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77 上.

52)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77 上.

53)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77 下.

54)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78 上.

〈표 6〉 他方釋迦序의 分科

		분 과		해당경문		
他 方 釋 迦 序	諸佛各誦	明還至本道場		是時千百億 還至本道場 各坐菩提樹		
		正明誦戒		誦我本師戒 十重四十八		
	讚戒德	明學喻讚戒德		戒如明日月 亦如瓔珞珠		
		學法歎戒		微塵菩薩衆 由是成正覺		
	明勸物受持	舉自而勸		是盧舍那誦 我亦如是誦		
		正勸汝等 受持	勸當時衆	勸自受持	汝新學菩薩 頂戴受持戒	
				勸轉授		受持是戒已 轉授諸衆生
				勸出三慧聽戒	勸出聞慧	諦聽我正誦 佛法中戒藏 波羅提木叉
					勸出思慧	大衆心諦信 如是當成佛 我是已成佛
					勸出修慧	常作如是信 戒品已具足
		通勸二世衆 (學益勸物)	舉自勸		一切有心者 皆應攝佛界 衆生受佛界	
			舉高位勸		卽入諸佛位 位同大覺位	
			舉眞佛子勸		眞是諸佛子	
		結勸		大衆皆恭敬 至心聽我誦		
	주 석 한 경 문				인 용 경 론	
*誦我本師戒 *珠 *微塵菩薩衆 *由是成正覺 *亦如是誦 *頂戴 *諦聽 *波羅提木叉 *如是當作佛 *我是已成佛 *常作如是信 *一切有心者 *皆應攝佛戒 *眞是諸佛子 *恭敬				*瓔珞經 *教師(2) *大乘論 *涅槃經 *律師 *十地論 *攝大乘論		

(3) 此方釋迦序

석가모니불께서 波羅提木叉를 맺고 나서 입으로 무량한 光明을 내니, 백 만억 대중과 모든 보살 그리고 16국왕 등이 모두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大乘戒를 듣고 자 하였다. 이에 부처님은 모든 보살들에게 이 戒는 모든 부처님의 근원ियो, 보살의 근본이며, 모든 대승보살들의 근본이라고 하면서 잘 듣고 외울 것이며, 받아

서 지닐 것을 당부한다는 것이 차방석가서의 내용이다.

이 此方釋迦序는 ‘爾時釋迦牟尼佛’ 이하의 經家序와 ‘告諸菩薩’ 이하의 佛序로 나누어 놓았다.<sup>55)</sup>

### ① 經家序

여기에 또 세 문단이 있다. 먼저는 부처님이 結戒하신 것을 밝힌 것(明佛結戒)이고, 다음은 放光한 것을 밝힌 것(明放光)이며, 그리고 當時의 대중들이 戒法을 들었다고 밝힌 것(明時衆聽法), 이렇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sup>56)</sup>

佛結戒를 밝힌 가운데에 또 두 문단이 있다. 먼저는 능히 사람을 다스리는 것(現能誥人)이고, 다음은 ‘初結’ 이하로 結法을 나타낸 것(表所結法)이다. 이 結法을 나타낸 것에 또 세 문단이 있으니, ‘初結’ 이하는 結戒의 이름을 나타낸 것(表所結戒名)이고, 그 다음 ‘孝順’ 이하로는 戒의 體性を 辨別한 것(辨戒體性), 그리고 ‘孝名’ 이하는 戒의 이름을 해석한 것(釋戒名字)이 그것이다. 戒의 體性を 辨別한 것에 또 두 문단이 있으니, 먼저는 戒의 體를 바로 밝히고(正明戒體), 다음에는 戒業의 功用을 밝혀 놓은 것(明戒業功用)이다.<sup>57)</sup>

### ② 佛序

이 佛序에도 세 문단이 있다. 스스로 외우도록 권한 것(舉自勸誦)이고, 다음은 ‘是故放光’ 이하로 간략히 戒相을 밝힌 것(略明戒相)이며, 마지막은 ‘佛子諦聽’ 이하로 受戒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한 것(廣列受戒之人)이다.<sup>58)</sup>

略明(辨)戒相에는 세 문단이 있는데, 戒의 因緣을 밝힌 것(明戒因緣)이 첫 문단이고, 戒體를 갖추는 것을 밝힌 것(明戒體具)이 두 번째 문단이며, ‘諸佛之根本’ 이하에 戒의 이익을 밝힌 것(明戒利益)이 세 번째 문단이다.<sup>59)</sup>

55)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78 上.

56)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78 上.

57)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78 上.

58)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78 下.

59)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79 上.

이상 此方釋迦序의 문단 구조와 註釋한 經文, 그리고 引用經論을 다같이 도시하  
면 <표 7>과 같다.

<표 7> 此方釋迦序의 分科 · 註釋經文 · 引用經論

		분 과		해 당 경 문		
此 方 釋 迦 序	經家序	明佛結戒	現能詰人	爾時釋迦牟尼佛		
			表所結法	表所結戒名	初結菩薩波羅提木叉	
				辨戒體性	正明戒體	孝順父母師僧三寶
					明戒業功用	孝順至道至法
		釋戒名字	孝名爲戒亦名制止			
	明放光	佛卽口放無量光明				
	明時衆聽法	是時百萬億 ~ 一切佛大乘戒				
	佛序	舉自勸誦	佛告諸菩薩 ~ 諸菩薩亦誦			
		略明戒相	明戒因緣	是故戒光 ~ 有緣非無因故		
			明戒體具	光光非青黃 ~ 非因果法		
明戒利益			是諸佛之根本 ~ 應讀誦善學			
列受戒之人	佛子諦聽 ~ 第一清淨者					
		주 석 한 경 문	인 용 경 문			
		*釋迦牟尼 *初坐菩提樹下成無上正覺 *波羅提木叉 *孝順 *父母 *師 *僧 *三寶 *至道之法 *孝名爲戒 *制止 *卽口放光 *十八梵 *六欲天 *佛大戒 *我今半月半月自誦 *發心菩薩 *戒光 *有緣 *無因 *光光 *非青黃赤白 *非色非心 *非有非無 *非因果法 *諸佛之本願 *菩薩之根本 *應受持 *應誦善學 *黃門 *八部鬼神 *化人 *第一 *清淨	*雜心論 *教師(2) *律師 *華嚴經 *仁王經(3) *攝大乘論(4) *瑜伽論(2) *瓔珞經 *般若經 *小乘家 *薩婆多 *成實家 *大乘家 *大乘論 *菩提資糧論 *大品經 *隆經師			



## 2) 正說分

본 경의 핵심 내용인 이 正說分은 '佛告諸佛子'<sup>60)</sup> 이하로부터 시작하여 '現在諸菩薩今誦'<sup>61)</sup>에서 끝난다. 그 내용은 十重大戒와 四十八輕戒이다.<sup>62)</sup> 그런데 현존하는 원효의 『사기』 上卷에는 十重大戒만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는 十重大戒일 뿐 나머지 四十八輕戒와 流通分은 제외될 수밖에 없다.

四十八輕戒는 逸失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그 분량으로 보아 中卷·下卷으로 나누어져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문단은 다음과 같이 3단으로 나누었다.<sup>63)</sup> 初學들을 위해 十重大戒를 전체적으로 풀이한 總釋初學, '佛告佛子 若自殺' 이하로 十重大戒를 따로 풀이하여 制止한 別解制止, '善學諸仁者'<sup>64)</sup> 이하로 十重大戒를 총괄적으로 묶어 거듭 制止한 總結重制<sup>65)</sup>가 그것이다.

## (1) 總釋初學

여기에는 數를 들어 이름을 標한 舉數標名, 중생들에게 외우고 배울 것을 권한 勸物誦學, 이렇게 배우기를 總括的으로 마무리한 總結勸學, 이렇게 세 문단으로 구분된다.<sup>66)</sup>

60) 전계 『법망경』 p.1004 中.

61) 前掲 『梵網經』 p.1009 中.

62)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80 上.

63)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80 上.

64) 원문에는 '若有犯者' 라고 이는 잘못인 듯하다. 실제 總結重制 부분에서는 初言善學으로 시작하고 있음에서 立證된다.

65) 실제 總結重制 부분에서 "첫째는 거듭 제지하여 배우도록 권함을 밝히고, 둘째는 '만약에 범하는 자가 있다면' 이하는 處를 관찰하여 배우도록 권함을 밝히고...."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總結重制 부분은 '만약 범하는 자가 있다면' 이라는 부분이 아니고 마땅히 '잘 배우고 있는 어진 이들이(善學諸仁者)' 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6)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80 上.

이 중 두 번째 문단인 勸物誦學에 다시 두 문단이 있다. 즉 처음은 잘못을 예로 들어 외우도록 권한 舉非勸誦이고, 다음은 사람을 들어 외우도록 권한 舉人勸誦이다.<sup>67)</sup>

## (2) 別解制止

이는 十重大戒의 열 가지 戒를 따로 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문단 역시 十文段으로 나누어진다.<sup>68)</sup>

### ① 第一 不殺戒

不煞戒는 달리 殺戒라고도 한다. 이 戒文은 세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다. 즉 처음에 ‘佛告佛子’ 라고 한 대목은 사람(佛子)을 들어 聽法의 主體를 나타낸 舉人表體이다. ‘若自然’ 이하는 사례를 열거하여 隨行을 밝힌 列事明隨이며, ‘自’ 이하는 잘못을 들어 허물인가 아닌가를 결정한 舉非結過이다.<sup>69)</sup>

#### 가. 舉人表體

단일 문단이라 더 이상 나눌 수 없다.

#### 나. 列事明隨

잘못을 나열한 列非와 ‘是菩薩’ 이하로부터는 正行으로 對治하여 밝힌 明對治 正行의 두 文段으로 나누었다. 먼저의 列非는 重非와 ‘乃至一切’ 이하의 輕非로 나누었는데, 重非는 또 곧바로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正非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罪業이 되는가를 밝힌 具緣成業으로 나누어진다.<sup>70)</sup>

67)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0 上.

68)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0 中.

69)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0 中.

70)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0 中.

다. 舉非結過

이 계를 지니고(持) 범하는 것(犯)을 四句로 가려 놓은 것이다. 즉 이 계를 범했음에도 한결같이 복이 되고 죄가 되지 않는 一向福非罪, 罪도 안 되고 福도 안 되는 非罪非福, 오직 가벼운 罪는 되나 무거운 罪가 되지 않는 唯輕非重, 오직 무거운 죄가 되어 가벼운 죄가 되지 않는 唯重非輕이 그것이다.

위 계문의 科文과 그에 따른 經文<sup>71)</sup>과 주석한 經文, 그리고 引用經論을 함께 도시하면 <표 8>과 같다.

<표 8> 不煞戒의 科文

戒名	科 文			經 文	注釋한 經文	引用經論	
一, 不 殺 戒	學人表體				佛言佛子		
	列事明隨	列非	重非	正非	若自殺教人殺方便讚歎殺見作隨喜乃至呪殺	*佛告諸佛子 *非菩薩 *非佛種子	*涅槃經 *薩婆多(2) *成實家 *大乘家
				具緣成業	殺因殺緣殺法殺業	*十重波羅提	*僧祇律
		輕非		乃至一切有命者不得故殺	木叉 *若自然 *乃至	*四分律(2) *律	
	對治正行			是菩薩應起常住慈悲心孝順心方便救護一切衆生而	*救 *快意 *波羅夷	*多羅尼經 *唯識論 *疏	
舉非結過				自恣心快意殺生者是菩薩波羅夷罪			

71) 經文은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卷下』(『大正藏』 24, pp.1003~1010)를 의거했음.

② 第二 偷盜戒

不偷盜戒라고도 한다. 이 계를 주석한 문단은 앞에서 본 不殺戒와 같다. 舉人表體, 列事明理, 舉非結過(舉非結罪)<sup>72)</sup>의 세 문단으로 크게 구분하였고, 小段도 역시 다를 바가 없다.<sup>73)</sup> 分科는 <표 9>와 같다.

<표 9> 偷盜戒

戒名	科 文			經 文	注釋한 經文	引用經論	
二, 偷盜戒	舉人表體				若佛子		*涅槃經 *鼻奈耶律 *十誦律(2)
	列事明隨	列非	重非	正非	自盜教人盜方便盜	*自盜 *教人盜 *方便盜 *呪盜	*薩婆多 *摩得伽(3) *律 *律文
			具緣成業		盜因盜緣盜法盜業 呪盜乃至鬼神有主 劫賊物	*有主 賊物 *乃至	*十誦摩得伽薩婆多
		輕非		一切財物一針一草 不得故盜而	*鬼神 *不得故盜 *應生佛性 *	*法源律師 *僧祇律 *善見律 *善生經 *小乘僧祇律 *四分律 *經	
	對治正行				菩薩應生佛性孝順 慈悲心常助一切人 生福生樂而		
舉非結過				反更盜人財物者是 菩薩波羅夷罪			

③ 第三 不淫戒

淫戒라고도 한다. 不淫戒 역시 크게 삼단으로 나눈 것은 앞의 예와 같다. 그러나 그 이름에 있어서는 약간 다르다. 즉 舉人表體, 舉非明說, 舉非結過로 나누고 있다. 仲段은 잘못임을 바로 열거한 正列非와 '而菩薩應' 이하는 설명하는 明說로 되어 있다. 그리고 列非 中에도 무거운 죄를 열거한 列重非와 가벼운 죄를 열거한

72)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82 上.

73)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82 上.

列輕非로 나누고 있다. 또 列重非를 다시 바로 잘못임을 나열한 正列非와 明具緣成業으로 나누어 놓았다.<sup>74)</sup> 분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不淫戒

戒名	科 文			經 文	注釋한 經文	引用經論	
三, 不 淫 戒	舉人 表體				若佛子	*自淫 *教人 *乃至一切女人 *不得故淫 *乃至畜生女 *及非道行淫 六親	*優婆色戒經(2) *方等多羅尼經 *仁王經 *文殊舍利巡幸 經 *淨名經 *
	舉非 明說	正列 非	列重 非	正列 非	自淫教人淫乃至一切 女人不得故淫		
				具緣 成業	淫因淫緣淫法淫業		
			列輕 非		乃至畜生女諸天鬼神 女及非道行淫而		
		明說	菩薩應生孝順心救度 一切衆生淨法與人而				
舉非 結過				反更起一切人淫不擇 畜生乃至母女姊妹六 親行淫無慈悲心者是 菩薩波羅夷罪			

④ 第四 妄語戒

不妄語戒라고도 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삼단으로 되어 있다고 했을 뿐 더 이상의 언급은 없다.<sup>75)</sup> 그런데 ‘前’이라고 한 것이 직전인 第三의 不淫戒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의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여기서는 第一戒인 不殺戒의 예에 따라 문단을 구분하기로 한다. 이 戒는 앞서의 3戒와 마찬가지로 대·소승이 함께 배워야 할 戒이고, 七衆이 같이 制止하는 戒이다.<sup>76)</sup> 분과는 <표 11>과 같다.

74)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3 中.

75)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4 上.

76)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4 下.

〈丑 11〉 妄語戒

戒名	科 文			經 文	注釋한 經文	引用經論	
四, 妄語戒	舉人表體				若佛子		
	列事明隨	列非	重非	正非	自妄語教人妄語方便妄語	*自妄語	*僧祇律 *律(2)
				具緣成業	妄語因妄語緣妄語法妄語業	*教人妄語 *方便妄語	
		輕非		乃至不見言見見言不見身心妄語而	*乃至		
	對治正行			菩薩常生正語正見亦生一切衆生正語正見而	*不見言見 *正語 *正見		
舉非結過				反更起一切衆生邪語邪見邪業者是菩薩波羅夷罪			

⑤ 第五 酤酒戒

不酤酒戒라고도 한다. 문단의 구분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으나 앞의 예를 그대로 따른다. 이상의 4계는 大小同學이요, 七衆共制의 戒目이다.<sup>77)</sup> 분과는 〈丑 12〉와 같다.

〈丑 12〉 酤酒戒

戒名	科 文			經 文	注釋한 經文	引用經論	
五, 酤酒戒	舉人表體				若佛子		
	列事明隨	列非	重非	正非	自酤酒教人酤酒		*優婆塞戒經 *四分律 *十誦律 *持地論
				具緣成業	酤酒因酤酒緣酤酒法酤酒業	*自酤酒 *教人酤酒	
		輕非		一切酒不得酤是酒起罪因緣而	*一切酒		
	對治正行			菩薩應生一切衆生明達之慧而	*明達之慧		
舉非結過				反更生一切衆生顛倒之心者是菩薩波羅夷罪			

77)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4 下.

⑥ 第六 意心說同法人過戒

이 계 역시 문단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앞의 예에 따른다. 대·소승이 다른 계이다. 분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意心說同法人過戒

戒名	科 文			經 文	注釋한 經文	引用經論
六, 意心說同法人過戒	舉人表體			若佛子	*教人說罪過 *外道惡人 *二乘惡人 *非法 *非律	*없음
	列事明隨	列非	重非	正非 自說出家在家菩薩比丘比丘尼罪過教人說罪過		
			具緣成業	罪過因罪過緣罪過法罪過業		
		輕非				
	對治正行			而菩薩聞外道惡人及二乘惡人說佛法中非法非律常生慈心教化是惡人背令生大乘善信而		
舉非結過			菩薩反更自說佛法中罪過者是菩薩波羅夷罪			

⑦ 第七 自讚毀他戒

이익을 위해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헐뜯는 戒(爲利讚毀戒)라고도 한다. 七衆을 함께 制止하며, 대승이나 소승이 다같이 배워야 할 戒이다. 문단은 전과 같다.<sup>78)</sup> 분과는 <표 14>와 같다.

78)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5 中.

〈표 14〉 自讚毀他戒

戒名	科 文			經 文	注釋한 經文	引用經論	
七, 自讚毀他戒	舉人表體				若佛子	*없음	*持地論 *梵網經
	列事明隨	列非	重非	正非	自讚毀他亦教人自讚毀他		
				具緣成業	毀他因毀他緣毀他法毀他業		
		輕非					
	對治正行				而菩薩應代一切衆生受加毀辱惡事自向己好事與他人		
舉非結過				若自揚己德隱他人好事令他人受毀者是菩薩波羅夷罪			

⑧ 第八 慳惜可毀戒

이 계 역시 문단에 언급이 없어 전례를 따른다. 이 戒도 七衆을 함께 制止하고, 대·소승이 함께 배워야 할 戒이다.<sup>79)</sup> 문단 구분은 따로 하지 않았다. 분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慳惜可毀戒

戒名	科 文			經 文	注釋한 經文	引用經論	
八, 慳惜可毀戒	舉人表體				若佛子	*一微塵法	*없음
	列事明	列非	重非	正非	自慳教人慳		
				具緣成業	慳因慳緣慳法慳業		
		輕非					
	對治正行				而菩薩見一切貧窮人來乞者隨前人所須一切給與而菩薩而惡心瞋心乃至不施一錢一針一草有求法者不爲說一句一偈微塵許法而		
舉非結過				反更罵辱者是菩薩波羅夷罪			

79)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86 上.



⑨ 瞋打結恨戒

성이 나서 懺悔를 받지 않는 戒(瞋不受悔戒)라고도 한다. 七衆이 同制하나 대·소승이 같지 않다. 문단은 앞의 戒와 같다.<sup>80)</sup> 분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瞋打結恨戒

戒名	科 文			經 文	注釋한 經文	引用經論	
九, 瞋打結恨戒	舉人表體				若佛子	*教人瞋	*持地論
	列非	重非	正非	自瞋教人瞋			
			具緣成業	瞋因瞋緣瞋法瞋業			
		輕非					
	列事明隨	對治正行	而菩薩應生一切衆生中善根無諍之事常生慈悲心孝順心而反更於一切衆生中乃至於非衆生中以惡口罵辱加以手打及以刀杖意猶不息前人求悔善言懺謝				
舉非結過				猶瞋不解者是菩薩波羅夷罪			

⑩ 謗三寶戒

七衆을 制止하며, 대승과 소승이 같지 않다. 문단의 分科는 앞의 경우와 같다.<sup>81)</sup> 분과는 <표 17>과 같다.

80)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6 中.

81)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6 中.

〈표 17〉 謗三寶戒

戒名	科 文			經 文	注釋한 經文	引用經論	
十, 謗 三 寶 戒	舉人 表體				若佛子	*없음	*九教經 *持地論(2) *法師(2) *疏主 *涅槃經
	列事 明隨	列非	重非	正非 具緣 成業	自謗三寶教人謗三寶 謗因謗緣謗法謗業		
			輕非		而菩薩見外道及以惡人一言 謗佛音聲如三百 刺心況口 自謗		
		對治 正行			不生信心孝順心而		
	舉非 結過				反更助惡人邪見人謗者是菩 薩波羅夷罪		

(3) 總結重制

이 역시 3문단으로 나누었다. 즉 이상 十重大戒를 거듭 제지하여 배우도록 권한 것을 밝힌 明勸學重制, ‘若有犯者’ 이하로 處地를 관찰하여 배우도록 권한 明勸學觀處, 배우기를 總結해서 권한 總結勸學 이렇게 세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sup>82)</sup>

이 중 첫 번째 明勸學重制를 다시 세분하여 권한 대상(明所勸人)과 권한 내용(表所勸法)으로 나누었고,<sup>83)</sup> 두 번째 明勸學觀處도 地位를 잃는 것(失位)과 고통을 받는 것(受苦)으로 나누었는데, 이 중 失位는 세간의 지위를 잃는 것(失世間位)과 出世間의 地位를 잃는 것(失出世間位)<sup>84)</sup>으로 다시 세분하고 있다. 이를 〈표 18〉로 나타내 보았다.

82)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7 上.

83)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7 上.

84)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7 中.

〈표 18〉 總結重制

		분 과		注釋한 經文	引用經論	
總 結 重 制	明勸學重制	明所勸人		*善學者 *不應——如是 微塵許何況具之 *國王 *輪王位 *失王位 *失比 丘比丘尼位 *二三劫 *八 萬威儀品中說	*梵網經(4) *仁王經 *瓔珞經(3) *小乘律	
		表所勸法				
	明勸學觀處	明失位	明失世間位			
			示出世間位			
明受苦						
總結勸學						

이상 正說分 전체인 總釋初學과 別解制止, 그리고 總結重制的 分科와 그에 따른 經文을 하나로 묶어 도시하면 〈표 19〉와 같다.

〈표 19〉 正說分

		분 과		경 문	
正 說 分	總釋 初學	學數標名		佛告諸佛子言 ~ 有十重波羅提木叉	
		勸物誦學	學非勸誦	若受苦薩戒 ~ 非菩薩非佛子	
			舉人勸誦	我亦如是誦 ~ 一切菩薩今學	
		總結勸學		已略說菩薩波羅提木叉 ~ 學敬心奉持	
	十 重 大 戒	別解 制止		十重大戒(*別途로 分科했음)	佛言佛子 ~ 是菩薩波羅夷罪
		總結 重制	明勸學重制	明所勸人	善學諸仁者 ~ 不應一一犯如微塵許
				表所勸法	何況具足犯十戒
		明勸學觀處	明失位	明失世間位	若有犯者 ~ 亦失國王位
				示出世間位	亦失比丘比丘尼位 ~ 一切皆失
			明受苦	墮三惡道中 ~ 以是不應一一犯	
總結勸學		汝等一切諸菩薩 ~ 八萬威儀品當廣明			
四十八輕戒(失傳)				? ~ ?	

## IV. 十重大戒 分析

윗 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이 『사기』의 체제는 매우 조직적이다. 지금부터 다루고자 하는 十重大戒도 예외는 아니다. 이제 각 戒目的의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체제를 遵用하였다.

### 1. 不殺戒

이 戒는 止持行에 따른 것이지 作犯에 의해 붙여진 戒名은 아니다. 달리 殺戒라고도 한다.<sup>85)</sup> 먼저 세 가지 종류의 중생을 들어 그 죄의 輕重, 階降, 大·小乘의 同異<sup>86)</sup>를 설명하고, 이어서 斷命의 뜻을 풀이하고 있다.

#### 1) 三品衆生

上品·中品·下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87)</sup>

上品은 부모·十地以上の 決定菩薩·無學인 阿羅漢을 말한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죽이면 重罪와 遮罪를 다 범하게 된다.

이에 대해 원효는 『涅槃經』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후 이를 해명해 놓았다. 즉 자기 아버지를 죽인 아사세왕에게 耨婆는 '王은 二逆을 범했다'고 하였다. 耨婆의 말은 세속의 아버지와 須陀洹果를 얻은 수행자로서의 아버지를 동시에 죽인 것이라고 보아 二逆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아래 글에서는 '오직 無學果(阿羅漢果)를 죽인 것만 逆罪가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얼핏보면 상충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같은 사실을 두고 어떻게 逆罪의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

85)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0 中.

86) 원문에는 '同失'로 되어 있으나 이는 '同異'의 잘못으로 보인다.

87)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0 中~下.

가?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문제가 없음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즉 ‘아래의 三果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新譯에는 소승의 四果를 이렇게 설명한다. 初果를 預流果(舊譯은 須陀洹果), 二果를 一來果(斯陀含果), 三果를 不還果(阿那含果), 四果를 阿羅漢果(無學果라고도 함)라 하여 品階가 높아진다. 耆婆의 말은 初果인 須陀洹果를 얻은 수행자와 아버지를 살해하였기 때문에 소승의 五逆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의 글에서 無學果 즉 아라한과를 얻은 이를 살해한 것만이 逆罪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니 서로 모순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효는 아래의 글에서 아라한과(無學果)는 단지 四果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그 속에는 이미 三果(初果, 二果, 三果)가 내포되어 있다는 뜻에서 ‘三果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中品, 즉 凡夫를 죽이면 重罪를 범한 것일 뿐 逆罪를 범한 것은 아니다. 대승에서는 天人도 中品으로 보지만 소승에서는 天人을 죽이면 偷蘭遮의 罪를 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下品은 인간이 아닌 축생 등을 말한다. 만약 이들을 죽이면 오직 輕垢罪만 범하는 것일 뿐 重罪는 되지 않는다.

원효는 여기서 예외의 규정을 인정하고 있다. 만약 達機菩薩<sup>88)</sup>이 邪見人을 죽이면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新學菩薩인 경우는 그렇지 못해 輕垢罪를 범하게 된다. 또 소승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重罪를 범한 것으로 보나, 天人이나 非人을 죽이면 第三聚를 범한 것이고, 畜生일 경우는 第六篇을 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88) 원문에는 ‘遺機菩薩’로 되어 있으나 이는 ‘達機菩薩’의 잘못인 듯하다.

## 2) 明斷命根

斷命에 대한 상이한 견해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sup>89)</sup> 즉 薩婆多衆은 五陰이 파괴되면 命根도 끊어져 살생한 것으로 보고, 成實家は 色心이 상속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살생으로 보고 있다. 大乘에서는 法界로 命根을 삼는 경우, 賴耶識으로 命根을 삼는 경우, 賴耶識의 分位를 假立해서 命根을 삼는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죽이는 경우도 죄의 輕重과 대·소승의 같고 다름에 따라 스스로 죽이는 自殺, 남을 시켜서 죽이는 敎人殺, 방편으로 죽이는 方便殺, 찬탄하여 죽게 하는 讚嘆殺,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喜殺, 성을 내어 마음으로 죽이는 瞋殺, 주술로 죽게 하는 呪殺 등으로 나누었다.

(1) 自殺<sup>90)</sup>

① 人作人想 : 사람을 사람이라고 생각한 경우, 대·소승에서 다같이 重罪로 본다.

② 人非人疑 :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고 의심한 경우, 소승의 『僧祇律』에는 重罪로, 『四分律』은 偷蘭遮를 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소승이면서 이렇게 견해가 다른 것은 『僧祇律』은 사람일 것이라고, 『四分律』은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데에 더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다. 만일 둘 다 같이 의심한 경우라면 重罪를 거듭 범한 것이 된다. 대승에서는 중죄로 본다.

③ 人作非人想 :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罪를犯하는 경우, 만약 轉想으로 범했다면 소승에서는 앞의 마음은 第三聚로, 뒤의 마음은 突吉羅를 범한 것으로 본다. 대승에서는 輕垢罪로 본다.

④ 非人作人想 :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죽인 경우, 소승에서는 第三聚로, 대승에서는 輕垢罪로 본다.

89)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0 下.

90)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p.280 下~281 上.

⑤ 非人作人疑 : 사람이 아닌데 사람일 것이라고 의심한 상태에서 죽인 경우, 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第三聚, 반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突吉羅를 범한 것이 된다. 대승에서는 輕垢罪로 본다.

#### (2) 教人殺<sup>91)</sup>

남을 시켜서 죽이는 경우, 小乘은 자기를 위해 남을 시켜서 죽이면 重戒를犯하게 되고, '너를 위해 죽여라'고 남을 시켜 죽인다면 偷蘭遮를犯하게 된다.

大乘은 자기를 위해 죽이거나, 남을 위해 죽이거나 다 같이 重戒를犯한 것이 된다. 남을 시켜서 三性心으로 죽인다면 重戒로 보는 것은 大·小乘 모두가 동일하다.

#### (3) 方便殺<sup>92)</sup>

세 가지가 있다. 즉 藥으로 낙태시키는 경우, 약으로 죽이는 경우, 음식물로 죽이는 경우 등이다. 죄의 구분은 논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단의 분과에서 보았듯이 重罪에 해당한다.

#### (4) 讚嘆殺<sup>93)</sup>

세 가지 경우를 들고 있다. 첫째는 善行을 닦는 사람에게 '善行을 닦고 있을 때 빨리 죽어야지, 만약 오래 살다가는 원한과 過失로 인해 나쁜 業을 지을 수도 있다'고 하여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좋지 않은 行業을 짓는 이에게 '죄를 조금 지었을 때 속히 죽어라. 만약 오래 살게되면 더욱 좋지 않은 行業을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하여 죽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늙고 병든 사람에게 '오래 살다보면 오래도록 고통스러울 것이니 차라리 빨리 죽어서 그 고통을 여

91)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1 上.

92)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1 上.

93)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1 上.

의는 것만 못하다' 고 하여 노인이나 병든 이들을 죽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그 죄는 대·소승이 모두 重罪로 본다.

(5) 喜殺(見作隨喜)<sup>94)</sup>

남이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남으로 하여금 계속 殺業을 짓게 만드는 것이므로 重戒를犯한 것이 된다. 그런데 『陀羅尼經』에는 이 喜殺은 第六의 重戒를犯한 것이 된다고 했다.

만약에 이미 죽을 것을 보고 따라 기뻐하면 대승에서는 輕垢罪를犯한 것이 되고, 소승에서는 突吉羅를犯한 것이 된다.

(6) 瞋殺<sup>95)</sup>

성을 내어 마음으로 죽이는 것이다. 『唯識論』에 '仙人 때문에 성내는 마음(瞋心)을 내었으니, 이 仙人을 보호하기 위해 손으로 돌비(石雨)를 내려 죽게 했다' 고 한 것을 그 예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일종의 意業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7) 呪殺<sup>96)</sup>

呪術로 죽인다는 것은 口業으로 죽이는 것이다. 귀신에게 呪術을 부려 그 귀신으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게 하거나, 시체에 주술을 부려 그 시체가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 등이라고 한다.

94)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81 上.

95)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81 中.

96)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81 中.



## 3) 具緣成業

지금까지는 正非, 즉 그 자체가 바로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 본 것이다. 이제부터는 罪業을 짓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에 관한 것이다. 원효는 이것을 具緣成業이라고 정의하면서 다섯 가지 緣(조건)이 갖추어지면 죄업이 성립된다고 한다.<sup>97)</sup>

(1) 人境 : 비록 사람이 아닐지라도 輕垢罪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겠다는 것은 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2) 人想 :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죽이려는 것이다. 이 역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을 경우에도 輕垢罪가 되기 때문이다.

(3) 發殺人心 :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을 낸 경우이다. 만약 처음부터 끝까지 죽이려는 마음이 없이 사람을 죽인 경우로 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산이나 非人 등을 쏘아 죽인 경우이다. 이 때는 비록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으나 잘못으로 인해 무거운 물건이 떨어져 죽게 했을 경우는 전혀 罪가 없기 때문이다.

(4) 發方便 : 방편으로 죽이려는 경우이다. 만약 방편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輕垢罪가 되기 때문이다.

(5) 斷命根 : 命根을 끊어 버리는 경우이다. 命根을 끊지 않았더라도 輕垢罪가 되기 때문이다.

이 다섯 가지 가운데 처음 둘은 緣이 되고, 세 번째는 因이 되며, 네 번째는 業이 되며, 다섯 번째는 法이 된다.

## 4) 舉非結過

이 戒를 지키고 범하는 것(持犯)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해 놓았

97)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1 中~下.

는데 이는 죄의 경중에 따라 罪性を 판별한 것이다.<sup>98)</sup>

(1) 一向福非罪 : 사람을 죽였음에도 한결같이 복만 되고 죄는 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를테면 達輪機菩薩은 이미 윤회하는 중생의 근기를 통달하였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는 제도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를 죽여서라도 제도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福이 되고 罪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非罪非福 : 사람을 죽이더라도 罪도 福도 되지 않는 경우이다. 가령 실수나 迷惑한 상태에서 죽인 경우를 말하는데, 이럴 때는 오직 業道만 있고 戒를 犯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唯輕比重 : 가벼운 罪는 되나 무거운 罪가 되지 않는 경우이다. 下品衆生 등을 죽였을 때가 이에 해당한다.

(4) 唯重非輕 : 무거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계에서 말한 殺生의 戒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重戒이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첫째 번은 오직 福만 되고 罪는 되지 않고, 둘째 번은 罪도 되지 않고 福도 되지 않으며, 나머지 두 가지는 오직 罪가 될 뿐 福은 되지 않는다.

## 2. 偷盜戒

이 계는 달리 不偷盜戒라고도 한다. 이는 止持行으로 그 이름을 삼았기 때문이다.

### 1 三主物

도둑질 대상이 되는 물건의 주인을 셋으로 나누고 있다.<sup>99)</sup> 즉 三寶의 물건(三寶物) · 사람의 물건(人物) · 사람이 아닌 것의 물건(非人物)이 그것이다.

98)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0 中.

99)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2 上~中.

## 1) 三寶物

## (1) 佛寶物

부처님 쪽으로 보면 '나'와 '내 것'이라는 所有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것이 아닌 물건을 도둑질한 것과 같이 偷蘭遮를犯하게 될 뿐이다. 만약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重罪가 된다. 하지만 守護하는 책임자가 없을 때는 본래 시주한 者의 福의 일부를 끊은 것으로 보아 罪가 된다. 이는 鼻奈耶와 十誦律과 유사하다.

## (2) 法寶物

法寶의 물건은 有情이 아니기에 '나'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偷蘭遮를 범한 것이다. 그런데도 律文에 重罪로 취급한 것은 法寶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고귀한 것이기 때문이며, 또 보호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重罪로 취급한다.

훔친 經이나 法寶의 가치가 五錢을 넘게 되면 重罪를犯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輕罪가 된다는 것은 功用에 기준을 두었기 때문이다.

## (3) 僧物

보호하는 주인이 있으면 위와 같이 重罪로 결정된다. 그러나 따로 주인이 없는 僧物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하였다. 僧物은 대개 二種僧物, 四種僧物로 구분하는데 원효는 四種僧物로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① 常住物 : 대중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엌, 창고, 寺舍, 꽃과 과일나무, 밭과 정원, 하인(人業)과 축생(家畜)등을 말한다. 이런 것들은 따로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중들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重罪를犯하게 된다.

② 十方常住物 : 모든 승려들의 供養具와 供養物을 말한다. 이런 것들은 十方에 通用되는 것이지만 현재 그것을 사용하는 주인이 있는데도 이를 훔쳤다면 重罪가 되고, 그것들을 훔쳐 손해를 끼쳤다면 輕罪를犯하게 된다.

③ 現前現前物 : 각자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私有物을 말한다. 이 물건을 훔치면 주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重罪가 된다. 만약 여러 사람의 公有物을 누가 지

키고 보호하는 경우라면 그것 역시 주인으로 보기 때문에 重罪가 된다.

④ 十方現前物：五部大衆의 가벼운 물건들을 말한다. 『善生經』을 인용하여 죽은 비구의 물건이라도 賊<sub>1</sub> 毆<sub>2</sub> 이전이라면 罪가 된다. 五人 이하의 것일 때는 偷蘭遮를 犯하게 되고, 五人 이상으로 賊<sub>3</sub> 행한 후라면 重罪가 된다.

## 2) 人物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罪이다. 만약 도둑질 한 물건이 五錢 이상이 되면 重罪를 犯한 것이고, 五錢 이하라면 偷蘭遮를 犯하게 된다.

## 3) 非人物

사람의 물건이 아닌 것을 말한다.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놓았다. 첫째는 天, 즉 天人의 像, 天神의 表象 등을 훔치면 偷蘭遮를 犯하게 되고, 둘째는 鬼神의 물건을 훔쳐도 역시 偷蘭遮를 犯하게 된다. 셋째는 畜生의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먹다가 남긴 것을 훔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 외 나머지 축생의 물건을 훔치게 되면 다 突吉羅를 犯하게 된다. 만약에 주인이 보호하고 있는 것을 훔치게 되면 重罪를 犯하게 된다.

이상은 소승의 경우이다. 大乘의 경우에도 小乘에서 重罪가 되는 것은 大乘에서도 마찬가지로 重罪가 된다. 그리고 小乘에서의 下罪(輕罪) 역시 大乘에서도 輕垢罪가 된다. 그것은 대·소승의 戒學이 같기 때문이다.

## 4) 正非

직접 훔치는 自盜·남을 시켜서 훔치게 하는 教人盜·方便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方便盜·주문으로 훔치는 呪盜로 나누었다. 이 중에서 自盜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 놓았다.<sup>100)</sup>

(1) 自盜<sup>101)</sup>

(가) 有主有主想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훔치는 경우인데, 大·小乘 모두 중죄로 본다.

(나) 有主物無主物疑

주인이 있는데 없을 것이라고 의심한 경우이다. 소승의 『僧祇律』에서는 중죄라고 하였으나, 같은 소승이지만 『四分律』에는 偷蘭遮가 된다고 하였다. 대승에서는 중죄가 된다.

(다) 有主物無主物想

주인이 있는데도 없다고 생각한 경우이다. 소승에서는 轉想이 전제되면 偷蘭遮가 되고, 대승에서는 輕垢罪가 된다.

(라) 無主物有主想

주인이 없는 것을 주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훔치는 경우이다. 소승에서는 偷蘭遮, 대승에서는 輕垢罪가 된다.

(마) 無主物有主疑

주인이 없는 물건을 주인이 있겠지? 하고 의심하면서 훔치는 경우이다. 소승에서는 偷蘭遮, 대승에서는 輕垢罪가 된다.

(2) 教人盜

소승의 경우 상대를 위해 훔치게 했다면 偷蘭遮가 되고, 자신을 위해 훔치게 했다면 훔치게 한 물건의 값이 五錢 이상이라면 중죄가 된다. 대승에서는 두 경우 모두 중죄가 된다.

(3) 方便盜

空識을 훔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空이란 타인의 땅에 허락도 없이 나무를 심거나, 집을 지어 그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識이란 기술자

100)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2 下.

101)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2 下.

나 예술인 등 남의 知的 所有權을 盜用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럴 때는 그에 합당하는 調를 犯하는 것이 된다. 大乘에서나 小乘에서 다같이 制止하고 있다.

#### 5) 具緣成業<sup>102)</sup>

여섯 가지 조건으로 罪業이 성립된다고 보았다.

##### (1) 人物

사람의 물건이어야 죄가 된다. 사람의 것이 아닌 물건이거나 畜生의 물건이 아닌 것은 輕垢罪가 되기 때문이다.

##### (2) 人物想

사람의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훔쳐야 죄가 된다. 만약 사람의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輕垢罪가 되기 때문이다.

##### (3) 發盜心

훔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훔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다면 결코 罪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 (4) 重物

귀중한 물건이어야 죄가 된다. 만약 五錢을 넘지 않는 것이라면 輕垢罪가 되기 때문이다.

##### (5) 起方便不起方便

方便을 써서 훔쳐야 죄가 된다. 方便을 쓰지 않았다면 輕垢罪가 되기 때문이다.

##### (6) 離本處

본래 물건이 남의 것으로 되었어야 죄가 된다. 방편으로 훔치는 경우에는 輕垢罪가 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1)과 (2)는 緣이 되고, (4)와 (6)은 法이 되고, (3)은 因이 되고, (5)는 業이 된다. 만약 罪의 因이 빠진다면 罪의 緣도 없게 되므로 하나 하나의

102)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3 上.

罪의 싹이 다 輕垢罪만犯한 것이 된다.

6) 舉非結過<sup>103)</sup>

(1) 福非罪

비록 五錢을 훔쳤지만 福이 되고 罪가 되지 않는 경우이다. 達輪機菩薩의 경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물건을 훔쳤기 때문이다.

(2) 非罪非福

비록 훔치기는 했지만 罪가 되지 않고 福도 되지 않는 경우이다. 주인이 없는 물건을 훔쳤기 때문이다.

(3) 唯輕非重

오직 가벼운 罪만 되고 重罪가 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 戒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草木이나 귀신들의 물건을 훔친 경우처럼 輕垢罪를犯하였기 때문이다.

(4) 唯重非輕

오직 重罪만 되고 輕罪는 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 不偷盜戒에서 말하고자 한 바로 그 重戒이다.

이렇게 넷으로 구분한 가운데, 처음의 하나는 오직 福이 되고 罪가 안되며, 다음의 하나는 福도 안 되는 것이며, 뒤의 두 개는 한결같이 罪만 되고 福은 되지 않는다.

### 3. 不淫戒

淫戒라고도 한다. 대승과 소승, 五衆이 함께 배워야 할 계이다.

103)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3 中.

1) 自淫<sup>104)</sup>

(1) 正道正道想

바른 淫道(性器)를 바른 淫道로 알고 淫行한 경우이다. 소승이나 대승에서 다같이 중죄로 취급하고 있다.

(2) 正道非道疑

바른 淫道を 바른 淫道인가? 하고 의심하면서 淫行한 경우이다. 이 역시 대승 소승이 다같이 중죄로 여긴다.

(3) 正道非道想

바른 淫道を 바른 淫道가 아닌 것으로 알고 淫行한 경우이다. 대승이나 소승이 다같이 중죄로 본다. 앞의 不殺生戒나 不偷盜戒는 이런 경우 輕垢罪가 된다고 했다. 그런데 왜 이 계에서는 중죄가 된다고 하였을까? 원효는 그 이유를 다른 모든 죄를 짓게 하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4) 非道道想

淫道가 아닌데 淫道인 것으로 알고 淫行한 경우이다. 소승에서는 第三聚(偷蘭遮)로 보나 대승에서는 輕垢罪로 본다.

(5) 非道道疑

바른 淫道가 아닌데도 淫道로 의심하면서 淫行한 경우이다. 소승에서는 第三聚로 보나 대승에서는 輕垢罪로 본다.

2) 教人淫<sup>105)</sup>

남을 시켜서 淫行하도록 하는 教人淫에 대해 소승에서는 自利를 우선하기 때문에 第三聚로 본다. 그런데 사전에 서로 상통했다면 第二篇(僧殘罪)에 해당한다.

104)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83 中.

105)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83 中.



대승에서는 利他를 우선하기 때문에 둘 다 重罪로 본다.

### 3) 具緣成業

淫<sup>1</sup>戒를 破하게 만드는 네 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들었다.<sup>106)</sup>

#### (1) 正道

반드시 正道에 淫行해야 業이 성립된다. 만약 非道에 淫行했다면 가벼운 죄가 되기 때문이다.

#### (2) 有染心

마음이 더러워 져야 업이 성립된다. '不得故淫'에서 설명된 것처럼 원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강제로 음행을 당했다더라도 음행을 했다는 有染心을 갖지 않으면 죄가 없기 때문이다.

#### (3) 起方便

淫行할 方便을 일으켜야 업이 성립된다. 방편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가벼운 죄가 되기 때문이다.

#### (4) 令境不合於境

境界(淫行할 수 있는 器官)와 경계가 契合해야 업이 성립된다. 경계가 제합하지 않았다면 가벼운 죄가 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1)은 緣이 되고, (2)는 因이 되며, (3)은 業이 되며, (4)는 法이 된다. 만약 이 가운데서 緣이 빠진다면 그 罪가 가벼워 무겁지 않으며, 만약 因이 빠지면 온전히 罪가 없게 된다.

### 4) 正道와 非道

正道(性器)로 음행한 경우를 들어 죄의 경중을 말한다면 사람인 여자를 범하면

106)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3 下.

무거운 죄가 되나 축생의 암컷을 범하면 業道가 가볍다. 또 人道의 경우 출가자를 범하면 그 죄가 무겁고, 재가자를 범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sup>107)</sup> 만약 出家菩薩과 比丘가 三道를 正道를 삼고 淫行을 하면 重罪를 犯하게 되며, 나머지 신체의 부위로 淫行을 하면 가벼운 罪를 犯하게 된다.<sup>108)</sup>

그렇다면 비도일 경우는 어떤가? 경문에 ‘乃至畜生女及非道行淫’이라는 구절이 이에 해당된다. 이 구절은 재가보살에게 해당된다. 재가보살이 正道를 끊지 않고 非道로 음행을 한다면 사음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을 사음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데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하나는 非道이기 때문에 사음이고, 다른 하나는 분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음이 된다.<sup>109)</sup> 그런데 ‘在家菩薩이 非道로 淫行하면 邪淫이라고 한 것’은 신체의 나머지 부분은 非道이기 때문에 입과 大行, 이 두 곳도 다 非道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邪淫이라고 한 것이다.<sup>110)</sup>

非道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小道(男·女の 根)로 正道를 삼아야 하는데, 두 곳(口, 大行)의 非道로 음행을 하는 것이다. 둘째는 三道(肛門·性器·口)를 正道라 한 것이다. 즉 三道가 아닌 신체의 나머지 부분인 非道로 음행을 범하는 것은 正道가 아니기 때문이다.<sup>111)</sup>

非道이기 때문에 사음이라고 한 것은 비록 자기 분수에 맞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은 음행은 도리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非處(삼보가 있는 곳, 부모 옆, 해나 달이 비치는 露地, 스승이나 승려가 있는 곳), 非時(月六齋, 年中三, 托胎時, 解産 후 한 달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生理中), 法護(계를 받아 지니고 있을 때), 非道<sup>112)</sup> 등은 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邪淫을 한 것이라서 輕垢罪에 해당한

107)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83 下.

108)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84 上.

109)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83 下.

110)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84 上.

111)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84 上.

112)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83 下. “未雖出夫家 其婢中非道中行淫故 犯邪淫等 - 優婆塞戒經(출가하지 않은 장부라도 자기의 女子 下人을 非道로 淫行하였기 때문에 邪淫을 犯한 것이다.)

다.<sup>113)</sup>

분수에 맞지 않은 경우도 法護(出家五衆, 受出家戒), 人護(부모의 보호를 받는 자식), 非類(非人畜生等) 등 이 세 가지는 正道나 非道를 따질 것 없이 분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 重戒를 범한 것이다.<sup>114)</sup>

## 5) 擧非結過

### (1) 一向福非罪

음계를 범했으나 한결같이 복만 되고 죄가 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를테면 文殊菩薩 등은 達機菩薩이라서 得度한 淫男의 몸으로 應現한다. 곧 淫男·淫女의 몸을 나타내어 중생을 제도하기도 한다. 이런 예들은 『文殊舍利巡行經』 가운데 널리 설해져 있다. 大菩薩은 그러한 淫行이 없지만 중생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다. 『淨名經』 「佛道品」에 ‘만약 보살이 非道를 행하나 이 보살은 佛道를 通達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기 때문이다.

### (2) 非罪福

음계를 범했으나 죄도 복도 되지 않는 경우이니, 이를테면 狂心·亂心·傷心 등으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때이다. 마다가 어미의 分別없는 呪術에 阿難이 淫戒를 犯할 뻔한 것과 같은 경우이다.

### (3) 一向輕罪故非重

다만 가벼운 罪만 되고 무거운 罪는 되지 않는 경우이다. 出家菩薩이 몸의 일부분으로 가벼운 罪를 犯하는 등과 在家菩薩이 비록 자기의 분수대로 淫行했으나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경죄를 범한 것 등을 말한다.

### (4) 唯重非輕

오직 重罪를 犯한 것이 되고 가벼운 罪가 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를테면 이 不

113)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3 下.

114)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3 下.

淫戒를 바로 重戒로 세운 것을 말한다.

#### 4. 妄語戒

이 계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不妄語戒라고도 한다. 앞에서와는 달리 大妄語(上人法)와 小妄語를 아울러 설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망어를 하는 사람을 나누어 보면 자기가 직접하는 自妄語·남이 하도록 시키는 教人妄語·방편으로 하는 方便妄語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곧바로 잘못을 범하게 된다.

이상의 四戒는 大乘과 小乘이 함께 배우고, 七衆이 같이 制止해야 하는 戒學이다.<sup>115)</sup>

##### (1) 自妄語

자기가 직접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다섯 가지가 있다.<sup>116)</sup>

##### ① 大妄語妄語想

大妄語를 하는 줄 알면서 하는 경우이다. 마음과 境界(主體와 客體)가 서로 相當하기 때문에 大乘이나 小乘에서 다 같이 重罪로 여긴다.

##### ② 大妄語小妄語疑

大妄語를 小妄語인 줄 알고 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僧祇律』에 의하면 偷蘭遮를 범한 것이고, 大乘에서는 重罪를 범한 것이 된다.

##### ③ 大妄語小妄語想

大妄語를 小妄語로 알고 하는 경우이다. 小乘에서는 第三聚(偷蘭遮)를 범한 것으로 보고, 大乘에서는 가벼운 罪(輕垢罪)를 범한 것으로 본다.

##### ④ 小妄語大妄語想

115)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4 下. 제1계와 제2계는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를 그대로 따르면 될 것이다. 그런데 제3계인 不淫戒는 ‘大小五衆同學’이라 하였으면 서도 여기에서는 ‘大小同學七衆共制’라 하여 五衆인가? 七衆인가? 확실치 않다.

116)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4 上~中.

小妄語를 大妄語로 알고 하는 경우이다. 小乘에서는 偷蘭遮로, 大乘에서는 輕垢罪를 범한 것으로 본다.

#### ⑤ 小妄語大妄語疑

小妄語를 大妄語인 줄 알고 하는 경우이다. 小乘에서는 第三聚로, 大乘에서는 輕垢罪를 범한 것으로 본다.

#### (2) 教人妄語

小乘에서는 自利를 우선하므로 자기를 위해 남을 시켜서 거짓말을 하게 한다면 重罪가 된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킨 경우, 만약 비구들을 시켜서 거짓말을 하게 했다면 重罪가 되고, 沙彌 등을 시켜서 거짓말을 하게 했다면 第三聚를 범한 것이 된다. 그러나 大乘에서는 남을 위해서건 나를 위해서건 다같이 重罪를 범하게 된다.<sup>117)</sup>

#### (3) 方便妄語

方便妄語는 비록 입으로 大妄語를 한 것은 아니지만 聖法을 이룬 것처럼 갖가지 일을 나타내어 自己의 名利를 얻는 것을 말한다. 『律』에 籠과 天이 와서 나에게 공양을 올린다' 한 것 등과 같은 것으로 다른 『율』에도 많이 설해져 있다. 이런 비구는 大妄語를 한 그 때에 重罪를 범하고, 그 후 물건(利益)을 취득했을 때에는 방편으로 훔친 罪까지 범하여 罪가 무겁게 된다.<sup>118)</sup>

#### (4) 妄語의 業道가 成立되는 條件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條件(緣)이 다 갖추어져야 重罪가 성립된다.<sup>119)</sup>

① 對成人 : 즉 거짓말의 상대가 사람이라야 한다.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면 가벼운 輕罪가 되기 때문이다.

② 人想 : 즉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해야 한다. 사람이 아닌 줄 알고 한 거짓말은 罪가 가볍기 때문이다.

117)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84 中.

118)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84 中.

119)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84 中.

③ 自知未得 : 즉 道를 얻지 못했음을 자기가 알고 한 거짓말이라야 한다. 만약 이미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한 거짓말도 輕垢罪가 되기 때문이다.

④ 起顛誑心 : 즉 온전한 정신상태에서 한 거짓말이라야 한다. 만약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지 못한 迷心の 상태라면 전혀 罪가 없기 때문이다.

⑤ 說得得人法<sup>120)</sup> : 즉 人法和 我法을 얻었다고 해야 한다.

⑥ 言業了了 : 거짓말 한 내용이 분명해야 한다.

⑦ 前人已解 : 거짓말을 상대방이 믿어야 한다.

이 중에서 ①②⑦은 緣이 되고, ③은 法이 되며, ④는 因이 된다. 또 ⑤⑥은 業이 된다. 만약 罪를 짓게 되는 因이 빠진다면 전혀 罪가 없게 된다. 또한 罪를 짓게 되는 緣도 없다면 가벼운 罪도 되지 않는다.<sup>121)</sup>

여덟 가지 小妄語는 輕垢罪를 犯하게 되고, 綺語·兩舌·麁語(惡口)도 다 輕垢罪에 해당된다.<sup>122)</sup>

(5) 기타<sup>123)</sup>

말과 행동(身)을 함께 하여 罪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절을 짓기 위해 檀越들에게 '우리 절에는 아라한이 계시는데, 만약 믿지 않는다면 우리 절에 들어올 수 없어 아라한을 뵈 수 없을 것이다' 고 하는 거짓말이다.

또 '당신은 聖法을 깨달았소?' 하고 물었을 때,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보이는 것도 일종의 큰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重罪를 犯하게 된다.

經에서 말한 '正語' 는 여덟 가지 바른 말을 지칭하고, 또 '正見' 은 貪·瞋·痴가 아닌 三善根을 지칭한다.

(6) 舉非結過

잘못을 들어 어떤 죄가 되는가? 하는 것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음의 네 가지로

120) 說得法人法の 잘못이 아닌가 한다. 『國譯梵網經菩薩戒本私記』 p.363에는 '得' 자가 중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121)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84 中.

122)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84 中.

123)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84 中~下.

나누었다.<sup>124)</sup>

① 唯福非罪

오직 福만 되고 罪는 되지 않는 것은 達機菩薩과 같이 때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중생을 구제하는 경우이다.

② 非罪非福

罪도 福도 되지 않는 것은 미친 상태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이다.

③ 唯輕非重

오직 그 罪가 가볍고 무겁지 않을 때는 이 戒(大妄語)에 함께 말한 小妄語를 했을 경우이다.

④ 唯重非輕

오직 罪가 무겁고 가볍지 않을 때는 이 戒에서 말한 大妄語를 했을 경우이다.

## 5. 酤酒戒

술<sup>125)</sup>을 파는 것에 관련된 이 酤酒戒는 술을 팔지 말라(不酤酒)는 戒라고도 한다. 大乘과 小乘이 함께 制止하는 戒이니, 小乘의 경우는 二衆인 비구·비구니가 술을 팔면 第三篇(偷蘭遮)을犯하게 되고, 식차마니·사미·사미니가 술을 팔면 第五篇을犯하게 된다. 그러나 大乘에서는 술을 파는 七衆은 모두 重罪를犯하게 된다고 본다.

만약 시체를 치우기 위한 장례 때나, 어쩔 수 없이 살생하는 도구를 팔게 될 때 술을 파는 것은 輕垢罪를犯하게 된다. 그러나 在家菩薩이 如法하게 물건을 사고 파는 경우라면 구태여 制止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활을 위한 業이기

124)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4 下.

125) 經文의 ‘一切酒’를 설명하면서 酒氣가 含量된 것 모두를 술이라고 하였다. 즉 단술과 신술과 또 술을 거르고 난 뒤의 찌꺼기(糟麴)까지를 다 포함시키고 있다. 재료가 어떤 것이든 간에 술로 빚어지면 사람을 醉하게 하므로 犯戒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사기 p.284 下)

때문이다.<sup>126)</sup>

1) 자기가 직접 술을 파는 경우(自酤酒)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분류하였다.<sup>127)</sup>

(1) 眞酒眞酒想

眞酒(진짜 술)를 술인 줄 알면서도 팔면 重罪를犯하게 된다.

(2) 眞酒眞酒疑

眞酒를 정말 술일까? 하고 의심하면서 팔면 이것 또한 重罪가 된다.

(3) 眞酒非眞酒想

眞酒를 眞酒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판 경우, 만약 술이 아니겠지? 하고 팔았다면 輕垢罪를犯하게 되고, 술인 줄 모르고 팔았다면 전혀 罪가 없다. 만일 술인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팔았다면 輕垢罪를犯하게 된다.

(4) 非酒眞酒想

술이 아닌데 술인 줄 알고 팔았다면 輕垢罪를犯하게 된다.

(5) 非眞酒眞酒疑

眞酒가 아닌데 眞酒일 것이라고 의심하면서 팔았다면 輕垢罪가 된다.

2) 남을 시켜서 술을 판 경우(教人酒)

126)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4 下. “『優婆塞戒經』에 財物을 얻게 되면 그 四分의 一은 팔아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술인 경우, 『四分律』에서는 ‘사람이 취할 정도라면 犯戒로 삼는다’고 했고, 『十誦律』에는 ‘만약 술을 빚었다면 그것을 마시고 취하건 취하지 않든 간에 일단 戒를犯한 것이 된다’고 했으며, 『地持論』에는 ‘포도나 복숭아 등으로 빚은 草酒는 사람을 醉하게 하고, 藥酒는 活氣를 위한 것이나 모든 罪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後에 飲酒戒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127)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4 下.



大乘에서는 팔라고 시킨 사람과 시킨다고 판 사람 모두가 다 重罪를 犯한 것으로 보고, 小乘에서는 둘 다 販賣의 戒를 犯하게 된다.<sup>128)</sup>

### 3) 具緣成業罪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를 갖추어야 重罪가 된다.<sup>129)</sup>

(1) 所與人與非人, 즉 술을 판 상대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었다면 輕垢罪를 犯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2) 人想爲非人想, 즉 상대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팔아야 한다. 만약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팔았어도 輕垢罪가 되기 때문이다.

(3) 眞酒似酒, 즉 眞酒를 眞酒 비슷한 것이라고 팔면 輕垢罪가 되기 때문이다.

(4) 發酤酒想不發酤意, 즉 술을 팔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만약 술을 팔겠다는 생각이 없었다면 罪가 없기 때문이다.

(5) 與彼人, 즉 다른 사람에게 권해야 한다.

(6) 取價, 즉 술값을 받아야 한다.

(7) 彼人飲, 즉 상대가 술을 마셔야 한다.

이 중에서 (1)(2)(7)은 罪를 짓는 緣이 되고, (4)는 因이 되며, (3)은 法이 되며, (5)(6)은 業이 된다.

### 4) 舉非結過

역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sup>130)</sup>

(1) 唯福非罪

128)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4 下.

129)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4 下~285 上.

130)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5 上.

오직 福이 되고 罪가 되지 않는 경우는 達機菩薩이 술을 파는 경우이다.

#### (2) 非罪非福

罪도 되지 않고 福도 되지 않는 경우는 藥으로 쓰기 위해 술을 빚을 때이다. 그런데 藥으로 사용하라고 남에게 주고 그 대가를 받으면 이미 그 대가가 주어졌으므로 福이 되지 않으며, 또한 그 술이 약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罪도 되지 않는다.

#### (3) 唯輕比重

오직 가벼운 罪만 되고 무거운 罪가 되지 않는 경우는 나의 소유물 속에 술 같은 것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 (4) 唯重非輕

오직 그 罪가 무겁고 가볍지 않는 경우는 바로 이 戒目에서 말한 眞酒를 팔 때이다.

## 6. 意心說同法人過戒

十重大戒中 제6계로 僧伽의 허물을 말하는 것에 대한 戒이다.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 때문에 소승과 대승이 달리 말하고 있다.

小乘에서는 自利를 우선하기 때문에 근거 없이 남의 허물을 비방하면 僧殘罪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비방할만한 근거가 있다면 그 罪는 가벼워서 第三篇을犯한 것이 된다.

大乘에서는 利他가 먼저이기 때문에 실제의 사실을 들어 남을 비방하는 것은 重罪가 되지만, 근거 없이 남을 비방한다면 第十三의 輕垢罪를犯하게 된다고 한다.

### 1) 비방의 대상

이 계는 “만약에 불자들이 출가·재가의 보살이나, 비구·비구니의 죄과를 입

으로 자기가 직접 말하거나”<sup>131)</sup> 라고 하여 비방의 대상을 분명히 밝혀 놓았다. 그래서 원효는 ‘출가·재가의 보살’을 ‘보살계를 받은 사람’으로, ‘비구·비구니’는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보았다. 이 양자의 차이에 대해 원효는 다음과 말하고 있다.

菩薩戒를 받은 四部大衆의 허물을 비방하면 큰 허물이 된다. 곧 出家二衆과 在家二衆이 지은 근거가 분명한 十重과 七逆 등을 비방하면 바로 이 重戒를 범한 것이 된다. 그러나 가벼운 罪를 들어 비방하면 輕垢罪를 범하게 된다.<sup>132)</sup>

그렇다면 聲聞을 비방한 경우는 어떤가. 즉 “比丘·比丘尼의 근거가 있는 初篇(波羅夷)의 허물을 들어 비방하면 이 重戒를 함께 범한 것이 된다. 만약 二衆(比丘·比丘尼)의 가벼운 罪나, 沙彌·沙彌尼의 근거 있는 重罪와 輕罪를 비방하면 輕垢罪를 범하게 된다.”<sup>133)</sup>고 하였다.

## 2) 비방하는 사람에 따른 분류

위 비방의 대상에 대하여 누가 비방을 하는가에 대해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하나는 자기가 직접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남을 시켜서 비방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비방하는 사람에 따른 분류가 필요한 것은 죄의 경중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1) 자기가 직접 비방하는 경우(自說)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sup>134)</sup>

① 麁罪麁罪想 : 무거운 罪(麁罪)를 麁罪라고 생각하고 비방하면 重罪를 범한 것이다.

131) 『梵網經』(『大正藏』24, p.1004 下). “若佛子 口自說 出家在家菩薩 比丘比丘尼罪過”.

132)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5 上.

133)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5 上.

134)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5 中.

② 麁罪麁罪疑 : 麁罪를 麁罪인가? 의심하면서 비방하면 그 또한 重罪를 犯하게 된다.

③ 麁罪非麁罪想 : 麁罪를 麁罪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비방하는 경우, 만약 麁罪라고 생각을 바꾸어 麁罪비방하면 輕垢罪를 犯하게 된다. 그러나 본래부터 모르고 비방하면 전혀 麁罪가 없으나, 만약 작은 죄라서 그저 가볍게 비방하면 輕垢罪가 된다.

④ 非麁罪爲麁罪想 : 麁罪가 아닌데 麁罪라고 생각하면서 비방하면 輕垢罪를 犯한 것이다.

⑤ 於罪爲麁罪 : 어떤 麁罪에 대해 그것을 麁罪라고 의심하면서 비방하면 輕垢罪를 犯한 것이다.

(2) 남을 시켜서 비방하는 것(敎人說過)

남을 시켜서 비방하게 하는 경우, 자신을 위해 남을 비방하거나(敎他爲我謗他), 남을 위해 타인을 비방해도(爲汝謗他) 다 중죄를 범하게 된다.<sup>135)</sup>

3) 죄업의 성립조건(具緣成業)

다음의 여덟 가지 조건(緣)이 다 갖추어 지면 남을 비방한 重罪가 된다.<sup>136)</sup>

(1) 同戒七衆

같은 戒를 받은 七衆을 비방한 것이라야 한다. 법을 같이하는(同法) 二衆(비구·비구니)이 外道나 三衆(식차마니·사미·사미니)을 비방하면 輕垢罪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同戒同法者想

같은 戒를 받고 法도 같이 한다는 생각에서 비방해야 한다.

(3) 有嗔垢心

135)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85 中.

136)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85 中.

성이 나고 수치스럽다는 생각에서 비방해야 한다. 만약 계를 犯하려는 마음이 없이 비방한 것은 輕垢罪를 범하기 때문이다.

(4) 意是有想

비방거리라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

(5) 七逆十重重過

七逆과 十重의 무거운 허물이라야 한다. 만일 가벼운 罪를 비방하면 輕垢罪가 되기 때문이다.

⑥ 向人說

사람을 맞대놓고 비방해야(向人說) 한다. 맞대놓고 하지 않은 비방은 죄가 가볍기 때문이다.

⑦ 言詞了了

비방한 말이 분명해야 한다.

⑧ 所人解也

상대방이 납득해야 한다.

이 중에서 ①②④⑥은 이 戒를 犯하게 되는 조건(緣)이 되고, ③은 因이 되며, ⑤는 法이 되며, ⑦⑧은 業이 된다.

#### 4) 舉非結過

역시 네 가지로 남을 비방한 죄를 결정하고 있다.<sup>137)</sup>

① 唯福非罪：達機菩薩같은 경우는 오직 福이 되고 罪가 되지 않는다.

② 非福非罪：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남을 비방하면 福도 되지 않고 罪도 되지 않는다.

③ 唯輕非重：오직 가벼운 罪만 되고 무거운 罪는 되지 않는 경우는 이 戒 가운데 輕垢罪를 들어 비방할 때이다.

137)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5 中.

④ 오직 罪가 무거운 뿐 가볍지 않은 경우는 이 계를 十重大戒로 내세워 다스린 경우이다.

## 7. 自讚毀他戒

이 계는 달리 利讚毀戒(利益을 위해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헐뜯는 계)라고도 한다. 이 계도 七衆이 함께 制止하고 大乘이나 小乘이 다 같이 배워야 할 계이다. 이 自讚毀他戒는 먼저 自讚과 毀他에 대한 기준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원효는 自讚이라 하지 않고 다섯 가지로 뜻을 나타낸다(五句現意)고 하였던 것이다.<sup>138)</sup>

### 1) 五句現意

(1) 이익을 바라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칭찬하고 남도 헐뜯지 않으면 輕垢罪를犯하게 된다.

(2) 이익을 바라지 않고 오직 남만 헐뜯을 뿐 자기를 칭찬하지 않으면 輕垢罪를犯하게 된다.

(3) 五錢 이하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헐뜯으면 輕垢罪를犯하게 된다.

(4) 五錢 이상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를 칭찬하고 남을 헐뜯으면 바로 이 自讚毀他戒를犯하게 된다.

(5) 五錢 이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거듭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헐뜯으면 이 自讚毀他戒와 意心說同法人過戒를 함께犯하게 되어 두 가지 重戒를犯한 것이 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自讚의 의미를 설명하는 가운데 自讚에 전제되어 있는 利益

138)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5 中~下.

을 어떤 기준에서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원효는 五錢 以上을 위해 自讚하는 것을 중죄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결코 자의적인 규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持地論』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 놓고 있다.<sup>139)</sup>

## 2) 自讚과 毀他の 對象

다음으로 원효가 밝힌 것은 ‘毀他해서는 안 될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四分律』을 근거로 삼아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sup>140)</sup>

- (1) 卑姓家生 : 친한 家門 出身이라고 가문을 헐뜯는 것
- (2) 行業亦卑 : 직업이 천하다고 직업을 헐뜯는 것
- (3) 技術工功亦卑 : 기술이나 재주는 있는데 야비하다고 인품을 헐뜯는 것
- (4) 汝是犯過 : 너는 過失을犯했다고 허물을 헐뜯는 것
- (5) 汝多結使 : 너는 煩惱에 束縛되어 있다고 자질을 헐뜯는 것
- (6) 若盲若禿瞎人 : 장님이니, 대머리니, 애꾸눈이니 하고 신체의 결함을 헐뜯는 것.

이 이 여섯 가지는 얼른 보면 毀他에 국한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自讚까지 포함해서 설명한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효는 이를 해설하기에 앞서 『四分律』에는 여섯 가지가 있다<sup>141)</sup>고 한 후, 다시 “이 여섯 가지 자찬에는 ‘나는 저 사람보다 훌륭하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sup>142)</sup>고 하였던 것이다.

139)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5 하. “『持地論』에 ‘이익을 바라서 스스로를 칭찬하고 남을 헐뜯으면 大衆을犯하여 많이犯한 것이 된다’고 했으니, 五錢 以下면 輕垢罪를犯하는 것이 되고, 五錢 以上이면 重罪를犯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40)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5 下.

141)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5 下.

142)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5 下.

따라서 이 여섯 가지를 소승에서는 다 第三篇에 견주었고, 대승에서는 이 여섯 가지를 탐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自讚毀他하는 것은 다 이 중계를 바로 범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원효는 이 自讚毀他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sup>143)</sup> 이러한 원효의 관심은 위 네 번째의 허물이 第6戒인 意心說同法人過戒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주목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네 번째의 혈뜬음인 ‘너는 이런 과실을 범했다’고 혈뜬을 때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① 만약 중죄라는 근거가 있다면 意心說同法人過戒와 이 自讚毀他戒를 다 범하게 된다.

② 만약 이익을 바라지 않는 상태에서 위 네 번째의 혈뜬음에 근거가 있다면 意心說同法人過戒는 범하게 되지만 이 自讚毀他戒를 범하는 것은 아니다.

③ 만약 근거 없이 큰 허물이나, 근거가 있는 작은 허물,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가지 허물을 들어 혈뜬을 때는 모두 輕垢罪가 될 뿐 중죄는 아니다.

④ 善法을 써서 ‘너는 수련이나 해라’ ‘좌선이나 해라’는 등으로 꾸짖는다고 할지라도 소승에서는 突吉羅에 해당하고, 대승에서는 이익을 바라지 않더라도 輕垢罪를 범하게 된다.

### 3) 教人讚毀

남을 시켜서 자기를 칭찬하게 하고 남을 혈뜬게 하면 (소승이나 대승에서) 모두 다 무거운 罪를 범하게 된다.<sup>144)</sup>

### 4) 自讚毀他戒를 범하게 되는 여섯 가지 조건(具緣成業)

143)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5 下.

144)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5 下.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조건이 구비되면 무거운 罪가 된다.<sup>145)</sup>

(1) 是同前七衆同法上二衆 : 七衆이나 法을 함께 하는 二衆 앞에서 허물한 것 이라야 한다.

(2) 同喩同法人想 : 같은 법을 같이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3) 共淨利 : 이익을 함께 해야 한다.

(4) 喩酉自說 : 자기가 말한 것이어야 한다.

(5) 言詞了了 : 말이 분명해야 한다.

(6) 前人聞知 : 그 말을 알아들어야 한다.

이 가운데 (1)(2)는 罪를 이루는 緣이 되고, (3)은 因이 되며, (4)는 法이 되며, (5)(6)은 業이 된다.

#### 5) 攀非結過(1)

이 自讚毀他戒에 대한 攀非結過는 지금까지 4句로 구분하던 것과는 달리 먼저 5句로 구분하고, 이어서 다시 4句로 구분하고 있음이 특이하다. 먼저 5句를 보면 아래와 같다.<sup>146)</sup>

(1) 오직 자비심에서 상대방이 信心과 菩提心을 내도록 하기 위해 自讚毀他하면 전혀 罪가 없다.

(2) 나면서부터 어리석고 입이 거친 사람을 다스리고자 無記心 가운데서 自讚毀他하는 것은 輕罪를犯하게 되니, 이는 染汚를犯한 것이 아니다.

(3) 무리가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이익이나 장점)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해서 自讚毀他하는 것 또한 輕垢罪를犯하게 되니, 이는 染汚犯이라고 한다.

(4) 五錢 以上の 利益을 貪해서 自讚毀他하는 것은 무거운 罪를犯하게 된다.

145)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5 下.

146)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p.285 下~286 上.

(5) 미쳤거나 산란한 마음상태에서 自讚毀他하는 것은 전혀 罪가 없다.

이상에서 논한 5句 중 아래의 4句인 (2)(3)(4)(5)는 自讚毀他戒 전체를 대상으로 논한 것이 아니다. 즉 이는 이 戒文의 일부인 ‘나쁜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남에게 돌리라’는 구절만을 대상으로 논한 것이다.<sup>147)</sup> 그렇다면 왜 이 구절에 원효는 특별한 관심을 표명했을까? 거기에는 대승 사상의 핵심이 집약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6) 舉非結過(2)

前例에 따라 구분해 온 4句는 아래와 같다.<sup>148)</sup>

(1) 一向福非罪 : 한결같이 복이 되고 죄가 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는 達機菩薩과 邪學菩薩처럼 앞에서 말한 5句中 初句는 善心에서 연유하였기 때문에 自讚毀他해도 그 죄가 적다.

(2) 非福非罪 : 福도 되지 않고 罪도 되지 않는 것은 산란한 정신상태에서 自讚毀他한 경우 등이다.

(3) 唯輕非重 : 오직 그 죄(罪)가 가볍고 무겁지 않는 경우는 五錢 以下の 利養을 위해 自讚毀他하는 경우 등이다.

(4) 唯重非輕 : 오직 그 罪가 무겁고 가볍지 않는 경우는 바로 이 戒에서 내세운 五錢 以上の 利益을 위해 自讚毀他하는 경우 등이다.

147)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6 上. “文云 惡事自向已 好事與他者 五句不論上句 唯論下四句 故作是說也”.

148)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6 上.

## 8. 慳惜加毀戒

재물이나 법을 베푸는데 인색할 뿐만 아니라 남을 업신여기고 헐뜯기까지 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이 계는 七衆이 함께 制止해야 하며, 大乘과 小乘이 배워야 할 것이 서로 다르다.

### 1) 自慳

자기에게 인색한 自慳은 다음과 같이 5句로 구분하였다.

(1) 가난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인줄 알면서 아끼면 重戒를犯하게 된다.

(2) 가난한 사람을 마땅히 가난할 것이라고 의심하며 인색하면 重罪를犯하게 된다.

(3)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안 경우, 만약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정말 부자로 알고 인색했다면 輕垢罪를犯한 것이고, 만약 본래부터 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자로 잘못 알았다면 전혀 罪가 없다.

(4) 부자를 가난한 사람으로 알고 인색했다면 輕垢罪가 된다.

(5) 부자를 가난한 사람이겠지? 의심하고 인색했다면 역시 輕垢罪가 된다.

### 2) 教人慳

남에게 인색하도록 시킨 경우, 자기를 위해 인색케 한 것과 남을 위해 인색케 한 것, 이 모두가 重罪를犯하게 된다.

### 3) 具緣成業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重罪가 성립된다.

- (1) 가난하여 고생하는 중생
- (2) 가난하여 고생한다는 생각
- (3) 값진 재물과 보배
- (4) 인색한 마음, 만약 이런 마음이 없다면 전혀 罪가 없기 때문이다.
- (5) 財物이나 法을 전혀 베풀지 않는 것
- (6) 헐뜯고 모욕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1)(2)는 緣이 되고, (3)은 法이 되며, (4)는 因이 되며, (5)(6)은 業이 된다.

#### 4) 舉非結過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 唯福非罪 : 아끼든 베풀든 간에 오직 福이 되고 罪가 되지 않는 것은 達機菩薩과 같은 경우이다.

(2) 非罪非福 : 罪도 되지 않고 福도 되지 않는 것은 본래부터 잘못 알고 한결 같이 부자로만 생각하여 베풀지 않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福이 되지 않고, 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罪도 되지 않는다.

(3) 唯輕非重 : 오직 그 罪가 가볍고 무겁지 않는 경우는 앞에서 본 여섯 가지 緣 가운데 마지막 경우<(6)>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값진 재물과 보배<(3)>를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가 부자로 알았을 때와, 부자로 알다가 가난한 사람임을 알고도 베풀지 않으면 그 죄가 가벼울 뿐 무겁지 않다는 것이다.

(4) 唯重非輕 : 罪가 오직 무거운 뿐 가볍지 않는 경우는 바로 이 慳惜加毀戒中에 규정해 놓은 重罪가 이에 해당한다.

## 9. 瞋他結恨戒

남에게 성을 내어 원한을 맺게 하는 것을 경계한 이 계는 달리 성을 내었기 때문에 참회가 용납되지 않는 戒(瞋不受悔戒)라고도 한다. 이 戒는 七衆이 다 제지해야 하는데 大乘과 小乘에 차이가 있다.

### 1) 自瞋

스스로 성을 내는 自瞋은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1) 이치에 맞지 않는 줄 알면서 자신이 성을 내면 重罪를 犯하게 된다.

(2)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혹 맞지 않을까 의심하면서 성을 내면 역시 重罪를 犯하게 된다.

(3)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이치에 맞는 것으로 알고, 이리저리 생각하였다면 輕垢罪를 犯하게 되고, 본래부터 알지 못하였다면 輕垢罪를 犯하게 된다.

(4) 이치에 맞는 것을 맞지 않는다고 알고 성을 낸 것과

(5) 이치에 맞는 것을 맞지 않는다고 의심하면서 성을 낸 것은 다 같이 輕垢罪를 犯하게 된다. 왜 그런가하면 理那菩薩이 성을 내는 것은 大悲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 2) 教人瞋

남이 성을 내도록 시키는 것은 자기를 위하거나, 남을 위한 것이라도 다 같이 重罪를 犯하게 된다.

### 3) 具緣成業

이 瞋他結恨戒를 어겨 罪가 성립되려면 다음의 일곱 가지 緣이 갖추어져야 한다.

- (1) 사람에게 성을 내야한다. 만약 사람이 아니라면 輕垢罪가 되기 때문이다.
- (2) 사람으로 알아야 한다.
- (3) 성을 내야 한다.
- (4) 거친 말을 해야 한다.
- (5) 손이나 몽둥이로 때려야 한다.
- (6) 참회하고 사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이다.
- (7) 맺은 원한을 버리지(捨) 않을 때이다.

이 가운데 (1)(2)는 罪를 이루는 緣이 되고, (3)은 因이 되며, (4)(5)는 法이 되며, 나머지 (6)(7)은 罪를 이루는 業이 된다.

이 중에서 원효는 (7)의 '맺은 원한을 버리지 않으면 重罪를 犯하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地持論』에 '악한 말을 하거나 나무토막이나 돌을 던지거나 몽둥이로 때리는 것 등은 많은 것을 犯하게 되는 犯罪이다'라고 했다. 이는 만약 원한을 맺지 않더라도 그 원한을 버리지 않으면 오직 輕垢罪를 犯할 뿐 重罪를 犯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몸으로 하는 罪業은 몽둥이를 잡는 것이며, 입으로 하는 罪業은 악한 말을 하는 것이기에 바야흐로 重罪를 이루게 되나, 오직 악한 말을 하고 성내어 원한을 맺어 그것을 버리지 않더라도 몸으로 몽둥이를 잡고 때리지 않으면 오직 輕垢罪만 犯할 뿐 重罪는 되지 않는다.

혹 어떤 사람에게 이치에 맞지 않는 不良한 것을 하려할 때 입과 몸의 두 가지 業을 지어 원한을 맺고 버리지 않는 경우에도 오직 가벼운 罪만 犯할 뿐 무거운 罪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능히 사람을 보고 성내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이치에 맞는 일에 성내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이 重罪의 業을

짓는다.

#### 4) 舉非結過

또한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1) 唯福非罪 : 오직 福만 되고 罪는 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르테면 達機菩薩과 같은 분들의 所行이 이에 해당한다.

(2) 非福非罪 : 福도 되지 않고 罪도 되지 않는 경우이다. 말하자면 미처서 자기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의 所行이 이에 해당한다.

(3) 唯輕非重 : 오직 가벼운 罪만 되고 무거운 罪가 되지 않는 경우이다. 말하자면 이 戒目 가운데에서 모든 중생이 아닌 것에 성질을 내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 는 것을 겸하여 내세운 것을 말한다.

(4) 唯重非輕 : 오직 重罪를犯하는 것이 되어 그 罪가 가볍지 않는 경우이니, 바로 이 戒目에서 말하고자 한 重戒이다.

### 10. 謗三寶戒

三寶를 비방하는 戒로 七衆을 같이 制止하는 戒이며, 大乘과 小乘이 다르다.

#### 1) 謗三寶의 4가지 例

(1) 一闍提人 : 佛法을 믿지 않기 때문에 三寶를 비방한다.

(2) 外道心 : 外道들은 正道가 아닌 것을 正道로 삼고 正法이 아닌 것을 正法으로 삼기 때문에 佛法을 비방한다.

(3) 二乘人 : 聲聞·緣覺은 究竟이 아닌 것을 究竟으로 삼아 大乘經典의 法相을 비방한다. 이르테면 그들의 九部經에는 佛性을 설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

다.

(4) 大乘 : 空·有의 두 가지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비방한다.

원효는 대승에서 삼보를 비방하는 예를 아주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먼저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다음으로는 경론에서 그를引證하고 있다.

그들은 있는 것을 없다고 보는 損減執과 없는 것을 있다고 보는 增益執, 이 두 가지에 집착하여 자기들의 뜻이 여래의 뜻과 합치된다고 하기 때문에 곧 佛寶를 비방하는 것이고, 離言絕慮를 편협하게 計巧하여 자기들의 말이 진실이라고 비방하니 이는 곧 法寶를 비방하는 것이며, 正法을 말하는 사람을 비방하면서 자기들이 말하는 것은 옳고 다른 사람들은 그르다고 하기 때문에 이는 곧 僧行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한 마디의 말로 삼보 전체를 비방하는 결과가 초래하여 重戒를 범하게 된다.<sup>149)</sup>

이처럼 삼보를 비방하는 것이 重戒를 범하는 것임을 『持地論』에서 찾고 있다. 즉 『持地論』에 ‘菩薩藏을 비방하고 相似한 法을 세워 스스로 僧地를 아는 것처럼 正法을 비방하거나, 相似한 法을 세우면 重戒를 犯하게 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는 것이다.<sup>150)</sup>

## 2) 教人謗

남을 시켜서 三寶를 비방해도 重罪를 犯하게 된다.

## 3) 具緣成業

네 가지 緣이 갖추어지면 무거운 罪業을 짓게 된다.

(1) 有邪解 : 삿된 所見이라야 한다.

149)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86 下.

150)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p.286 下.



(2) 起謗故意 : 고의로 비방하는 것이다.

(3) 對人謗 : 사람을 상대해서 三寶를 비방하는 것이다. 만약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면 輕垢罪를犯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前人令解 : 비방을 듣고 그렇게 믿어야 한다.

5) 舉非結過

역시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1) 唯福非罪 : 예를 들면 『涅槃經』<sup>151)</sup>에 十聖外道 等の 達機菩薩이 外道로 나타나 上首가 된 다음 부처님과 논의하다가 외도들을 이끌고 佛法에 들어온 경우이다.

(2) 非罪非福 : 狂心의 상태에서 三寶를 비방하는 때이다.

(3) 唯輕非重 : 正法을 비방하나 邪法을 내세우지 않거나, 또는 사람이 아닌 것을 상대로 正法을 비방하거나, 또는 相似한 法 등을 만들었을 때이다.

(4) 唯重非輕 : 이 戒目에서 직접 내세운 重戒는 이에 해당한다.

151) 『大般涅槃經』 卷第三十九(『大正藏』 12, p.590下). [橋陳如品]에 부처님께서 橋陳如를 상대로 설한 법문 중에 '부처님의 법을 여의면 사문도 없고 .... 외도들은 비었고, 거짓이고, 속이는 것이 어서 진실한 행이 없다'는 등 외도를 비난하는 내용이 있다. 이에 闍提首那 등 열 명의 외도들이 부처님에게 항의하였으나 결국 부처님에게 귀의하게 된 사실을 두고 한 말이다.

## V. 元曉의 十重大戒觀

지금까지 원효의 『梵網經菩薩戒本私記』는 어떻게 分科되었으며, 十重大戒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이제 이를 대상으로 원효는 十重大戒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던가를 검토코자 한다.

### 1. 說戒의 對象과 聽法姿勢

#### 1) 說戒의 對象

第一戒로부터 第十戒로부터 한결같이 첫 머리에 '佛子'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다. 聽法의 대상이기에 단순한 호칭일 수도 있으나 원효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어쩌면 이 十重大戒를 注釋함에 있어서 가장 念頭に 두었던 것 중의 하나임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경의 전체 문단을 가르면서 원효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처음에 '佛告佛子' 라고 한 이 말은 聽法하는 對象者의 根機를 매듭지어 놓은 것이다. 소송의 사람들은 보살계를 들은 만한 根機가 아니기 때문에 說戒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들을만한 근기가 있는 佛子에게 비로소 보살계를 설할 수 있기 때문에 '佛子' 라고 말한 것이다. '佛子' 는 聽法하는 主體를 나타낸 것이요, '佛子' 는 戒體를 받는 사람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表體라고 한 것이다.<sup>152)</sup>

각 戒文의 첫 머리에서 한결같이 '若佛子' 라고 한 이 경의 底意는 여기에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 즉 이 계는 菩薩戒이기 때문에 說戒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보살이라는 것이다. 이 점은 謗三寶戒를 설명하는 가운데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즉

152) 『私記』(『續藏經』 第1編 95套 第2冊) 280 中. 初言佛告佛子 此繫機之辭 若小乘等者 非聽菩薩戒機 故 非爲說故 有機佛子 方爲說菩薩戒 故言佛告佛子 佛子者舉人表體者 佛子者此表受體 故言表體.

疏主는 三寶를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다만 外道 等に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계의 本意에 合當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戒는 佛戒를 받은 四部大衆이 三寶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外道와 같이 보살계를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sup>153)</sup>

물론 여기에서 '이 戒의 本意에 合當하지 않다'는 '이 戒'는 謗三寶戒를 두고 한 말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十重大戒 전체를 지칭한 것이기 때문에 說戒의 대상은 보살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 2) 受持姿勢

戒를 受持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원효는 세 가지를 꼽고 있다. 첫째는 '散亂한 마음이 없어야 한다'(無散亂)는 것이다. 마치 엮어진 그릇에 물을 담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둘째는 '天性이 殊勝하다고 驕慢해서는 안 된다'(無性勝)는 것이다. 이는 구멍 뚫린 그릇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순수해야 한다'(離濁)는 것이다. 더러운 그릇에 물을 담아봐야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sup>154)</sup>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戒를 受持할 수 있는가? 教師의 말을 인용하여 戒를 受持할 수 있는 정도와 그 地位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十信의 사람들은 비록 戒를 배웠더라도 持戒할 수 있는 地位는 아니다. 十解 以上은 비로소 자기의 분수에 따라 持戒할 수 있고, 初地 以上이라야 비로소 持戒한다고 할 수 있다.

究竟清淨한 持戒는 二地에 이르러야 비로소 持戒한다고 할 수 있어 이 지위에서 비로소 戒度位를 성취하게 된다. 이 二地 이하의 사람은 일부러 戒를 범하는 것은 아

153)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7 中. "疏主者 無謗三寶人 但取外道等人 然而不合於義 何以故 此戒者受佛戒人師 謗三寶故 外道等不受菩薩戒故也."

154)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77 上~中.

너지만 착오로 戒를 범하는 줄은 모르기 때문에 究竟淸淨이라고 할 수 없으나 戒를 受持하고 轉授하는 자라고는 할 수 있다. 十信의 사람은 他人으로 하여금 戒를 받아 轉授하게는 못하고 오직 十劫 동안 戒를 배우기만 할뿐이다. 十解 以上の 사람은 人空의 地位에 올랐기 때문에 그 아래의 地位를 爲하여 戒를 轉授할 수 있다. 하지만 地前은 我空을 깨달아 流轉함이 없음을 다 비슷하나 오직 자기의 분수에 따라 轉授 할뿐이다. 이 究竟轉授位라는 것은 十地 이상이 비로소 轉受하여 진실로 流轉함이 없는 地位를 얻게 된다.<sup>155)</sup>

한 마디로 十信의 地位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戒를 배울 수 있으나 수지하지는 못하고, 十解 이상의 사람들은 자기 분수에 따라 受持할 수 있으며, 初地 이상이 되어야 완전히 受持할 수 있다는 것<sup>156)</sup>으로 요약하고 있다.

## 2. 十重大戒의 性格

盧舍那佛序의 끝 구절인 ‘甘露門則開’에 대한 해석에서도 원효의 十重大戒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關鍵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원효는 甘露를 不死藥으로 풀이한 내용<sup>157)</sup> 중에 이 戒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三聚戒法은 바로 甘露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三聚戒를 가지므로 해서 능히 無上の 菩提인 不死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三聚戒法이 甘露라는 것이다. 無上한 菩提로 甘露를 삼아 三聚戒로서 門을 삼는다고도 하였다. 이 門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먼저 出入의 뜻으로 보면, 律儀戒와 攝正法戒는 自利의 戒이기 때문에 들어간다는(入) 뜻이고, 攝衆戒는 利他行이기 때문에 나간다는(出) 뜻이 된다.

155)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77 中. “若十信者 雖初學戒而不能地位 十解以上方隨分持戒 初地以上人 方得名持戒.”

156)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77 中. “若十信者 雖初學戒而不能持位 十解以上方隨分持戒 初地以上人 方得名持戒.”

157)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76 上.

戒도 이와 마찬가지로。三聚戒를 가짐으로 해서 佛性·如來藏本覺·十地·佛果를 얻을 수 있고, 또 三聚戒의 門을 열어 놓으므로 해서 다른 중생들도 佛性·本覺·佛果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開示로써 門의 뜻을 삼는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戒德을 日月에 비유한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戒의 밝기가 日月과 같다(戒如明日月)'고 한 經文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비유한 뜻이 있다고 하였다.

먼저 해와 달은 그 自體가 더러움을 여의고 밝고 맑으며, 또한 어두움을 능히 깨뜨려 모든 것을 훤히 나타내게 한다. 戒도 이와 같아서 自體가 더러움을 여의고 밝고 맑아서 번뇌와 障礙를 깨뜨려 佛性·如來藏 등의 보배를 훤히 나타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해는 熱으로써 性品을 삼고, 달은 찬(寒)것으로써 性品을 삼는다. 만일 해만 있고 달이 없다면 모든 種子의 싹은 마르고 타버려 果實을 맺지 못할 것이다. 또 만일 달만 있고 해가 없다면 모든 種子의 싹은 곧 썩어버려 능히 싹을 틔우지 못할 것이다. 戒도 이와 같아서 비록 攝律儀戒와 攝正法戒(攝善法戒)를 지킨다 해도 攝衆生戒를 가지지 않는다면, 오직 自利行만 있을 뿐 自他行은 없기 때문에 二乘(聲聞·緣覺)과 같이 無上菩提果를 얻을 수 없다.

마지막 하나는 해와 달이 비록 虛空에 떠 있으나 虛空을 貪著하지 않는 것처럼, 戒도 이와 같아서 三聚戒를 가진 菩薩이라야 邊際(끝·한쪽)를 떠나 邪見을 여윌 수 있다.<sup>158)</sup>

三聚戒를 온전히 갖추어야만 凡夫나 二乘과 달리 마침내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三聚戒에서 律儀戒는 斷의 德目이요, 攝正法戒는 智의 德目이며, 攝衆生戒는 恩의 德目이다. 이 三德의 果를 얻어야 正覺을 이룰 수 있다<sup>159)</sup>는 것이 원효의 설명이다. 그런데 '十重大戒는 모두 律儀戒'<sup>160)</sup>이기 때문에 이렇게 三聚戒를

158)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78 中~下.

159)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77 上.

160)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1 下. "十重大戒皆律儀戒故".

門에 비유한 것은 이 戒의 기본정신과 완전히 일치하는 卓見이 아닐 수 없다.

### 3. 十重大戒의 總判

마지막으로 대·소승에서는 十重大戒를 어떻게 制止하고 있는지 그 適用의 範圍를 總判해 보기로 한다. 이 문제는 菩薩戒에 관한 원효의 또 다른 저서 『菩薩戒持犯要記』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함께 <표 20>과 같이 圖示한다면 원효의 十重大戒觀을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0> 십중대계 총판

戒名	內容	菩薩戒本私記			持犯要記		
		適用範圍	業道爲重	過廣爲重	過重爲重	大小共通	大小不共
제1不煞戒(煞戒)	大小同學 七衆共制	☆			☆		☆
제2偷盜戒(不偷盜戒)	大小同學 七衆共制				☆		☆
제3不淫戒(淫戒)	大小同學 七衆共制			☆	☆		☆
제4妄語戒(不妄語戒)	大小同學 七衆共制		☆		☆		☆
제5酤酒戒(不酤酒戒)	大小同制						☆
제6意心說同法人過戒	大小不同						☆
제7自讚毀他戒(爲利讚毀戒)	七衆同制 大小共學					☆	
제8慳惜加毀戒	七衆同制 大小不同					☆	
제9瞋打結恨戒(瞋不受悔戒)	七衆同制 大小不同					☆	
제10謗三寶戒	七衆同制 大小不同					☆	

위 표에서 菩薩戒本私記欄에는 두 가지로 갈라놓았다. 하나는 앞에서 보았던 이 『사기』의 分科와 十重大戒의 分析을 종합하여 이 戒의 適用範圍를 나타낸 것이고, 다른 하나(爲重)는 아래의 인용문에 나타난 것을 總判한 것이다.

열 가지 重戒 가운데서 業道를 기준해서 重罪를 가린다면 殺生이 가장 무겁다. 그것은 다른 생명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또 過失의 폭이 넓은 것은 妄語가 가장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聖人을 비방하면서 마치 자기가 聖人인 것처럼 행세하기 때문에 十方의 凡夫와 聖人을 영원히 迷惑에 휩싸이게 하기 때문이다. 만약 過失이 무거운 것으로 보면 淫戒가 가장 무거운 것이 된다. 그것은 罪業의 根本을 일으키기 때문이다.<sup>161)</sup>

이로써 본다면 十重大戒는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殺生이, 사회적으로 파급되는 惡影響은 妄語가, 그리고 過失 그 자체로 보면 淫戒가 가장 중하다는 것이다.

다음의 『持犯要記』에 나타난 그의 十重大戒觀은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

重戒 가운데 열 가지로 總說한 것을 그 유형별로 논하면 세 가지로 구별된다. 어떤 것은 소송의 重戒와 공통적인 것이 있으니, 처음의 네 가지가 그것이다. 또 어떤 것은 소송과 공통되지 않는 중계가 있으니 그것은 뒤의 네 가지이다. 그리고 재가보살의 여섯 가지 중계는 十重大戒 가운데 처음의 여섯 가지가 이에 해당한다.<sup>162)</sup>

이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출가·재가를 막론하고 重하게 취급한 것은 殺戒와 不偷盜戒, 그리고 妄語戒이다. 이 세 가지는 五戒에 속한 것이란 점에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들이다.

161)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7 上.

162) 『韓國佛敎全書』第一冊, p.581 上~中. “重戒之中 總說有十 論其類別 亦有三種 謂前四也 或有 不共之重 謂後四也 或立在家菩薩六重 謂十重內在前六也”.

『持犯要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실은 제1계에서 제6계까지는 在家의 六重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제7계 이상에 대해 在家衆이 이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私記』에서는 이를 모두 七衆同制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자 그대로 제7계 이상보다는 좀더 比重있게 다룬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듯하다.

한편 제7계에서 제10계까지는 대·소승에서 각기 달리 취급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이는 주석에서 볼 수 있듯이 대승과 소승의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sup>163)</sup>

이상과 같은 총판이 나오기까지는 <표 21>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경론을 비교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1> 인용경론 총괄표

區分	引用經論
經	*仁王經(6) *梵網經(6) *涅槃經(5) *瓔珞經(5) *華嚴經(4) *優婆塞戒經(3) = *善生經(1) *楞伽經(2) *金光明經(2) *勝鬘經 *妙法蓮華經 *般若經 *大品經 *多羅尼經 *方等多羅尼經 *文殊舍利巡幸經 *淨名經 *九教經
律	*四分律(4) *律(4) *薩婆多(3) *十誦律(3) *僧祇律(3) *鼻奈耶律 *小乘律 *善見律 *律文 *十誦摩得伽薩婆多 *小乘僧祇律 *摩得伽
論	*攝大乘論(5) *持地論(5) *瑜伽論(2) *大乘論 *十地論 *雜心論 *菩提資糧論 *唯識論
其他	*成實家(2) *大乘家(2) *小乘法 *教師(4) *律師(2) *法師(2) *隆鏡師 *法源律師 *經 *疏 *疏主

163) 『私記』(『續藏經』第1編 95套 第2冊) p.285 上. “大小不同 若小乘者 以自利爲先…… 若大乘者 以利他爲先.”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引用經論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引用經論을 열거하는 수준에 그치고자 한다.

## Ⅵ. 맺음말

이 논문은 論題에서 볼 수 있듯이 원효의 『梵網經菩薩戒本私記』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렇다 보니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介入시킬 여지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私記』의 전체적인 내용을 논하기보다는 이를 이해하는데 主眼點을 두었기 때문에 요약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缺點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계율에 관한 識見이 전무한 필자로서는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린다는 것이 무리임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다시 요약하여 정리하는 것으로써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이 책의 저자는 원효이다. 그는 한국 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이다. 특히 100여종 230여권에 달하는 그의 遺著는 佛敎史上 보기 드문 多作이다. 그러나 多作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부실한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한 점은 바로 이 『私記』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서 다시 한 번 증명된다.

특히 十重大戒를 註釋함에 있어 다양한 종류의 經論과 諸師의 설을 인용한 것은 이 책의 가치를 한 층 돋보이게 한다. 그러면서도 단순한 인용이나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비교·검토하여 잘잘못을 지적한 것은 계율에 대한 그의 식견이 어떠했던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각 戒의 분석에서 보여준 인간의 다양한 행동양상은 현대의 심리학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深度있게 파헤쳐 놓았다. 그러한 心理分析에

서 우리는 그가 주창한 대승의 보살정신이 무엇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행동지침까지 읽을 수 있게 된다. 이 점은 특히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죄가 되고, 어떤 경우에 죄가 가벼워지는가 하는 대목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거운 죄를 범한 것이 사실임에도 오히려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 대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심리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을 여기에서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이나 지적 수준의 차이까지도 결국은 內密한 心識의 바탕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감안할 때 원효의 이 『私記』는 결코 고이 모셔 둘 수만은 없는 위대한 倫理書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것은 出家나 在家, 혹은 菩薩戒의 受持與否를 가릴 것 없이,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 행동의 영원한 거울이 되어야 함을 인식시켜 주고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